

어업자원관실 업무편람

2010. 10.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관

목 차

I. 일반현황	1
1. 일반현황	3
2. 비전 및 전략	5
3. 주요업무 추진계획	6
II. 어업정책과	19
1. 일반현황	21
2. 비전 및 전략	23
3. 주요추진정책	24
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24
나.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설치·운영	30
다. 수산관계 법령 체계 정비 추진	33
라. 지역별·해역별 특성에 맞는 어업관리 제도 구현	34
마. 연근해 어업허가 일제정비 제도 도입	41
바. 자원관리형 어구·어법 인증제 도입	43
사. 생분해성 어구 보급 확대	45
아. 고래자원의 보존 및 이용을 위한 제도정비	52
자. 저탄소·에너지 절약형 어선어업 구조정착	58

Ⅲ. 양식산업과	63
1. 일반현황	65
2. 비전 및 전략	67
3. 주요 추진정책	68
가. 외해양식 활성화	68
나. 어장이용계획개발 기본지침 수립 추진	73
다.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보급 확대	78
라. 수산동물 방역체계 구축	88
마. 양식분야 대표품목 육성 추진	93
바. 친환경 양식기반시설 구축	99
사. 양식수산물 출하조절사업	103
아. 어업재해복구 지원대책	106
자. 적조피해 예방대책 추진	113
차. 수산물 이력제 추진	117
카. 해역별 위생등급 설정 관리	121
타. 수산물 위생관리	123
파. 양식장 불법시설 정비 및 단속	125
하. 김 양식장 유해물질 사용 근절대책	128
거. 한·미 패류위생협정 이행	131
너. 위생약정 이행 및 수입조건 이행	138

IV. 자원환경과	145
1. 일반현황	147
2. 비전 및 전략	150
3. 주요추진정책	151
가. 수산자원회복정책의 체계화	151
나. 총허용어획량(TAC)제도 확대 강화	154
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	159
라. 수산자원보호구역 제도개선	167
마.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바다숲 조성	175
바. 해양관광·레저가 어우러진 바다목장 조성.....	178
사. 수산자원조성 전담법인 설립	183
아. 자율관리어업 확산 및 내실화	186
자. 기후변화에 따른 해파리 어업피해대책 마련	192
차. 어장정화사업	194
카. 수산생명자원관리제도 법제화 추진	199
타.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한 내수면어업 진흥	202
파. 낚시산업 육성 및 관리	216
하. 관상어 산업 육성	222
거. 어업자원관리 시스템 운영	226
 V. 허베이스피리트 피해어업인 지원단	 229
1. 일반현황	231
2. 주요 추진정책	232
가. 피해어업인 지원활동	232
나. 유류 피해어장 복원추진	234

VI. 주요통계 및 참고자료	241
1. 어업자원관 예산 내역	243
2. 주요통계(요약)	246
3. 주요 세부통계	261
가. 연근해어업 허가처분 현황	261
나. 어선등록 현황	265
다. 양식어업 면허·허가건수 및 면적	270
라. 내수면어업 현황	273
마. 수산물 생산 현황	275
바. 수산자원관리 정보화 시스템 활용 현황	284
사. 기타 통계자료(어가인구, 어가소득, 부채, 어촌계, 수급 등)	285
4. 법령 현황	297
5. 수산동식물 채포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311
6. 어업의 종류별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	319
7. 법인 현황	321
8. 위원회 현황	325
9. 연근해 어업별 조업 모식도	330
가. 수산업법상 수산업의 분류	330
나. 면허·허가·신고어업의 정의 및 어업종류	331
다. 허가어업의 종류	333
【근해어업】	333
【연안어업】	344
【구획어업】	3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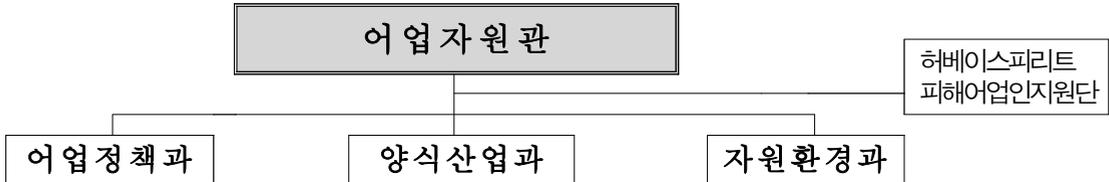
I. 일 반 현 황

1. 일반현황	3
2. 비전 및 전략	5
3. 주요업무 추진계획	6

1. 일반현황

조직 및 정원

조직



정원

(단위 : 명)

구 분	정 원							
	합계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이하	기능직
계	45	1	1	4	5	17	15	1
어업정책과	14	1	1	-	3	3	5	1
양식산업과	11	-	-	1	1	5	4	-
자원환경과	15	-	-	1	1	6	7	-
피해어업인지원단	5	-	-	2	-	3	-	-

주요 관장업무

담 당 과	주 요 업 무 내 용
어업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 및 근해어업 정책·제도 조정 연근해어업 경영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 어선 관리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도·감독
양식산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식산업 정책 및 제도 운영 양식수산물 위생 및 질병 관리 적조, 어업재해대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도·감독
자원환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근해 자원환경 및 수산자원회복에 대한 정책수립·집행 자율관리어업, 총허용어획량, 바다목장, 바다숲 조성 등 내수면어업, 낚시, 유어장 제도 운영
허베이스피리트 피해어업인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류피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피해지역 어장환경 복원, 피해어업인 보상지원 관한 사항 피해지역 어획수산물 안전성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소관 법률

법 률 명	주 요 내 용
수 산 업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어업, 허가 및 신고어업 • 어업조정, 수산업의 육성, 수산발전기금
기 르 는 어 업 육 성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르는 어업 발전시행계획 • 수산자원관리수면
어 장 관 리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장정화·정비 등 어장환경관리
수 산 자 원 관 리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자원관리
어 선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건조허가, 등록 및 검사 등 안전관리
내 수 면 어 업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면 어업 기본계획 수립 및 어업관리
낚 시 어 선 업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낚시어선업 신고 및 설비기준 등 안전관리
수 산 동 물 질 병 관 리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동물전염병 방역 및 수입수산물 검역
수 산 물 품 질 관 리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의 상품성 및 안전성 향상 •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검사
농 어 업 재 해 대 책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재해 대책 및 재해어업인 지원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기금의 보상한도 초과금액 추가지급 •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 지역 지정

'10년도 예산 및 '11년도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9(a)	'10(b)	'11안		증감액		증감율(%)	
			요구	조정안(c)	b-a	c-b	b/a	c/b
총 계	2,622	2,423	2,608	2,025	△ 199	△ 398	△ 7.6	△ 16.4
일 반 회 계	233	543	818	791	310	248	133.1	45.7
농 특 회 계	1,884	1,491	1,439	863	△ 393	△ 628	△ 20.9	△ 42.1
광 특 회 계	10	17	35	25	7	8	70.0	47.1
수산발전기금	495	372	316	346	△ 123	△ 26	△ 24.8	△ 7.0

* 추경예산 포함 : '09년 20억(기금)

* 광특회계는 부처편성사업만 표시

2. 비전 및 전략

비전

풍요로운 자원, 행복한 어업

전략

자립·자강형
어업생산 구조



고수익, 친환경
수산생물산업

추진
과제

고수익 어업생산 능력 창출

어업경영, 자원수준을
고려한 적정어선세력 달성

고부가·친환경 외해양식
산업 전략적 육성

자율·자립형 어업자원 관리

해역별·지역별 맞춤형
어업관리 제도 구현

자율자원관리형 어업생산
활동 문화 조성

녹색성장형 수산자원 관리

저탄소·녹색성장형
바다숲 조성

저탄소·에너지 절약형
어선구조로의 전환

청정하고 안전한 어장환경

안전하고 깨끗한
수산물 생산공급

친환경 어구보급 및
어장정화 사업 확대

3. 주요업무 추진계획

1 | 연근해 어업관리

가 현 황

□ 동·서·남해안에서 5만여척의 어선으로 연간 120만톤 수준의 수산물을 생산 공급

※ 어선규모 : ('07) 63,100척 → ('08) 57,177척 → ('09) 53,799척

○ '09년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수산물 총 생산량(318만톤)의 38.7%인 123만톤 수준

○ '09년 연근해어업 생산액은 전체 어업생산액(6조 9,106억원)의 52.6%인 3조 6,404억원 수준

- 연근해 어가소득은 전체 어가소득(34백만원)의 98% 수준인 33백만원 수준

※ 연근해 어가는 47천호로 전체어가(69천호)의 68%, 어가인구는 124천명으로 전체어가인구(184천명)의 67%

◀ 주요 품종별 생산 및 생산액 동향 ▶

- 멸치류	: ('00) 201천톤(2,033억원) → ('08) 262(2,866억원) → ('09) 204(2,864억원)
- 오징어류	: ('00) 226천톤(2,796억원) → ('08) 186(2,827억원) → ('09) 189(3,905억원)
- 고등어류	: ('00) 146천톤(1,489억원) → ('08) 190(2,101억원) → ('09) 175(2,804억원)
- 갈치	: ('00) 81천톤(2,037억원) → ('08) 72(3,285억원) → ('09) 85(2,964억원)

□ '10년 연근해어업 생산은 상반기 저수온(평년대비 -0.5℃~-2℃) 등으로 전년대비 다소 감소가 예상되나, 어가상승으로 소득은 증가 전망

○ 상반기 어업생산량은 전년동기 대비 13.3% 감소(금액은 5.3% 증가)하였으나, 하반기는 난류성 어종의 어획량 회복 중

나 추진 과제

① 어업관련 제도정비 및 규제완화

- MB 정부 출범 이후 어업현장 애로사항 발굴('08~'10) 해결방안 모색 및 지속발굴 추진
 - 한시어업허가 제도 도입 등 34건(연근해 21, 어선 4, 양식 2, 자원환경 7) 제도개선 완료
- 연안어업은 지역별 해양환경 특성에 따라 다양한 어구·어법으로 조업하고 있어 정부 주도의 일률적 관리에 한계
 - 해역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어업관리 제도 구현을 위하여 맞춤형 연안어업 관리로 전환을 위한 권한이양(중앙→지자체) 협의 중

② 자율관리 어업

-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분위기 확산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 도모
 - '01년부터 자율관리어업 시범 실시, 전체 어촌계의 38%인 831개 (59천명) 공동체가 참여하여 매년 8~9% 소득증가
- 공동체가 어촌변화의 중심체로 성장·발전하도록 집중 육성
 - 신규공동체는 민간컨설팅을 실시(연중)하고, 매년 실적평가를 통한 육성사업비 차등지원(등급: 풍요, 모범, 협동, 참여)
 - 성숙공동체는 자립기반을 완전히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여 졸업
 - 특별사업비 20억원 이내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후 지원 종결

③ 어업분쟁 조정

- 한정된 어장에서 경쟁조업으로 인한 업종간·지역간 어업분쟁 상존
 - '04. 8부터 이해 당사자간 자체해결을 위한 **자율조정협의회** 설치 운영(한국수산회에 전문위원, 민·관·학계 전문가 구성)
 - ※ 총 25건(동해안 골뱅이·붉은대게 통발어업자간 분쟁 등)을 해결하고, 3건 조정 중
 - '09. 7부터 **해역별 어업 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우리부 훈령으로 동해('09.10), 서해어업지도사무소('09.11)에 설치)
 - ※ 진도 새우조망 조업분쟁 등 1건을 해결하고, 6건은 조정 진행 중
- 현행 어업조정제도는 **조정결과 담보 권한이 미흡**하여, 해역별 특성을 감안한 **분쟁 조정기구 도입**을 위한 법률 제정 검토
 - ※ 제정 법률명 : “가칭” 「어업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

④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 수산자원 상태에 비해 **과도한 어선세력**을 감축하기 위한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 추진
 - '94~'09년까지 1조 4,711억원 투입, **연근해어선 15,399척** 감척
 - 감척사업은 어업인 희망에 의존함에 따라 업종별로 불균형적인 감척이 이루어져 **자원남획 업종** 등 필요한 어업은 **구조조정 미흡**
- 국내·외 어업 여건변화*에 대응한 **어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 (대내여건) 해양환경 변화, 저탄소녹색성장, 어선노후화, 어선원노령화 등
 - (대외여건) 주변국 조업수역 감소, FTA협정체결에 따른 수입수산물 급증 등
- 감척위주의 정책을 어선척수(허가)의 조정, 어선의 선진화 등 **미래 지향적인 다양한 어업구조 선진화**로 개편
 -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12월 국회제출 목표)

⑤ 친환경 어선어업으로 전환

- 연근해어업은 구조적으로 고연료 소비형이나 신기술 및 장비 개량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전환 추진
 - 에너지 절감형 LED 집어등 및 저효율 노후기관 대체 등 지원(39억원)
- 폐그물·통발 등으로부터 환경 및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중에서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로 전환('07~'10, 시범사업/142억원)
 - ※ 7개 시·도(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국비 70%, 지방비 30%

⑥ 친환경 갯벌어업 육성

-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우수한 갯벌을 보유(2,550km², 국토면적의 2.5%) 하고 있으나, 갯벌의 수산생물 단순채취 등 소극적 이용
 - 단순한 정착생물 채취 등으로 갯벌패류 생산 감소 ('90년 109천톤 → '07년 35, △68%)
 - '07년 유류유출사고 피해지역 어장 환경개선 및 안정적인 소득원 마련 절실
- 서해 유류피해어장 환경복원과 연계한 친환경 갯벌어업 육성
 - 갯벌 경운, 객토 등 환경개선과 연구 등 친환경 인프라 조성
 - ※ '10년 사업비 : 223억 원 ('19년까지 1,577억원 투입)
 - 개체 굴, 해삼 등 수출 전략품목 시범사업(10년, 10억원)과 지역별 고부가가치 수산물 생산기지 육성
 - 중장기적으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갯벌 이용 제도를 마련, 신성장 동력으로 개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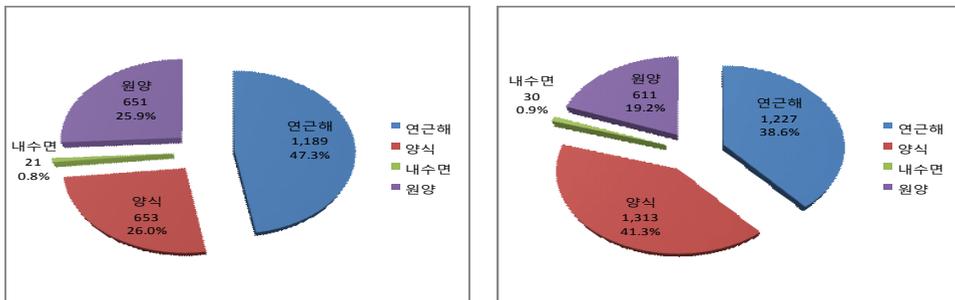
양식산업 육성

가 현황

- 동·서·남해안 140천ha의 어장에서 연간 130만톤 내외의 양식 수산물을 생산, 국내 공급 및 수출
 - 2009년 해면양식어업 생산량은 1,313천톤으로, 국내 수산물 총 생산량의 41.3%를 점유하여 중요 식량산업으로 성장
 - ※ 면허면적 : ('07) 132천ha → ('08) 136 → ('09) 140
 - 2009년 양식 생산액은 전체 어업생산액의 27%인 1조 8,469억원 수준
 - ※ 양식 어가수 23천가구, 어가인구 62천명
- 2010.6월 현재, 양식업 생산량 및 생산액이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여 양식어가 소득도 동반 상승 전망
 - 생산량: ('09.6월) 918천톤 → ('10.6월) 936천톤(1.9% 증)
 - 생산액: ('09.6월) 9,661억원 → ('10.6월) 9,749억원(0.9% 증)

총 어업생산량 대비 양식업생산량 및 점유율

('00년) 총 2,514천톤 중 653천톤(26.0%) ⇒ ('09년) 총 3,182천톤 중 1,313천톤(41.3%)



나 주요 추진과제

① 친환경 양식 기반 구축

□ 지하열 이용 등 에너지 절감장치 보급 지원

- 고유가 등 대내·외 어업여건 변화에 따른 양식어업의 경영비 절감을 통한 대외 경쟁력 확보 필요

- 어패류 양식장에 에너지절감장치(히트펌프시설) 보급 추진('11년안 180억원)

- 발전소 온배수 활용, 난류성 어종(돔, 방어 등) 양식

- * 전국 발전소 수는 30개소, 일일 온배수 방출량은 1억3천만톤으로서, 일반해수보다 7℃상승 효과

- 하절기 고수온기, 동절기 저수온기에 지하해수(16℃) 사용·양식 등

- 2011년 실태조사 후 2020년까지 1,000개소 양식장 개발·지원

□ 친환경 고효율 배합사료 보급 확대

- 연근해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04년부터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사업 및 고효율 배합사료 개발 확대

- 생사료를 배합사료로 대체하는 어가 보조지원(어가당 6천만원 한도)

- * 지원규모 : ('05)100 → ('06)101 → ('07)92 → ('08)71 → ('09)75 → ('10)68

- 산·학·연 공동 사료개발 및 실용화 연구

- * 연구사업비 : ('08) 7억원 → ('09) 10억원 → ('10) 9억원

② 대표조직 육성

-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에서 유통, 가공·수출, 소비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대표조직 출범(넙치, 전복, 김)
 - * 설립 : 넙치('08. 12, 469명), 전복('09. 12, 3,800명) , 김('09. 12, 5,522명)
- 대표조직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 공동 연구회 구성 운영 및 자조금 등을 지원
 - 소비촉진, 수급조절, 홍보, 어업인 교육 등에 2,441백만원(자조금 1,741, 기본사업비 700) 지원

③ 외해양식 개발

- 고부가 양식수산물 생산을 위한 외해가두리 양식어장 개발
 - 내만 중심의 가두리 양식을 고부가 신품종 위주의 외해양식으로 전환
 - 외해양식 제도마련('10.8월) 및 참다랑어 양식 개발
 - '12년까지 외해가두리 양식어장 15개소 확대 추진
 - 어장환경이 양호한 외해양식어장 개발을 위한 시험양식 추진 중
 - '05년부터 해역별 특성을 감안, 외해양식 시험어업 6개소 추진
 - * ('05) 제주→('06) 경남→('07) 전남→('08) 강원→('09) 경북→('10) 전남
 - 외해양식어장 개발을 위한 근거규정에 따른 면허처분 중
 - '10년도 처분계획 : 6개소(참다랑어 4, 일반양식 2)
 - * 현재 외해 시험양식 품종: 11종(참치, 돌돔, 참돔, 감성돔, 민어, 방어, 대구, 연어 등)
- 외해가두리 양식 연구개발 지원 및 어장확대
 - 참다랑어 완전양식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10~'14, 118억원)
 - 외해가두리 양식단지 및 심해양식 개발 타당성조사('11년, 2억원)

④ 양식 수산물 위생 및 안전성 강화

- 국민소득 증가와 웰빙식품 선호 등에 의한 소비자들의 위생 안전 관심 증가에 부응하여 다양한 수산물 위생안전정책 추진
 - 전국 연안 해역 조사 후, 위생등급을 설정·관리
 - 청정·준청정·관리·금지해역으로 구분
 - 넙치, 뱀장어, 송어 등 HACCP양식장 지원 확대
 - ('05~'09) 147개소 → ('10) 187개소 → ('12까지) 267개소
 - 수산물이력제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품목확대 등 지속 추진
 - ('09) 600개소/12개품목→ ('15년까지) 850개소/15개품목
- 매년 여름철 식중독 발생 등에 대비, 『여름철 수산물 위생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지자체 등에 시달, 집중점검 및 관리
 - 대국민 교육 및 홍보, 관계기관 합동 대책반 구성·운영 등

3

수산자원 관리 및 환경보호

① 수산자원 조성

□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지 확보를 위한 **인공어초사업** 추진

○ 인공어초시설 : ('71~'09) 8,474억원/20만ha → ('10) 449억원/5천ha

□ 수산자원 증강을 위한 **종묘방류사업** 추진

○ 종묘매입방류 : ('86~'09) 864억원/12억마리 → ('10) 243억원/1억마리

* 방류대상 어종 : 총 56종 (해면 43종 , 내수면 13종)

□ 전국 연안 10개소에 **바다숲 250ha** 조성(150억원)

○ 2012 여수박람회 개최지 주변해역에 70ha 조성(50억원)

○ 동·서·남해 및 제주 해역 9개소에 180ha 조성(100억원)

* 2009년 5개소 120ha조성 / 2020년까지 35,000ha(3,110억원) 조성 예정

□ 해역별 '테마형' **바다목장 5개소** 조성(1,589억원)

○ 2010년 여수바다목장 완공, 2012 여수엑스포 활용(307억원)

○ 울진·제주는 '관광형', 태안은 '갯벌형'으로 조성, 2012년 완공

* 통영바다목장은 240억원을 투입하여 2006년 완공, 지자체 이관

◆ 수산자원 조성·관리사업의 효과적 추진으로 어업생산량 증가

* 어업생산량 : ('06) 1,109천톤 → ('09) 1,226천톤 (10.6%)

② 수산자원관리

□ 수산자원 조사결과를 토대로 연근해 11개 어종에 대해 TAC* 적용

- *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 개별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 설정 후 그 한도 내에서 어획을 허용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
- * TAC 추진 : ('99) 4개 어종/208천톤 → ('10) 11/417 → ('15) 13
- * 대 상('10) : 고등어·전갱이·오징어·도루묵·참홍어·대게·꽃게·붉은대게·개조개·키조개·제주소라

○ 수산자원조사원 연차별 증원('09/43명→'10/70), 어선별 어획량 및 위반어선에 대한 관리 강화

□ 과잉어획 등으로 감소된 12개어종을 대상으로 수산자원회복 추진

- 자원의 조사평가를 통한 포획채취 금지기간·구역, 금지체장, 어구의 사용제한 등으로 치어 및 산란기 성어 보호
- 수산자원회복 확대 추진 : ('06) 4개어종→ ('10) 12→ ('15) 15
- * 대상('10) : 참조기·대구·갈치·도루묵·기름가자미·참홍어·꽃게·개조개·낙지·오분자기·말쥐치·갯장어

③ 어장환경 보호

□ 육상기인 오염물질의 바다유입 증가, 양식어업 확대에 따른 자가오염원 증가로 연안어장 환경개선 필요성 증대

- 우리나라 연안 수질은 대체로 양호한 상태이나, 일부 반폐쇄성 만(灣) 중심의 양식장 환경(침적물 등)은 우려할 수준

□ 어장 등 바다환경 문제에 대한 선제적 관리

- **해역별 Zone***(어장관리해역)지정, 어장환경조사 및 어장정비 우선 실시

* (현재) 인천 11개 어장관리해역 지정, ('10년 계획) 경남 등 2~3개소 시범

해역(후보지)지정 추진

○ 어장 및 연근해 환경개선사업 지속 추진

- 어장정화사업('86~, 총496천ha), 연안어장 및 내수면 환경개선사업, 고밀도부표 보급('09~, 260만개), 굴패각 친환경처리('09~, 24만톤) 지원
- 전국적인 어장환경 실태조사 실시로 오염 및 어장생산력 산정('08~'13년)

○ 어장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어장관리법 전부개정 등)

④ **낙시 및 관상어 산업 육성**

□ 수산분야 신성장동력 발굴 및 어업인 부가 소득 창출 필요

< 산업 현황 >

- ◆ 낙시산업(추정) : 연간 낙시 인구 570만명 / 연간 조획량 23만톤(상업적 어업의 총생산량 대비 7% 수준)
- ◆ 관상어산업(추정) : 세계 시장 규모 23조원 / 국내 시장 규모 3천억원

○ 낙시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낙시 산업을 건전한 국민 레저 활동으로 육성하기 위한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 추진 (현재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계류 중)

○ 관상어 산업의 체계적 육성방안 마련

- * T/F 구성·운영('09.12~) 및 정책 연구 용역(KMI 수시연구 과제 선정, '10. 6.14)

□ 낙시 및 관상어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역할과 범위, 연차별 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 계획 수립 예정('10.12월 까지)

○ '11년 신규 사업으로 낙시·관상어 산업 육성 추진

* '11년 예산 요구 현황 : 낚시산업 육성(62억원), 관상어산업 육성(18억원)

⑤ 내수면 어업

□ 내수면 어족자원 증강을 위해 인공산란장 설치 등 수산자원 보호·관리로 생산량은 지속 증가 예상

○ 내수면어업생산량 : ('05) 24천톤/1,757억원 → ('09) 30/2,753

* 주요어종('09생산액) : 뱀장어(1,417억원), 송어(214억원), 메기(125억원)

○ 양식어업육성을 위해 대량 인공종묘생산 기술개발 지원 필요

* 미꾸라지 치어의 경우 국내산은 20원/마리, 수입산(중국)은 5~6원/마리

□ 토속어종 자원량 증대 및 멸종위기종 복원 등 수산자원 보호 관리 강화

○ 생태정보 알림판 설치(100개소/1억원), 인공산란장 설치(춘천 등 18개 시·군, 6억원)

○ 인공종묘방류사업 확대, 한국형 魚道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10억원) 등

□ 내수면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

○ 최근 낚시인구의 증가와 농어촌 체험관광 등의 확대를 통해 레저 활동 및 휴식 공간으로의 탈바꿈 추세

○ 토속어류 산업화 센터(경북 의성) 등 생태 전시관·학습장 건립 지원 및 내수면 어종 가공공장 건립 지원 등

* 자라 가공공장(전북 김제, 32억원), 메기 가공공장(충남 논산 28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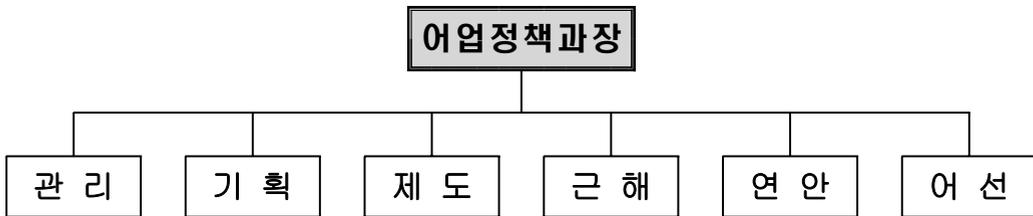
Ⅱ. 어업정책과

1. 일반현황	21
2. 비전 및 전략	23
3. 주요추진정책	24
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24
나.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설치·운영	30
다. 수산관계 법령 체계 정비 추진	33
라. 지역별·해역별 특성에 맞는 어업관리 제도 구현	34
마. 연근해 어업허가 일제정비 제도 도입	41
바. 자원관리형 어구·어법 인증제 도입	43
사. 생분해성어구 보급 확대	45
아. 고래자원의 보존 및 이용을 위한 제도정비	52
자. 저탄소·에너지 절약형 어선어업 구조정착	58

1. 일 반 현 황

조직 및 정원

□ 조 직



□ 정 원

(단위 : 명)

구 분	합계	고공단	3·4 ~ 4급	4·5 ~ 5급	6급이하	기능직
정 원	14	1	1	6	5	1
현 원	16	1	1	6	7	1

소관법률

법률명	주요내용	제·개정 경과 및 계획
수산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어업, 허가 및 신고어업 • 어업조정, 수산업의 육성, 수산발전기금 및 보상·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 법률 제295호('53.9.9) • 개정 : 법률 제9626호('09.4.22)
어선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 건조·개조 허가 및 등록 • 어선설비 기준, 검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 법률 제3063호('77.12.31) • 개정 : 법률 제9718호('09.5.27)

담당별 업무분장

구 분	주요 업무내용	비 고
관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 대외업무(국회, 인사, 법무, 성과관리, 서무 등) 총괄 • 국립수산물과학원 관리·감독(책임운영기관의 평가 등) 	
기 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 주요업무계획 수립·조정·평가 • 국 예산편성 및 결산, 정책제안 및 제도개선 등 	
제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 규제개혁 및 수산관계법령 총괄,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운영 • 어업구조개선관련법률 및 어업분쟁관련법률 제정 등 	
근 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해어업의 정책수립 및 허가 운영에 관한 사항 • 어획물운반업의 등록 및 운영, 고래관련 업무 	
연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어업, 구획어업의 정책수립 및 허가 운영에 관한 사항 • 마을·정치망어업(면허) 및 신고어업 운영에 관한 사항 	
어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근해어업의 구조조정 계획수립 및 집행 • 어선관리·등록·검사 및 건조 허가 등에 관한 사항 	

'10년도 예산 및 '11년도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10년 (A)	'11년(안)		증감 (B-A)	(%)
		요구	조정(B)		
합 계	87,847	84,920	50,789	△37,058	△42.2
< 일반회계 >	1,400	1,300	1,300	△100	△7.1
○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제 구축	1,400	1,300	1,300	△100	△7.1
< 농특회계 >	86,447	83,620	49,489	△36,958	△42.8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77,500	42,980	41,214	△36,286	△46.8
○ 친환경어구 보급 지원	5,035	5,400	5,035	-	-
○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	3,912	3,240	3,240	△672	△17.2
○ 친환경 에너지절감형 어선 지원(용자)	-	32,000	-	-	-

2. 비전 및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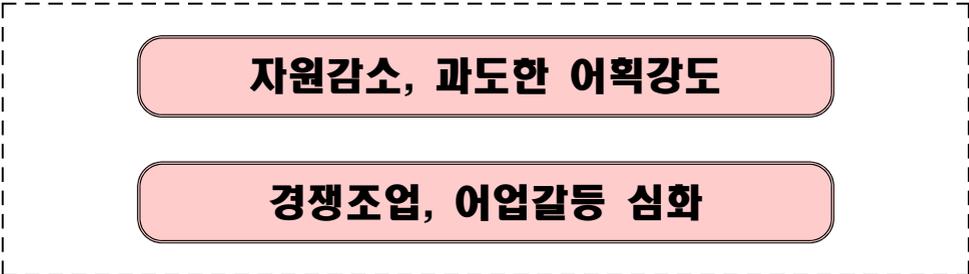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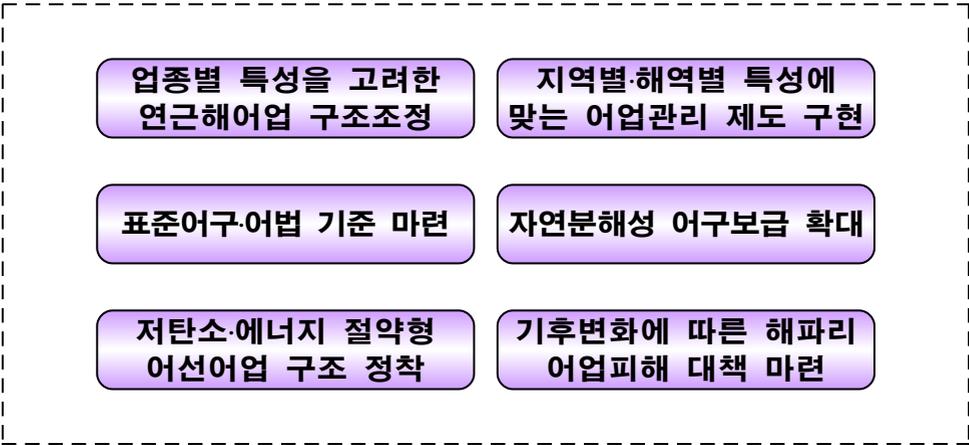
고수익형 어업생산 능력 창출



**녹색성장형
어업구조 전환**



**어업관리 제도
선진화**



3. 주요 추진정책

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목 표

-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업경쟁력 제고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체계적인 어업 구조개선 실현

1) 추진배경

- 국내·외적인 수산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악화된 연근해어업 경영수지 제고
 - 연근해 어업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 연근해 어선세력의 감축 시책이 시급히 수립·추진하여야 할 필요성 제기
 - ※ 1992년 연근해어업구조조정을 위한 계획수립 및 조사·연구
 - 조사당시 어선세력이 자원수준 대비 23~53% 과도한 것으로 평가

2) 추진경과

- 1994년부터 연근해어선 감축사업 추진(일반감척)
 - 연안어업 : 연안 주산란·서식지 보호 및 연안어업경쟁력 제고
 - 근해어선 : 대형선망, 대형트롤 등 어획강도가 큰 업종 감축
 - 정부 지원액(3~4억) 대비 어업인 요구액(7~9억)이 크게 높아 참여 저조 및 중도 포기 등으로 '04년 사업 중단, '07년 재개
 - * '94년~'09까지 14,711억원을 투입, 연근해어선 15,399척 감척

- ※ WTO-DDA, FTA에 대비하고 자원회복과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07~'11년까지 '06년말 전체 근해어선의 35%인 1,280척 감척 추진
- 1999.1.22 및 2001.6.30 각각 발효된 한·일, 한·중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조업어장 축소로 국제규제 감척사업 추진(국제감척)
 - 일본수역 : 통발, 채낚기, 트롤어선 등
 - 중국수역 : 안강망, 자망, 연승어선 등
- *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2002년까지 감척
- * '99 ~ '02년까지 6,443억원을 투입 1,308척 감척

3) 성과와 반성

□ 성과

- 감소추세에 있던 수산자원량과 연근해 어획량이 증가세로 전환
 - * 자원량(만톤) : ('84) 920 → ('90) 835 → ('00) 768 → ('05) 783 → ('09) 831
 - * 어획량(만톤) : ('84) 124 → ('90) 154 → ('00) 119 → ('05) 110 → ('09) 123
- '94년 이후 어선감척 사업으로 연근해어선 15,400여척이 줄어들어 어획량 및 어업소득 증가
 - * 연근해어선 척수 : ('00) 68,629척 → ('09) 53,799척으로 21.6% 감소
 - * 척당 생산량 및 어로수입 증가
 - 척당 생산량 : ('00) 17.3M/T → ('09) 22.9M/T
 - 척당 어로수입 : ('00) 33.9백만원 → ('09) 67.7백만원

□ 반성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어업인의 희망에 의한 감척을 추진함에 따라 불확실성이 내재
 - 연근해어업의 유류가 안정, 어획고 상승 등으로 감척사업 참여 저조 및 사업포기 사례가 자주 발생

- 특히, 어획강도가 큰 일부 저인망 업종은 감척 폐업지원금이 적다는 이유로 참여 저조하여 근해 대형·저인망 업종이 부진
- ※ '07~'11년까지 근해어선 1,280척을 감척할 계획이나, 일부 근해저인망류(동해구트를, 서남구기저 등) 참여저조로 목표달성 불투명('07~'09까지 567척 감척)

4) 향후 추진계획

□ 국내·외 어업환경 변화에 적극대처 및 어업생산량 증대를 위해 '11년까지 근해어선 지속감척 추진

- WTO 협상진전, FTA체결확산, 어업자원 감소 및 고유가 지속 등 출어환경 악화에 적극대처

※ 근해어선 감척계획 : ('09)124척(495억원)→('10)194척(775억원)→('11)20척(412억원)

□ 어업구조조정 참여 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감척제도 마련과 업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방식 도입추진

- 감척희망어선 대부분 감척, 감척효과로 인한 어획량 증대, 신규허가 억제로 어업허가의 희소가치가 증대 등으로 현행 지원조건으로 감척사업 참여기피
- 따라서, 노후어선의 감척시 친환경 유류절감형 내지 적정규모의 선진화 어선 신조 등 연계방안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 모색

참 고 1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어선감척사업 비교

	선진국	우리나라
배경	○ 어업자원관리 정책과 효과적으로 연계	○ 자원관리 정책과 연계 미흡
목표	○ 목표와 기간을 명확 설정 ○ 업종별 감척 계획 추진	○ 업종별 감척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기간 설정 미비
방법	○ 강제적·자발적 방법 병용 ○ 정부·업계 등 다양한 주체가 추진	○ 어업인의 신청에 의존 ○ 정부 중심의 일방적 추진
사후관리	○ 사후관리를 통해 어획능력 증강 방지	○ 감척 선주 재진입·실직 어선원 등 사후관리 부족

- ◆ 각 국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근본적인 구조개선 등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함으로써 어업이 국가산업에 기여
 - ◆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어업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주목
 - ◆ 전통적인 어업에서 벗어나 변화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어업이 국가의 고용·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수출형 성장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음
- ⇒ 어업 구조개선의 새로운 비전과 과감한 정책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참 고 2

연도별 구조조정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척, 백만원)

구 분	합계	일 반 감 척			국 제 감 척				
		소계	연안	근해	소계	어선감척	실업지원	어구비	
'94	척수	54	54	54	-	-	-	-	-
	금액	4,910	4,910	4,910	-	-	-	-	-
'95	척수	117	117	111	6	-	-	-	-
	금액	10,410	10,410	9,113	1,297	-	-	-	-
'96	척수	136	136	110	26	-	-	-	-
	금액	13,656	13,656	7,991	5,665	-	-	-	-
'97	척수	135	135	48	87	-	-	-	-
	금액	27,200	27,200	4,227	22,973	-	-	-	-
'98	척수	159	159	63	96	-	-	-	-
	금액	27,513	27,513	5,287	22,226	-	-	-	-
'99	척수	730	78	-	78	-	652	2,415	27
	금액	357,185	15,180	-	15,180	342,005	330,844	10,654	507
'00	척수	140	109	36	73	-	31	369	-
	금액	31,162	22,500	3,695	18,805	8,662	1,566	7,096	-
'01	척수	586	77	55	22	-	509	4,660	25
	금액	248,914	10,811	5,742	5,069	238,103	196,786	40,442	875
'02	척수	280	164	21	143	-	116	1,441	-
	금액	96,783	41,283	3,805	37,478	55,500	43,786	11,714	-
'03	척수	60	60	16	44	-	-	-	-
	금액	19,011	19,011	1,504	17,507	-	-	-	-
'04	척수	698	698	639	59	-	-	-	-
	금액	17,384	17,384	6,672	10,712	-	-	-	-
'05	척수	841	841	841	-	-	-	-	-
	금액	33,300	33,300	33,300	-	-	-	-	-
'06	척수	1,598	1,598	1,598	-	-	-	-	-
	금액	50,278	50,278	50,278	-	-	-	-	-
'07	척수	2,922	2,922	2,836	86	-	-	-	-
	금액	129,417	129,417	100,000	29,417	-	-	-	-
'08	척수	5,219	5,219	4,868	351	-	-	-	-
	금액	274,501	274,501	154,089	120,412	-	-	-	-
'09	척수	1,724	1,724	1,600	124	-	-	-	-
	금액	129,500	129,500	80,000	49,500	-	-	-	-
합계	척수	15,399	14,091	12,896	1,195	0	1,308	8,885	52
	금액	1,471,124	826,854	470,613	356,241	644,270	572,982	69,906	1,382

참 고 3

연근해 어선감척 필요척수(2009년말 기준)

구 분	허가처분 건수('09까지)	허가정수 대비(A)		연구용역 대비(B)	
		허가정수	감척필요척수	목표어선세력	감척필요척수
합 계	64,792	55,345	9,447	53,661	11,131
연안어업	61,388	52,613	8,775	51,706	9,682
연안자망	19,254	17,351	1,903	17,142	2,112
개량안강망	535	631	-96	500	35
연안낭장망	40	-	40	-	40
연안안강망	16	-	16	-	16
선망(양조망)	257	331	-74	261	-4
선망(무동력)	1	-	1	-	1
연안통발	7,946	4,680	3,266	5,782	2,164
연안들망	836	781	55	500	336
분기초망	101	-	101	-	101
연안조망	921	1,143	-222	60	861
연안선인망	6	14	-8	8	-2
연안형망	3	-	3	-	3
해조채취	4	-	4	-	4
연안복합	31,468	27,682	3,786	27,453	4,015
근해어업	3,404	2,732	672	1,955	1,449
대형기저(외)	46	34	12	27	19
대형기저(쌍)	36	38	-2	34	2
동해구기저	38	20	18	19	19
서남구(외)	43	29	14	27	16
서남구(쌍)	9	7	2	6	3
대형트롤	52	37	15	30	22
동해구트롤	37	23	14	23	14
대형선망	27	29	-2	22	5
소형선망	47	35	12	25	22
근해채낚기	720	618	102	548	172
기선권현망	78	68	10	68	10
근해자망	736	569	167	340	396
근해안강망	247	199	48	175	72
근해봉수망	40	55	-15	8	32
자리돔들망	5	6	-1	-	5
잡수기	236	175	61	149	87
장어통발	65	40	25	48	17
기타통발	225	159	66	95	130
문어단지	41	40	1	17	24
패류형망	101	72	29	33	68
근해연승	575	479	96	261	314

- * 허가정수 : 연안어선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3조, 근해어선 「수산업법시행령」제40조
- * 연구용역 : 연안어선 “2010 연안어선 감척사업 투자효과 분석”, 근해어선 “2007 근해어선감척사업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
- * 복수조업어선 : 쌍끌이 2척, 대형선망 6척, 소형선망 3척, 기선권현망 5척을 기준으로 작성
- * 연안어선의 피해어선감척 및 근해어선의 어획물운반선 감척실적은 통계에서 제외

나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목 표

- 업종간·지역간 조업구역, 조업대상 어종, 어구·어법에 관한 분쟁 및 갈등을 해역별 특성을 감안, 체계적·합리적으로 조정
 - ※ 훈령 제정('09.7.15), 위원회 설치(동해 '09.10.13, 서해 '09.11.3)

1) 현황 및 실태

- 41개 업종 54천척의 어선이 한정된 어장에서 수산자원 선점을 둘러싼 어업경쟁으로 업종간, 지역간 갈등·분쟁 심화
- 현행 지자체 '수산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기능이 미약하고, 조정에 한계가 있어 그동안 어업분쟁조정 기능 사실상 유명무실
- 따라서 해역별 어업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어업간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조정해 나가기 위해 해역별 어업조정제도 도입 필요

2) 추진경과

□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운영

- 대 어업인, 수협 등 홍보·교육 및 분쟁과제 발굴(10회, '10.1.20~2.5)
- 위원회별 2010 운영계획 수립(동해 2.23, 서해 2.22)
- 원활한 분쟁조정을 위한 훈령 개정(3회, '09.11.11, '10.3.16, 6.4)
-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조정추진 협의회 개최(6.7)
 - 동·서위원회 출범 후, 조정 중인 과제(7건)의 조정현황 및 문제점 파악, 조정방향 설정 및 조정 Know-how 공유 등 합리적 조정방안 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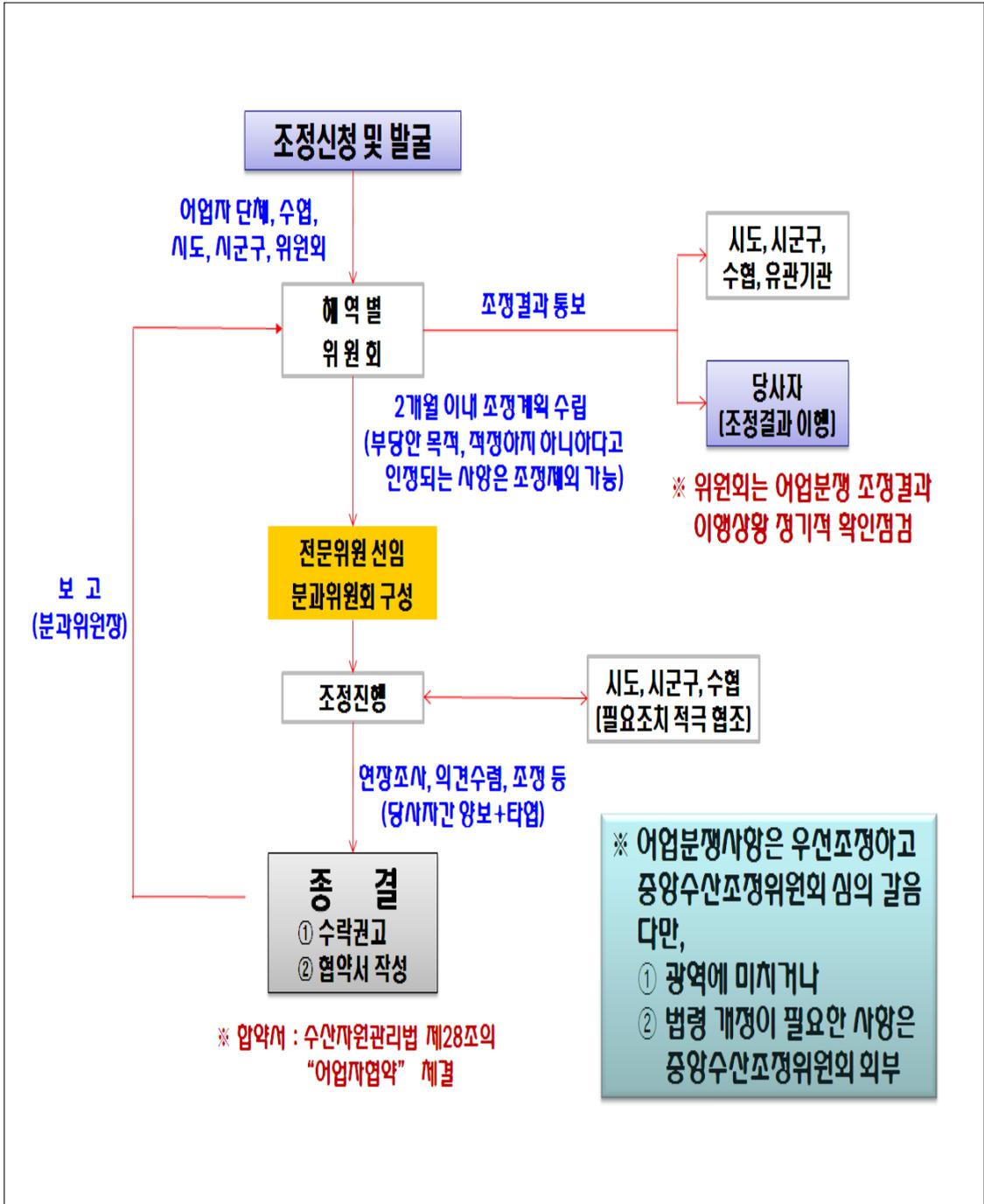
- 조정 성과
 - “진도 새우조망 조업분쟁” 조정 완료(서해위 7.14)
 - “경남 멸치관련 어업분쟁조정” 위원회(안) 확정(동해위 9.15)
- 과제별 분과위원회 구성 및 조정 진행중(계속)
 - 동해(위원회 2, 분과위 5, 현장방문 21), 서해(위원회 3, 분과위 5, 현장방문 9)

3) 성과와 반성

- (반성) 어업분쟁 조정 부진
 - 어업분쟁은 어업자간 이익과 직결된 문제로 조정에 어려움이 있어 분쟁조정에 장기간 소요
- (성과) 분쟁조정 역량 강화
 - 점검회의 개최를 통해 분쟁조정 Know-how 공유로 분쟁조정 역량 강화 및 “진도 새우조망 조업분쟁” 조정 완료 등 성과 도출

4) 향후 추진계획

- 본 위원회 개최를 통한 분쟁조정안 의결 및 신규과제 발굴
 - 동해 및 서해어업조정위원회 본 위원회 개최
- 분쟁조정 결과,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 제도화 추진(‘11~)
 -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
- 어업조정위원회 법제화 추진
 - 가칭 “어업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 제정 검토



다 수산관계 법령 체계 정비 추진

목 표

- 법률 선진화계획에 따라 「수산업법」 전부개정을 통해 수산자원의 보호·관리 부분을 「수산자원관리법」에 이양하여 시행(10.4.23) 중이나, 일부내용이 중복 규정되거나 소관 불분명으로 시행상 어려움 발생, 법률 시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재정비 필요

1) 현황 및 실태

□ 어선·어구·어법 등의 제한 중복 규정

- 「수산업법」 상 허가어업의 허가대상은 어선·어구이나, 어업별 어선의 규모는 수산업법에, 선복량의 제한은 「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
- 또한 어구·어법의 제한에 있어 「수산업법」은 제한 및 조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어 중복규정 등 소관 모호

2) 추진계획

□ 수산업법 재개정 추진

- 「수산업법」 상 허가어업의 허가대상인 어선, 어구에 관한 규정은 「수산업법」으로 일원화
- 「수산업법」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대기업과 양식어업 진출 제한 규제완화
 - 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어장면적 소유한계를 법률에 명시
 - 어업허가 지위승계 관련 일부 미비점 보완
- 개정안 마련, 의견수렴, 입법예고 등 추진(10.12월까지)

라 지역별·해역별 특성에 맞는 어업관리 제도 구현

목 표

- **해역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어업제도 구현**
 - 지역적 여건과 해역 특성을 고려해서 연안어업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자치권 부여하되, 한계범위는 법령에 명확히 규정
- **어업자 맞춤형 어업관리 제도 정착**
 - 수산자원 관리에 문제가 없는 경우, 지역내 업종간 합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어업제도 개선

1) 추진배경

- 해양환경변화와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선진화된 지역별 맞춤형 어업관리 제도로의 개선 필요
 - 동해·서해·남해의 지리적·어장환경 특성이 상이
 - 지역적 여건과 해역별 특성에 따라 어구·어법 등이 다양
- 어업인 자원관리 인식고조, 지방분권시대 지자체 역량 성숙으로 무한경쟁조업방식에서 자원관리형어업으로 패러다임 변화요구
 -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 어업제도로는 지역별 다양한 어업환경의 변화에 맞춰 효율적인 어업제도를 운용하는데 한계

2) 추진경과

- 연안어업 제도개선 지역협의회 구성·운영('10.3.22)
 - 지자체이양대상 과제발굴, 지방조례제정 등을 위하여 시·도 농림수산국장을 단장으로 어업제도 개선 지역협의회 구성
 - ※ 중앙정부 어업제도개선 협의회 구성('09.5.5) : 내부(20명) 및 외부(14명내외) 전문가를 분야별 인력 Pool로 구성
- 연안어업제도 지자체 권한이양 대상과제(34개)에 대한 지자체 어업제도개선 협의회를 통해 의견 수렴('10.5~)

- 수산업법 10개, 수산업법 시행령 3개, 수산자원관리법 4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5개, 어업허가규칙 5개, 어업면허규칙 7개
- 정책연구용역 “ 연안어업 적정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추진(10.5~10월)
- 연안어업제도 지자체 권한이양 범위 및 제도개선(안) 검토
- 연안어업 표준관리규정(안) 검토

3) 성과와 반성

- **(반성)** 지자체 법령 제개정 · 운용 권한이 미흡하여 주도적으로 지역내 민원, 어업갈등을 해소하는데 한계
 - 어장환경변화에 따라 어업형태도 시시각각 변화하는데 이해관계 조정 등에 따라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 지역에 한정된 어업이나 지역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어업제도를 중앙정부가 일률적 관리에 따라 지자체 어업관리 기능 미흡
- **(성과)** 지자체 · 지역공동체의 연안어업 관리 자치권 강화를 통한 지역특성에 맞는 연안자원관리 및 이용기틀 마련
 - 어업제도 규제완화, 어업인 자율적 자원관리형 어업제도 근간 마련 및 지자체 중심의 어업관리 권한강화
 - 지역적 어업갈등·민원해결을 위한 이행수단 마련 및 지역업종간 이해관계 조정기능의 강화

< 추진 방향 >

- 어업인에게 득이될 수 있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접근
- 지역적 사안에 대한 지자체 어업관리 권한 극대화
- 타 시 · 도와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지자체 권한 범위설정
- * 부작용 및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기위해 과제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단계별 추진하되, 지자체 폭넓은 조례제정권 부여

4) 향후 추진계획

- 어업제도 개선을 위한 대상과제 확정
 - 어업제도개선 협의회를 통한 과제검증 및 중앙 수산조정위원회 최종 확정('10.11)
- 지역실정에 맞는 연안어업 표준관리 규정(안) 및 자체 어업관리 권한이양을 위한 수산업법 등 제도개선(안) 마련('10.12)

[① 사안별 검토과제]

○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발달된 소규모 어업

- 일부 연안 및 구획어업, 일부지역에 한정된 소규모어업 등 전국적으로 허용하기 어려운 사안

※ 남해안 일부지역에서 연안통발 등에서 변형어구를 사용하여 도다리를 어획하고 있으나 동 어구를 전국적으로 허용시 낚시어업 등에서 반발

- 포항 곤쟁이 들망과 같이 타 어업과 갈등관계가 없으나, 전국에 적용되는 제도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운 사안
- 낙지 등의 어획을 위해 통발의 그물코 크기 조정이 필요하나, 내만 등이 일부해역이나 지역에 한정된 사안

○ 지역·업종간 이해관계 조정이 우선하는 사안

- 마을어장 수심한계 확대 등 지역적으로 이해관계 조정이 가능한 지역과 조정이 안되는 지역으로 분리되는 사안
- 새우조망 조업구역 조정과 같이 지역에 한정되나, 타 연안어업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 등

※ 새우조망 조업구역 조정문제는 지역내 타 연안어업에서 민감하게 반응

○ 연안어업 관련 전국적·일률적 적용이 어려운 사안

- 금어기, 특정어구 사용금지 기간과 같이 지역에 따라 금지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
- 어업면허, 어업허가 우선순위 등과 같이 지역적 여건에 따라 지자체에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사안
- 정치성구획어업의 조업구역 변경 문제와 같이 시·도에 따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안
- 임의적으로 발생한 소규모 어업 등에 업종변경 등

○ 객관적인 판단 등 지자체 의회에서 논의가 바람직한 사안

- 제도개선 필요성은 인정되나, 특정업종이 반대로 해결이 곤란하여 객관적인 제3의 시각에서 판단이 필요한 사안

※ 중앙정부에서 지역적인 모든 문제해결을 담당하기에는 한계

- 지자체에서 직접 이해 조정하는데 부담스러우나, 지자체 의회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이 가능한 사안

※ 어업갈등이 많아 재정 투입을 통해 특정업종이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안

- 수산자원에 문제는 없이 지역내 업종간 이해관계 조정·합의가 중요하고,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수단이 필요한 사항

[② 수산업법령상의 검토과제]

○ (수산업법) 마을어장 수심한계 등 10개 검토과제

구분	검토사항	관련조문
①	마을어장의 수심한계	제8조 제3항 (시행령 제9조)
②	마을어장 면허 우선순위	제 13조
③	정치망의 보호구역의 범위	제29조 제1항 (면허규칙 제33조)
④	정치망의 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 제한 및 금지	제29조 제2항
⑤	어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시정조치에 관한사항	제38조 제2항
⑥	구획어업의 사용하는 어구의 종류와 규모	제41조 제3항 (시행령 제26조)
⑦	구획어업의 사용하는 어선의 선복량, 부속선의 규모	제41조 제4항 (허가규칙 제3조)
⑧	시험어업에 관한사항	제45조
⑨	유어장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제65조 (시행령 제46조)
⑩	지역적 소규모어업의 업종 변경	신규

○ (수산업법 시행령) 신규 2개과제 등 3개 검토과제

구분	검토사항	관련조문
①	정치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구의 종류	제7조 제2항
②	정치성구획어업의 보호구역 설정	신규
③	정치성구획어업의 어장간 최소거리	신규

○ (수산자원관리법) 비어업자의 포획채취 제한 등 4개 검토과제

구분	검토사항	관련조문
①	2중이상 자망·승인	제23조 제3항
②	비어업자의 포획·채취의 제한	제 18조 (시행규칙 제7조)
③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음	제 14조 제4항
④	보호수면 안에서 금지 어로행위	제47조

○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그물코 규격의 제한 등 5개 검토과제

구분	검토사항	관련조문
①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제6조 제1항 (별표 제1)
②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체장 및 체중	제16조 제2항 (별표 제2)
③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제10조 제1항 (별표 제11)
④	어구사용 금지구역과 기간	제10조 제2항 (별표 제12)
⑤	그물코 규격의 제한	제10조제 3항 (별표 제13)

○ (어업면허규칙) 마을어장 어업권 행사우선순위 등 7개 검토과제

구분	검토사항	관련조문
①	마을어업의 포획·채취방법	제11조 (법 제9조 제3항)
②	낙도·무인도와 연접된 수면에 대한 마을어업 면허	제14조 (시행령 제9조 제3항)
③	마을어장 관리선의 용도	제28조 제7항 (법 제29조 제5항)
④	어장규모별 및 어구명칭별 어장관리선의 척수	제31조제5항
⑤	마을어장 어업권 행사의 우선순위	제41조 (법 제39조 제3항)
⑥	마을어장 어장관리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42조 (법 제40조 제1항)
⑦	어업권의 행사계약 또는 입어계약 체결방법, 계약기간, 해지 사유 등에 관한 사항	제43조 (법 제40조 제1항)

[③ 검토과제 선정과정]

- 지자체 권한이양 과제 발굴을 위한 의견수렴
 - 지자체 입장에서 권한을 이양받고 싶은 사안 최대한 발굴
- 『어업제도개선협의회』를 통해 검토 우선과제 선정
 - 각 사안의 권한이양 필요성, 장·단점, 문제점 등에 대해 개별 사안별로 충분히 검토 후, 실현가능한 사안 선택
- 조례제정권 부여를 법령정비 방안
 - 개별 조문마다 조례 제정권을 부여하거나, 법령에 조례제정 사항에 대해 일괄규정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 후 결정

마 연근해 어업허가 일제정비 제도 도입

목 표

- 유희어선 예방, 어업질서 유지를 위해 기 허가된 어업허가를 일정 시기에 일괄적으로 갱신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
- * 어업실태와 어업자원량을 5년 주기로 정밀평가 후 어업허가 적정건수를 산출하여 어업허가 처분여부 결정

1) 현황 및 실태

-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만료시 마다 새로운 어업허가, 연근해어업허가 처분 건수*는 72천건
 - * 근해어업(3,404건), 연안어업(61,388건), 구획어업(6,899건)
- 기존 허가권자의 불법여부 등에 상관없이 기간만료(5년)시 재허가 됨으로써 어업구조 개편 장애
- 면세유 공급, 어업보상, 감척사업 참여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조업을 하지 않으면서 어선만 보유하는 등 수면의 종합적 이용·관리라는 수산업법 입법목적에 정면 배치
 - * 유희어업 예방을 위해 2년이상 휴업을 금지하고, 1년이상 휴업할 경우에는 신고토록 규정(수산업법 제30조)
 - 어선 실체없이 어업허가증만 보유하고 있거나, 어업허가를 받고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등 유희어선으로 인한 어업정책 추진에 걸림돌
 - * 일부 어업인들은 타인의 어업허가증을 복사하여 허가어선으로 위장 사용
- 지난 10여년간 어업허가 금지에 따라 젊은 인력 진입이 사실상 단절된 상태로 어업인력이 고령화되는 문제점 대두

2) 추진경과

- 어선감척 후 방치된 어선을 매입, 재진입할 우려에 따라 “무조업어선 일제정비 실시”(허가취소 202건, 경고 1,033건)

* 대상어선 : 총 56천척(1차, 23천척), (2차, 33천척)

* 조사기간 : 1차('08.8~'09.8), 2차('09.3~'10.3)

- 정기적인 어업허가 정비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10.4)

- 지자체 주관, 매 5년마다 조업을 하지 않은 어선 등에 대한 어업허가 일제정비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41조의2(실태조사 등)

3) 성과와 반성

- 자원수준에 알맞은 적정 어획노력량 유지를 위한 연근해 어선 구조조정사업의 효과 제고

- 시·도(시·군·구)의 허가처분 권한과 관리를 강화하고 부실을 시정하는 계기 마련

* 폐선·등록말소 등 실체가 없는 어업허가정비 등 행정절차 이행상태 확인

- WTO-DDA 및 고유가 시대를 맞아 무 조업선이 발생하는 원인분석 등을 통한 정책방안 마련

4) 향후 추진계획

- 『어업허가 일제정비 제도』 도입 검토 추진

- 실효적 추진을 위해 “어업허가 일제정비 실시요령” 마련·시행('10.11월)

- 어업허가증 소지가 용이하고, 위변조가 불가능한 ID허가증 “전자어업허가증” 도입 검토('10.12월)

바 연근해 어구·어법 인증제 도입

목 표

- 어업환경 변화에 따라 어구·어법의 개량·변형 사례 증가 및 어구에 대한 불법시비 등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어구인증제 도입으로 어업질서 조기 확립

1) 현황 및 실태

□ 여건변화, 기술 발달 등으로 어구·어법의 변형사례 증가

- 기후변화, 어구·어법 발달, 감척 등으로 어획강도와 고가의 저어류 보다는 소형 부어류 등 저가어종의 어획비율 증가

* 연근해 어획강도(생산량/톤) : 2.5톤('00년) → 2.7톤('03) → 3.0('06) → 3.9('08)

* 연근해생산량(멸치 어획율) : 147만톤('90, 8.8%) → 128만톤('08, 20.4%)

- 어구 대형화, 어구형태 및 조업방법 등의 변형사례 증가

* 서해안(연안양조망의 기선권현망식 조업, 근해안강망의 2중낭망 사용), 남해안(변형 지지줄 자망, 연안양조망·들망의 저인망식 조업), 동해안(연안자망의 저인망·선망식 조업)

□ “표준 어구·어법 기준”의 경직적 운영 예상

- 해경 등 어업지도 단속기관 등이 표준기준 법제화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엄격히 단속하는 경우 어업인과 마찰 우려
- 일선 지도·단속 기관에서 단속시 “표준 어구”와 “불법 어구”의 경계에 있는 경우 수산과학원 등이 도움없이 해석곤란

□ 어구·어법을 두고 어업인간 불법시비 증가 및 분쟁 증가

- 표준 어구·어법은 연근해 41개 어업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 세부사항을 두고 불법여부에 대한 민원증가

- 어구·어법에 대한 세부내용 없이는 관계공무원 업무 애로

2) 추진경과

□ 어구인증제 도입 초안 마련 및 전문가 협의회

- 수산과학원 등 어구·어법 전문가 의견수렴 실시('09.12)

□ 연근해 41개 업종에 대한 표준 어구·어법 제정

- 각 업종에서 사용하는 어구의 형태(어구 겨냥도·설계도)와 조업모식도 등 어법에 대한 표준기준 등 마련

*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정·공포('10.4.23)

□ 「친환경어구 인증제」 도입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안 마련('10.6~)

-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15조(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의 확대)에 친환경어구 인증제 조항 신설

3) 향후 추진계획

□ 「어구·어법 인증제」 도입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안 마련('10.10)

- 어구 인증제 법률안 마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10.11월)
-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10.12월)

□ 「표준 어구·어법 해석지침」 마련

- 관계기관 회의('10.11)를 거쳐 해석지침 마련('10.12)

□ 「친환경어구 인증제」 도입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10.12)

사 생분해성어구 보급 확대

목 표

- 생분해성 어구사용 확대를 통한 수산자원 및 해양 생태계 보호

1) 추진배경

- 합성섬유(나일론, 폴리에틸렌 등) 폐어구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 및 수산피해 발생(유령어업(Ghost fishing), 어류산란장 및 서식장 파괴)
-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수중에서 분해되는 친환경 어구(생분해성 어구)의 사용 필요

※ 생분해성 어구 : 자연계의 박테리아, 곰팡이 등 미생물 작용에 의해 일정기간 경과 후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됨

2) 추진경과

- 유실이 많은 자망과 통발을 대상으로 7개 시도에서 시범사업 중
 - 사업지역 : 7개 시·도(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경북, 제주)
 - 대상어구 : 자망(대게, 조기, 꽃게), 통발(장어)
- 4개년간 사업비는 총 142억원으로 국비 70%, 지방비 30%
 - '07년(20억원) → '08(43억원) → '09(39억원) → '10(40억원)
- 어구는 10개 전문 업체에서 생산하고, 수협을 통해 공급
 - 전문생산업체는 수산과학원의 품질인증을 통해 생산 가능
 - 유통과 관리시설이 갖춘 수협을 통해 원활한 공급 체제 구축

□ 사업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10.4.23)에 따라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어구사용의 확대 등 친환경 어구 사용자에게 대한 지원근거 마련
- 어업인 부담금의 일정 부분(20%)을 추가 지원 가능하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 지원한도액 : 차액지원(생분해성어구가격-기존어구가격) + (기존어구가격×20%*)
 - * 어구 표준단가 및 자부담금 결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의뢰조사 후 통보
- 수협중앙회 사업 참여 및 생분해성어구 사용량 완화(100→50%)
- 수산과학원에서 일괄적으로 국가인증기관에 의뢰 물가조사 실시

3) 성과와 반성

□ 지속적인 어구개발·현장검증 등으로 참여어가 지속 증가

- 해수에 녹는 어망·통발 등을 개발하여 친환경 어구로 지속 전환
 - * ('10년) 어망, 통발 등 6개 품목 개발 → ('16년) 30개 품목으로 확대
- 지속적인 성능검증, 홍보로 생분해성 어구보급 및 어선 참여 확대
 - * 사용척수 : ('07) 150 → ('08) 200 → ('09) 253 → ('10.8) 262
 - * 사용량(1폭 70미터) : ('07) 29,000폭 → ('10.8월) 93,000폭

□ 사업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친환경어업 기반조성

- 친환경 어구의 개발 및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근거 법령 시행
 - * 수산자원관리법 제28조(환경친화적 어구사용)
- '10년부터 어업인 부담금 20% 추가 지원으로 사업비 집행율 향상
 - * '10. 8월말 현재 2,810백만원(국비) 중 2,170백만원 집행('77%)

4) 향후 추진계획

□ 확산·정착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조성('14년까지)

- 대상 어류별 다양한 어구 개발(6개 →30개)
 - * 자망어업 전체가 생분해성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30여개의 어구개발 필요
- 개발된 어구의 어획성능 시험 등 조기 검증 강화
 - * 그물실의 강도, 유연도 향상시키면서 어획성능 검증까지는 평균 3년 소요

□ 생분해성어구 사용 의무화 = 법제화('15년부터)

- 생분해성 어구사용을 제도에 도입하여 의무적 사용 추진
- 산업기반 조성, 규제순응도 제고 등 조기정착을 위해 업종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 추진
 - 1단계('15년) : 2중이상 자망(689척, 사용량 1,000톤)
 - 2단계('16년) : 자망어업(17,859척, 사용량 20,000톤)
 - 3단계('17년) : 통발어업(7,573척, 사용량 10,000톤)
 - 4단계('18년) : 안강망, 정치성어업(5,745척, 사용량 10,000톤)
 - 5단계('20년) : 유어낚시(사용량 100톤)

□ 친환경어구보급 중기재정 계획

(백만원)

사업명	'10년	'11	'12	'13	'14
○ 친환경어구 보급 합계	5,035	5,400	5,940	6,534	7,187
▪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2,810	3,400	3,715	4,086	4,495
▪ 고밀도부표보급 지원사업	1,665	1,500	1,665	1,831	2,014
▪ 굴패각 자원화 지원사업	560	500	560	617	678

① 사업개요

- 목적 : 바다생태계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바다에서 분해되는 생분해성어구 사용의 시범실시('07년~)
- 대상 : 유실이 많은 자망과 통발을 대상으로 5개 시도에서 실시
- 예산 : '07년(20억원) → '08(43억원) → '09(39억원) → '10(40억원)
- 조건 : 생분해성어구와 기존어구 구입비 차액 지원 및 어업인 자부담 중 20% 추가지원(국비 70%, 지방비 30%)

② 예산현황

시·도	시·군	어구명	사업물량 (톤)	사업비 내역(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5개	11개	자망	106,917	4,014	2,810	1,204
경북	울진, 영덕, 포항	대게자망	78,660	2,250	1,575	675
전북	군산, 부안	꽃게자망	9,750	204	143	61
전남	목포, 여수, 영광	조기자망	9,855	750	525	225
제주	제주	조기자망	4,828	343	240	103
강원	삼척, 고성	대게자망	3,824	467	327	140

□ 해양 폐기물의 발생 및 피해

해양 폐기물 발생량 및 피해

- 해양 폐기물 발생량 : 연간 15만톤 정도
- 침체어망 수거 비용 : 연간 약 150억원 소요
- 해양 폐기물에 의한 수산업 피해 추정 : 연간 약 2,000억원

○ 해양 폐기물의 연간 발생량 (해양 쓰레기 수매사업, 2003)

구 분	발생량 (톤/년)
육상기인 폐기물	52,100
해상기인 폐기물	100,000
계	152,000

○ Ghost Fishing 등에 의한 수산업 피해 (어획량 10% 추정)

· 2,200천톤(연근해생산량)×10%×1,707천원/톤(수산물가격) = 2,048억원/년



<유실된 통발·자망의 유령어업 및 서식장 파괴>

○ 폐그물로 인한 각종 환경 오염 발생

- 폐그물 소각시 발암성 물질인 PCB(Polychlorinated biphenyl), 다이옥신 등의 유해물질 발생

○ 인공어초의 기능 저하

- 침체 어망이 인공어초를 뒤덮어 인공어초 기능 상실 우려

○ 폐그물에 의한 선박 안전 사고(전체사고의 10%) 및 해양생태계 파괴

- 폐그물 및 폐로프 선박 스크류 감김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 선박 추진기에 걸린 낚시 줄 및 폐그물이 목에 걸려 있는 물개 >

- 현재의 어구재료는 자연환경 중에서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을 사용
- 폐어망에 의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수중에서 미생물에 의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재료 개발 및 산업화 필요

참 고 3

나일어망과 생분해성어망의 특성비교

구 분	나일론 자망	생분해 자망
소재	Polyamide(PA)	Polybutylene succinate(PBS)
도입시기	1965년경 동해안의 콩치유자망에 처음 도입	2004년부터 3년간 동해안 대게자망 개발, 2007년부터 시범사업 추진
분해도	400-500년간 지속	2년후부터 미생물에 의해 분해 시작
어업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여년간 지속적으로 유령 어업 발생(어획량의 10%) (1,200만톤*10%*1,707원/톤 =2,048억원/년) - 해저에 안착하여 백년간 수산생물의 산란장, 서식장 파괴 - 인공어초 기능 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령어업 획기적으로 저감 (100년→1년) - 수산생물의 산란장, 서식장 보호(미생물에 의해 분해) - 인공어초 기능 보호
해양 및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쓰레기 발생 (침체어구 수거에 막대한 예산 및 인력, 시간 낭비) - 선박 안정사고 발생 - 소각시 발암성 물질 PCB, 다이옥신, 독가스 발생 - 매립시 수백년간 토양오염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쓰레기 저감 - 선박안전 사고 예방 - 소각시 발암물질 없음 - 매립시 조기에 분해 - 해양 오염 억제

□ 생분해성 어구



대게자망



그물통발



붕장어통발



문어단지

아 고래자원의 보존 및 이용을 위한 제도정비

목 표

- 고래자원에 대한 국제포경위원회(IWC)의 변화(보존→이용) 움직임에 대응, 국내법 정비 등을 통한 보존과 이용방안 강구

1) 국내외 동향

□ 고래자원의 이용·보전에 대한 국제 동향

- 증가하고 있는 고래자원 이용에 대한 상업포경 재개 논의

- * 고래자원의 보존과 이용의 형평성, 지역의 문화다양성 존중, 풍부한 자원 유지라는 국제포경규제협약(ICRW)의 목적 정상화를 위한 협상 진행중

- 일본의 연안포경 신청('86년~)에 대한 허용 가능성 증대

□ 전통적인 고래육 식문화 보전을 위해 포경 허용 요구

- 국내 상업포경 중단이후 고래육 식문화 및 전통문화 단절위기

- 어업인들은 고래 개체수 증가로 인한 어업분야 피해 예방 및 전통적인 고래육 식문화 보전을 위해 제한적 포경 허용 요구

- * 돌고래류 잠정 이용방안으로 “숙아내기식” 포획 허용 요구(울산시)

- 우리나라는 제61차 IWC 연례회의에서 전통식문화에 대한 고려 요청 및 과학조사포경은 자국의 고유권한임을 표명

2) 고래자원 이용 및 관리실태

□ 고래류는 전세계에 80여종 서식, 우리나라에는 약 35종 분포

* 대왕, 귀신, 밍크, 참·향·범고래, 큰돌고래, 참돌고래, 상괭이 등

○ '86년 상업포경금지이후 혼획된 고래류는 연간 약 600두

* 통발, 정치망, 자망어구에 혼획(밍크 80두, 돌고래류 500, 기타 20두)되며, 대부분 시중에 식용으로 유통

○ 우리나라 주변의 밍크고래 개체수는 약 14,000두로 '86년 모라토리움 이전인 70년대 초 보다 많은 수치로 평가(IWC위원회)

□ 고래자원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국내법령 취약

○ 고래자원 이용에 관한 관계법령 미비로 효율적인 이용 곤란

- '86년 상업포경 금지 이후 “근해포경어업” 삭제('91년. 수산업법시행령)

○ 고래관련 제도가 고시와 지침으로 운영되어 법적구속력이 미약

- 「고래포획 금지에 관한 고시」 및 「고래포획금지조치 이행지침」으로 운영되어 고래관리 행정체계 확립에 한계

□ 고래자원의 연구·관리 체제

○ 3억5천만원 예산('09)과 연구원 3명으로 연간 40일 제한된 조사 실시

* 일본 : 산학연 연구소에 연구원 150명, 예산 200억엔, 수 척의 전용선 운영

○ 효율적인 고래자원 조사·연구 수행을 위해 관련 인력, 예산, 조사장비 등 기반 구축이 긴요한 실정

3) 추진경과

- 제4차 신 수산 수요포럼에서 「고래자원 활용방안」 논의('09.4.8)
- 수산선진화 위원회 보고('09.5.7, 5.12, 5.26)
- 고래류의 혼획 및 불법포획 관리체계 강화방안 보고('09.5.28)
- 고래자원보존 및 이용을 위한 제도정비 계획 보고('09.7.20)
- 국내 고래정책 포럼 개최('09.9.18, 울산)
- 관계법령 개정안에 포경어업신설 등 개정안 반영, 의견수렴('09.10월)
- 고래자원 조사·평가 및 합리적 이용 방안 마련(수산자원관리법, '10.4.23)
-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안)」 관계부처 협의('10.9.1)

4) 향후 추진계획

□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공포

- 규제심사 및 행정예고('10.10~11월), 시행·공포('10. 12월)

□ 고래자원의 과학적 조사 및 연구기반 확충

- 과학조사 대상을 돌고래류에서 모든 고래류로 확대 추진
- 포획쿼터 산정방식(RMP) 수행을 위한 연구기반 조성
- 자원평가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확보 추진
 - * 연구인력(3명) 보강, 소요예산(12억원) 증액, 조사연구 전용선 확보 등

□ 국제협약 틀 내에서 고래자원 활용방안 마련

- 돌고래류의 어업, 교육, 관광 등 합리적인 이용계획 수립

□ 개 요

- 설 립 : 1946.12. 2(본부 : 영국 런던)
 - 조직 : 총회, 소위원회, 사무국 등으로 구성
 - ※ 우리나라 가입 : 1978.12.29
- 우리나라 국별대표 (Commissioner)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장
- 목적 : 포경관련 연구, 조사를 통하여 고래자원의 보존과 포경산업의 질서있는 발전 도모
 - ※ 1982년 제34차 IWC 총회에서 1986년부터 상업포경을 중지(상업포경 쿼터를 zero)하기로 결정
- 회원국 : 85개국('09. 5 현재)
 - 포경지지국 : 일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 포경반대국 : 영국, 호주, 미국, 독일, 뉴질랜드 등
- 주요활동
 - 협약부표에 등재된 고래종(12종)의 포획금지
 - 고래자원의 보존과 지속적 이용을 위한 논의, 고래 관련 과학적 조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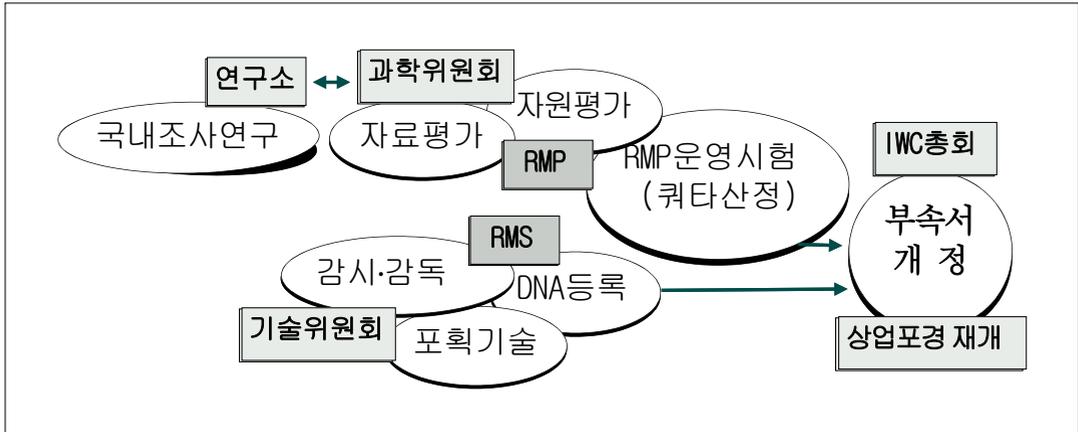
□ 쟁점사항

- '86년 상업포경 금지 후 증가된 고래자원에 대한 상업포경 허용을 위해 '94년 새로운 포획쿼터 산정방식(RMP) 완성 후 감시감독제도 등 개정 관리절차(RMS)를 마련 중
 - RMP(포획쿼터 결정 방식) : 1994년 채택 완료
 - RMS(포경관련 각종 감시·감독, 이행조건 부여) : 현재 논의 중
- ※ 상업포경 재개 등 주요사안은 회원국의 3/4 찬성 필요, 현재 찬반 세력이 비슷함

참 고 2

상업포경 수행 절차

□ IWC의 상업포경 재개 절차



□ 개정관리방식(RMP : Revised Management Procedure) : 1994 완성

○ 포획량 = 번식력 × (감소비율 - 0.54) × 현재 자원량

- 번식력 : 개체군과 환경의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
- 감소비율 : 초기자원에 대한 현재 자원의 비율

※ 과거의 포획량 자료, 현재 자원량, 번식력 등을 감안하여 초기자원을 산정
(현재 자원량은 목시조사로 결정)

□ 개정관리제도(RMS : Revised Management Scheme) : 1994년부터 논의 중

○ 개정관리방식의 포획량, 목시조사, 자원량 추정의 불확실을 감소시키는 제도적 장치로서 상업포경시 필요한 조건을 명시

- 포획량 : 허위보고, 불법포획 방지(옴저머와 감독관 의한 조업·포획량 보고, 양육장 감시, 고래고기의 DNA 분석 등)
- 목시조사 : 조사계획 심의, IWC 감독관 승선, 자료수집 및 조사
- 자원량 추정 : 생물학자들에 의한 심층자원 평가
- 불법포획 감시 및 검토위원회 등 설치

참 고 3

우리나라 주변수역 고래종류 (대형 9종, 중소형 13종, 돌고래류 13종)



자 저탄소·에너지 절약형 어선어업 구조정책

목 표

- 저탄소 녹색성장 어선구조 선진화 및 어선관리 효율화로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 도모

1) 추진배경

- 어선어업의 저효율 고비용 연료소비형 구조에서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전환 필요
 - 어선노후화 및 출어경비 부담가중으로 어업생산 활동 위축 심화
 - 저탄소 고효율 에너지 절감형 어선·장비 개발 보급 필요
- 어선관리 효율화를 위한 등록·검사제도 확립
 - 어선등록·검사제도의 일원화에 따른 체계적인 어선관리업무 필요

2) 추진경과

- 집어등 사용어선에 대한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LED등 및 저효율 노후기관 대체 지원
 - 품질인증·성능기준 마련 및 지자체에 사업지원('10/39억원)
 - LED 집어등 : ('10) 217척/13억원 → ('11~'13까지) 651척/39억원
 - 저효율 기관대체 및 장비개량 : ('10) 26억원 → ('11~'13까지) 76억원
 - ※ 지원율 : 국고 30%, 지방비 30%, 자담 40%

- 어선법에 따른 수수료 금액과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어선의 건조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개정(10.2.10)
 - 어선법에 따른 어선의 건조·개조허가, 형식승인 및 우수사업장 지정 신청 등의 수수료 금액과 납부에 필요한 사항

3) 성과와 반성

- 어선등록·검사업무 일원화 관련 어선검사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검사 불편사항을 개선
 - 선미부 연장, 상부 구조물 증설 어선의 안전성 확보 및 어선원 복지공간 확보를 위한 검사 허용범위 마련 시행으로 어업인 불편 및 경비부담 해소

4) 향후 추진계획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어선관리업무를 위한 어선관련법령 개정
 - 제도개선에 따른 법령의 체계적 정비 및 관련 고시 개정
- 어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체계적인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유류절감장비 개발·보급 지원 및 현대화, 선원복지 미래형 어선기술개발 추진
 - 고효율 유류절감장비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 미래형 어선기술 개발 및 경제성 조업 가능한 규모의 선진화어선 건조지원
 - 어업생산과 연계된 경제성, 표준선형 개발, 소형어선 전기추진 시스템 개발 보급 등

1. 어선건조허가, 등록 관리

□ **어선건조 및 개조 허가**

- 어선을 건조하거나 기존 어선을 개조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농림수산식품부 : 원양어선, 국가어업지도선, 과학원시험선
 - 시장·군수·구청장 : 연근해 어선, 내수면어선, 양식어선 등
- ※ 수산업법령에 의한 어업허가·면허·신고 등이 가능한 어선에 한하여 허가

<어선건조허가 실적>

(단위 : 척)

구 분	계	5톤미만	5-10톤	10-50톤	50-100톤	100톤이상
'07	2,832	2,575	176	63	16	2
'08	2,663	2,319	261	71	11	1
'09	1,610	1,320	202	73	14	1

※ '09년 어선건조허가 중 5톤 미만 소형어선이 1,320척으로 82%차지

<어선개조허가 실적>

(단위 : 척)

구 분	계	5톤미만	5-10톤	10-50톤	50-100톤	100톤이상
'07	1,489	854	427	157	47	4
'08	1,584	911	445	173	54	1
'09	491	349	88	46	7	1

※ '09년 어선개조허가 중 5톤 미만 소형어선이 349척으로 71%

어선의 총톤수 측정

- 어선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등기 및 등록의 기준
 - 총톤수측정기관 : 선박안전기술공단(어선법 제41조에 따라 업무대행)
 - 측정실적 : ('07) 3,029척 → ('08) 2,929척 → ('09) 5,813척

□ 어선의 등록

- 모든 어선은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 ※ 20톤 이상 어선은 선박등기(선박등기법) 후 등록
- 등록어선에 대해 선박국적증서(20톤 이상), 선적증서(20톤 미만), 등록필증(5톤 미만 무동력선)을 발급
 - 등록어선 : ('07) 85,627척 → ('08) 80,766척 → ('09) 77,713척

2. 어선의 안전관리

□ 어선검사 제도

- 어선검사 종류
 - 건조검사, 정기검사(매 5년), 중간검사(2~3년 주기), 임시검사 등
- 검사대상 어선 : 모든 어선(종전 '07.11.4 이전은 2톤 이상 어선)
- 검사대행기관 : 선박안전기술공단
 - 어선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선협회가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확대 개편('97.12)
 - 선박검사, 총톤수측정, 선박안전기술개발·보급, 교육·홍보 등
 - ※ 어선설비기준 마련, 어선검사제도 도입을 위한 어선법 개정('09.5.27. 공포, '09.11.28. 시행)

Ⅲ. 양 식 산 업 과

1. 일반현황	65
2. 비전 및 전략	67
3. 주요 추진정책	68
가. 외해양식 활성화	68
나. 어장이용계획 개발 기본지침 수립 추진	73
다. 환경 친화형 배합사료 보급 확대	78
라. 수산동물 방역체계 구축	88
마. 양식분야 대표품목 육성 추진	93
바. 친환경양식 기반시설 구축	99
사. 양식수산물 출하조절사업	103
아. 어업재해복구 지원대책	106
자. 적조피해 예방대책 추진	113
차. 수산물 이력제 추진	117
카. 해역별 위생등급 설정 관리	121
타. 수산물 위생관리	123
파. 양식장 불법시설 정비 및 단속	125
하. 김 양식장 유해물질 사용 근절대책	128
거. 한·미 패류위생협정 이행	131
너. 위생약정 이행 및 수입조건 이행	138

1. 일 반 현 황

조직 및 정원

□ 조 직



□ 정 원

(단위 : 명)

구 분	합계	3·4 ~ 4급	4·5 ~ 5급	6급이하	기능직
정 원	11	1	6	4	-
현 원	11	1	6	4	-

※ 파견근무자 : 3명(제주도 1, 수산과학원1, 품질검사원 1) 미포함

소관법률

법률명	주요내용	제·개정 경과 및 계획
기르는어 업육성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질병관리사 시험 및 운용 기르는어업육성 기본계획 및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법률 제6611호(2002. 1.14) · 개정: 법률 제10024호(2010. 2. 4)
수산동물 질병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동물전염병 예방 및 대처 수입수산물 검역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법률 제8789호(2007.12.21) · 개정: 법률 제8852호(2008. 2. 29)
수산물품 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물 품질규격화 및 품질인증제도 수산물 안전 및 위생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법률 제6399호(2001. 1.29) · 개정: 법률 제10023호(2010. 2. 4)

업무분장

구분	주요 업무내용	비고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르는어업발전기본계획 수립·운영에 관한사항 • 수산업관측 및 양식수산물 수급조절에 관한사항 • 양식분야 인력 수급 및 양식업 세제에 관한사항 	
미래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해(심해)어장개발 및 외해양식 면허처분에 관한 사항 • 양식기술 및 연구개발, 양식산업 세계화 전략에 관한 사항 • 종묘산업 육성 및 신품종 개발에 관한 사항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장 현대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 어업면허, 허가·신고 등에 관한 규칙 운용 •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운영에 관한사항 • 에너지 절감장치 지원 및 김활성처리제 제도에 관한 사항 	
지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어장 불법시설 정비·단속에 관한사항 • 해면양식 유해물질 불법사용 관리에 관한 사항 	
양식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재해 피해복구 및 적조 피해예방대책에 관한사항 • 배합사료지원 육성에 관한사항 • 적조 피해예방 및 방제대책 추진 	
질병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동물 방역대책 수립·운영 및 수산용 의약품 관리 •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운영 • 수산물품질검사원 지도·감독 	
위생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이력추적제 사업에 관한사항 • 수산물 생산해역 위생등급 및 HACCP에 관한사항 • 외국과의 수산물 위생협정(약정)에 관한사항 • 수산식품의 CODEX, SPS에 관한사항 	

'10년도 예산 및 '11년도 예산요구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0년 (A)	'11년(안)		증감 (B-A)	(%)
		요구	조정(B)		
합 계	41,715	42,745	32,610	△9,105	△21.8
< 농특회계 >	29,386	30,635	20,700	△8,686	△29.6
○ 환경친화형배합사료 지원	6,300	5,040	5,040	△1,265	△20.1
○ 친환경양식기반시설구축	15,400	17,820	8,020	△7,380	△47.9
○ 생산이력제 도입	1,800	1,700	1,700	△100	△5.6
○ 수산물 위생관리	2,750	2,475	2,200	△550	△20.0
○ 해역별 위생등급 설정관리	2,052	2,567	2,567	515	25.1
○ 수산동물질병관리	784	1,033	873	89	11.4
○ 적조피해 발생직전 양식어류 방류	300	300	300	-	-
< 광특회계 >	750	500	500	△250	△33.3
○ 웰빙표고넙치브랜드개발	250	-	-	△250	-
○ 환경친화형배합사료 지원(제주)	500	500	500	-	-
< 수산발전기금 >	11,579	11,610	11,410	△169	△1.5
○ 양식어업지원	7,699	6,929	7,629	△70	0.9
○ 출하조절	3,781	4,681	3,781	-	-
○ 생계소득및안정	99	-	(수산동물질병 으로 통합)	△99	△100

2. 비전 및 전략

목표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기반 구축

전략

전략품목 육성



친환경 양식

추진
과제

고소득 대표품종 육성

소비촉진형 안전성관리

외해양식의 전략적 육성

양식수산물 안정성 확보

안정적 생산기술 확보

친환경 양식기반 조성

문제
인식

양식어장의 생산기반 약화

3. 주요 추진정책

가 | 외해양식 활성화

1) 현황 및 실태

- 내만에 편중, 집약적 생산으로 연안환경 오염 야기 및 태풍, 어류 질병 등에 의한 반복적 피해로 국가 재정 압박
 - 소규모 양식사업으로 대외 경쟁력 약화 및 FTA 등 국제 시장 개방에 따른 양식경쟁력 강화 필요성 제기
 - * 양식생산 : ('95) 996천톤 → ('00) 653 → ('05) 1,041 → ('08) 1,382 → ('09) 1,313
- 법·제도상의 한계 및 고부가가치 신품종 개발 부족 등에 따라 외해양식 산업의 활성화 미흡
 - 기존 내만 가두리양식 면허관련 규정과 큰 차이가 없어 기업형 외해 양식어업의 활성화에 한계
 - 참다랑어, 능성어, 대구 등 고급품종에 대한 개발 필요

2) 추진실적

- 내만 위주 양식으로 상습적인 적조피해·환경이 악화되어 어장 환경이 양호한 외해양식어장을 개발하기 위해 시험어업 추진
 - '05년도 부터 해역별 특성을 감안, 외해양식 시험어업 6개소 추진
 - * 시험어업: ('05)제주 → ('06)경남 → ('07)전남 → ('08)강원 → ('09)경북 → ('10)전남
- 기존 2개 해역(전남·제주)의 시험어업 자체평가 결과 시설물 및 생물의 안전성과 양식어종의 생존율이 대체적으로 우수
 - 태풍(제주 2회, 전남 1회)의 영향 및 2노트 이상의 강한 조류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및 생물의 피해가 없어 안전성 입증

- 참돔, 돌돔, 능성어 등이 100% 배합사료를 사용하면서도 질병발생이 없고 생존율이 내만보다 20%이상(생존율 : 내만 60%, 외해 80%) 우수

* 외해양식품종 : 참다랑어, 돔류, 농어, 고등어, 능성어 등

□ 외해양식 본격 추진을 위한 수산업법령 개정

- 수산업법(‘10.1.25), 수산업법시행령(‘10.7.21),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10.8.5) 개정 공포
 - 외해양식어업의 용어정의 신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어업면허처분,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등 규정 마련

□ 외해양식어업 면허 우선순위에 의해 선정된 6개소 면허처분 추진

-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선정된 2개소(참치)
 - 법령상 우선순위에 의해 확정된 4개소(참치2, 일발2)
- ⇒ 우선순위 결정 통지 및 면허 신청, 어업면허증 교부

※ 외해양식어업 면허 우선순위 규정(법 제13조의2)

- ① 농식품부장관이 승인한 시험어업 경영자 또는 경영중인 자
- ② 내만 가두리양식 어업자가 외해로 이설하고자 하는자
- ③ 내만 어류가두리를 매입하여 외해로 이설하고자 하는 자
- ④ 수협, 어촌계, 어업법인, 어업인 또는 외해양식어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로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한 자

3) 성과와 반성

- 시험어업 장소는 외해의 영향을 받는 곳으로 해양환경이 적합하며 양식시설물에 대해서는 태풍 등에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 시험어종은 돌돔, 민어, 참돔 위주의 유사한 품종으로 향후 과잉공급에 의한 가격하락이 우려되므로 각 해역별 품목 특성화 필요

4) 향후 추진계획

□ '12년까지 외해가두리 양식어장을 15개소로 확대 개발

○ 참다랑어 양식(8개소) : ('10) 4개소 → ('11) 2 → ('12) 2

○ 참돔 등 기타(7개소) : ('10) 2개소 → ('11) 3 → ('12) 2

※ '10년 외해 참다랑어 양식 기반시설 지원 : 4개소(경남 2, 제주 2) 24억원

□ 외해 참다랑어 양식 기술연구 개발

○ 참다랑어 완전양식을 위한 5개년 연구개발 지원

추진내용		총투자액	'10	'11	'12	'13	'14
총 계		118억원	20	24	24	25	25
○ 참다랑어 완전양식 기술 개발	종묘생산기술 개발	55억원	9	10	10	13	13
	양성기술 개발	47.5억원	9.5	10	10	9	9
	양식시스템 개발	15.5억원	1.5	4	4	3	3

○ 참다랑어 양식 기술연구 개발을 위한 협력 시스템 구축

-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지방자치단체, 어업인 및 대학 등의 관련 부서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산학연 융복합 연구 추진

1. 추진배경

- 외해(수중)가두리양식을 통한 연안어장 생태환경 회복과 고부가가치 해산어류를 양식함으로써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 * 법적근거 : 수산업법 제45조(시험 또는 연구·교습어업)

2. 지원사업 개요

- 사업기간/집행주체 : '06~계속 / 시·도(시·군)
- 사업비(개소당) : 14억원(친환경양식 기반시설 구축)
- 지원형태/조건 : 자치단체자본이전/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 정부지원 실적 : 35억원(강원, 경남, 전남, 제주, 경북 각 7억원)

3. 그간 추진실적

- 2005년부터 외해(수중)가두리양식 시험어업 6개소 승인·추진 중
- ('05) 제주 → ('06) 경남 → ('07) 전남 → ('08) 강원 → ('09) 경북 → ('10) 전남
- < 제주도 서귀포시 : 2005. 5 ~ 2010. 12(5년 7개월) >
- 위 치 :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km(수심 47m)
- 양식품종 : 7종 473천미(참치, 돌돔, 참돔, 벵에돔, 고등어 등)
- < 경남도 통영시 : 2006.8 ~ 2010.6(3년 10개월) >
- 위 치 :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2.2km(수심 45m)
- 양식품종 : 7종 151천미(민어, 방어, 참돔, 돌돔, 농어 등)
- < 전남도 여수시 : 2007. 5 ~ 2010. 12. 31(3년 6개월)> *지자체 자체사업
- 위 치 :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고도) 1.2km(수심 45m)
- 양식품종 : 3종 325천미(돌돔, 참돔, 능성어)
- < 강원도 양양군 : 2008. 8 ~ 2011. 12. 31(3년 4개월)>
- 위 치 :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5.5km(수심 48m)
- 양식품종 : 6종 계획(참돔, 방어, 고등어, 은대구, 은연어 등)
- < 경북도 포항시 : 2009. 5 ~ 2010. 12. 31(1년 7개월)>
- 위 치 : 포항시 남구 장기면 모포리 지선 3.5km(수심 46m)
- 양식품종 : 6종 계획(참돔, 방어, 고등어, 쥐노래미 등)

< 전남 여수시 : 2010. 3. 15 ~ 2013. 12. 31(4년 9개월)>

- 위 치 :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지선 1.1km(수심 50m)
- 양식품종 : 참치(단일품목) , 미입식

4. 추진결과 평가

- 시험어업 장소는 외해의 영향을 받고 있는 해양환경이 적합하며, 양식 시설물에 대해서는 태풍 등에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 시험어종은 돌돔, 민어, 참돔 위주의 유사한 품종으로 양식되고 있어 향후 유사품종 위주로 계속 추진될 경우 과잉공급에 의한 가격하락이 우려되며, 각 해역별 차별화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

5. 향후 추진계획

□ 시험양식 추진

- 추진방법 : 정부(지자체 포함), 어업인, 연구기관 공동추진
- 대상어종 : 신품종 또는 가급적 기존 양식어종과 경합되지 않는 품종
- 대상해역 : 해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도별 2개소 이내로 한정, 시험어업 추진
 - 도 관내 시험어업 2개소 요청시, 해역별, 대상어종별 특성화 조건 승인
 - * 1개소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하고, 1개소는 가능한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
 - 시험어장의 장소는 수심 40m이상, 만조시 해안선에서 3km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해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기준완화 가능
 - 어장의 이용면적은 10ha를 기준으로 하되, 가두리 시설물 및 해황 등 지역 해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기준완화 가능

□ 본 사업 실시 (2010년)

- 외해양식어업 면허 우선순위에 의해 선정된 6개소 면허처분 추진
 -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선정된 2개소(참치)
 - 법령상 우선순위에 의해 확정된 4개소(참치2, 일발2)

1) 현황 및 실태

-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할하는 수면에 대한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면의 종합적 이용 관리 도모
 - * 수산업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 국가공익사업 예정, 어장재해 상습 발생, 어장밀집 등으로 생산량 저하 수면 신규어장 개발 금지
- FTA 등 시장개방대비 경쟁력 취약 품종, 안정생산이 필요한 품종 신규 개발 금지

2) 추진경과

- 외해양식어장 개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어장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면허기간 만료로 재개발시 어장규모 및 여건 등을 고려 어장면적 축소 등을 검토하여 “2010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 수립·시달(‘09.12)
- 2010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 주요내용
 - 안정생산, 어업재해, 종묘수급 불안정 및 가격하락 등이 우려되는 신규 어장개발 금지 품목 조정(10종→9종)
 - ‘09년도 김, 미역, 어류, 굴, 멧게, 미더덕, 전복, 가리비, 피조개, 홍합 등 10개 품종에서 ‘10년도 가리비 제외
 -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또는 기간연장 허가기간이 끝나 소멸된 양식어장을 재개발 하고자 할 경우 어장면적을 축소(5~20%)하도록 하고 있으나,

- 최소규모(김 1헥타르, 어류 0.5헥타르)이하인 경우와 기존 내만의 어류가두리어장을 외해로 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적 축소없이 재개발 허용
- 외해가두리 양식어장 시험어업을 실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2010년 7월 1일 이후에 면허토록 신설

3) 성과와 반성

- 외해양식어장 개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면허기간 종료로 재개발시 기존 면허면적의 20%축소(김·어류, 한정어업)로 불법 시설 정비 등 어장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

4) 향후 추진계획

- '11년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 수립 관계기관 의견조회('10.10)
- '11년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 수립 시·도 시달('10.12)

1. 근 거

- 수산업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2. 목 적

-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할하는 수면에 대한 어장이용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면의 종합적 이용 관리 도모

3. 기관별 수립사항

□ 농림수산식품부

-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 지역별 어업의 특성에 따른 어장개발에 관한 사항
- 어장이용개발의 제한·조건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 시·도지사

- 개발계획기본지침의 세부사항
- 어장이용개발의 제한수역 및 제한품종 등에 관한 사항
- 어장의 재개발 기타 개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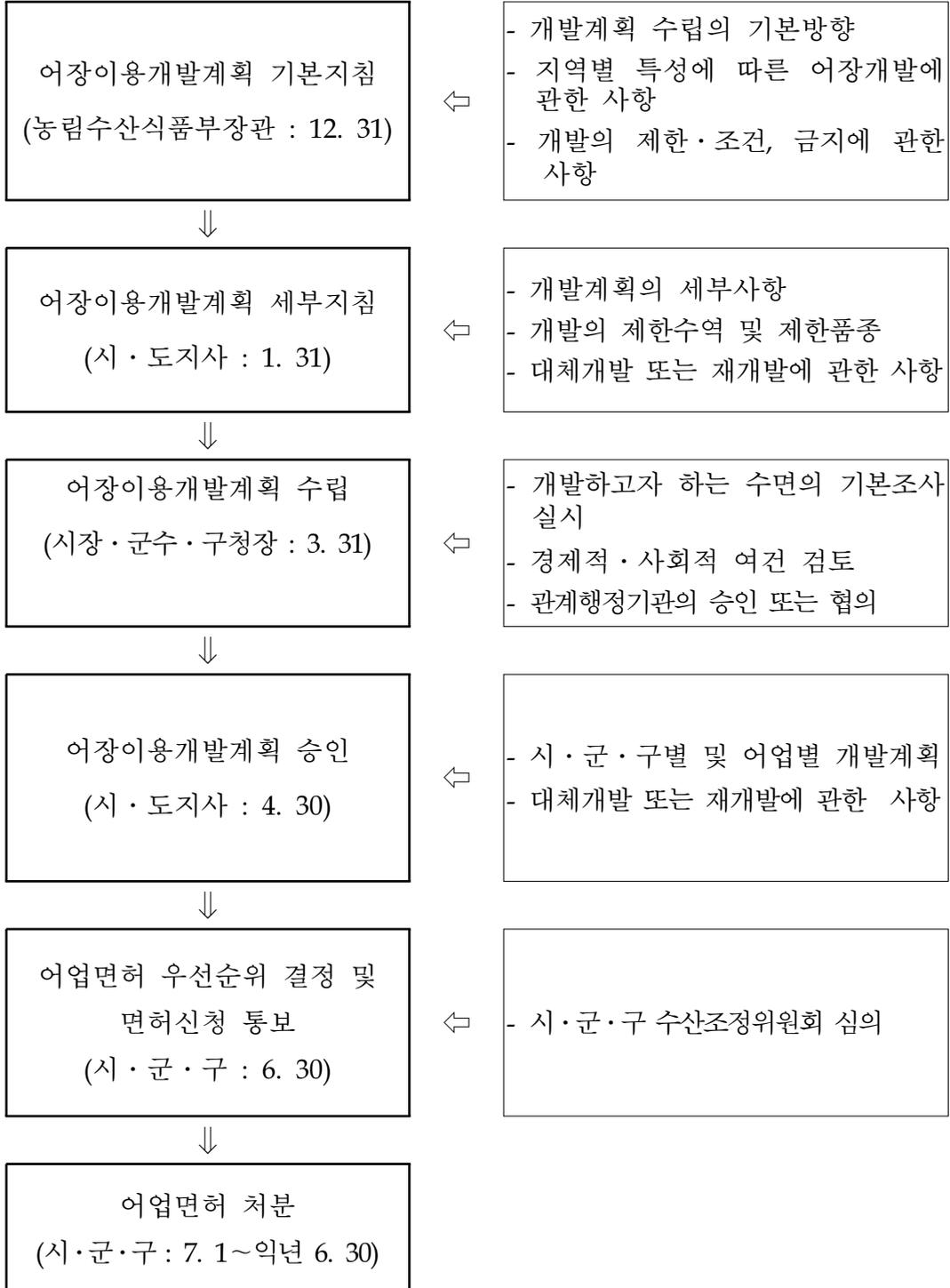
- 개발계획세부지침 및 기본조사 자료에 따라 관할 수면에 대하여 면허하고자 하는 어업의 종류와 면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장기본도 작성(기본조사실시 및 사회적·경제적 여건 고려)

4. 지침 주요내용('10년)

- 적조, 태풍 등 상습발생 어장(최근 5년간 50%, 2회이상 피해발생) 또는 우려 수면 신규 양식어장 개발금지, 어장이설·감축조정 등 피해 최소화
- 안정생산, 어업재해 및 가격하락 등 우려되는 김·미역·어류·굴·우렁쉥이·미더덕·전복·피조개, **홍합양식은 신규개발 금지(9개 품종)**
 - 다른 양식품종을 면허받은 전복 양식장의 사료용 미역양식으로 전환할 경우는 허용(전지역)
 - 다른 품종을 굴 양식으로 전환(강원·충남·경북도에 한함)
 - 다른 품종을 우렁쉥이 양식으로 전환(강원·경북도에 한함)
 - 다른 품종을 김 양식으로 전환(2010년도 부산광역시에 한함)
 - 김양식 : 인천 옹진군 서해5도에 한함.
 - 전복양식 : 인천 옹진군 서해5도 및 전남 신안군 흑산면과 강원도에 한함
 - 굴 투석식양식 : 충청남도에 한함
 - 홍합양식 : 전라북도 부안군 지역 어촌계에 한함
 - 축제식 복합(어류·전복)양식 : 전지역
- 면허기간 만료 김·어류 양식장·한정어업양식장을 동일 품종으로 재개발 시, 어장규모 및 여건 등 고려, 어장면적을 축소개발(5~20%)
- 외해양식어장 및 키조개 양식장 개발은 각목에 의해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 다랑어·고등어 등 외해가두리 양식어장을 개발하고자 할때 시험어업(1년6월)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면허 가능
 - 키조개 살포식 양식어장을 개발하고자 할때 양식산업과로부터 승인받아 시험어업(1년6월)후 동일품종에 한하여 제한조건 붙여 면허 가능
- 면허기간 만료어장 중 **불법시설(초과시설, 어장이탈 등)로 행정처분을 받고 시정기간 내 위반행위 미시정 및 어장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어장청소 미이행 수면 재개발 금지**

< 붙임 >

개발계획 및 어업면허 처분절차



다 | 환경 친화형 배합사료 보급 확대

1) 현황 및 실태

□ (보조)연근해 자원남획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04년부터 생사료를 배합사료로 대체하는 어가에 대한 보조금 지원

※ 지원규모 : ('04)50억원 → ('05)100 → ('06)101 → ('07)92 → ('08)71 → ('09)75 → ('10)68

○ 지원기준 : 배합사료 구입금액 × 30%(지원한도 : 6,000만원/어가당)

○ 지원대상 : 해면 가두리양식(축제식 포함), 육상 수조식 양식

□ (융자)배합사료 가격 인상으로 인한 양식어가 경영 어려움 해소를 위해 '08년부터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이차보전)

※ 지원규모/이차보전예산 : ('08)1,000억원 / 13억원 → ('09)500 / 73 → ('10)700 / 97

○ 지원기준 : 어가당 2억원 한도, 연리1%, 2~3년 분할상환

○ 지원대상 : 해면 및 내수면에서 배합사료 사용하는 전 양식어가

□ (연구)환경친화형 고효율 배합사료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해 '08년부터 배합사료 연구·개발사업 확대 수행

※ 지원규모 : ('07) 2억원 → ('08) 7억원 → ('09) 10억원 → ('10) 9억원

○ 연구내용 : 환경친화형 고품질 배합사료 설계 표준화 연구 등

□ (홍보)배합사료 실증효과 홍보물 등 제작 어업인 배포(과학원)

※ 홍보물 배포실적 : ('07)연구보고서 200부 ('08)연구보고서 200부 → ('09)보고서 400부, 리후렛 5,000부

2) 추진경과

□ 배합사료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 (보조금)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사업 지침 개선
 - 지원한도액 상향(40백만원→60백만원/어가당), 축제식양식장 지원확대(경북→전국단위)(1차 : '09.1.9)
 - 사업자가 자금 미소진 전망시 즉시 새로운 사업자로 대체 가능토록 하고, 사업적용기간 1개월 연장 (2차 : '09.8.27)
- (용자금)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침 개선
 - 지원 대상을 확대(어류, 새우, 자라 → 패류추가)하고, 추가사업 가능 명문화(1차 : '09.7.29)
 - 시·도별로 소요되는 자금을 현실에 맞게 재배정하고, 내수면, 해면 지원비율 조정(3:7→4:6) (2차 : '09.9. 4)

□ 배합사료 집행 및 사후관리 점검 추진

- 친환경 배합사료 구매자금 집행실태·점검('10.7.20~8.20/30일간)
 - 2개월 이상 배합사료 사용어가에 대한 어가별 급이대장, 배정량, 사용방법 등 조사
- 배합사료 구매실적 등 양식장 실태조사(분기별/시·도별)

□ 배합사료 홍보물 제작 배포

- 홍보 리플렛 5,000부 제작(3월), 배부(3~4월)
- 배합사료 현장시험결과 보고서(400부) 배부(제주, 경북)

□ **고효율 배합사료 연구·개발(과학원, 사료연구센터)**

- 고품질 배합사료개발 연구(식물성 원료이용)
- 현장적용시험(조피볼락 배합사료)
- 배합사료 실용화연구(급이체계)
- 어체품질 향상 연구

3) 성과와 반성

□ '04년부터 6년간 488억원의 보조금을 양식어가에 지원하였으나 배합사료 사용실적은 기대치에 미흡

- 배합사료 공급물량 증가 : ('04) 101천톤 → ('09) 100(1% ↓)
- 생사료/ 배합사료 비중 : ('05) 19.3% → ('09) 13.3%(6.0% ↓)

◀ 연도별 사료급이 현황(2005~2009) ▶

(단위 : 천톤)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A)	571	573	592	560	668
배합사료(B) (A/B, %)	110 (19.3)	117 (20.5)	101 (17.1)	88 (15.7)	89 (13.3)
생사료	461	456	491	472	579

* 2005-2009 어류양식동향조사(통계청자료, 해수어류)

□ **금년도에는 보조사업비 및 구매자금(융자)이 정상적으로 집행예상**

- 친환경배합사료 지원사업비(보조 및 융자)의 집행이 연례적으로 부진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집행예상

◀ 연도별 배합사료 지원사업(보조금) 결산내역(2006~2009) ▶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 이월	전용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율 (%)
2006	10,100	516	-1,182	9,434	5,982	2,695	757	63.4
2007	8,700	2,695	- 536	10,859	5,664	4,797	398	52.1
2008	6,000	4,797	-	10,797	8,548	2,259	80	79.2
2009	7,000	2,259		9,259	9,243	-	16	99.8

◀ 연도별 배합사료 구매자금(이차보전) 결산내역(2008~2009) ▶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 이월	추경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율 (%)
2008	-	-	1,300	1,300	356	944	-	27.3
2009	7,313	944	-	8,257	5,928	-	2,329	71.8

○ '09년도 배합사료구매자금(이차보전) 2,329백만원 불용

- 예산편성 시 기준금리(7.59%)보다 1.12%금리하락(6.47%)되어 금리 차액 규모 미집행: 1,385백만원
- '08년도 이월액의 '09년도 집행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예산 미집행: 944백만원

4) 향후 추진계획

- (정책목표) 고품질 배합사료 생산·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양식 업계 지속적 발전 도모
- (지원방향) 배합사료 현장적용, 보조·융자사업 지속추진 및 홍보기능 강화

- 조피블락 등을 대상으로 배합사료 현장적용시험('10~11)
 - 양식어업인의 배합사료 품질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시험어장 운영(수과원)
- 정부 보조·융자사업의 지속추진('11)
 - 보조사업은 '10년도 예산(63억원)의 20% 감소한 50억원 확보추진
 - 융자사업은 '10년도 700억원의 공급규모를 500억원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차보전예산 확보(50억원)
- 배합사료 우수성 교육·홍보 강화('10~)
 - 조피블락 현장 적용시험 결과를 토대로 대어업인 홍보실시
 - 배합사료를 사용한 우수사례를 수집, 지도·홍보(의식개혁)

【일 본】

- 배합사료 중심의 고부가가치 기술집약적 어류양식 추진중
 - 참돔(양식 전략종) : 90% 배합사료 사용(연간 10만톤 생산)
 - 방어 : 어린고기 100%배합사료, 큰고기 70%이상 배합사료 사용
- 참다랑어는 생사료 사용이 많으나, 최근 치어용 사료 개발

【미 국】

- 지역별로 전략 어종을 선정하고 양식 어종에 대해 100% 배합사료 사용
 - 품종별 배합사료 개발 및 육종 연구에 집중 투자
 - 전략 어종 : 철갑상어(캘리포니아), 채널메기 (남부)
 - * 채널메기 연간 40만 톤 생산(배합사료 생산량 60~80만 톤)

【노르웨이】

- 환경 친화적 배합사료 중심 양식생산체제 확립
 - 연어생산(연간 60만 톤)은 100% 배합사료로 사용
 - 최근, 연어용 고효율 배합사료 개발 : 사료계수 0.9
 - * 현재 노르웨이 상업용 배합사료 국가표준 사료계수 1.0 미만

■ MP(Moisture Pellet)사료

- 생사료에 건조분말사료가 포함된 습사료
 - 잘게부순 생사료에 배합분말사료, 첨가제 등을 혼합한 사료
 - 완전배합사료에 비하여 결합력이 떨어져 양식장에 급여하게 될 때 수중에서 풀어지거나 분산되기 쉬움
 - 잘게부순 생사료에 배합분말사료, 첨가제 등을 혼합한 사료
 - 수분함량이 50~60%이상 어체 절단시 어체내 영양소 파괴 및 유출됨

■ DP(Dry Pellet)사료

- 침강사료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가축용 배합사료에 사용된다.
 - pellet 과정이 70~80% 정도되며 Starch가 Gellatin화 되는 정도가 EP사료에 비해 다소 떨어져 소화율이 조금 낮다고 볼수 있음.
 - 물에 쉽게 가라앉게 되므로 물고기들이 사료를 섭취하는 시간적 여유가 적어 양어용 배합사료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음.

■ EP(Extruded Pellet)사료

- 양식용 배합사료는 수분함량이 10%미만인 건조사료이며 익스트루드(Extruder)로 제조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EP(Extruded pellet)라고 함
- 부상사료라고도 하며 130℃고온에서 사료제조과정을 거친 다음 건조과정에서 수분함량을 낮게 처리한 다음 냉각처리 후 포장
 - 고온 압출과정을 통하여 Starch가 Gellatin화 되는 정도가 커서 소화율이 매우 높음.
 - 물에 쉽게 가라앉지 않아서 물고기들이 사료를 섭취하는 시간적여유가 충분함
 - 수분함량이 7~10%수준으로 고온·고압과정을 통하여 유해균들이 사멸되므로 평균 수에 오염될 가능성이 DP사료에 비해 낮음.

■ SEP(Soft Extrude Pellet 혹은 Semi-moist pellet<반습사료>)

- 수분함량이 20~30%내외로 70℃에서 사료제조과정을 거친 다음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냉각처리 후 포장 냉동 유통
- 높은 수분함량으로 인해 운반시 뭉게지기 쉽고, 특히 여름철에는 운반 및 보관시 산패·변패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 저온 보관이 필요함

참 고 3

생사료와 배합사료의 장단점

구 분	생사료 이용(단점)	➔	배합사료(장점)
환경	○ 먹이투여시 유실량 많음 - 생사료 30~40% - 습사료 15~20%		○ 먹이투여시 유실량 적음 - 5% 내외
	○ 오염부하량이 높아 어장성 저하		○ 어장환경 악화 저감
자원	○ 수산자원 남획 우려		○ 수산자원 보호 효과
경영	○ 사료비가 저렴, 관행 사용 - 520~1,086원/kg		○ 사료비가 다소 비쌌, 품질불신 - 1,400~2,000원/kg
	○ 어황에 따라 수급 불안정 - 공급 한계 및 가격 폭등 우려		○ 사료공급의 안정성 - 공급과 가격 변동 감소
	○ 사료변질 등 저장성 낮음 - 냉동시설 필요 및 전기료 소요		○ 저장성 높음 - 냉동시설 불필요
	○ 질병발생 원인제공 - 비위생적 사료 공급		○ 질병발생 원인 감소 - 위생적 사료원료의 사용

※ 양어용 사료의 종류

▶ 생사료(수분: 65~80%) : 사료계수 4.0~5.0

- 고등어 및 까나리 등을 통째로 또는 잘게 절단한 것, 개별양식장 제조

▶ 배합사료(Extruded Pellet 수분 : 3~7%) : 사료계수 1.4~1.5

- 각 어종에 적합한 사료원료를 배합하여 상품화한 것(양어용 배합사료 제조사 26개사)

- 1kg 어류 사육시 사료 비용은 생사료에 비해 배합사료가 kg당 약 500~1,500원 정도 추가 비용 발생이 있음

참 고 4**양어용 배합사료 제조회사 현황**

□ 2009년도 기준 생산업체 : 25개사

상호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이화유지공업	김보현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380-7	051-291-4208
제일제당	김진수	전북 군산시 소룡동 43	063-640-7793
대한사료공업(주)	이종길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120	02-752-1171
(주)코스프	나동수	전북 정읍시 하북동 853	063-538-0011
세화사료(주)	김성태	인천시 서구 당하동 955-8	032-563-5744
제일사료(주)	윤하운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40-36 경남 함안군 범수면 윤외리 1475-6	042-624-4101 055-582-6830
우성사료(주)	지평은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62-1	042-670-1735
서해사료(GPFeed)	백인철	충남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 477-4	041-674-5147
(주)코팩스	박순관	부산시 동래구 온천1동 154	051-556-8661
수협사료	권오국	경남 의령군 만천리 14-1	055-573-6321
팜스코(주)	정학상	전북 정읍시 영파동 500-2	063-536-1161
스마일사료	김재홍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75	055-833-5312
카길에그리퓨리나(주)	김기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7-1	031-710-6000
대봉 LF	박진오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325	064-787-8088
기 타	11개사		

* 기타(11개사) : 경원사료, 한스프, PC TREE, 청해아라온, 바우와우, 경남특수사료, 동아원, (주)위고, 오뚜기 SF, 서해사료, 비고테크

참 고 5**어분공급 현황**

- 국내산 어분은 13개사, 연간 약 40천톤 생산
 - 대부분은 축산사료에 이용되고 양어용 사료는 30~40% 이용
 - 원료는 참치 부산물, 잡어 및 수산가공 부산물 등으로 제조
- 외국산 어분은 17개국, 연간 36천톤 수입
 - 원료는 주로 전갱이, 멸치, 정어리 등 갈색어분을 활용, 제조
 - 칠레(67%), 덴마크(14%), 미국(10%), 페루(4%), 기타(5%)

※ 연도별 어분 수입 및 가격동향

가. 연도별 수입현황

연도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국가별 수입 비율
물량(톤)	46,775	47,313	42,662	36,259	32,000	40,000	칠레 79%, 덴마크17%, 미국 6%
금액(천불)	35,898	52,761	51,971	41,796	35,000	100,000	

나. 연도별 가격동향

(단위 : 원/kg)

연도	2008		2009		2010	
	1	7	1	7	1	7
수입어분	1,365	1,300	1,450	1,550	1,850	3,000
국산어분	900	950	960	1,000	1,000	1,250

- 2010. 7월 어분가 상승 요인 : 국내 수입어분 중 70%가 칠레산이나, 지난 2월 지진발생으로 항만시설 등 붕괴에 따른 선박 접안 불가 - 칠레(왕멸치, 정어리, 전갱이), 페루(왕멸치)
- 2010. 8월이후 칠레 어분가격 안정으로 다소 하락될 전망이나, 최근 1개월 정도 페루 어획량 감소로 kg당 2,000원 정도는 상회할 것으로 전망

라 | 수산동물 방역체계 구축

1) 현황 및 실태

- 바이러스 등 수산동물 전염병으로 양식어류 연간 2,500억원 피해 발생(추정)
 - 2000년대 들어서는 15~20%로 질병 발생률 증가
- 수산동물전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 확산방지를 위해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을 제정·시행('08.12.22)
 - 수산동물 방역 국가기관을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방역수행기관으로 정하여 방역업무 수행
 - 전염병 관리를 위한 양식장 질병 예찰 및 모니터링 질병 검사
 - * 25개 질병 수산동물 전염병으로 정함(법11, 시행규칙 14)
 - 감염된 수산동물에 대한 병성감정 및 역학조사
 - 감염된 수산동물의 격리·이동제한, 살처분, 소각 등
 - 수산동물 국경검역 기관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으로서, 수출입 수산동물의 국경검역을 실시하여 외래질병 차단

2) 추진경과

- 수산동물질병 관리법령 안정화 추진
 - 수산동물질병관리법, 하위법령 및 고시·훈령 개정
 -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유사법률(기르는어업육성법, 수산물품질관리법)과 통합하여 『수산생물질병관리법』으로 개정
 - * 차관회의(2008.8.19), 국무회의(2008.8.24), 국회제출(2008.8.30)
 - 하위법령 및 관련고시(16건)·훈령(3건) 개정 : 2010. 9~

□ 수산동물 방역 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

○ 국가 방역기관 조직·인력 확대

- 조직 : ('09) 방역센터 → (2010) 수산생물방역과
(5급연구관) (4급연구관)
- 인력 : ('09) 18명 → (2010) 22명 (+4 연구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통합 방역체계 구축 완료

- 수산동물방역기관 방역관 임명 및 위촉 : 91명(국가 31, 지방 60)
- 수산동물전염병 중앙방역업무 협의회 개최(3.11~12/본부, 수과원, 수검원)
- 「수산동물질병관리 발전방향」 워크숍 개최(8.26~27, 대전)

□ 방역비용, 장비 및 실험실 등 예산 확보

○ 방역에 직접 필요한 방역비, 살처분보상, 생계지원비 확보(본부)

- ('09) 804백만원 → ('10) 883백만원

○ 방역기관 운영 시험연구비 확보(국립수산과학원)

- ('09) 150백만원 → ('10) 1,462백만원

○ 첨단 방역장비 본원·동·서·남해 등 7개 권역별 배치(45종, 218대)

- * 장비 도입·운영 지원 : ('09년) 20억원 ⇒ ('10년) 22억원

○ 수산동물방역센터 실험실(OIE 표준 실험실 규모) 구축

- * ('10) 3개소(본원, 동해, 서해) 증축 38억원

○ 수산동물전염병 병원체 균주은행 설치운영(45종 2,126균주 보존관리)

○ 농축수산안전정보시스템 연계, 질병발생정보 등 D/B 운영

□ '10년 방류 수산동물 질병검사 실적

○ 넙치 등 42품종 1507건 검사('10.8현재)

- ('08) 918건, ('09) : 2060건

- '10년도 검사대상 종 확대(44종→55종) : 해면품종 43종, 내수면 품종 13종

○ 넙치 등 7개 품종 16건 전염병 검출, 소독 및 격리 명령('10.8현재)

-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1건), 흰반점병(3건), 바이러스성신경괴사증(1건),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18건),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2건)

□ **질병예방을 위한 어류 이동병원 운영('10. 3~8월)**

- 9차례 걸쳐 양식장 96개소 총 617건 어병진단 및 처방

□ **넙치용 질병예방백신(비브리오패혈균, 노다바이러스) 특허출원(6월)**

3) 향후 추진계획

□ **수산동물질병 관리법령 안정화 지속 추진**

- 수산동물전염병 종합관리대책 5개년 계획 수립(법 제3조, 본부)
 - 수산동물전염병의 예방 및 신고체계, 방역계획 수립
 - 수산동물전염병 진단기술 개발 및 방역추진방향 설정 등
- 의약품 개발 및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개발계획 수립(법 제5조, 수과원)

□ **국제적으로 조화로운 선진 방역 시스템 구축**

- 수입위험분석 실시로 선진 방역 및 검역체계 구축
- 법령에서 정한 보상이 신속히 집행이 가능하도록 예산 및 시스템 보완
- 국영 검역시행장 확보, 양식장등 오존처리시설을 갖추기 위한 타당성 검토(2010 연구용역 수행 후 예산반영)

참 고 1

수산동물전염병 지정현황

(2010.9월 현재)

어종	병원체	연번	수산동물질병	수산동물질병 관리법령			OIE 등재	비 고
				계	법	시행 규칙		
-	-	-	계	25개	11개	14개	25개	
어류	바이러스	1	유행성조혈기괴사증(EHN)	○	-	●	○	
		2	잉어봄바이러스병(SVC)	○	●	-	○	
		3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VHS)	○	●	-	○	국내 보고 질병
		4	전염성연어빈혈증(ISA)	○	-	●	○	
		5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RSIVD)	○	●	-	○	국내 보고 질병
		6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KHD)	○	●	-	○	
		7	바이러스성신경괴사증(VNN)	○	●	-	-	국내 보고 질병
		8	전염성채장괴사증(IPN)	○	●	-	-	국내 보고 질병
		9	돌돔이리도바이러스병(RBIVD)	○	●	-	-	국내 보고 질병 국제미공인질병
		10	전염성조혈기괴사증(IHN)	-	-	-	○	국내 보고 질병
	진 균	11	유행성폐양증후군(EUS)	○	●	-	○	
	기 생 충	12	자이로닥틸루스증 (자이로닥틸루스살라리스)	○	-	●	○	
패류	기 생 충	13	보나미아감염증 (보나미아오스트레, 보나미아의스티오사)	○	-	●	○	
		14	마르테일리아레프리카엔스 감염증	○	-	●	○	
		15	퍼킨수스 마리누스 감염증	○	-	●	○	국내 보고 질병
		16	퍼킨수스올제니감염증	-	-	-	○	국내 보고 질병
	세 균	17	제노할리오티스 캘리포니아엔시스 감염증	○	-	●	○	
바이러스	18	전복바이러스성폐사증	○	-	●	○	OIE 명칭변경('09)	
갑각류	바이러스	19	구상바쿨로바이러스증	○	-	●	-	OIE 삭제('09)
		20	사면바쿨로바이러스증	○	-	●	-	OIE 삭제('09)
		21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IHHN)	○	-	●	○	국내 보고 질병
		22	노랑머리병(YHD)	○	●	-	○	
		23	흰반점병(WSD)	○	●	-	○	국내 보고 질병
		24	타우라증후군(TSV)	○	●	-	○	국내 보고 질병
		25	전염성근괴사증(IMN)	○	-	●	○	
		26	흰꼬리병(WTD)	○	-	●	○	국내 보고 질병
	진 균	27	가재전염병	○	-	●	○	
	세 균	28	Milky haemolymph disease of spiny lobsters	-	-	-	○	OIE 추가('09)
	29	괴사성간채장염(NHP)	-	-	-	○	OIE 추가('09)	
양서류	진 균	30	항아리곰팡이감염증	-	-	-	○	OIE 양서류
	바이러스	31	라나바이러스증	-	-	-	○	OIE 양서류

※ 자료출처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품질검사과

주) 28. Milky haemolymph disease of spiny lobsters과 29. 괴사성간채장염(NHP)은 '09년 추가된 OIE 등재질병이며, 현재 검토 중인 질병임

참 고 2

방류수산동물 검사대상 질병 및 처벌규정

□ 방류수산동물 검사대상 질병(법 제2조와 규칙 제2조)

	법시행 전(13항목) 수산종묘매입방류 사업시행지침	법시행 이후(25항목)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류이리도바이러스 감염증 • 바이러스성 출혈성 패혈증 • 해산버나바이러스 감염증 • 넙치랩도바이러스 감염증 • 어류노다바이러스 감염증 • 잉어허피스바이러스 감염증 • 잉어봄바이러스 감염증 • 전염성체장괴사증 • 전염성조혈기괴사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 돌돔이리도바이러스병 • 바이러스성 출혈성 패혈증 • 바이러스성 신경괴사증 • 전염성 연어빈혈증 •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 잉어봄바이러스병 • 유행성 폐양증 후군 • 전염성 체장괴사증 • 유행성 조혈기괴사증 • 자일로닥틸루스증(자일로닥틸루스살라리스)
패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퍼킨수스 감염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퍼킨수스감염증(퍼킨수스마리누스) • 보나미아감염증(보나미아오스트레, 보나미아익시티오사) • 마르테일리아감염증(마르테일리아레 프리젠스) • 제노할리오티스캘리포넨시스감염증 • 전복바이러스폐사증
갑각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흰반점바이러스 감염증 • 간췌장파보바이러스 감염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흰반점병 • 노랑머리병 • 타우라증 후군 • 가재전염병 • 구상바쿨로바이러스증 • 사면바쿨로바이러스증 • 전염성 피하 및 조혈기괴사증 • 전염성 근괴사증 • 흰꼬리병
해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능검사 	

□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위반시 벌칙 등

대 상	위반사항	처분기준
수산동물을 방류하려는 자	수산동물전염병의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방류수산동물이 수산동물전염병에 감염되어 소독, 격리 또는 살처분 명령을 받은 방류하려는 자	소독, 격리 또는 살처분 명령 불이행	

마 | 양식분야 대표품목 육성 추진

1) 현황 및 실태

- WTO/DDA체제 출범, 수산물 전면 수입개방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유망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생산, 가공, 유통, 수출분야 단체가 협력하여 현안 문제 등 해소할 수 있는 대안 마련 필요
 - 수출 유망품목(넙치, 전복, 김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생산여건 조성 및 판촉, 마케팅 등 중장기적·전략적인 사업추진 필요
- 양식어업이 국민의 주된 수산물 공급원이자 수출산업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양식어업의 경쟁력 확보로 수익성 개선 필요
 - 최근 양식수산물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비용 증가, 내수시장의 소비성장세 둔화 등으로 과잉생산이 문제화
 - * 양식수산물 생산량 : ('00) 653 → ('05) 1,041 → ('09) 1,313
-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및 농림수산식품부 출범에 부응
 - 1차 산업을 식품산업으로 육성 발전, 농림수산식품 수출 100억불 초석 마련
 - 수산업을 융·복합 6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어업과 동반 성장 및 부가가치 창출로 어업소득 증대
- 29개 농수산 대표품목 중에 생산액이 많고 수출가능성이 높은 양식품목인 넙치, 전복, 김을 우리 부 대표품목에 선정('08.5)

2) 추진경과

- 양식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생산, 제품개발, 판매·출하, 수급조절 등을 자율적으로 담당하는 대표조직 육성
 - 주요 양식 품종(넙치, 전복, 김) 대표 조직 설립
 - * 넙치('08.12/ 469명), 전복('09.12/ 3,800명), 김('09.12 / 5,522명)
- 품목별 대표조직 발전방안 워크숍 개최
 - 전복양식산업 발전방안 워크숍(4.9~10)
 - 장소 / 참석 : 전남 해남군 / 관계기관, 단체, 어업인 등 100명
 - 김산업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8.18~8.19)
 - 장소 / 참석 : 전남 해남군 / 관계기관, 단체, 어업인 등 500명
- 양식분야 대표조직 등에 기본사업비 및 자조금 등 배정
 - 기본사업비 및 자조금 집행지침 시달(1월)
 - 총 사업비 6,000백만원중 양식 3품종 700백만원 배정·통보(5월)
 - 넙치 250백만원, 전복 200백만원, 김 250백만원
 - '10년 양식분야 자조금 1,741백만원 배정(3~6월)
 - 김 830백만원, 전복 350, 넙치 300, 송어 160, 자라 101
 - 소비촉진, 수급조절, 홍보, 어업인 교육 등
 - 주요 품목 마사회 특별적립금 171백만원 배정(8월)
 - 전복 대표조직 112백만원, 김 대표조직 59백만원
 - 소비촉진, 마케팅, 대외 홍보, 교육 등에 사용

3) 향후 추진계획

□ 품목별 대표조직 발전방안 워크숍 및 심포지엄 개최

○ 넙치 양식산업 발전방안 워크숍(11월)

- 장소 / 참석 : 제주 / 관계기관, 단체, 어업인 60명
- 넙치 양식산업의 발전방안, 수출전략 등

□ 양식산업 세계화 전략 방안 마련(12월)

○ 생산원가 및 경영비 절감, 수급과 가격안정, 수출 등을 통한 세계화 전략 방안 마련

- 넙치, 전복 등 대표 품목에 대한 종합보고서 마련

□ 대표조직내 연구회(넙치, 전복, 김) 활동 강화(7~12월)

- 연구기관, 학계, 생산자, 유통업계, 관련단체 등으로 구성
-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주제발표, 대안 제시

□ 틈새시장 개척을 통한 양식수산물의 수출 활성화

○ 주요 양식품목의 대외경쟁력 제고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양식 품목별 수출 1억불 조기달성

- 품목별 수출 1억불 달성시기 : 김('10), 넙치('12), 전복('17)

○ 수출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 추진

-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을 전 양식어장으로 확대
- 미국·일본 수출 활넙치 수출확대를 위한 박람회 및 판촉전 지원
- 동남아, 유럽 등 신규시장의 시장조사 및 고품질 브랜드 개발

참 고

주요 품목 대표조직 현황

□ (사)한국전복산업연합회

설립일자	2009. 12. 24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소재지	목포시 상동 874-10 3층	전화번호 (FAX)	061)284-0038 061)284-1007		
설립목적	전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회원간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고품질 전복 안정생산 지도, 수급조절 및 시장교섭력을 높이는 등 생산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전복산업의 발전 도모를 목적				
대표자	최영태	직원수	3명(정규 2명, 임시 1명)		
임원현황	16명(회장 1, 고문 1, 부회장 4, 이사 8, 감사 2)				
조직	회원수 3800명 회원조합 3개 영농법인 지회, 지부	기본재산 (정부출연금)	15,000천원 (-)	자체 사무실	(운영중) (’09년 5월)
예산규모 (천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계획	비고(재원)
	합계	906,371	1,012,000	1,012,000	
	자체예산	359,530	350,000	350,000	
	국고보조금 (**회계)	546,841	662,000	662,000	자조금 기타
	기타지원금				
주요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복산업 발전계획 수립 ○ 전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 자조금 조성.운용을 통한 전복의 홍보 및 판매촉진 ○ 유통협약 지원사업 및 유통사업 추진 ○ 전복의 산업화 구축 및 그 밖의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 				
회원자격	회원은 본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는 한국전복협회, 청해진미완도전복주식회사, 한국전복유통협회 및 전복과 관련된 단체의 회원중 각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사)한국광어양식협회

설립일자	2008. 12. 30.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소재지	제주시 일도 이동 330-26	전화번호 (FAX)	064-753-0365 064-722-0365		
설립목적	회원간 상호협력과 정보교환으로 홍보, 판매촉진등을 통한 넙치의 판로확대와 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여 넙치양식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대표자	신태범	직원수	2명(정규 2명, 임시 명)		
임원현황	14명(회장 1, 이사 11, 감사 2)				
조직	회원수 469명 회원조합 4개	기본재산 (정부출연금)	3,532천원 (-)	자체 사무실	운영중 (‘09년 2월)
예산규모 (천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계획	비고(재원)
	합계	569,000	850,000	850,000	
	자체예산	233,750	300,000	300,000	
	국고보조금 (수발기금)	335,250	550,000	550,000	자조금
	기타지원금				
주요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어가공제품 개발 용역 ○ 광어 해외시장 개척 ○ 안전성검사 및 비상품광어 처리 비용 지원 ○ TV CF 제작 및 광고 방송 ○ 완도지부 자조금 관리 운영비등 				
회원자격	○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어류양식조합, 양식어업 영어법인, 광어양식 어업인, 수산물 유통인				

□ (사)한국김산업연합회

설립일자	2009. 12. 28.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112-6		전화번호 (FAX)	02) 431-4370 02) 431-4380		
설립목적	김산업 발전을 위한 회원 상호협력과 정보교환					
대표자	김덕술		직원수	2 명(정규 2 명, 임시 명)		
임원현황	18명(회장 1, 부회장 2, 이사 12, 감사 3)					
조직	5,522명		기본재산 (정부출연금)	53,000천원	자체 사무실	(운영중) (‘09년 11월)
예산규모 (천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계획)	비고(재원)	
	합계	1,685,468	1,969,000	1,969,000		
	자체예산	679,884	830,000	830,000		
	국고보조금 (**회계)	1,014,584	1,139,000	1,139,000	자조금,기타	
	기타지원금					
주요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 비전 수립 ○ 자조금 조성 및 운영을 통한 홍보 및 판매촉진사업 ○ 자율적 어장관리를 통한 적정생산 및 친환경 생산 기반구축 ○ 김산업화 구축을 위한 생산비 절감 등 R&D 발굴 및 추진 ○ 김연구회 지원 및 해외시장 마케팅 추진 등 					
회원자격	○ 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 전국마른김협회, 한국김수출협의회 회원 및 회원수 20인이상으로 구성된 김과 관련된 단체 회원					

바 | 친환경양식 기반시설 구축

1) 현황 및 실태

- 양식어장의 80% 이상이 남해 연안의 내만에 집중되어 있으며 장기간의 과밀 양식으로 어장이 오염되고 생산성이 저하
 - 양식어장의 오염에 따른 질병 발생, 폐사 증가 등의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과도한 약품 사용 상존
- 국제적(FAO 등)으로 양식어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친환경적인 양식기자재 및 활성처리제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지만 기본사양 및 사용기준이 없어 오·남용 우려 및 관련 업계간 민원 야기
- 수산생물 종자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선택과 집중 부족
 - 체계적인 유전자원 관리, 종자개발 연구 투자 미흡,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조직·기능과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구축 미흡
- 친환경 신동력 양식산업 창출을 위해 고부가가치 중심의 신품종 및 원천기술 집중개발, 양식산업화 지원
 - ※ 전략품종 - 넙치, 전복, 김, 참다랑어, 해삼, 갯지렁이 등
- 추진근거
 - 어장관리법 제6조(어장환경의 조사), 수산업법 86조(보조 등), 생명공학육성법 제13조(생명공학육성시책강구등)
- 사업기간 : '62 ~ 계속('10까지 570억원 기 투자)
- 사업규모 : 양식어가수 22,000가구
- 지원조건 : 국고 30~100%, 지방비 30~50%, 자담 0~40%

2) 추진경과

- 친환경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과학적 기반연구 및 고부가가치 양식수산물의 산업화 지원으로 기르는어업 활성화,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
 - 해조류품종보호, 어장환경실태조사, 태안어장 정밀조사 및 복원, 우량종자보급, 외해참다랑어 양식산업화, 전북연구소 설립 지원 등
- 내역사업별 추진실적
 - 국제식품신품종보호제도 시행 대비, 품종 심사기술개발 및 해조류 신품종 개발 등으로 해조류 품종보호제도 체계구축(2008~2017)
 - 동·서·남해 해역에 대한 체계적인 어장환경실태조사로 어장환경 보전·개선정책의 기초자료 제공(1개 해역)
 - 서해안 유류오염 사고지역에 대한 양식산업 복원화를 위해 피해 어장의 정밀조사를 통한 맞춤형 프로젝트 사업개발
 - 양식시설의 품종별 시설 표준화로 자연재해 피해복구비 지원기준 설정(해면, 내수면)
 - 친환경 신동력 양식산업 창출을 위해 고부가가치 참다랑어 양식 어종의 산업화를 위한 양식기술개발 지원(국내 참치수입 대체효과 및 수출전략품종으로 활용)
 - 양식수산물에 대한 백신공급으로 질병방지 및 우량한 수산물 생산으로 양식어가 경쟁력 제고(연쇄구균백신 접종 지원)
 - 넙치, 김 우량종묘 육성·보급을 위한 우량 친어, 모조(母藻)확보, 보존·관리 안정화로 어업소득 증대(지역별 열성화된 품종 개량)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점검으로 효율적인 관리 추진(10개소, 3개 도)

- 고부가가치 외해 참다랑어 양식을 위한 기반시설(가두리시설, 종묘 생산시설, 관리선 건조 등) 지원
- 농어업선진화 10대 핵심과제 추진, 국제경쟁에 대비한 종자산업 보호 육성, 고소득 양식 대표품종인 전복, 해삼 지원

3) 성과와 반성

- 양식시설 표준화 연구로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피해 최소화 및 복구지원시 표준규격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만 지원하므로써 국고손실 예방
 - 1차년도('08)는 양식시설별 실태조사 실시, 2차년도('09)는 양식 시설별 실태조사, 3차년도('10)는 현장 적용실험 후 표준화(안) 적정성 검토
- 양식수산물에 대한 백신공급으로 어류질병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 2007년도 : 2개 제품(에드워드 백신, 연쇄구균 백신)
 - 2008년도 : 1개 제품(연쇄구균 백신)
 - 2009년도 : 1개 제품(연쇄구균 혼합백신)
- 체계적·효율적인 어장환경 보전·개선과 이용 도모를 위하여 남·서·동해 연안어장에 대한 과학적인 실태 파악
 - 1차년도('08) : 남해안 연안해역(진해만, 거제만, 한산만/굴, 미더덕, 멩게) 어장실태조사
 - 2차년도('09) : 남해안 연안해역(고성만, 자란만, 가막만, 여자만/굴, 홍합, 새고막) 어장실태조사
 - 3차년도('10) : 남해안 연안해역(특량만, 완도 도암만/어류, 전복, 바지락, 다시마, 미역) 어장실태조사
- 친환경 양식은 양식어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식품 안전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함으로써 양식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음

4) 향후 추진계획

친환경 신동력 양식산업 창출을 위해 고부가가치 참다랑어 양식어종의 산업화 및 양식기술개발 지원

* 동 사업은 국정과제 및 우리부 농어업선진화 10대 핵심과제임

2012년 해조류 품종보호제도 대비 신품종 심사기준 마련 등

○ 2012년까지 해조류 15품종 이상 개발 후 신품종 출원·등록

국제경쟁에 대비한 종자산업 보호 육성, 전복·해삼의 세계일류 식품 육성 및 수출전략품종 육성 지원 등

사 | 양식수산물 출하조절사업

1) 현황 및 실태

○ 목 적

- WTO/DDA, FTA 등 시장개방화에 대비, 정부주도적 수산물 수급조절 정책에서 시장지향적 민간주도의 수급정책으로 전환

○ 지원내용

- 생산·유통관련 정보제공에 의한 합리적 경영 및 소비안정 도모
- 업계의 자율적 출하조절 등 수급조절에 의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 업계 자율적 시장개척, 소비촉진을 통한 생산자단체 시장교섭력 강화

○ 사업규모

- 관측품목(7개 품목) : 김, 미역, 넙치, 조피볼락, 전복, 굴, 송어
- 자조금 사업(5개 품목) : 김, 넙치, 전복, 자라, 송어

* 수산업관측 대상 품목수 : ('04) 1품목→('05) 2→('06) 4→('07) 8→('08~'10) 7

* 자조금 대상 품목수: ('04)1품목→('05)2→('06)3→('07~'08)4→('09~'10)5

○ 보조율 : 수산업관측(국고 100%), 자조금(국고 50%, 자담 50%)

○ 시행주체 : 수산업관측센터(해양수산개발원) 및 품목별 생산자단체

○ '10년 예산 : 3,781백만원(관측사업 2,040, 자조금 1,741)

2) 추진경과

□ 출하조절사업의 발전을 위한 워크숍 개최 및 제도 개선

○ 관측사업 평가대회(4월)

- 가격 및 경영안정화에 기여,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공 정보의 정확화 향상 필요

○ 자조금사업 워크숍 개최(6월)

- 다양한 정보 공유 및 사업추진 상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 출하조절사업 집행지침 수립 및 자금 집행 등 추진

○ '10년도 집행지침을 마련, 사업대상 품목인 김·넙치·전복·송어생산자단체 및 수산업관측센터에 지침 시달('10.1월)

○ '10년 사업계획 확정 및 사업비 3,781백만원 집행('10.1~12월)

※ 집행내역(백만원) : 관측사업 2,040, 자조금 1,741

○ 매월 관측월보 발간 및 홍보 등 출하조절사업 추진

3) 향후 추진계획

□ 주요 관측품목의 생산비 조사 등으로 관측 정확성 확보(10월)

- 품목별 경영분석 등을 위한 생산비 조사 및 관측모델 개발 기초 자료 확보

□ 자조금 사업 추진 현황 점검(11)

- 예산집행, 관련 서류 점검 및 현장 확인과 집행 교육 평행

□ 사업정산 및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12월까지)

- 품목 고시 및 사업정산,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금년 말까지 확정

참 고

‘10년도 출하조절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품목별	사업별	‘09사업비	‘10사업비	비 고
합 계		4,200,000	3,781,000	
○ 관 측 사 업		2,040,000	2,040,000	
○ 유 통 협 약		1,060,000	-	
○ 자 조 금		1,100,000	1,741,000	
김	유통협약	491,000	-	
	자 조 금	523,584	830,000	
전 복	유통협약	329,000	-	
	자 조 금	217,841	350,000	
송 어	유통협약	95,000	-	
	자 조 금	98,000	160,000	
넙 치	유통협약	145,000	-	
	자 조 금	190,250	300,000	
자 라	자 조 금	70,325	101,000	

아 | 어업재해복구 지원대책

1) 현황 및 실태

□ 어업재해

○ 정 의

- 이상조류(수온·염분·용존산소 또는 영양염류가 변함으로써 바닷물 또는 민물의 질이 급변하는 현상)·적조현상, 태풍·해일 기타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시설의 피해를 말함

○ 대 상

- 「수산업법」에 따른 양식어업면허·허가를 받은 어장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양식어업면허를 받거나 사유수면 어업신고를 한 어장안에서 어업재해가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의 규모가 시·군별로 3억원 이상 재해를 입은 지역의 어가

□ 복구지원

○ 절 차

- 어업인들로부터 피해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지자체에서는 피해원인 합동조사 등을 거쳐 어업재해로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유관기관 협의회 심의를 거쳐 농식품부에 보고
- 농식품부장관은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심의의결 후 지원

○ 내 용

- 종묘대금 또는 치어대금,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 이재민 구호, 고등학교 학자금 면제, 영어자금 상환연기 및 그 이자감면 등

○ 금 액

- 양식생물 및 시설파손 등 개인별 피해상황을 통합한 재난 등급에 따라 어가당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

□ 추진경과

- 재해로 인한 어민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재해대책법”을 “농어업재해대책법”으로 개정(’90.8)하여 복구지원 실시
- 「수산업법」에 따른 해산양식부분만 지원하던 것을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담수어양식부분의 재해까지 확대 지원(’07.1)

2) 추진실적

□ ‘08~’09년은 태풍, 적조 미발생으로 어업재해로 인한 복구가 적음

- 그러나, ‘08.9~10월중 경남지역에서 빈산소·영양결핍·고수온 등 이상조류에 의한 굴 폐사로 549백만원 피해가 발생하여 재난지원금 223백만원 복구지원

□ 재난지원금 상한액 축소에 따른 어업인 피해 최소화 노력

- 사유재산에 대한 재난복구는 피해자가 보험 등을 활용하여 자력 복구 원칙에 따라 재난지원금 연차적 축소(소방방재청)
 - 재난지원금 상한액 : 3억원(’06년) → 2(’07년) → 5천만원(’10년)

○ 추진사항

- '10년부터 적용되는 피해복구비 상한액(5천만원) 지급에 따른 문제점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용역실시('07.11~'08.5)
- 양식재해보험 정착시까지 적용기간 유예건의('07~'09, 6회, 기획재정부, 소방방재청 등)
- 재해복구비 상한액 축소관련 협의('10.4.22, 소방방재청, 행정안전부 등)

□ 하절기 재해(태풍·적조 등)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 추진

- 호우 및 태풍, 적조 등 여름철 대규모 재해에 대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비상대응 체제 구축으로 피해 최소화

3) 향후 추진계획

□ 겨울철 재해(한파·폭설 등)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

- 한파, 폭설 등 겨울철 대규모 재해에 대비, 예방대책 및 수산 증·양식시설 피해 최소화 대책 강구

□ 적조현상·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시 신속한 피해 복구 추진

- 지속적인 적조예찰 등으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 재난지원금 상한액 축소에 따른 양식어업인 피해 최소화 방안 지속 추진

- 적조예찰 등의 강화를 통하여 재해발생에 사전 대비
- 낚치, 전복 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양식재해보험 가입 유도 협조
- 양식재해보험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보험대상 품목 확대 지원

□ 2010년도 농어업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농림수산식품부고시, '10.6.21)

○ 내용 : 신설품목(5개), 상향품목(8개), 인하품목(1)

품목별	규격	단위	단가(원)	비고
바. 수산물 증식·양식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1) 수산물 증식·양식시설의 파손·유실 - 패류				
	굴(간석지투석식)	ha	11,477,000	
	굴(연승수하식)-100m당	줄	403,879	'09:379,910
	굴채묘(연승수하식)-100m당	줄	600,282	
	굴채묘(간이수하식)-25×2m당	대	276,634	
	피조개(천해살포식)	ha	582,820	
	피조개채묘(연승수하식)-100m당	줄	401,958	
	바지락(간석지살포식)	ha	553,000	
	홍합(연승수하식)-100m당	줄	416,750	
	새고막(천해살포식)	ha	746,000	
	새고막채묘(지주수평식)-100m당	대	159,000	
	고막(간석지살포식)	ha	423,500	'09:395,000
	가무락(간석지살포식)	ha	1,130,000	
	동죽(간석지살포식)	ha	230,000	
	백합(간석지살포식)	ha	2,163,200	
	전복(천해투석식)	ha	2,444,000	
	전복(연승수하식)-100m당	줄	1,532,500	
	전복(육상수조식3.3m)	m ²	115,252	
	전복(해상가두리-내파성 5×5m)	칸	1,094,000	
	전복종묘생산(육상수조식3.3m)	m ²	117,975	
	가리비(연승채롱식)-100m당	줄	4,332,000	
	가리비(연승귀매달이식)-100m당	줄	2,595,000	
	가리비(천해살포식)	ha	250,000	
	가리비채묘(연승수하식)-100m당	줄	2,244,550	
	진주조개(연승수하식)-100m당	줄	762,575	
	키조개(천해이식)	ha	1,428,800	
	꼬시래기(연승수하식 100m)	줄	64,200	

품목별	규격	단위	단가(원)	비고
- 해조류	김(지주망홍식)-2.2×40m당	책	270,050	'09:155,108
	김(부류망홍식)-2.2×40m당	책	454,800	
	김(지주죽홍식)-1.8×40m당	책	177,000	
	미역(연승수하식)-100m당	줄	230,572	
	다시마(연승수하식)-100m당	줄	165,000	
	툇(연승수하식)-100m당	줄	118,000	
	참모자반(연승수하식)-100m당	줄	96,525	
	매생이(2.2m×40m)	책	83,160	
- 어류	어류양식(육상수조식)	m ²	125,537	
	어류양식(해상가두리)-5×5m당	칸	1,461,000	
	어류양식(해상가두리)-내파성5×5m당	칸	2,587,000	
	종묘생산(육상수조식)-3.3m ² 당	m ²	69,521	
	다중보온하우스-철재파이프형	m ²	31,654	
- 기타류	우렁쉥이(연승수하식)-100m당	줄	718,231	
	성게(연승수하식)-100m당	줄	1,373,000	
	새우-축계식	ha	13,000,000	
	미더덕류(판그물 100m)	줄	275,800	
- 내수면양어장	미더덕류(봉그물 100m)	줄	651,630	
	양어장(철근콘크리트)	m ²	102,070	
	가두리양어장(5×5m×4칸)	조	2,748,570	
	관리사	m ²	139,150	
	양어장관벨지붕형-철골구조	m ²	121,550	
- 기타시설	다중보온하우스-철재파이프형	m ²	31,654	
	해상가두리양식어업관리시설(4m×6m)	m ²	833,333	
	양식어업용저온저장시설(4.2m×2.4m)	m ²	2,480,159	
- 철거비	양식수산물처리시설(18m×22m)-간이	m ²	202,020	
	수산증양식시설철거	지수	재난지수의 10%	
(2) 수산생물 등의 입식				
- 패류	굴(단련종패142연)-수하식 100m	줄	568,000	
	전복(2cm미만)-투석식2만미/100,수하식1천미/100m,육상수조식	마리	350	'09:750
	전복(2cm이상)-투석식2만미/100,수하식1천미/100m,육상수조식	마리	650	
	피조개(각장2cm내외,1톤)-살포식	ha	6,000,000	
	바지락(각장1~2cm,3톤)-살포식	ha	3,750,000	
	홍합(각장2~3cm,142연)-수하식	100m	110,000	
	새고막(각장2cm내외,1톤)-살포식	ha	1,650,000	
	고막(각장2cm내외,3톤)-살포식	ha	6,000,000	

품목별	규격	단위	단가(원)	비고
- 해조류	가무락(각장2.5cm내외,3톤)-살포식	ha	6,000,000	
	동죽(각장1~2cm,3톤)-살포식	ha	900,000	
	백합(각장1~3cm,3톤)-살포식	ha	15,000,000	
	가리비(각장5~7cm,13천미)-수하식	100m	1,050,000	
	가리비(각장5~7cm,15천미)-채룡식	100m	1,050,000	
	가리비(각장5~7cm,38천미)-귀매달이식	100m	2,660,000	
	가리비(각장3~5cm,100천미)-살포식	ha	3,500,000	
	진주조개(각고5cm내외,8,820미)-수하식	100m	2,500,000	
	진주조개(직경7mm,핵2관)	핵	1,400,000	
	키조개종패(이식, 각장 15~20cm)	ha	20,000,000	
	김(50개/상자,2상자)-건홍식	책	10,000	
	미역(종묘수량150m)-수하식만기산	100m	12,500	
	미역(종묘수량150m)-조기산	100m	17,500	
	다시마(종묘수량150m)-수하식	100m	20,000	
	툫(5~20cm,15kg)-수하식	100m	100,000	
	- 기타류	참모자반(종묘수량160m)-수하식	100m	
우렁쉥이(종묘량3,000m)-수하식,줄		100m	1,739,100	
우렁쉥이종묘-연승수하식,줄		100m	468,600	
성게(체장2~3cm,1,500미)-수하식		100m	900,000	
새우(체장2cm내외,200천미)-축제식		ha	1,225,000	
새우(체장2cm내외)-육상수조식		마리	24	신설
다슬기-각고0.7~1.4cm내외		kg	74,250	
해삼(3~4)cm		마리	176	
방어(작은고기5~7cm)		마리	600	
방어(큰고기)		마리	1,708	
- 해면양식어류	넙치(작은고기5~7cm)	마리	521	
	넙치(큰고기)	마리	1,956	
	우럭(작은고기5~7cm)	마리	402	
	우럭(큰고기)	마리	1,780	
	도미(작은고기5~7cm)	마리	410	
	도미(큰고기)	마리	2,840	
	농어(작은고기5~7cm)	마리	400	
	농어(큰고기)	마리	3,280	'09:2,397
	노래미(작은고기5~7cm)	마리	341	
	노래미(큰고기)	마리	1,800	

품목별	규격	단위	단가(원)	비고
	불락(작은고기5~7cm)	마리	360	
	불락(큰고기)	마리	2,880	
	능성어(작은고기5~7cm)	마리	1,200	'09:1,000
	능성어(큰고기)	마리	6,940	
	쥐치(작은고기7~8cm)	마리	350	
	쥐치(큰고기)	마리	3,280	'09:2,475
	숭어(작은고기5~8cm)	마리	400	
	숭어(큰고기)	마리	1,155	'09:1,080
	고등어(작은고기5~8cm)	마리	200	
	고등어(큰고기)	마리	1,750	
	전어치(작은고기5~7cm)	마리	32	'09:30
	전어치(큰고기)	마리	200	
	강도다리(작은고기5~7cm)	마리	1,580	
	강도다리(큰고기)	마리	4,515	
	솜뱅이(작은고기 5~7cm)	마리	180	
	솜뱅이(큰고기)	마리	2,800	
	황점불락(작은고기 5~7cm)	마리	180	
	황점불락(큰고기)	마리	2,400	
	복어(작은고기)	마리	240	신설
	복어(큰고기)	마리	2,000	"
	민어(작은고기)	마리	200	"
	민어(큰고기)	마리	1,000	"

자 | 적조피해 예방대책 추진

1) 현황 및 실태

□ 현 황

- 여름철 바다에서 환경조건(수온, 영양염류 등)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현상으로, 점액성 물질이 어류 아가미에 부착하여 호흡곤란으로 가두리 양식장에서 피해 빈발

□ 피해 발생 실태

- '90년대 중반 이후 주요 양식지역인 전남·경남을 중심으로 피해 발생(단, '08~'09년도는 피해 미발생)

* 연도별 피해액 : ('95) 764억원 →('03) 215 →('05) 11.4 →('06) 0.7 →('07) 115

* 적조 발생경향 : '70년대 이전은 소규모 무해성(스켈레토네마) 적조였으나, '90년대 중반 이후 대규모 유해성(코클로디니움) 적조 발생

□ 적조발생 현황 및 피해액 지원현황 (“참고”1, 2)

2) 추진실적

- 적조피해예방 종합대책 수립·시달('10.5.17)
- 적조예찰선박 유류비 지원 검토 검토 개정('10.5.26)
- 적조피해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10.7.15)
- 적조위기대응매뉴얼 개정('10.7.14)

3) 향후 추진계획

- 적조피해 예방대책 추진('10.8~10월)
 - 적조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조예찰, 방제 강화 및 복구 신속 지원
- 적조발생시 중앙적조대책본부(농식품부) 및 지역대책반(지자체 등) 구성·운영('10.8~10월)
- 적조피해 예방대책 평가회의 개최('10.11)
- 적조피해 예방대책 유공자 포상 추진('10.12)

— <적조 피해 예방대책 세부 추진 사항> —

- '10년 적조 피해예방 대책 세부추진 사항
 - 적조 상설감시망(96개 정점) 지정 운영 : 3~11월, 수과원
 - 적조예찰반 운영(128개 정점) : 4~10월, 39개 시·군
 - 적조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 적조 정보 상황 D/B 구축, 수과원
 - 적조 남해 광역 및 집중조사(6월~10월, 남서해연구소, 남동해연구소)
 - 적조발생대비 양식생물 사육량 및 방제장비 일제점검('10.6~7)
 - 적조발생 우심해역 지속예찰(8~10월)

* 2008~2009년도 적조피해 없음

참 고 1

최근 10년간 유해성 적조발생 추이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최 초 발생일	8.22	8.14	8. 2	8. 13	8. 5	7. 19	8. 6	7. 31	7. 30	7.15/ 10.28
- 음 력	7. 23	6. 25	6. 24	7. 16	6.20	6. 14	7. 13	6.18	6. 28	5. 23/ 9. 11
소 멸 일	9.19	9.24	9.27	10. 13	9. 3	9. 14	10. 30	9. 18	9. 29	7.22/ 11.15
- 음 력	8.22	8.8	8.21	9. 18	7.19	8. 11	9. 9	8.7	9. 1	6.1/ 9. 29
지속기간 (일)	29	41	57	62	30	58	36	50	62	8/ 19
최초 발생지역	돌산남해도 인근	나로도 돌산 동안	붓돌바다 돌산동안	붓돌바다 남해 두리도	거제 둔덕 남부면여차	나로도 인근	가막만 하단	나로도 인근	나로도 인근, 붓돌바다	홍성A지구 방조제수문 돌산 백포
발생범위	고흥 ~기장	완도 ~강릉	완도 ~울진	진도 ~강릉	완도 ~거제	완도 ~거제	완도 ~남해	완도 ~울진	완도 ~울산	홍성A지구~천수만/여수~통영
총발생 (건)	69	56	59	45	54	39	28	16	38	10
최고밀도 (개체/ml)	15,000	32,000	30,000	48,000	5,800	25,000	22,500	32,500	7,300	-
폐 사 량 (천미)	258	7,557	5,268	13,088	219	1,638	702	9,570	-	-
피 해 액 (억원)	2.6	84	49	215	1.2	10.6	0.7	115	-	-
소멸 주요인	태풍 “사오리”	수온 하강	수온 하강	수온 하강	기상변동 및 종간경쟁	태풍 “나비”	수온 하강	수온 하강	수온 하강	종간 경쟁/ 수온 하강

※ 2009 : 7월은 서해 *Chattonella* spp.,
10~11월은 *Cochlodinium polykrikoides* 적조로 구분

참 고 2

최근 5년간 적조피해 및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03	2004	2005	2006	2007
피 해 상 황	○ 기 간	7~10월	8~10월	8~9월	7~8월	8, 10월	7~9월
	○ 지 역	전남~경북	울산,전남,경남	전남~경남	전남~경남	전남~경남	전남~경북
	○ 품 종	어류,전북	어류,전북	어류	어류,전북	어류	어류,전북
	- 가 구 - 면적(ha) - 피해량(천미)	어류: 23,050천미 전북: 5,422천패	293가구 32.6ha 13,088 (어류7,708 전북5,380	11가구 0.1ha 219	62가수 5.0ha 1,638 (어류1,632 전북 6)	2가수 702천미	251가구 118.14ha 9,571천미 (어류9,474 전북97)
	○ 피해신고액	36,058	21,501	120	1,061	73	11,498
복 구 사업비	합 계	26,612	11,306	지원없음	952	지원없음	8,818
	○ 직접비용	26,196	11,133		931		6,794
	- 국 고	10,957	4,606		437		2,378
	- 지방비	2,636	1,120		94		1,019
	- 용 자	9,278	3,979		298		2,038
	- 자 담	3,324	1,427		102		1,359
	○ 간접비용	416	173		21		2,024
	- 영어자금 상환연기 (85호)	6,456	2,891 (38호)		314 (2호)		1,936
	- 이자감면	400	162		19		88
- 학자금면제 (생계비)	5 (11)	1 (10)		1 (1)		-	

* 2008~2009년도 적조피해 없음

차 | 수산물 이력제 추진

1) 현황 및 실태

- 목적 : 생산부터 판매까지 수산물의 이력관리를 통해 문제 발생시 신속한 원료회수 및 대책 마련으로 수산물의 안전성 제고
- 추진근거 : 수산물품질관리법(제8조의2, 제44조의 2)
- 사업기간 : '05 ~ 계속('09까지 59억원 기 투자)
- 사업목표 : 참여업체 850개 업체('15년도)
- 지원조건 : 교육·홍보 등(국고100%), 시설장비 지원(국고30%)

2) 추진경과

- 수산물 이력추적제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04)
 - 3차에 걸쳐 시범사업 추진('05.5 ~'08.7)
 - * 1차 3개품목(김, 굴, 넙치) → 2차 10개품목(기존품목에 송어, 뱀장어 등 7개품목 추가) → 3차 8개품목(기존품목에서 2개품목 제외)
-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08)
 - '08. 8월부터 전 품목으로 확대 실시('10.8 현재 13개 품목 참여)

3) 성과와 반성

□ 수산물이력제에 대한 홍보 강화로 참여율 제고

○ 참여업체 현황 : 700개소(생산 137, 가공 62, 유통 17, 판매 484)

* 등록 품목 : 13종(넙치, 김, 바지락, 굴비, 전복, 다시마, 건미역, 멸치, 굴, 참돔 등)

○ 수산물이력제품 출하의 계절성 및 비연속성, 소량 생산체제로 인하여 대형판매점 등에 안정적인 공급 불가

* 수산물의 특성상 생산시기 집중 출하로 대형판매점 등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 불가

○ 사업초기로 수산물이력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음

* 인지도 조사결과 : 수산물이력제 등록품목 구입 의향은 77%로 매우 높았으나, 7.6%만 이력제 품목 구입하였으며, 전체적인 인지도는 14%로 낮은 분포

4) 향후 추진계획

□ 수산물이력제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품목확대 등 지속추진

○ ('09) 600개소/12개 품목 → ('15) 850개소/15개 품목으로 확대

□ 참여업체의 비용절감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 노력

○ 인건비, 추가비용 절감을 위한 기기 등 개발 보급, 홍보강화

□ 수산물이력제 등록품목에 대한 수출정책 강화

○ 수출용 수산물의 이력제 도입 ⇒ 영어, 일어, 중국어 등으로 이력 정보 제공 시스템 지속 추진

□ 개념

- “수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는 수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수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수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 대상품목 : 국내에서 생산 또는 단순 가공된 모든 수산물

□ 참여자 : 이력추적제 참여를 희망하여 신청·등록한 자

□ 등록 절차



□ 정보의 기록·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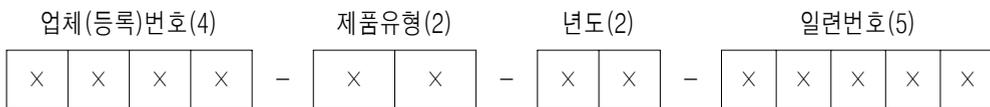
- 생산단계 : 품목명, 생산자 성명 및 주소채취일, 출하일, 위생 검사결과, 항생제 및 사료 사용 현황, 이력번호 등
- 가공단계 : 원료식별번호, 원료공급자명, 원료 입하일, 가공업자 및 공장명, 주소, 가공일, 출하일, 이력번호 등
- 유통단계 : 유통업체명, 입하일, 납품일 등
- 판매단계 : 판매업체명, 주소, 입하일, 출하일 등

□ 이력추적관리품 표시방법

- 해당 수산물의 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수산물이력추적관리품의 표시 및 표시사항(로고 및 식별번호 등 포함)을 붙이거나 인쇄
 - ※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풋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음



○ 이력추적관리번호의 구성



□ 정보의 확인

- 소비자는 이력제품 표시가 부착된 수산물에 대해 판매장에 설치되어 있는 이력정보 확인 모니터(50대 설치)나 인터넷 (www.fishtrace.go.kr)을 통해 이력정보 확인이 가능

카 | 해역별 위생등급 설정 관리

1) 추진개요

목적

- 주요수산물 생산해역에 대한 안전평가를 통하여 어장에서부터 비위생적인 위해물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체계 구축

⇒ 주산단지별 해역에 대한 등급을 설정·관리하여 양식수산물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 미국·EU·일본 등의 WTO/SPS 협정 동등성원칙에 의거, 수산물 수입관리 수단으로 활용 할 것에 사전 대비

지원근거 : 수산업법 제61조 및 수산업법시행령 제38조

사업기간 : '05 ~ 계속('09년까지 74억원 기 투자)

사업규모 : 양식수산물 주산단지 60개 해역에 대한 조사·평가

지원조건 : 국고 100%

2) 추진경과

주요 수산물 생산해역을 60개 해역으로 구분, 년차별 계획에 따라 안전평가를 실시한 후 해역별 위생등급 설정·관리

- 조사해역 : ('05) 15 →('06) 30 →('07) 45 →('08~'09) 60해역

* 매년 15개 해역씩 연차적으로 조사, 해역별 3년간 데이터를 합산하여 등급 설정 ('10년까지 조사 해역 60개 해역 평가 가능)

수산물 생산해역 위생상태 조사 및 평가('05~'10)

- 조사대상 : 60개 해역(동해 17, 서해 18, 제주 21, 제주 4)

3) 성과와 반성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위생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함한 양식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사항목〉

- 수질조사 : 대장균군, 분변계대장균, 수온, 염분, pH, DO 등
- 생물조사 : 중금속(수은, 납, 카드뮴), 대장균군, 생균수, 패류독소

〈조사방법〉

- 조사해역
 - 일반적인 조사항목은 연 12회(매월 1회)
 - 중금속은 연 3회(상·하반기 각 1회, 생산량이 많은 시기 1회)
 - 패독은 연 5회(2~6월)
- 조사완료해역 : 기 조사결과를 토대로 연 10회(중금속 2회)

4) 향후 추진계획

- '05~'10년까지 해역별 위생조사 후 등급화 관리
 - '10년 말까지 60개 해역 조사 완료예정
- 수산물 생산해역 위생관리기준 고시안 마련('10.12월)
 - 조사결과를 근거로 생산해역을 구분하여 관리
- 2011년 해역별 위생등급 사업계획수립('10.12월)

1) 추진개요

- 목적 : 안전한 수산물 생산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에 부응하기 위하여 수산물 생산 및 위생관리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수산물 수출확대와 국내소비 촉진 활성화
- 지원근거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3조 및 제25조, 식품위생법, 수산업법, 약사법, 전염병예방법, 수산자원보호령, 동물용의약품취급규칙,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국가표준기본법
- 사업기간 : '05 ~ 계속('09년까지 101억원 기 투자)
- 사업규모 : 외국과 협정 및 약정 이행, 양식장 HACCP 지원
- 보조사업 지원조건 : 컨설팅(국고50/지방20/자담30) 및 시설개선(50/30/20)

2) 추진경과

-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양식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새로운 선진 위생관리기법인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를 2005년부터 양식장에 도입 추진
 - 지원양식장(개소, 누계) : ('07) 78 → ('08) 117 → ('09) 147
- 위생약정 국가 등록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인 현지 위생점검 실시
 - ('05) 25 → ('06) 77 → ('07) 63 → ('08) 68 → ('09) 76개소
- 리스크커뮤니케이션(위해정보 전달) 교육 및 수산물 위생안전 홍보물 제작·배포
 - 교육실적(회) : ('06) 21 → ('07) 30 → ('08) 40 → ('09) 31
 - ※ '09년 신종 인플루엔자발생에 따른 집단교육 자제로 교육횟수 감소

3) 성과와 반성

- 양식장 HACCP 사업기간 단축으로 추진의 효율성 제고
 - (당초) 2년(컨설팅 1년, 시설개선 1년) → (개선) 1년6월(컨설팅 6월, 시설개선 1년)
- 양식장 HACCP 지원사업 부진
 - HACCP 출하생산물에 대한 가격 비차별화로 사업수요자의 참여가 소극적이며, 참여업체의 관리과정에서의 번거러움 등의 문제점
 - 향후 국가간 FTA 확대 체결시 수출전략 품종육성, 경쟁력 강화 및 수산물 위생·안전성을 위해 육상양식장에 대한 HACCP시설 지원사업의 추진 필요
- 주요 수산물 수출국 및 위생검사 부적합 이력국가에 대한 수입수산물 위생관리 시스템 부재

4) 향후 추진계획

- 수입 수산물의 위생관리 강화
 - 주요 수산물 교역국과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을 확대하는 등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체계 강화
 - ※ ('10년 현재) 중국 등 4개국과 체결 → ('11년 이후) 러시아, 뉴질랜드 등과 체결
- 2010 중국 등 위생약정국가에 대한 현지 위생점검
 - 점검 계획 : 70개소(중국 28, 베트남 28, 인니 7, 태국 7)
- 수산물 위생·안전교육 확대 실시
 - '10 : 40회 → '12 : 60회

파 양식장 불법시설 정비 및 단속

1) 현황 및 실태(KMI 위성관측 결과)

구분	2009년도					2010년도					전년 대비		비고
	면허 현황		실제시설량			면허 현황		실제시설량			면허 안	면허 밖	
	건수	면적(ha)	계	면허 안	면허 밖	건수	면적(ha)	계	면허 안	면허 밖			
김	994	56,321	책 675,714	책 467,225	책 208,489	955	56,742	책 651,302	책 478,121	책 173,181	↑ 2.3% (↑10,896책)	↓ 16.9% (↓35,308책)	
전북	461	2,382	1,936ha 336천칸	1,379ha 239천칸	557ha 97천칸	486	2,478	2,529ha 439천칸	1,550ha 269천칸	979ha 170천칸	↑ 12.4% (↑ 171ha)	↑75.7 (↑ 422ha)	

〈 김 〉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상당량의 양식시설이 면허밖 설치로 관측됨
 〈 전북 〉 신규 면허시설 뿐만 아니라 불법시설도 증가하는 것으로 관측됨
 〈 기타 〉 어류·굴양식, 축제식양식, 혼합양식에서 일부 불법행위 상존 추정

2) 추진 실적

- 불법양식어업 정비대책 시행계획 통보(5.4)
- 불법양식어업 정비대책 평가회 개최(6.8~6.11)
- 하계 불법양식어업 전국 일제 합동정비·단속 계획통보(7.6)
- 하계 불법양식어업 전국 일제 합동정비·단속 실시(7~8월)
- 추계 불법양식어업 일제 합동단속 계획통보(9.20)

3) 평 가

□ 반성

- 일부 지자체에서 지나친 주민여론 의식으로 불법어업 미온적 대처
- 무면허, 초과시설 등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초기 대처 미흡

□ 성과

- 양식장 불법시설 단속에 대한 행정력 집중으로 과잉생산 및 가격폭락등 사전 차단 및 소비자 신뢰 향상 계기 마련
- 엄정한 단속 실시로 자율 상생의 양식어업 풍토 조성 및 건전 양식업 발전 도약 기반 마련

4) 향후 추진계획

□ '10 하계 불법양식 정비단속 중간평가회 개최(10월)

- 회의내용
 - 하계 불법양식 정비·단속 평가(실적 및 계획)
 - 불법양식어장 정비에 따른 협조 사항과 문제점 및 해소방안에 대한 토론

□ '10 추계 불법양식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 실시

- 기 간 : '10.10~11월(2개월간)
 - ※ 김, 전복양식어업 중심으로 중점 정비·단속 실시
- 중앙차원의 지원강화: 해경·어업지도사무소 공조체제 확립

참 고

불법양식시설 적발 실적 및 처벌현황(시·도별, 최근 3년)

(단위 : 건, ha)

시·도	연도별	합 계		취소·포기		시정경고		무면허단속		자진신고철거		기 타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계	'07	383	7,678.09	1	2	309	7,264.73	21	19.7	44	386.26	8	5.4
	'08	208	3,694.72	1	21	163	3,534.52	21	27.5	17	71.7	6	40
	'09	301	4,250.78	1	1	95	2,342.6	50	64.24	151	1,842.84	4	0.1
부산시	'07	8	0.9	-	-	-	-	-	-	1	0.5	7	0.4
	'08	19	30	-	-	-	-	15	10	2	2.2	2	17.8
	'09	-	-	-	-	-	-	-	-	-	-	-	-
인천시	'07	6	23.2	-	-	5	18.2	-	-	-	-	1	5
	'08	28	143.2	-	-	15	55.5	-	-	9	65.5	4	22.2
	'09	1	15.23	-	-	-	-	1	15.23	-	-	-	-
울산시	'07	5	44.99	-	-	5	44.99	-	-	-	-	-	-
	'08	1	0.75	-	-	1	0.75	-	-	-	-	-	-
	'09	4	1.5	-	-	-	-	4	1.5	-	-	-	-
경기도	'07	-	-	-	-	-	-	-	-	-	-	-	-
	'08	-	-	-	-	-	-	-	-	-	-	-	-
	'09	2	54.2	-	-	1	25	-	-	1	29.2	-	-
강원도	'07	-	-	-	-	-	-	-	-	-	-	-	-
	'08	1	0.5	-	-	-	-	1	0.5	-	-	-	-
	'09	-	-	-	-	-	-	-	-	-	-	-	-
충남도	'07	48	1,445	-	-	48	1,445	-	-	-	-	-	-
	'08	-	-	-	-	-	-	-	-	-	-	-	-
	'09	6	10.1	-	-	-	-	2	10	-	-	4	0.1
전북도	'07	7	2.1	-	-	-	-	7	2.1	-	-	-	-
	'08	11	73	-	-	6	56	5	17	-	-	-	-
	'09	34	679.5	-	-	19	662.5	9	10	6	7	-	-
전남도	'07	275	6,119.6	1	2	239	5,736	14	17.6	21	364	-	-
	'08	48	2,658.2	1	21	47	2,637.2	-	-	-	-	-	-
	'09	114	3,342.2	-	-	66	1,618.5	15	13.7	33	1,710	-	-
경북도	'07	12	20.54	-	-	12	20.54	-	-	-	-	-	-
	'08	12	21.37	-	-	12	21.37	-	-	-	-	-	-
	'09	10	37.6	1	1	9	36.6	-	-	-	-	-	-
경남도	'07	22	21.76	-	-	-	-	-	-	22	21.76	-	-
	'08	87	766.7	-	-	81	762.7	-	-	6	4	-	-
	'09	130	110.47	-	-	-	-	19	13.83	111	96.64	-	-
제주도	'07	-	-	-	-	-	-	-	-	-	-	-	-
	'08	1	1	-	-	1	1	-	-	-	-	-	-
	'09	-	-	-	-	-	-	-	-	-	-	-	-

1) 현황 및 실태

□ 동향

- 최근의 국내 김 시장 회복 및 일본 수출 증가를 재도약의 계기로 삼고자 업계에서 김양식 질서 확립에 대한 자성 여론 부상
- 일본 표착 유해물질 의심 프라스틱 용기와 한국의 무기산 사용 실태에 대한 일본의 언론·방송 이슈화 및 日정부 대응에 국내 업계의 불안감 증폭 및 특단의 대책 필요성 공감대 확대

□ 김 활성화처리제 사용분석

- 유해물질 처리시 파래·빨썩 제거 등에 효율성 높고 작업시간이 빠름
(어가당 평균 시설량 100책(4,000m) 처리시)
 - ↳ 활성화처리제인 경우 → 6시간 소요, 처리 2일후 파래 제거/고가(6~9배)
 - ↳ 무기산인 경우 → 1시간 40분 소요, 처리 즉시 파래 제거/저가

2) 추진경과

- 외교부 주관, 관계 부처 대책회의(2회) - 우리측 입장 일본 전달
 - 한국 측 협력, 한·일·중·러가 참여하는 UNEP-NOWPAP에서 대책 마련
- 우리부 주관, 관계 부처 대책회의, 특별교육(2회), 공문지시(2회)
- 한·일 과장급 간담회('08.7.17) 및 실무회의(부산, '09.2.6)
 - 한·일 양국간 긴밀 협조하되, UNEP-NOWPAP에서 논의키로 합의
- 한·일 실무과장급회의 후속 조치로 관계기관 대책회의('09.2.25)
- 제12차 한일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폐플라스틱통 관련 논의('09.9.3)
 - ※ 제13차 한일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예정('10.9.14, 나가사키)

3) 평 가

□ 성 과

- 해양환경 친화적인 새로운 형태의 김양식 산처리방법 개발 착수
- 강산성전해수기, 고염수처리제, 육상채묘 및 냉동망처리 등
- 어업인 스스로 상생의 양식산업 풍토 조성

□ 반 성

- 유해물질 사용에 대한 죄의식 결여, 질보다는 양위주의 한탕주의 인식
으로 유해물질 사용 남발 → 품질 저하 및 소비자 불신 초래

4) 향후 추진계획

□ 시·도 및 전국 일제합동단속 실시(김 유해물질사용 포함)

- 기 간 : 매년 주기적 실시(년4회 이상)
- 중점단속 내용
- 유해물질 사용행위 및 폐플라스틱 용기 투기 행위
- 방 법
- 지자체의 김 유해물질사용 단속 강화
- 전국 일제합동단속과 병행 추진
- 우심지역 모니터링 실시(김 자조금사업 연계 추진)

※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 개정 검토

- 김생산 방법의 새로운 기술개발(강산성전해수기, 고염수처리제)
에 따라 기본사양 및 사용기준 마련 필요
- 전해수기, 고염수처리제의 적정 사용 기준 마련(국립수과원, '10.3월)
-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 개정(안) 마련 : '10. 12월
※ 의견수렴('10.8월) → 입법예고('10.10월) → 개정 공포('10. 12월)

참 고

불법 무기산 사용 단속실적

(단위 : 드럼(200ℓ), 명)

연도별	구 분	합 계	부 산	경 기	충 남	전 북	전 남
'00	적 발 량	135.2	-	-	-	-	135.2
	적발인원	6	-	-	-	-	6
	조치사항		-	-	-	-	행+사(5),사(1)
'01	적 발 량	361.5	-	-	-	-	361.5
	적발인원	16	-	-	-	-	16
	조치사항		-	-	-	-	행+사(16)
'02	적 발 량	449.7	0.8	14.9	-	-	434
	적발인원	16	8	5	-	-	3
	조치사항		행(8)	사(5)	-	-	기(3)
'03	적 발 량	39.5	0.1	-	-	-	39.4
	적발인원	4	1	-	-	-	3
	조치사항		행(1)	-	-	-	행+사(1), 기(2)
'04	적 발 량	269.5	0.1	3	15	84.5	166.9
	적발인원	27	1	2	2	1	21
	조치사항		행(1)	사(2)	사(2)	행+사(1)	행+사(7),사(5),기(9)
'05	적 발 량	250.8	0.2	2.5	-	63	185.1
	적발인원	28	2	2	-	13	11
	조치사항		행(2)	행(2)	-	행+사(13)	행+사(5), 기(6)
'06	적 발 량	290.6	-	60	-	8.8	221.8
	적발인원	9	-	1	-	-	8
	조치사항		-	사(1)	-	기(무주물)	행+사(5), 기(3)
'07	적 발 량	723.6	2	10.5	70.8	225.2	485.9
	적발인원	40	1	4	5	3	27
	조치사항		행+사(1)	-	행(5)	사(3)	행+사(21), 기(6)
'08	적 발 량	374.4	-	-	-	100	234.4
	적발인원	27	-	-	-	1	26
	조치사항		-	-	-	행+사(1)	행+사(17),사(4),기(5)
'09	적 발 량	405.3	-	4.9	-	260	140.4
	적발인원	39	-	12	-	5	22
	조치사항		-	행+사(7), 사(5)	-	행+사(5)	행(5),사(12),기(5)

※ 주 : 행(행정처분), 사(사법처분), 행+사(행정처분과 사법처분 병과), 기(무주물, 폐기처분 등)

1) 현황 및 실태

- 미 FDA 지정해역 및 등록공장 최근 정기 위생점검('08.4)
 - 지정해역의 해상 및 육상기인오염원 한·미 공동조사 병행
 - '08년 지정해역 공동조사를 통해 육상기인 오염원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짐(미 FDA측 수리학, 미생물분석 전문가도 참여)
- 한·미 패류위생실무협의 개최('08.11)
 - 지정해역 오염원 조사 및 오염원 통제계획 시한 제시요구
 - 1호 해역 7개 양식장에 채취한 시료를 미현지 FDA에서 노로 바이러스 검출 조사결과 5개 양식장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났음을 제시하고 지정해역 오염원 통제 요구

2) 추진경과

- 지정해역 오염원 통제를 위한 장단기 이행조치 시한 수립
 - 이행조치 시한 : 미 FDA 통보('08.12)
- 지정해역 생산패류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건기 및 우기조사
 - '08년 한미패류위생 실무회의 협의사항에 따라 지정해역을 126개 소해역으로 구획하여 건기 및 우기시 노로바이러스 조사 실시
 - 건기조사 : 117개소 조사(미조사해역 9개소는 폐사 혹은 미시설)
 - 우기조사 : 81개소 조사(건기조사대상 117개소 중 나머지 36개 소해역을 대상으로 기상조건(강우 20mm) 충족 시 실시

3) 성과와 반성

- 지정해역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기초 조사 실시
 - 지정해역 주변 개별 하수구 및 하천 조사 등 오염원 정밀조사
 - 지정해역에 대한 강우량에 따른 건기 및 우기 위생조사 실시
 - 주요 오염원에 대한 지정해역 내 확산범위 조사 실시
- 가두리 양식장 분변오염원 통제 곤란
 - 가두리 양식장내 설치된 소각식 화장실(135대 설치) 이용을 저하
- 잦은 고장, 소각에 따른 냄새발생 등으로 사용기피
 - 해경 등 관계기관의 현장단속의 어려움으로 인해 분변에 의한 오염물질 지속 누출

4) 향후 추진계획

- 지정해역 해상기인 오염원 통제관련 연구개발 추진('10.8~'15.7월)
- 지정해역 오염원 통제를 위한 조사결과 통보(미 FDA)('10.12월)
- 지정해역 관리방안마련('11년 3월)

□ 체결경위

- 한·미 패류위생협정 체결('72년)
 - 체결당사자 :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성
- 대미수출냉동패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87년)
 - 매 5년마다 갱신('03년 최종갱신)
 - 적용대상 : 패류(굴, 홍합, 조개, 바지락 및 가리비 등)
 - ※ '03년 양해각서 개정으로 냉장패류도 수출가능

□ 양측의 역할 분담

- 농림수산식품부
 - 미국패류위생계획(NSSP)에 적합한 수준의 위생관리
 - 패류생산해역의 지정관리 및 대미수출 가공공장 등록관리 등
- FDA
 - 한국패류위생관리실태 정기적 점검 및 지도
 - 미국의 패류위생에 관한 각종 정보의 제공 등

□ 관련 주요 추진사항

- 연도별 한국패류위생계획(KSSP)의 수립·운영
- 지정해역 지정고시 : 7개 해역(경남 5, 전남 2)
- 대미수출 패류가공공장 등록관리 : 5개 공장(거제 2, 통영 3)
 - ※ 대진식품(통영)은 '09년 등록취소됨
- 해양수산부와 패류위생관련 기관간 양해각서 체결('02.9)·운영
- 한국패류위생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앙 및 지방 협의회 구성('03.1)·운영
- FDA 정례적 점검 수검(73년부터 매년, 94년 이후 매2년)

□ 조사현황

- 시료채취 : '09. 3. 3 ~ 3. 11
 - 조사해역 : 지정해역 7개소(34,385 ha) 내 126개 소해역
 - 분석대상 : 126개 소해역 중 수확이 완료되었거나 폐사가 발생하여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소해역을 제외한 90개 소해역에서 해역당 1점씩 채취된 이매패류 시료 총 90점
 - 굴(81개소), 진주담치(2개소), 피조개(4개소), 바지락(3개소)
 - 조사결과 : 90개 해역 모두 음성반응
 - 총 90개 소해역 중 자란사량도 해역(2호 해역) 내 1개 소해역(J-19)은 제1단계 REAL TIME 방식에서는 검출되었으나, 2단계 분석인 PCR 방식에서는 불검출 되어 최종 노로바이러스 음성 최종 판정
- ※ REAL TIME 방식과 PCR 방식 모두 검출되어야 최종 양성으로 인정

□ 조치 사항

- 1단계 분석에서만 양성이 검출된 1개 소해역(J-19)은 최종적으로 노로바이러스 음성지역으로 판정받았지만, 미 FDA 권고에 의거 해역은 폐쇄되지 않고 수확기 동안 지속조사 대상으로 분류

해역	폐종별 채취 대상지점수		폐종별 채취 지점수	폐종별 미채취 지점수	미채취이유	조사결과 (검출수/시료수)
	굴					
1호 (한산거제만)	굴	22	17	5	채취완료 또는 폐사	0/17
2호 (자란사랑도)	굴	54	45	9	채취완료 또는 폐사	1/45
	진주담치	1	1	0	해당사항없음	0/1
	피조개	3	0	3	채취완료 또는 폐사	0/0
3호(미륵도)	굴	1	0	1	채취완료 또는 폐사	0/1
4호(가막만)	굴	23	13	10	채취완료 또는 폐사	0/13
5호(나로도)	바지락	3	3	0	해당사항없음	0/3
6호(창선)	굴	1	1	0	해당사항없음	0/1
	진주담치	2	1	1	채취완료 또는 폐사	0/1
	피조개	3	2	1	채취완료 또는 폐사	0/2
7호(강진만)	굴	9	5	4	채취완료 또는 폐사	0/5
	피조개	4	2	2	채취완료 또는 폐사	0/2
계		126	90	36		1/90

참 고 3**지정해역 현황****□ 지정근거**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4조(지정해역의 지정)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정해역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 해역을 지정해역으로 지정고시
-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38조(지정해역의 지정 등)
 - 지정해역 지정을 위한 위생조사·점검계획을 수립, 조사·점검실시 후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 해역을 지정해역으로 지정고시

□ 지정절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정 결정 또는 시·도지사의 지정 신청
- 대상해역에 대하여 2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위생조사를 실시
 - 위생조사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 지정해역 현황 : 7개소 34,385ha

지정번호	해역명	면적(ha)	주요생산품	관할시·도(시·군)	지정일
제1호해역	한산~거제만	2,050	굴	경남 거제·통영시	'75. 7. 5
제2호해역	자란~사랑해역	9,492	굴	경남 통영시	'84. 5.25
제3호해역	산양해역	3,107	굴	경남 통영시·고성군	'87.11.25
제4호해역	가막만	4,188	굴, 바지락	전남 여수시	'87.11.25
제5호해역	나로도해역	4,398	바지락	전남 고흥군	'99. 3.29
제6호해역	창선해역	5,860	홍합	경남 남해군	'99. 3.29
제7호해역	강진만해역	5,290	피조개	경남 남해군	'04. 3.11

참 고 4

FDA 등록 패류가공공장 현황

□ 등록근거

- 한·미패류위생협정 및 양해각서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5조(생산·가공시설 등의 등록) 및 제26조(등록시설의 조사·점검 등)

□ 세부현황

- 통영시 : 3 (대홍물산, 대원식품, 동원물산)
- 거제시 : 2 (중앙수산, 대홍물산 거제공장)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주 소
KR 6 SP	중앙수산(주)	장 욱	경남 거제시 둔덕면 어구리
KR 7 SP	대홍물산(주)	김태우	경남 통영시 미수동
KR 8 SP	대원식품(주)	조군하	경남 통영시 산양읍 신전리
KR 9 SP	대홍물산(주) 거제공장	김태우	경남 거제시 동부면 오송리
KR 12 SP	(주)동원물산	김부곤	경남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 점검개요

- 미패류위생점검관 방한 한·미 합동점검
 - FDA 점검관이 2년마다 방한, 합동점검 실시
- 우리나라 자체점검 실시(연 4회)
 - 주요 점검내용 :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이행여부
가공·제조용 용수의 안전, 시설 및 종업원의 위생관리
유독성물질의 표시, 저장 및 사용, 해충관리 등

□ 매년 미국 FDA에 등록현황 통보(12월)

- 미 FDA 주정부간패류선적자인가명부(ICSSL)에 등재되어야 수출 가능
 - ※ ICSSL : Interstate Certified Shellfish Shipper List
- 우리나라 자체점검 결과 및 등록신청서를 주미한국대사관을 통하여 미 FDA에 전달

1) 현황 및 실태

-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조치의 시행을 위한 양국간 법적 근거로서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 한-베트남('00.7월), 한-중 수산물('01.4월) 및 활어('04.12월), 한-인니('05.9월), 한-태('06.6월)
- EU 및 대일 넘치, 패류수출 위생조건 이행
 - '95년부터 EU 수출 가공시설에 대한 등록관리('09.9월)
 - 등록시설 현황 : 225개소(공장 52, 선박 173)
 - 원산지증명서 첨부시 대일수출 패류에 대해 통관검사 면제('04.10.1)
 - '01년말 가열조리용 생굴에서 패독검출로 전면 패독검사 실시
 - 우리정부의 위생관리조건으로 대일넘치수출 통관검사면제
 - 등록현황 : 양식장 586, 수출업체 401, 가공공장 8개소
 - 일본 후생노동성에 연 2회(6월, 12월) 등록현황 통보

2) 추진실적

- 수출국 정부에 의한 가공공장 및 양식장 등록시설 관리 의무화 및 수입국의 수출국 현지 등록시설 위생점검 등을 통한 수입수산물의 위생안전 사전확보
 - 위생약정체결국 등록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점검 실시
 - 최근 3년간 위생점검 실적 : ('07)63개소 →('08)64 →('09)76개소
 - 수출시는 등록시설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한해 위생증명서 발급
 - 수입수산물에서 위생안전에 관한 문제 발생 시 잠정 수입중단 조치 등

3) 성과와 반성

□ 위생약정을 통한 이중 위생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안전성 강화

- 수출국의 수출검사 시스템 개선을 통해 수입수산물 위생안전 제고 함으로써 수입 검사 시에는 효율적인 검사운영체계 수립

□ 수입수산물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위생안전시스템 강구필요

- 주요 수산물 수출국(중국, 베트남, 태국 등)을 대상으로 체결하고 있는 수산물 위생약정방식 이외에 미국, EU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입조건 방식 등 다양한 위생안전 검사방식 채택 검토

4) 향후 추진계획

□ 부산물 식품규격기준 변경에 따라 위생약정 체결 확대추진

- 4개국 5개 약정 → 점진적 확대추진(러시아, 뉴질랜드 등)

※ 부산물 식품규격기준(식약청 고시) 개정에 따라 수산부산물 수입 시 우리나라 검사기관의 인증을 받은 국가만 수입 가능

참 고 1

위생약정 현황

□ 목 적

- 주요 수산물 교역국과의 위생약정 이행을 통해 수입수산물의 사전 안전성 확보

□ 위생약정 현황(4개국 5개 약정)

국가별	약 정 명	체결부처 및 체결권자	체결	시행
베트남	한·베트남 수출·입 수산물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약정	품질검사원 원장 국립수산물품질보증및검역국 국장	2000. 7.5	2003. 4.1
중국	한·중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	해양수산부 차관 국가출입경검험검역국 부국장	2001. 4.5	2001. 7.1
	한·중 수출·입 활수생동물의 검사·검역에 관한 약정	해양수산부 장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주한중국대사)	2004. 12.16	2005. 10.15
인도 네시아	한·인니 수출·입 수산물·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약정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2005. 9.15	2005. 12.14
태국	한·태국 수출·입 수산물·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약정	해양수산부 차관 농업협력부 차관	2006. 6.27	2006. 7.27

※ 2008.8.25 한중수산물 위생약정 개정서명, 발효(2009.8.1)

○ 주요 내용

- 양국은 수산물 가공공장을 등록하고 상대국가에 명단 통보
- 양국은 상대국 등록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인 현지 위생점검 실시
- 수출시는 등록시설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한해 위생증명서 발급
- 수입수산물에서 문제발생시 완전 해결 시 까지 수입중단 조치 등

○ 주요 약정 체결국 수산물 수입검사 실적(2009년)

- 약정체결국의 수산물 수입이 전체 수입의 37% 차지

구 분	전체수입	약정체결국 수입	중국	베트남	태국	인니
수입실적(천톤)	931	360	281	53	16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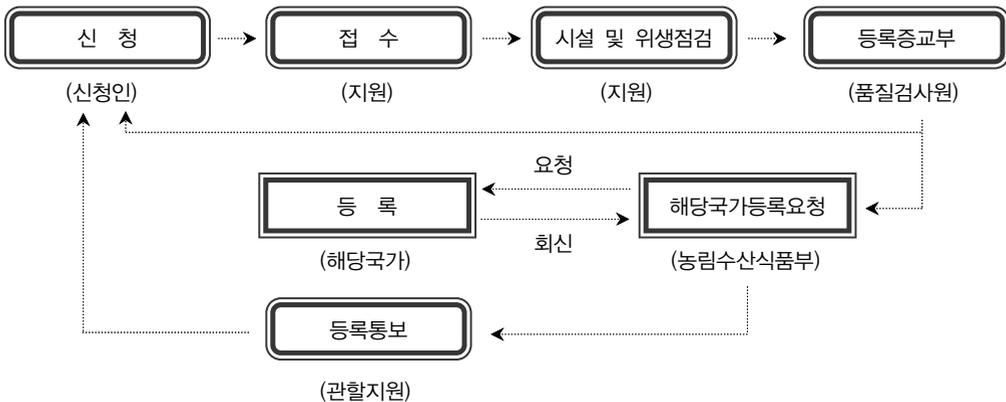
참 고 2

외국과의 위생약정 등에 의한 가공시설 등록절차

□ 등록절차

○ 국내 등록시설

- 근거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5조 (생산·가공시설등의 등록)



○ 외국 등록시설

- 등록현황 통보(상대국) → 우리부 → 품질검사원에 등록사항 통보
(홈페이지에 게재)

※ 베트남은 품질검사원과 체결한 약정으로 품질검사원에서 직접 등록업무 수행

□ 등록시설 관리

○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제41조(등록시설의 조사·점검)

○ 정기점검 : 연2회(EU등록선박 : 국내입항시 1회)

※ 국내 미입항하는 EU 등록선박(원양어선) 점검

- 스페인 지역 : 라스팔마스 해양수산물관
- 남미 지역 : 아르헨티나 해양수산물관
- 기타 지역 : 직접 현지 출장하여 점검

○ 수시점검 : 협약 등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참 고 3

위생약정 체결국가의 등록시설 수입중단조치 현황

수입중단조치 절차

□ 근거 : 수출입 수산물 위생약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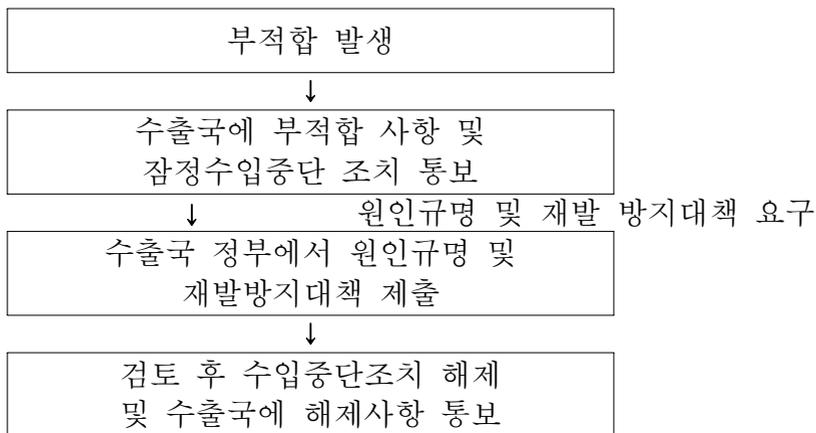
- 수입수산물에서 위생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가공시설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하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수입을 잠정중단

□ 대상국 :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 중단대상 : 수입검사결과 정밀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하는 경우

※ 관능검사항목 중 금속이물질 부적합인 경우에는 수입중단조치

□ 절차



○ 조치문서 통보 및 연락창구

- 중국 : 주중한국대사관(해양수산물) →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 태국 : 농업협력부 수산물 수산물검사품질관리과(직접 서신으로 통보)
- 인니 : 해양수산물 수산물가공유통국(직접 서신으로 통보)
- 베트남 : 수산물부 국립수산물품질보증및검역국(품질검사원에서 조치)

□ 개 요

- EU 공동체는 수산물 생산 및 출하규제에 관한 지침(91/493/EEC)을 제정, 수입수산물에도 동일하게 적용('91. 7. 22)
 - 한국산 수산물 특정수입조건('95/454/EC) 결정('95.10.23)
 - 한국산 이매패류 특정수입조건('95/453/EC) 결정('95.10.23)
- 우리나라는 '95년부터 EU 수출 가공시설에 대한 등록관리업무 시작
 - ⇒ EU는 그 동안 각 국가별 수입특정조건을 결정하여 운용하여 왔으나 06.11월 식품에 대한 통합 조치규정 적용토록 개정('07. 5. 1 시행)
 - '95/454/EC 및 '95/453/EC 폐지

□ 주요내용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EU수출수산물 위생관리 관할당국으로 지정
- EU수출수산물 생산·가공공장은 정부당국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시설(가공공장·선박)에서 생산된 수산물만 수출가능
- 패류는 지정해역에서 생산된 경우에 한하여 수출가능
- 등록현황 : 210개소(공장 52, 선박 173)
- 등록절차 : 등록신청(검사원) → 위생점검 → 등록증교부 → EU집행위원회 등록요청(주벨기에 농무관)

□ 등록시설 관리

- 정기점검 : 공장 연 2회/선박 연 1회
 - ※ 국내 미입항하는 EU 등록선박(원양어선) 점검
 - 스페인 지역 : 라스팔마스 해양수산물관
 - 남미 지역 : 아르헨티나 해양수산물관
 - 기타 지역 : 직접 현지 출장하여 점검

□ **대일수출 패류 위생관리**

- '98.4 생식용생굴 수출시 일정한 절차를 밟아 수출할 경우 일본 통관검사 면제 합의
 - 생식용생굴 대일수출요령 고시 제정('98) 운영
 - * 위생기준에 적합한 등록업체만 수출, 정기적으로 위생점검 실시
 - '01년 12월 일본에 수출한 한국산 생식용 생굴로 인하여 이질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건 이질균 검사 실시
 - ※ 생굴 유통기간이 4일로 일본 수출이 어려운 실정임
- 또한 '01년말 가열조리용 생굴에서 패독검출로 전면 패독검사 실시
 - '04.10.1일부터 원산지증명서 첨부조건으로 패독명령검사 면제

대일수출용 이매패류 원산지증명서 발급지침

- ◎ 목적 :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한 제품에 대하여는 일본 통관시 패독명령검사를 면제받기 위함
 - ※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제품은 일본 통관시 명령검사 실시
- ◎ 발급절차 : - 굴·피조개 : 굴·피조개 수협 확인 ⇒ 품질검사원 발급
 - 기타 이매패 : 지구별 수협 확인 ⇒ 시·군 발급

- 일본 후생노동성에 연 1회(12월) 등록업체 명단 통보
 - 주일대사관(수산물)을 통하여 일본 후생노동성에 전달

□ **대일 수출 양식넙치 위생관리**

- 일본에 수출한 활넙치에서 항생물질(Oxytetracycline)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일본 후생노동성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위생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통관검사 면제를 제의('99. 5)
 - '99. 9. 20 『대일수출용활넙치위생관리요령』 제정·시행
 - ※ '02. 7. 31 냉장넙치육도 포함키로 일본 후생노동성과 합의
- 양국이 합의한 위생기준에 적합한 양식·가공·업체를 등록, 품질검사원이 항생물질 검사후 증명서 발급·수출 → 일본 통관검사 면제
 - 양식장/수출업체 등록관리, 검사증명서 발급 : 수산물품질검사원
- 일본 후생노동성에 연 2회(6월, 12월) 등록현황 통보
 - 주일대사관(수산물)을 통하여 일본 후생노동성에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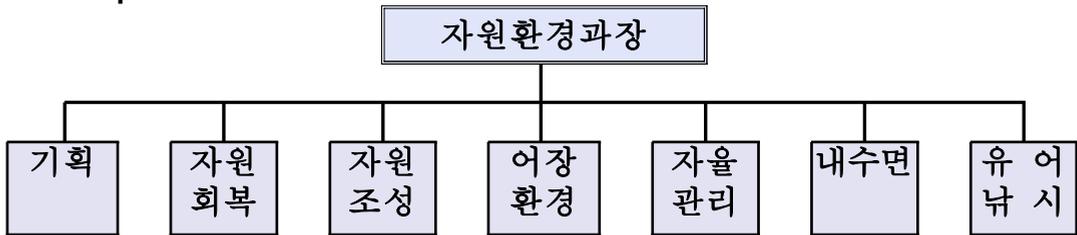
IV. 자 원 환 경 과

1. 일반현황	147
2. 비전 및 전략	150
3. 주요 추진정책	151
가. 수산자원회복정책의 체계화	151
나. 총허용어획량(TAC)제도 확대 강화	154
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	159
라. 수산자원보호구역 제도개선	167
마.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바다숲 조성	175
바. 해양관광·레저가 어우러진 바다목장 조성	178
사. 수산자원조성 전담법인 설립	183
아. 자율관리어업 확산 및 내실화	186
자. 기후변화에 따른 해파리 어업피해대책 마련	192
차. 어장정화사업	194
카. 수산생명자원관리제도 법제화 추진	199
타.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한 내수면어업 진흥	202
파. 낚시산업 육성 및 관리	216
하. 관상어 산업 육성	222
거. 어업자원관리 시스템 운영	226

1. 일 반 현 황

1. 조직 및 정원

□ 조 직



□ 정원 / 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3 급	4 급	4·5급	5 급	6·7급	수 산 연구관
정 원	15	-	1	-	7	7	-
현 원	16		1	3	4	7	1

* 수산과학원 (수산연구관 1), 수산물품질관리원 (7급 1) 파견자 포함

2. 소관법령 및 입법계획

법 률 명	주 요 내 용	추진경과 및 계획
1.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낚시제한기준 설정 ○ 낚시통제구역 지정 ○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 ○ 낚시터업 허가·등록제 시행 ○ 미끼기준 설정 ○ 낚시터업자 등의 전문교육 이수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처제출 : '09. 9 ○ 국회제출 : '10. 4 ○ 공포 : '10.12
2.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자원사업단의 사업, 설치 운영, 지도감독 등 ○ 친환경 어구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협의 : '10. 7 ○ 입법예고 : '10. 9 ○ 법제처제출 : '10.10 ○ 공포 : '10.11.18

3. 담당별 업무분장

담 당	주 요 업 무 내 용
기 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어초 개발, 보급 및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 수산종묘 매입·방류 정책 추진 및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 수산자원보호구역 제도 운용 및 지정 관리에 관한 사항 ○ 해조류 바이오매스에너지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자원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자원관리법 제·개정 및 하위법령 제·개정 운영에 관한 사항 ○ 총허용어획량(TAC) 설정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수산자원회복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자원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다목장 사업 기본 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연안(소규모) 바다목장 기본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바다 숲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어장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장관리법령 제·개정 등 운용에 관한 사항 ○ 어장관리기본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 어장관리 특별해역 지정에 관한 사항 ○ 양식어장환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수산 생명자원 관리제도 법제화에 관한 사항
자율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관리어업 추진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수산분야 공유수면점·사용 및 매립협의에 관한 사항 ○ 국토이용계획의 수산부문에 관한 사항
유해생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파리 등 유해생물 대책 관련업무
내수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면어업지원 및 관리 총괄 ○ 내수면어업법령 등 제도운영 및 관리 ○ 내수면어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유 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낚시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유어장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 관상어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어업자원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0년 (A)	'11년(안)		증감	
		요구	조정(B)	(B-A)	%
총 계	161,712	187,486	152,613	-9,099	-5.6
일반회계	31,342	61,037	58,282	26,940	86.0
바다목장 조성	26,417	-	(수산자원사업단 운영으로 통합)	-26,417	-100.0
TAC제도 운영	1,735	1,961	1,735	0	0.0
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 운영	2,190	2,252	2,252	62	2.8
해조류바이오매스에너지화	1,000	1,000	1,000	0	0.0
수산자원사업단 운영	-	55,824	53,295	53,295	(신규)
농특회계	36,353	36,123		-36,353	-100.0
해양심층수활용 자원조성시설	1,500	-	-	-1,500	-100.0
바다숲 조성	15,000	-	(수산자원사업단 운영으로 통합)	-15,000	-100.0
자율관리 어업 육성	12,894	13,823	12,844	-50	-0.4
내수면 자원조성	3,834	3,360	3,300	-534	-13.9
관상어산업 육성	-	1,800	-	0	-
낙시산업 육성	-	2,970	-	0	-
광특회계	56,788	57,638	57,314	526	0.9
인공어초사업	31,187	27,055	27,741	-3,446	-11.0
종묘매입방류	13,575	16,384	16,374	2,799	20.6
복합낙시공원 조성사업	1,750	2,848	2,848	1,098	62.7
내수면어업생산시설	3,540	2,000	2,000	-1,540	-43.5
멸종위기어종 생태계 복원	48	328	328	280	583.3
양식어장관리사업	5,688	6,023	6,023	335	5.9
토속어류산업화센터	1,000	3,000	2,000	1,000	100.0
제주특별회계	11,654	11,000	13,830	2,176	18.7
인공어초사업	7,780	7,680	9,730	-100	125.1
종묘매입방류	3,604	3,050	3,830	-554	106.3
양식어장관리사업	270	270	270	0	100.0
수발기금	25,575	21,688	23,187	-2,388	-9.3
TAC참여어업인 경영지원	11,875	11,088	10,687	-1,188	-10.0
연안어장 및 내수면환경개선	13,000	10,600	12,500	-500	-3.8
순환여과식양식시설지원	700	-	-	-700	-100.0

2. 비전 및 전략

비전 →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회복)



전략 → 맞춤형 자원관리 ↑ 자원조성 및 어장환경개선

- 추진 과제**
- 수산자원 회복정책의 체계화
 -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바다숲 조성
 - 해양관광·레저가 어우러진 바다목장 조성
 - 자율관리 어업의 지속확산 및 내실화
 - 어장환경 개선사업 확대
 -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한 내수면어업 진흥
 - 친환경 유어산업 육성



문제 인식 →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및 어장환경 오염

3. 주요 추진정책

가 수산자원회복정책의 체계화

목 표

- 생태계 안정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연근해어획량 130만톤 달성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근해 어업생산기반 구축

1) 추진배경

- 대내외 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근해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생산성 확대 필요
 - '90년대 중반 150만톤의 연근해 어획량이 '04까지 100만톤 수준으로 격감, 현 상태 지속시 어업생산기반 붕괴 우려
 - ※ 자원관리 방치시 '15년이후 연근해 자원량 390만톤, 연근해어획량 66만톤 전망

2) 추진경과

- 수산자원회복계획의 체계적 추진
 - 회복대상 어종별 자원상태 진단(자원조사·평가)을 통한 관리방안 도출
- 자원관리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령 제정
 - 법(공포 '09.4.22, 시행 '10.4.23) 및 시행령('10.4.23), 시행규칙('10.5.31) 시행

3) 성과와 반성

- 수산자원회복사업 확대(어종) : ('06) 4 → ('07) 7 → ('08) 10 → ('10) 12
 - 수산자원회복사업 추진시 회복정책 수단간 연계 및 지원 필요

4) 향후 추진계획

- 수산자원회복사업의 단계별 실행전략 추진
 - 연차별 대상어종 확대 및 자원조사·평가 강화를 통한 최적의 자원 관리방안 도출
 - ※ 회복대상어종 확대 계획 : '10년까지 12종, '15년까지 15종

□ 현황 및 문제점

- '90년대 중반 150만톤의 연근해 어획량이 '04년까지 100만톤 수준으로 지속감소, 과잉어획 상태가 지속될 경우 어획량 감소 우려
- 연근해어획량 : ('96) 160만톤 → ('04) 108만톤 → ('15) 66만톤 전망

□ 자원회복 목표 및 비전

- '15년까지 지속적인 적정 연근해 어업생산량 130만톤('09년 123만톤) 달성을 목표로 수산자원회복사업 추진

□ 사업내용

- 어종별 자원상태를 감안하여 회복대상종을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별 세부실천계획 수립·시행
- 어종별 심층적인 자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적 자원관리 방안 실시

□ 수산자원회복사업 대상어종

- '06년(4종) : 도루묵(동해), 꽃게(서특), 낙지(전남 무안), 오분자기(제주 성산)
- '07년(7종) : 참조기(서·남해), 참홍어(서해-흑산), 대구(동·남해) 추가
- '08년(10종) : 말쥐치·개조개(남해), 기름가자미(동해) 추가
- '09년(12종) : 갈치·갯장어(남해) 추가
- '10~'15년(15종) : 옥돔, 개서대, 문치가자미

참 고 2

'09년 자원회복사업 성과분석

1. 연근해 어업생산량 현황

(단위 : 천톤, 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생 산 량	1,097 (1.9%)	1,109 (1.1%)	1,152 (3.9%)	1,286 (11.6%)	1,226 (-4.7%)
생산금액	27,059 (3.7%)	27,512 (1.7%)	29,391 (6.8%)	32,294 (9.9%)	36,403 (12.7%)

2. 회복어종 어업생산량 현황(2009년)

○ 자원회복사업 대상어종 : 203,430톤 (연근해 어업생산량의 16.6% 차지)

※ 대상어종 생산금액 : 11,037억원 (연근해 어업생산금액의 30.3% 차지)

- 꽃 게 : 31,302톤 (전년대비 75.4% 증가) / 2,797억원 (전년대비 44.2% 증가)
- 도루묵 : 3,939톤 (전년대비 44.8% 증가) / 141억원 (전년대비 67.8% 증가)
- 낙 지 : 7,013톤 (전년대비 10.9% 감소) / 1,255억원 (전년대비 11.4% 감소)
- 오분자기 : 34톤 (전년대비 66.6% 감소) / 12억원 (전년대비 63.6% 감소)
- 참조기 : 34,033톤 (전년대비 2.5% 증가) / 1,550억원 (전년대비 34.4% 증가)
- 참홍어 : 3,254톤 (전년대비 42.2% 증가) / 186억원 (전년대비 82.3% 증가)
- 대 구 : 6,870톤 (전년대비 27.2% 증가) / 269억원 (전년대비 16.4% 증가)
- 기름가자미 : 19,687톤 (전년대비 2.8% 감소) / 1,359억원 (전년대비 5.7% 증가)
- 말쥐치 : 8,280톤 (전년대비 4.3% 감소) / 270억원 (전년대비 36.3% 증가)
- 개조개 : 1,918톤 (전년대비 28.2% 감소) / 88억원 (전년대비 13.7% 감소)
- 갈 치 : 85,450톤 (전년대비 18.1% 증가) / 2,964억원 (전년대비 9.7% 감소)
- 갯장어 : 1,650톤 (전년대비 26.3% 증가) / 146억원 (전년대비 40.3% 증가)

※ 대상어종 전년대비 생산량 21.3%, 생산금액 11.1% 증가

3. 불법어구 철거실적 및 성과

○ 불법어구 철거사업(전남도, 인천시) 실시 : 철거를 통한 산란·서식환경개선

- 전남도 불법어구 철거사업('09.4.10~7.10, 전남 흑산도 주변 130,000ha, 150톤)
 - 참홍어, 참조기 어업생산현황 분석(근거 : 어업생산통계 '04~'08 어획량)
 - 사업성과 : 179톤 철거(계획 대비 119% 달성) / 어업생산량 확대, 소득증대 예상
- 인천시 불법어구 철거사업('09.7.1~8.31, 전남 흑산도 주변 367,700ha, 100톤)
 - 꽃게 어업생산현황 분석(근거 : 어업생산통계 '04~'08 어획량)
 - 사업성과 : 139톤 철거(계획 대비 139% 달성) / 어업생산량 확대, 어업질서 유도

○ TAC 어획량 관리방안 제고 등 TAC제도 정착 도모

나 총허용어획량(TAC)제도 확대 강화

목 표

- UN해양법 협약 발효('94.11)에 따른 수산자원의 유지, 회복계획 수립 및 TAC 대상어종 연차별 확대·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력 유지

1) 추진배경

- UN해양법 협약의 이행(제61조, 제62조)
 - 연안국의 자국 EEZ 생물자원 허용어획량 결정, 수산자원 유지 및 회복계획 추진
-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체결로 새로운 어업질서 재편 및 어장 축소에 따른 자원관리 필요성 대두
- 남획·어획량 감소 등 어업관리 제도의 한계 극복을 위한 제도 보완 필요

2) 추진경과

- TAC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및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규칙
 - 수산자원관리법 제정('09.4)으로 수산자원관리 제도를 일원화
- TAC 대상어종 확대(업종/어종) : ('99) 2/4 → ('03) 7/9 → ('10) 12/11

3) 성과와 반성

- 대상자원의 생산량 증가 및 소득 안정화 추세
 - 어획량(천톤) : 고등어('03) 122 → ('09) 203, 갈치 ('03) 63 → ('09) 85
붉은대게('03) 19 → ('09) 30, 참조기 ('03) 7 → ('09) 34

□ TAC 참여업종의 생산량 조절 및 휴어기 등 자원관리 추진

- 대형선망수협이 자율적 휴어기 운영('05년부터, 음력3.14~4.14)
- 붉은대게 어업인들이 TAC실시를 위한 단체를 결성하고 어선별 월 생산량 관리(톤급별 월어획량 제한) 및 금어기(7.10~8.31) 자율 실시
- 근해대게협회는 자율적으로 일일생산량 관리(4,500미/1일), 대게 포획금지 기간 1개월 연장(6.1~10.31 → 6.1~11.30)
- 잠수기수협 자율적 생산량 관리(개조개 : 200kg/1일, 키조개 : 4천미/1일)
- 인천자망협회 자율적으로 연평어장 및 서해특정해역에서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7.1~8.31)을 '10.7.1~9.15일까지 연장
- 신안군 압해면 어촌계 어업인들이 자율 금어기(6.12~8.9) 설정

4) 향후 추진계획

□ TAC 대상어종 및 조사원 연차별 확대

- “수산자원회복계획” 실시와 연계하여 '15년까지 13종으로 확대
- TAC 어획량관리를 위한 양륙장 수산자원조사원의 연차별 증원
※ 수산자원조사원 확보 계획(명) : ('09) 43 → ('10) 70 → ('11) 80 → ('15) 120

□ 과학적인 자원조사 및 자원관리 등 관리시스템 강화

- TAC 대상어종 등 연근해 주요어종에 대한 자원진단 및 평가 강화
- TAC 어획량 관리방안 제고 등 TAC제도 정착 도모

□ 도입배경

- UN해양법협약의 이행('94.11 발효)에 따른 당사국으로 협약 내용 준수
 - 연안국은 자국 EEZ의 생물자원 허용어획량을 결정하여 수산자원의 유지 및 회복계획을 추진(협약 61조, 62조)
 - 연·근해어업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어업자원 관리체제 전환
 - 전통적 어업관리제도(금어기, 금지체장 등)의 한계로 인하여 자원남획 및 어획량감소에 따른 제도 보완 필요
- ※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제도란 : 개별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

□ 추진현황

- TAC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 수산업법('95.12) 및 수산자원보호령('96.12)을 개정, 총허용어획량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98.4), TAC제도 시행을 위한 제도정비 마무리
 - 분산(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등)되어 있던 총허용어획량(TAC)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정('09.4)으로 일원화
- TAC제도 기본운영계획 수립('98.12)
 - '98.12월 TAC제도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적용대상 수역 및 TAC 산정방법 명시
- TAC제도 실시 현황(업종/어종) : ('99) 2/4 → ('01) 4/7 → ('02) 5/8 → ('03) 7/9
→ ('07) 10/10 → ('10) 12/11
- 수산자원조사원 제도 도입 및 관리·운영('00.1) : ('00) 9 → ('10) 70명
- TAC 관리대상어종의 판매장소 지정제 실시('04.1) : ('04) 93 → ('10) 117개소
- TAC 참여 어업인 경영개선자금('01~'10년 1,125억원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자원의 증강 및 소득 안정화

- 수산과학원의 자원평가결과를 기초로 어종별 연간 어획량을 산정하여 자원을 관리하고, 어업인의 자원보호 노력 등으로 연근해 어업생산량 자원량 증가 추세
 - * 어획량(천톤) : 고등어('03) 122 → ('09) 203, 전갱이 ('03) 20 → ('09) 22
 붉은대게('03) 19 → ('09) 30, 꽃게 ('03) 10 → ('09) 31
- 개조개 및 키조개를 어획하는 잠수기어업은 남획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가격이 안정되어 어업소득 증대
 - * 개조개 : ('05) 4,500원/kg → ('09) 7,500, 키조개 : ('05) 2,290원/kg → ('09) 5,000

○ 생산량 조절 및 휴어기 지정 등 자원관리체제 구축

- 대형선망수협(고등어, 전갱이, 오징어)은 '05년부터 수산자원보호 및 어가유지를 위해 1개월간(음력3.14~4.14) 휴어기 자율 실시
- 잠수기수협은 개조개, 키조개의 자원보호와 어가유지 등을 위해 자율적으로 생산량 관리(개조개 : 200kg/1일, 키조개 : 4,000미/1일)
- 붉은대게 어업인들이 TAC실시를 위한 단체를 결성하고 어선별 월 생산량 관리(톤급별 월어획량 제한) 및 금어기(7.10~8.31) 자율 실시
- 근해대게 협회는 자율적으로 일일생산량 관리(4,500미/1일), 대게 포획금지기간 1개월 연장(6.1~10.31 → 6.1~11.30)
- 인천자망협회 자율적 휴어기 운영 서해특정해역에서의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7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을 7월1일부터 9월15일까지로 연장
- TAC 제도 참여를 기반으로 한·일 수산분야 민간 단체간 협력체제를 구축, 자원관리에 능동적 역할 수행(붉은대게, 대게)

참 고 3

총허용어획량(TAC) 연도별 소진량 현황

(단위 : 톤)

구 분	1999년 할당량/ 소진량 (%)	2000년 할당량/ 소진량 (%)	2001년 할당량/ 소진량 (%)	2002년 할당량/ 소진량 (%)	2003년 할당량/ 소진량 (%)	2004년 할당량/ 소진량 (%)	2005년 할당량/ 소진량 (%)	2006년 할당량/ 소진량 (%)	2007년 할당량/ 소진량 (%)	2008년 할당량/ 소진량 (%)	2009년 할당량/ 소진량 (%)	2010년6 할당량/ 소진량 (%)
계	208,460/ 193,921 (93)	245,400/ 124,028 (50.5)	238,750/ 194,328 (81.4)	231,928/ 166,247 (71.7)	231,650/ 161,298 (69.6)	218,650/ 193,670 (88.6)	215,983/ 154,374 (71.1)	217,670/ 131,861 (60.6)	465,930/ 313,718 (67.3)	478,990/ 360,329 (75.2)	407,680/ 349,202 (85.6)	602,300/ 194,999 (32.4)
고등어 (Mackerels)	133,000/ 152,640 (115)	170,000/ 83,629 (49)	165,000/ 156,081 (94.6)	160,000/ 126,502 (79.1)	158,000/ 116,226 (73.6)	155,000/ 151,268 (97.6)	160,000/ 111,169 (69.5)	155,000/ 88,134 (56.9)	154,000/ 125,729 (81.6)	159,000/ 147,945 (93.0)	159,000/ 148,589 (93.5)	169,000/ 6,316 (3.7)
전갱이 (Jack mackerels)	13,800/ 6,499 (47)	13,800/ 9,376 (68)	10,600/ 9,335 (90.3)	10,600/ 10,593 (99.9)	11,000/ 10,979 (99.8)	10,000/ 9,933 (99.3)	12,000/ 11,991 (99.9)	19,000/ 11,370 (59.8)	19,000/ 9,108 (47.9)	21,000/ 10,967 (52.2)	18,000/ 16,044 (89.1)	20,000/ 6,170 (30.8)
정어리 (Sardines)	22,660/ 9,533 (42)	22,600/ 661 (3)	19,000/ 125 (0.7)	17,000/ 0 (0.0)	13,000/ 2 (0.0)	5,000/ 2 (0.0)	5,000/ 0 (0.0)	5,000/ 0 (0.0)	5,000/ 77 (1.5)	5,000/ 0 (0.0)	(제외)	(제외)
붉은대게 (Red Snow crab)	39,000/ 25,249 (65)	39,000/ 30,362 (78)	28,000/ 19,319 (69)	28,000/ 17,996 (64.3)	22,000/ 20,328 (92.4)	22,000/ 22,745 (103.4)	22,000/ 21,813 (99.1)	24,500/ 23,828 (97.3)	25,000/ 25,090 (100.4)	27,700/ 27,467 (99.2)	29,000/ 28,845 (99.5)	31,000/ 17,186 (55.4)
대게 (Snow crab)				1,220/ 947 (77.6)	1,000/ 611 (61.1)	1,000/ 780 (78.0)	1,000/ 805 (80.5)	1,000/ 1,128 (112.8)	1,200/ 1,135 (94.6)	1,500/ 1,120 (74.7)	1,400/ 821 (58.6)	1,300/ 1,067 (82.0)
개조개 (Purplish washington clam)			9,500/ 6,051 (63.7)	9,000/ 5,319 (59.1)	9,000/ 4,677 (52.0)	8,000/ 4,636 (57.9)	7,000/ 3,854 (55.1)	5,100/ 2,672 (52.4)	3,700/ 2,608 (70.5)	3,200/ 2,141 (66.9)	1,700/ 1,694 (99.7)	2,100/ 1,081 (51.5)
키조개 (Pen shell)			4,500/ 1,479 (33)	2,500/ 1,426 (57)	2,500/ 1,635 (65.4)	2,500/ 1,740 (69.6)	2,300/ 2,293 (99.7)	2,440/ 2,440 (100.0)	3,200/ 2,733 (85.4)	3,200/ 2,898 (90.6)	3,100/ 2,792 (90.1)	2,700/ 1,385 (51.3)
제주소라 (Cheju top shell)			2,150/ 1,988 (90.2)	2,058/ 1,965 (95.5)	2,150/ 1,951 (90.7)	2,150/ 1,688 (78.5)	1,683/ 1,585 (94.2)	1,629.5/ 1,346 (82.6)	1,480/ 1,351 (91.3)	1,500/ 1,357 (90.5)	1,320/ 1,291 (97.8)	1,500/ 1,370 (91.3)
꽃게 (Blue crab)				1,550/ 1,499 (96.7)	13,000/ 4,889 (37.6)	13,000/ 878 (6.8)	6,000/ 864 (14.4)	4,000/ 943 (23.6)	3,350/ 2,809 (83.9)	6,890/ 6,420 (93.2)	7,380/ 6,803 (92.2)	8,000/ 1,710 (21.4)
오징어 (Common squid)									250,000/ 143,078 (57.2)	250,000/ 160,014 (64.0)	185,000/ 141,257 (76.4)	365,000/ 157,893 (43.3)
도루묵 (sailfin sandfish)											1,500/ 923 (61.5)	1,500/ 690 (46.0)
참홍어 (skate ray)											200/ 143 (71.9)	200/ 131 (65.5)

※ 오징어 : (2007)'07.7.1.~'08.6.30.

※ 오징어 : (2008)'08.7.1.~'09.6.30. / (2009)'09.7.1.~'10.6.30.

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

목 표

- 수산자원 증대를 위하여 인위적으로 수중에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을 조성하여 어장의 생산성 증대
- 연안정착성 및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종묘를 민간 배양장으로부터 매입, 연안에 방류함으로써 수산자원증강 및 민간의 자원조성사업 참여 유도

1) 추진배경

- 연근해 오염, 자원남획 등으로 어업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연안해역에 수산자원 조성기반을 확충 필요
 - 지속 가능한 생산체계 기반 구축을 위해 연안어장에 인공어초 시설 및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종묘를 방류, 수산자원의 증강 및 어촌경제 활성화 도모

2) 추진경과

가. 인공어초사업

- 1971~1980년 : 시험시설 단계(1,539ha)
 - 수산자원증식과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2가지 수단으로 사용
- 1981~1990년 : 사업정립 추진단계(52,851ha)
- 1991~2001년 : 시설효과 인정, 사업 확대 단계(157천ha)
- 2002~현재 : 어초어장 사후관리 및 갯녹음어장 회복사업

※ 2009년까지 추진실적

- 인공어초시설 : 사업비 8,844억원 / 207천ha 시설(시설가능적지의 67.5%)
- 어초어장 사후관리 : 사업비 304억원
- 해중립조성 : 사업비 192억원 / 667ha의 해중립 조성

나.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 1986년부터 민간 배양장에서 생산한 수산종묘 매입 방류
- 1997~2001년 : 사업 대상 시·도 확대 및 내수면 품종 추가
 - 6개 시·도 → 10개 시·도로 방류사업 대상지역 확대
 - 2000년 3종(해면 3종) → 2001년 13종(해면 5종, 내수면 8종)
 - ※ 지원형태 : 국고 80%, 지방비 20%(96년까지는 국고 100%)
- 2002~2009년 : 해역별 경쟁력 높은 특산품종 확대 육성
 - 황복, 꽃게, 대하, 참가리비, 가자미, 돛류 등
 - '02년 19종 → '05년 30종 → '09년 44종(해면 33종, 내수면 11종)
 - '02) 27억원/85백만미 → '05) 89/92 → '09) 152/104
 - ※ 지원형태 : 국고 70%, 지방비 30%(97년~2001년 국고 80%, 지방 20%)

3) 성과와 반성

- 지속이용 가능한 수준의 수산자원 증대 효과 거양
 - 어초어장 사후관리 강화 및 갯녹음 해역 해중립 조성으로 연안 생태계 회복과 어패류 산란·서식장 제공
 - 어초시설 후 어획량이 평균 0.50~4.09배 증가
- 종묘매입·방류로 연안어장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
 - ※ 어획효과 : 대하(3배), 조피볼락(1.5~1.8배), 전복(6배)
-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지자체내 우선순위가 밀려 타 부문에 비해 예산 감소 추세
- 물량위주 방류사업 집행으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수산자원 조성 효과 미흡
 - 회유성 어종은 광범위한 해역으로 이동 회유하므로 국가차원의 계획방류가 효과적이나 지역에 따라 소량 방류 실시

4) 향후 추진계획

□ 기존 시설된 어초의 사후관리 강화

- 시설어초의 위치파악, 폐기물 수거, 보수·보강 등 어초어장의 사후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

□ 인공어초 적지선정 및 효과조사 강화

- 인공어초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설해역의 어장형성, 자원 상태, 어획량 등 종합적인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최적지에 시설
- 인공어초별 효과조사를 실시하여 해역 특성에 맞는 어초시설

□ 어초시설 수역에 대한 자원보호 조치 강화

- 어초 시설지역 또는 예정수역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확대 지정
-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 및 어업인 홍보활동을 강화

□ 인공어초 사업과 갯녹음(백화현상) 대책 병행 추진

- 백화현상 발생 연안역의 해중립 조성사업 병행 추진으로 어장 주변 생태계 조기회복

□ 품종확대 및 방류표준화 마련·보급

- 해역별 환경 및 어장특성에 적합한 방류품종 지정·방류
- 방류해역별 자연집단의 다양성 유지를 고려한 품종 다양화

□ 품종 다양성 유지를 위한 방류종묘 생산 시스템 마련

- 방류된 종묘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자연순치시설(해상가두리 종묘양성시설 등) 갖춘 생산자의 종묘를 최우선 매입
- 물량 위주보다 특화품종, 우량품종 방류를 위해 종묘구입단가는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함

□ 종묘방류 사후관리 강화

- 시·도지사는 종묘방류 6개월경과 후 반드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방류사업 예산의 일부를 사용하여 효과조사를 실시
- 방류수역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어구제한, 포획금지기간 설정

5) 중기투자계획

□ 인공어초 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원별	총사업비	'07까지	'08	'09	'10	'11	향후투자
합 계		2,029,850	804,602	48,067	49,978	46,113	57,253	1,023,837
인공어초시설	국 비	992,100	607,052	32,229	32,879	32,139	37,952	249,849
	지방비	236,500	159,092	8,024	8,186	6,028	9,488	45,682
어초어장관리	국 비	90,000	22,516	3,171	3,181	2,793	4,350	53,989
	지방비	22,500	5,629	793	795	335	1,088	13,860
해중림 조성	국 비	551,000	8,250	3,080	3,950	4,035	3,500	528,185
	지방비	137,750	2,063	770	987	783	875	132,272

□ 수산종묘 관리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원별	총사업비	'07까지	'08	'09	'10	'11	향후투자
합 계		298,629	57,292	17,233	20,850	19,199	21,000	163,055
종묘매입방류	국 비	202,000	40,244	11,478	13,902	13,650	14,000	108,726
	지방비	82,200	16,202	4,914	5,958	4,642	6,000	44,484
방류효과조사	국 비	10,100	594	590	693	656	700	6,867
	지방비	4,329	252	251	297	251	300	2,978

참 고 1

인공어초사업 시설현황

□ 시설면적

(단위 : ha)

시도	적지(A)	시설현황						진척율(%) B/A
		합계(B)	'05까지	'06	'07	'08	'09	
합계	306,751	206,500	188,028	5,450	4,698	3,965	4,359	67.3
부산	2,704	2,658	2,314	88	88	72	96	98.3
인천	20,276	10,551	9,291	328	244	196	492	52.0
울산	2,546	2,370	2,116	64	56	74	60	93.1
경기	7,598	4,681	3,556	192	193	352	388	61.6
강원	27,791	23,084	22,160	240	230	250	204	83.1
충남	30,746	17,347	15,739	516	528	-	564	56.4
전북	15,772	14,365	10,857	1,142	1,022	848	496	91.1
전남	55,973	42,673	39,249	896	868	829	831	76.2
경북	27,360	23,128	22,556	104	172	164	132	84.5
경남	51,220	35,886	34,670	516	268	268	164	70.1
제주	64,765	29,757	25,520	1,364	1,029	912	932	45.9

□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시도	합계('09까지)			2005 까지			2006			2007			2008			2009		
	합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합계	847,462	672,160	175,302	685,604	542,621	142,983	44,086	32,164	8,041	40,205	32,267	8,068	40,335	32,229	8,024	41,065	32,879	8,186
부산	13,125	10,492	2,633	9,645	7,652	1,993	1,000	720	180	900	720	180	900	700	140	840	700	140
인천	50,709	40,568	10,141	35,521	28,418	7,103	4,038	3,150	788	3,938	3,000	750	3,750	3,000	750	3,750	3,000	750
울산	10,105	8,082	2,023	6,544	5,234	1,310	1,000	630	158	788	600	150	750	978	245	800	640	160
경기	31,338	21,080	10,258	23,160	14,538	8,622	1,423	1,201	300	1,501	1,000	250	1,250	1,890	473	3,064	2,451	613
강원	78,536	62,707	15,829	68,036	54,307	13,729	2,500	1,800	450	2,250	1,800	450	2,250	2,400	600	3,000	2,400	600
충남	74,610	59,689	14,921	58,637	46,911	11,726	4,500	3,240	810	4,050	3,538	885	4,423	3,000	750	3,750	3,000	750
전북	57,212	45,749	11,463	38,462	30,749	7,713	2,184	4,000	1,000	5,000	4,000	1,000	5,000	4,000	1,000	3,750	3,000	750
전남	166,398	133,416	32,982	134,557	107,943	26,614	8,903	5,400	1,350	6,750	6,973	1,743	8,716	6,600	1,650	8,125	6,500	1,625
경북	83,262	66,430	16,832	71,755	57,225	14,530	3,045	2,006	501	2,507	2,634	659	3,293	2,199	550	2,958	2,366	592
경남	139,655	110,252	29,403	124,800	98,369	26,431	7,333	4,617	1,154	5,771	2,422	606	3,028	2,422	606	3,028	2,422	606
제주	142,512	113,695	28,817	114,487	91,275	23,212	8,160	5,400	1,350	6,750	5,580	1,395	6,975	5,040	1,260	8,000	6,400	1,600

참 고 2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현황(실 집행액 기준)

□ 지역별 추진실적

(단위 : 천미/백만원)

구분	합 계		'04까지		'05		'06		'07		'08		'09		'10. 8월현재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계	1,343,855	87,875	650,217	20,746	92,267	8,958	128,359	10,642	84,454	16,038	90,524	16,391	104,460	15,100	193,574	13,072
부산	9,689	2,760	1,145	575	789	254	1,706	400	804	357	1,570	675	2,142	499	1,533	375
인천	76,580	10,716	2,560	1,691	3,373	917	4,080	1,094	15,072	2,609	8,000	1,885	25,780	2,520	17,715	2,860
울산	16,346	4,355	1,822	943	2,043	600	1,948	536	3,730	518	2,000	905	1,674	853	3,129	707
경기	7,701	3,298	2,878	926	1,829	939	1,913	900	1,081	533	-	-	0	0	0	0
강원	41,139	10,768	6,483	2,597	4,454	1,293	6,280	1,531	4,395	1,877	5,490	2,000	6,758	1,470	7,279	823
충북	10,912	1,356	3,322	298	723	142	1,295	184	974	144	954	258	2,909	330	735	160
충남	620,413	10,974	372,896	2,887	24,219	722	43,493	636	27,321	2,701	40,000	2,153	24,091	1,875	88,393	1,992
전북	178,396	3,725	125,555	1,649	410	152	9,603	443	2,201	406	3,620	643	3,413	432	33,594	1,139
전남	283,175	8,913	114,413	2,835	46,555	1,002	48,973	908	12,460	1,064	20,000	1,143	20,040	1,961	20,734	864
경북	14,304	6,770	4,027	2,059	1,947	611	1,881	814	2,181	1,286	1,278	1,278	1,401	722	1,589	740
경남	69,095	12,366	13,018	2,271	4,313	862	4,621	950	11,318	2,416	5,367	3,319	13,830	2,548	16,628	2,172
제주	16,105	11,874	2,098	2,015	1,612	1,464	2,566	2,246	2,917	2,127	2,245	2,132	2,422	1,890	2,245	1,240

□ 어종별 추진실적

(단위 : 천미/백만원)

구분	합계		'04까지		'05		'06		'07		'08		'09		'10.8월말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계	1,343,855	101,008	650,217	20,746	92,267	8,958	128,359	10,642	84,454	16,038	90,524	16,391	104,460	15,101	193,574	13,072
조피볼락	37,130	8,721	11,013	1,966	2,787	783	1,586	674	6,946	1,944	5,183	1,613	4,298	690	5,317	1,051
대하	879,913	5,532	583,520	2,867	61,214	205	89,903	379	25,701	239	3,781	1,020	19,977	280	95,817	542
전북	31,731	23,421	8,824	7,581	3,856	2,913	3,516	3,122	4,627	3,826	2,358	844	4,833	2,820	3,717	2,315
넙치	46,266	12,554	11,321	3,517	4,482	1,608	3,843	1,236	12,508	3,389	1,884	72	6,543	1,407	5,685	1,325
감성돔	23,827	5,038	4,461	1,007	2,940	563	2,598	514	4,214	821	1,308	317	4,093	1,043	4,213	773
돌돔	13,914	5,093	1,794	693	1,045	520	2,183	867	2,694	780	2,295	887	1,846	738	2,057	608
보리새우	48,055	693	6,897	158	2,090	188	1,680	30	1,873	35	32,463	188	3,052	94	0	0
참돔	5,855	1,175	1,177	189	648	176	362	56	618	83	1,020	331	700	178	1,330	162
해삼	18,878	5,667	1,059	253	1,532	358	4,310	997	2,925	771	4,247	948	2,745	1,470	2,060	870
황점볼락	2,643	1,197	-	-	-	-	45	20	478	198	497	364	976	370	647	245
볼락	14,699	3,376	652	240	920	284	1,887	457	2,771	814	206	288	1,623	593	6,640	700
가자미류	6,286	888	-	-	20	30	94	146	-	-	6,172	712	0	0	0	0
꽃게	57,381	8,467	2,603	84	1,751	298	3,811	711	7,687	813	4,718	3,878	23,009	1,309	13,802	1,374
황복	915	456	677	356	238	100	-	-	-	-	-	-	-	-	-	0
농어류	2,252	869	317	142	-	-	-	-	-	-	470	252	638	209	827	266
기타	22,476	5,638	-	-	-	-	-	-	1,222	843	7,660	2,030	5,787	1,568	7,807	1,197
내수면	131,634	12,223	15,902	1,693	8,744	932	12,541	1,433	10,190	1,482	16,262	2,647	24,340	2,332	43,655	1,704

참 고 3

인공어초 현황

□ 일반어초(52종)

순번	어 초 명 칭	규 격	용 도	재 질	선정년도	추천자	권 리 자
1	사각어초	2.0×2.0×2.0m	어 류	콘크리트	1982	과학원	수산과학원
2	삼보형어초	6.8×5.0×5.97m	어 류	콘크리트	1990	강원도	현재현
3	원통형어초	φ1.8×2.0m	패조류	콘크리트	1983	강원도	현재현
4	반구형어초	φ2.0×1.3m	패조류	콘크리트	1982	제주도	주재욱, 광병남
5	육각어초	6.0×5.2×3.0m	어 류	콘크리트	1992	과학원	수산과학원
6	요철형어초	2.5×2.0×1.5m	패조류	콘크리트	1994	강원도	송익하
7	육교형어초	2.4×2.4×1.2m	패조류	콘크리트	1993	제주도	고우방, 주재욱
8	빨삼각형어초	1.4×1.3×1.5m	패조류	콘크리트	1993	제주도	주재욱
9	방갈로형어초	2.2×2.2×1.4m	패조류	콘크리트	'00.01.06	제주도	고우방외1
10	반원가지형어초	5.0×3.45×2.85m	어패류	콘크리트	'00.03.23	강원도	오영덕
11	신요철형어초	2.45×2.0×1.5m	패조류	콘크리트	'00.03.23	강원도	손익하
12	2단상자형강제어초	14.0×14.0×9.0m	어 류	강 제	'01.01.30	경북도	포스코외 4개사
13	상자형강제어초	9.0×9.0×10.2m	어 류	강 제	'01.01.30	경북도	포스코외 4개사
14	연약지반용강제어초	10.0×10.0×2.0m	어 류	강 제	'01.01.30	경북도	포스코외 4개사
15	강제침선어초		어 류	강 제	2000	과학원	수산과학원
16	상자형어초	3.0×3.0×3.0m	어 류	콘크리트	'02.03.08	과학원	수산과학원
17	어패류용세라믹어초	2.33×2.44×1.5m	어패류	황토·패각	'02.11.21	과학원	과학원, 주(해중)
18	패조류용대형세라믹어초	3.02×3.45×1.8m	패 류	황토·패각	'02.11.21	과학원	과학원, 주(해중)
19	패조류용어초	2.0×2.0×1.15m	패 류	콘크리트	'02.11.21	과학원	수산과학원
20	강제증식어초	6.0×4.0×1.0m	어패류	강제·석재	'02.11.21	전남도	이익효
21	대형강제어초	12.0×12.0×8.0m	어 류	강 제	'02.11.21	전남도	이익효
22	사각전주어초	3.64×3.64×3.64m	어 류	콘크리트	'03.07.11	충남도	충남도, (주)태성
23	대형전주어초	3.22×3.66×7.5m	어패류	콘크리트	'03.07.11	충남도	충남도, (주)태성
24	중형연약지반용강제어초	9.0×9.0×4.0m	어 류	강 제	'03.07.11	전남도	이익효
25	팔각반구형대형강제어초	13.5×9.0m	어 류	강 제	'04.12.15	경남도	포스코외 7개사

순번	어 초 명 칭	규 격	용 도	재 질	선정년도	추천자	권 리 자
26	팔각반구형중형강제어초	12.8×6.0m	어 류	강 제	'04.12.15	경남도	포스코의 7개사
27	팔각반구형소형강제어초	12.5×4.0m	어 류	강 제	'04.12.15	경남도	포스코의 7개사
28	폴리콘어초	9.5×12.0×5.5m	어패류	PE, 황토, 강제	'05.07.06	인천시	환경자원공사외2
29	아치형어초	2.9×2.4×1.4m	패조류	콘크리트	'05.07.06	강원도	유삼열
30	원통2단강제어초	11.0×11.0×13.2m	어류용	강 제	'05.07.06	제주도	21세기해양개발
31	정삼각뿔형어초	3.12×3.12×2.9m	패조용	콘크리트	'06.02.20	경기도	해주이엔씨(주)
32	반툭니형해중립초	2.3×2.3×1.5m	해중립	콘크리트	'06.08.31	과학원	수산과학원
33	소형전주어초	3.66×7.50×1.81m	어 류	콘크리트	'07.6.22	충남도	(주)태성
34	PC침목어초	4.8×3.51×2.21m	어 류	PC침목	'07.11.28	충남도	충남도, 태성(주)외1
35	팔각상자형강제어초	10.0×10.0×8.0m	어 류	강 제	'07.11.28	전남도	청암건설(주)
36	돔형증식어초	6.04×6.04×2.05m	패조류	강제, 석재	'07.11.28	제주도	부민건설(주) 외1
37	사각복합형인공어초	3.0×2.0×2.4m	패조류	콘크리트, 강제	'07.11.28	제주도	부민건설(주) 외1
38	점보형강제어초	12.0×12.0×9.0m	어 류	강 제	'07.11.28	과학원	과학원, KORDI
39	사다리꼴복합강제어초	10.0×10.0×5.0m	어 류	강 제	'07.11.28	과학원	과학원, KORDI
40	십자형해중립초	3.0×3.0×0.5m	해중립	콘크리트	'07.11.28	과학원	과학원
41	피라미드강제어초	10.0×10.0×7.0m	어 류	강 제	'07.11.28	KORDI	KORDI
42	터널형어초	2.5×2.1×2.1m	해중립 어류용	콘크리트	'08.06.03	강원도	(주)나우앤하우
43	굴패각어초	5.2×5.2×3.0m	어류용	굴패각, 사석, 강제	'08.06.03	과학원	과학원, 경남도, (주)해중
44	부채꼴베란다사각어초	3.0×3.0×3.5m	어류용	콘크리트, 굴패각	'08.11.27	인천시	(주)태화건설
45	테트라형어초	2.90×2.90×2.50m	패조류	콘크리트	'08.11.27	인천시	(주)태성건설 외
46	복합형해중립초	1기 : 8×12×1.65m, 1조 : 24×30×1.65m	해중립	강제, 사석 등	'08.11.27	강원도	동성해양개발(주)
47	피라미드구조 인공어초	10m×10m×6m	어류용	PE, 강제	'08.11.27	전북도	(주)우미건설
48	신사각전주어초	3.64×3.64×3.64m	어류용	콘크리트	'08.11.27	중앙협 의회	(주)태성건설
49	다기능성어초	기재생략	패조류	콘크리트, 사석	'08.11.27	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50	하우스형해중립초	2.40×3.50×1.38m	해중립	강제, 암석	'08.11.27	과학원	과학원, (주)부민건설
51	이중돔형어초	3.8×3.3×2.4m	패조류, 해중립	콘크리트	'09.12.31	인천시	(주)선재
52	석재조합식어초	13.2×13.2×8.2m	어류용	콘크리트	'09.12.31	제주도	(주)부민건설

라 수산자원보호구역 제도개선

목 표

- 수산자원보호구역 육지부의 합리적 조정(단기)
 -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조정기준 충족시 우선 해제
 -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만 존치
-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의 허용행위 확대 추진(장기)
 - 일반주택 허용 등 건축제한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1) 추진배경

□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 70년대 산업화에 따른 수질오염으로 양식장 피해발생 등 연안생태계 및 수산생물의 주요 산란·서식지 보호
- 경남·전남·충남의 10개만(21개 시·군) 4,239km²를 지정·관리

계	해 수 면			내수면
	계	육지	해면	
4,239(km ²)	3,903	1,263	2,640	336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 등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규제의 합리적 개선요청(기획재정부, 지자체 등)
- 지정 후 30여년이 경과함에 따른 주변 어업환경 및 지역개발 여건 변화 등 재조정 필요성 대두
- 수보구역에서 육지부를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률개정안 발의('10. 7.26, 윤영 의원 등 10인)

2) 추진경과

□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08~'09)

- 지역별 전문가 및 전문기관(KMI)의 조사·연구용역을 거쳐 조정 기준 마련('03~'04)

< 조정기준 >

□ 존치대상지역(축소조정)

- 육지는 해안선으로부터 연안육역 500m 이내 지역
- 도서는 해안선으로부터 육역 100m 이내 지역
-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지방2급 이상 하천 양안으로부터 300m 이내 지역
- 무인도 및 10호 미만의 유인도 ※ 해면부는 존치

□ 존치대상지역(500m, 100m 이내) 중 해제지역

- 남해안 선벨트 개발계획 등 국가 및 지자체의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
-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읍·면사무소가 있는 法定里·洞 지역 등)
- 하수종말처리장 등 오염처리시설 설치(가동) 지역
- 일정면적(10,000㎡) 이내 10호 이상의 취락

- 육지부 1,243km² 중 68%인 843km²를 해제하고 400km² 존치

- * 해제 후 남는 면적은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동 지역은 보호유지가 원칙임

□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허용행위 완화('10. 4.23부터 시행)

- 관광지·관광단지내 숙박시설의 바닥면적·층수제한 완화
 - 1천m², 3층 이하 → 건폐율 40%, 21m 이하
- 마리나 선박계류시설 및 태양광·풍력발전 시설 허용
 - 요트, 마리나 등 해양레저산업을 남해안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리나 선박 계류장 등 신규 허용

□ 수산자원보호구역 합리적 조정을 위한 기준 추가

- 국가 및 지자체의 개발계획 확정 전이라도 “공영개발, 오염방지 대책 수립, 지역여론 수렴”의 요건을 갖추면 조정할 수 있도록 기준 추가('10. 3.15, 농식품부)

* 전남 강진군의 신전관광단지 조성사업 협의 동의('10. 3. 30 / 총사업비 672억원)

3) 성과와 반성

- 육상유입 오염원 차단으로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 보호
- 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 시설 등에 대한 용도·규모 제한으로 거주 주민 불만 고조
 - 오폐수 등의 오염원은 개별법에 따라 유입을 차단할 수 있으므로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의 건축규제 완화요구

4) 향후 추진계획

- 주민불편해소 측면에서 조정기준 완화
 - 마을 공동하수 처리시설 설치 지역은 모두 해제
 - * 현재 남아있는 마을은 오염처리시설이 설치(가동)되지 않고 있는 지역임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을 권장하여 소득증대기반 마련
-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의 허용행위 확대추진(장기계획)
 - 행위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 등)

참 고

수산자원보호구역 현황

□ 총 괄

(단위 : km²)

구 분	계	해 수 면			내수면
		계	육지	해면	
지정	4,239	3,903	1,263	2,640	336
조정	924	924	863	61	-
존치	3,315	2,979	400	2,579	336

○ 해수면

구 분	시·군	육 지 부 (㎡)		해 역 부 (㎡)		고 시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합 계		1,263,146,303	400,384,555	2,640,374,702	2,579,624,811	
조 정 전	무안군	49,954,143	19,391,109	48,450,000	48,450,000	국토부-337('08.7.25) 농식품부-146('08.12.30)
	영광군	32,870,960	14,097,464	76,950,000	76,950,000	국토부-337('08.7.25) 농식품부-146('08.12.30)
	장흥군	5,528,000	2,902,401	85,070,000	85,070,000	농식품부-91('08.10.23) 농식품부-146('08.12.30)
	고흥군	257,679,569	69,644,336	334,870,000	334,870,000	농식품부-90(10.22) 농식품부-146('08.12.30)
	마산시	31,342,000	11,106,304	93,850,000	93,850,000	국토부-337('08.7.25) 농식품부-146('08.12.30)
	거제시	134,933,000	40,200,357	153,059,000	153,059,000	농식품부-105('08.11.24)
	사천시	21,279,238	9,826,410	43,650,000	43,650,000	농식품부-123('08.12.30)
	고성군	71,181,379	24,619,277	141,648,250	141,648,250	농식품부-140('08.12.30)
	홍성군	35,882,000	313,000	29,388,000	29,238,000	농식품부-149('08.12.30)
	남해군	54,516,600	3,353,584	198,695,000	198,605,564	농식품부-138('08.12.30)
	완도군	155,995,840	37,831,204	236,912,000	218,899,021	농식품부-141('08.12.30)
	해남군	74,520,000	20,812,760	31,580,000	28,384,100	농식품부-142('08.12.30)
	강진군	52,296,026	21,343,942	61,724,000	54,589,981	농식품부-143('08.12.30)
	함평군	36,759,548	11,904,000	33,318,452	33,318,452	농식품부-145('08.12.30)
	여수시	122,540,000	39,890,893	396,848,000	372,548,000	농식품부-144('08.12.30)
	하동군	7,042,000	1,056,184	9,981,000	9,981,000	농식품부-139('08.12.30)
	통영시	69,579,000	24,189,524	455,448,000	452,629,000	농식품부-139('09.7.23)
보성군	3,170,000	1,824,806	80,120,000	75,071,443	농식품부-441('09.12.18)	
조 정 예 정	순천시	160,000	160,000	27,400,000	27,400,000	농식품부-139('08.12.30)
	태안군	44,864,000	44,864,000	91,250,000	91,250,000	농식품부-139('08.12.30)
	서산시	1,053,000	1,053,000	10,162,000	10,162,000	농식품부-139('08.12.30)
유지	보령시			1,000	1,000	농식품부-139('08.12.3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3호(권한의 위임 및 위탁)

- 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도시관리계획 중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또는 위탁

○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 ①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②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허가대상 행위"라 한다)에 한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1.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2.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조림, 육림, 임도의 설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39조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

-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계획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40조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허가대상 행위 및 허가절차 등)

- ① 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16과 같다.

1. 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건축하는 행위

- 가. 농업·임업·어업용으로 이용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
- 나. 농산물·임산물·수산물 가공공장과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의 부산물 가공공장.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인 선박으로서 배의 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어선을 건조 및 수리하는 조선소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법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농어가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마목 중 종교집회장 및 같은 호 자목 중 학원
 - 3)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외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농원지역 안에 건축하는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의 일반음식점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의 전시장(박물관,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마목의 동·식물원(동물원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학원·도서관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나목의 자연권 수련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외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농원 지역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건폐율이 40퍼센트이고 높이 21미터 이하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용 및 수산업용인 것만 해당한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동물 관련 시설의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중 관망탑과 휴게소
- 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 더. 공익시설 및 공공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1) 문화재관리 또는 해양홍보·교육을 위한 시설
 - 2) 「습지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습지보전·이용시설
 - 3) 군사작전에 필요한 시설(레이더 기지, 진지, 초소) 및 예비군 운영에 필요한 시설
 -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의 공동구판장·하치장 및 창고
 - 5) 사회복지시설
 - 6) 환경오염방지시설
 - 7) 도로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업무시설 및 창고
-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 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라목의 계류시설
- 버.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

3. 법 제5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위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조림, 육림 및 임도의 설치
- 나. 문화재의 복원
- 다.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시설의 설치 및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라. 토지의 합병 및 분할
- 마.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등 공공시설의 유지·보수, 적조 방지, 어장정화 및 농업에의 사용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토석의 채취
- 바. 관계 행정기관의 동의 등을 받아서 하는 공유수면의 준설, 준설토를 버리는 장소의 조성 또는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
- 사. 전체 무게 500톤 이하, 전체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수산업을 위하여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아.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도로구역·접도구역 또는 하천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 또는 하천공사
- 자. 통신선로설비, 안테나, 전주, 열공급시설, 송유시설, 수도공급설비 및 하수도의 설치
- 차.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도로공사 또는 하천공사 등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현장사무소, 자재야적장 또는 아스팔트제조시설 등 해당 공사용 부대시설의 설치
- 카. 「연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

마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바다 숲 조성

목 표

- 갯녹음 해역에 바다 숲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복원
 -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을 조성하여 수산자원 회복
- 바다 숲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신성장동력으로 개발
 - 해조식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및 웰빙산업 개발
 - 바다 숲을 해조 바이오매스 대량 생산기반의 선도적 역할 수행

1) 추진배경

□ 갯녹음 발생

- 국내연안은 동해안 및 제주도 등에 약 7,000ha 발생하고 있으며, 독도·서해안에서도 일부 발생
- 외국의 경우 대부분 전 연안으로 확산추세
 - 일본 전연안, 미국 캘리포니아주 전연안 1,500km, 캐나다 센터로 렌스만 2,000km

□ 발생 원인

- 쿠로시오 난류의 확산, 극심한 염분 변동으로 인한 영양염 부족, 해조식물 섭식 동물의 증가 등이나 정확한 원인은 규명 안됨
- ※ 갯 녹음이란 유용한 해조군락이 감소하고, 이용가치가 없는 무절석회조류가 대량 번식하여 연안의 바위 표면이 백색 또는 홍색으로 변화하는 바다사막화 현상

2) 추진경과

□ 추진 내용

- 산림녹화 사업에 준하는 대규모 바다 숲 조성
 - 바다 숲 조성을 위한 생태기반 및 갯녹음 실태조사 : 35,000ha
 - 갯녹음 심화해역 시범 조림사업('09~'12) : 7,000ha
 - 갯녹음 발생 주변해역 대규모 바다 숲 조성('13~'19) : 28,000ha
- 해조식물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신성장동력으로 개발
 - 청정에너지 및 웰빙산업(식품·의약품)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
 - 해조류 대량생산 기술 및 대량 생산기반 조성

□ '09~'10년 조성 실적 및 계획

- '09년도 조성실적 (120ha)
 - 포항(30ha), 강릉(30ha), 거제(20ha), 태안(1ha), 서귀포(20ha),
- '10년도 조성계획(250ha)
 - 동해(30ha), 영덕(30ha), 화성(10ha), 남해(20ha), 여수(40ha, 2개소), 서귀포(50ha, 2개소), 여수엑스포 주변해역(70ha)

3) 성과와 반성

- 성공적인 바다숲 조성을 위하여 갯녹음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규명 우선
- 바다숲 조성해역 적지선정 및 이식용 종묘 확보를 전년도에 조기 완료하여 차년도 사업이 적기에 순차적으로 수행 필요
- 바다숲 조성 후 해조류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도록 초기에 일정기간 사후관리 필요
- 바다숲 조성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과 해역별로 적합한 바다숲 조성 방향에 대하여 검토 필요

4)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억원]

추진내용	총투자액	'09	'10	'11	'12	'13년 이후
총 계	3,110	100	150	150	230	2,480
○ 바다숲 조성해역 기반조사(35,000ha)		20	5	5	30	
○ 바다숲 시범조림(7,000ha)		60	125	125	169	
○ 바다숲 대규모 조성 (35,000ha)						2,410
○ 바다숲조성사업 DB 구축 및 지속적 모니터링		2	8	14	8	20
○ 바다녹화주간 설정 대국민 참여행사 실시		8	4	4	20	50
○ 해조류 바이오매스 그린에너지 사업화 · 대량양식 자동화 및 통합적 활용 → '10년이후 별도 사업화		8	5			
○ 경제성 분석		2	3	2	3	

참 고

갯녹음 발생 및 해중림 조성 현황

□ 갯녹음(백화) 발생 현황

시도별	마을어장	발생면적(ha)	발생비율(%)	비 고
계	35,101	6,954	19.8	
강 원	소계	11,216	929	8.3
	고 성	3,489	48	1.4
	속 초	551	15	2.7
	양 양	1,854	26	1.4
	강 릉	2,890	118	4.1
	동 해	573	182	31.8
	삼 척	1,859	540	29.0
경 북	소계	8,422	1,311	15.6
	포 향	2,973	571	19.2
	경 주	554	73	13.2
	영 덕	1,372	225	16.4
	울 진	2,730	340	12.5
	울 릉	793	1052	12.9
울 산	1,012	173	17.9	
제 주	14,451	4,541	31.4	

목 표

- 연안해역에 인공어초, 해조장 등을 시설하여 수산생물의 서식 공간을 제공하고 우량 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조성하는 체계적 생산관리시스템 구축
- 유용한 수산자원을 조성하여 지속적 어업생산을 가능케 하고, 조성된 자원과 어장을 관광·레저목적으로도 활용하여 어업 및 어업외 소득증대를 도모

1) 추진 배경

□ 유엔 해양법 발효,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등 대내외 어업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해양생태계를 적극적으로 보전하면서 어업생산 및 어업경영을 영속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미래지향적 연안 수산 자원조성 필요성 대두

☞ 일정한 해역에 인공어초와 해중림초 같은 인공구조물로 수산자원의 산란 및 서식장을 조성하고 건강한 종묘를 방류하여 자원량 증대를 도모하며, 여기에 합리적인 이용관리로 어업인의 소득 향상은 물론 국민들의 연안 공간 이용 욕구를 충족시키는 관광·레저를 포함하는 미래 지향적 어촌 소득 향상 사업

□ 추진 경위

- 1985. 12. 18 : 연안어장 목장화계획(수산종합계획)수립 『대통령보고』
- 1998~2006 : 제1단계 통영 시범바다목장 조성
- 2001~2012 : 해역특성 바다목장 모델개발(동·서·남·제주)
- 2006~ : 제2단계 연안 바다목장 조성(2020년 50개소)

2) 추진경과

□ 해역별 특성에 따라 해양관광·레저 기능이 어우러진 ‘테마형’ 바다목장 5개소 조성

- 어로형(통영·여수), 갯벌형(태안), 관광형(울진), 체험·관광형(북제주)

□ 통영 바다목장 완공으로 수산자원조성의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

- 자원량 : 98년(초년) 118톤 / 05년 909톤(7.7배) / 16년 7,189톤(60.9배)
- 어업인 소득 : 98년 (216억원) / 06년 (253억원) 26% 향상

(단위 : 억원)

연도별 \ 해역별	합 계	통 영	여 수	울 진	태 안	제 주
총사업비	1,589	240	307	355	337	350
사업기간	'98~'12	'98~'06	'01~'10	'02~'12	'02~'12	'02~'12
'09까지 투자	845	240	275	90	124	116
'10 예산	179	완료	32	55	47	45
목장유형(면적)	248km ²	어업형 (20km ²)	다도해형 (110km ²)	관광형 (20km ²)	갯벌형 (75km ²)	체험·관광형 (23km ²)

□ 어업인의 실질적 소득증대를 위한 연안 바다목장 조성

- 통영 바다목장 성과가 가시화 되면서 지자체 및 어업인 등이 연안 바다목장 지원요구 확대
- '06년 4개소(군산·강릉·거제·제주), '07년 3개소(보령·군산·사천), '08년 2개소(연평, 속초), '09년 3개소(기장, 강정, 신안), '10년 5개소(서천, 태안, 진도, 울주, 영덕) 추진 중

* 사업기간 5년, 개소당 50억원, 국고 50%(일반회계), 지방비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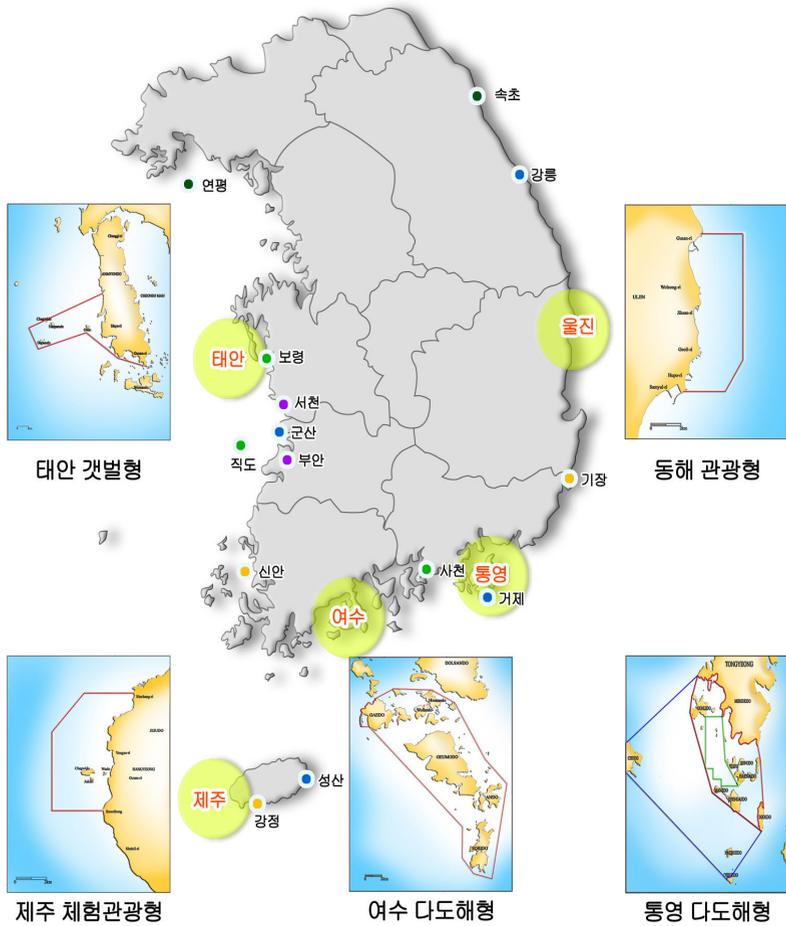
3) 주요 성과

- 국내 최초 통영 바다목장 조성사업 완공으로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
 - 자원량 : 98년 (118톤) → 05년 (909톤) 7.7배 증대
 - 어업인 소득 : 98년 (216억원) → 06년 (253억원) 26% 향상
- 해양관광을 접목한 테마형 바다목장 조성
 - 여수 바다목장은 2012 여수엑스포와 연계 바다 숲 조성
 - 울진(관광형), 제주(체험·관광형), 태안(갯벌형) 해양관광 계획 마련
- 통영 바다목장 성과 가시화로 연안 바다목장 확산
 - 2005년 연안바다목장 기본계획 수립, 2006년부터 사업 착수
 - ※ 2008년 현재 9개소, 2012년까지 20개소 추진

4) 향후 추진 계획

- 바다목장 해양 관광·레저 시설 도입 본격 추진
 - 바다목장 체험관, 바다낚시터, 수중테마공원 등 관광·레저시설 실시설계 및 관련 부지 확보(6~12월)
 - ※ 2012년까지 총 256억원 투입 해양 관광·레저 시설 도입
- 바다목장 조성사업 평가 및 설명회 개최
 - 매년도 추진사업 평가(2회) 및 설명회(4회) 개최 실
 - 학계, 전문가, 관계공무원, 어업인 등의 평가 및 의견수렴
- 2011. 1월 수산자원사업단 출범으로 통합 수행 계획
 - 수산자원조성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인력조직 운영
 - 국가 및 지자체의 시범 및 연안 바다목장을 위탁 수행

바다목장 위치도



- '06년 소규모바다목장
- '07년 소규모바다목장
- '08년 소규모바다목장
- '09년 소규모바다목장 예정지역
- '10년 소규모바다목장 예정지역
- 시범바다목장 5개해역

연안 바다목장 사업 추진 현황

지역	위치	면적	유형	기간	주요 사업 내용
강릉	강릉시 정동진 해역	900ha	관광형 + 교육형	06~10 (5년간)	- 종묘방류 : 전복, 해삼, 쥐노래미, 볼락 가자미 - 시설 : 유어낚시터, 수중관광시설, 스킨 수쿠버
거제	거제시 남부면 도장포 해역	500ha	어로형 + 관광형	“	- 종묘방류 : 볼락, 전복, 해삼 - 시설 : 인공어초, 해조장, 유로낚시터 등
군산	군산시 옥도면 연도 해역	2,000ha	어로형	“	- 종묘방류 : 조피볼락, 넙치 등 - 시설 : 인공어초, 해조장 등
성산	서귀포시 성산포 신양 해역	530ha	어로형 + 관광형	“	- 종묘방류 : 전복, 오분자기, 돌돔 - 시설 : 인공어초, 해조장 등
보령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 해역	368ha	어로형 + 관광형	07~11	- 종묘방류 : 넙치, 조피볼락, 전복, 참돔, 감성돔 등 - 시설 : 인공어초, 해조장, 생태체험장 등
직도	군산시 옥도면 연도 등 해역	608ha	어로형	“	- 종묘방류 : 조피볼락, 넙치, 감성돔 등 - 시설 : 인공어초, 해조장 등
사천	사천시 동서동 및 서포 해역	100ha	어로형	“	- 종묘방류 : 볼락, 황점볼락, 감성돔, 해삼, 전복 - 시설 : 인공어초, 해조장 등
연평	인천시 옹진군 연평 해역	530ha	어로형 + 관광형	08~12	- 종묘방류 : 전복, 오분자기, 돌돔 - 시설 : 인공어초, 해조장, 바다낚시터 등
속초	속초시 장사 해역	190ha	어로형 + 관광형	“	- 종묘방류 : 강도다리, 쥐노래미, 조피볼락 - 시설 : 인공어초, 연안 생태체험장, 수중전망대
기장	부산시 기장군 해역	300ha	어로형 + 관광형	09~13	- 종묘방류 : 조피볼락, 전복, 돌돔 - 시설 : 인공어초, 해조장 등
신안	신안군 신의면 고평사 해역	200ha	어로형 + 관광형	“	- 종묘방류 : 참돔, 전복, 바지락, 등 - 시설 : 인공어초, 해조장, 체험어장, 낚시터 등
강정	서귀포시 강정 동 연안 해역	500ha	어로형 + 관광형	“	- 종묘방류 : 자바리, 돌돔, 전복류 등 - 시설 : 인공어초, 해조장 등
영덕	영덕군 영해면	500ha	관광 체험형	10~14	종묘 : 강도다리, 넙치, 조피볼락, 쥐노래미 시설 : 인공어초, 해중립, 관광시설 등
울주	울주군 온산읍	1,256ha	유어 낚시형	“	종묘 : 볼락, 쥐치, 해삼, 전복 시설 : 인공어초, 투석
진도	진도군 의신면	100ha	유어 낚시형	“	종묘 : 감성돔, 조피볼락, 농어, 민어, 전복, 해삼 시설 : 인공어초, 투석, 해중립, 낚시공원
태안	태안군 태안읍	1,100ha	복합형	“	종묘 : 참굴, 바지락, 해삼, 전복, 꽃게 시설 ; 인공어초, 해중립, 유어낚시터
서천	서천군 서면 오력도	236ha	어로형	“	종묘 : 조피볼락, 대하, 넙치, 꽃게 시설 : 인공어초, 해중립

사 수산자원조성 전담법인 설립 (수산자원사업단 설립 운영)

목 표

- 정부기관의 경직성 탈피, 자율, 경쟁, 성과중심의 공공기관 설립
 - 수산자원 사업기획 기능 및 설계·시공능력 대폭 확보경영의 효율화 및 사업의 효율성을 지향하는 조직 구성
 - 경영 효율화 및 선진화를 지향하는 경영관리
-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조성·관리를 위한 수산 뉴거버넌스 설립
 - 연안 생태계의 지속적 관리·보존 체계 확립
 - 국민의 해양수요에 부응하는 수산자원 조성

1) 추진 배경

- 농림수산분야 국가연구기관을 정부출연 연구기관화 방침 발표(17대 대통령 인수위, '08. 1. 16)
 - 농림수산업 관련 연구개발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강화
 - 국립수산과학원 기능 중 법인화가 용이하고 효과성이 기대되는 수산자원조성과 관련된 기능을 우선 법인화 추진
 - 나머지 수산분야 조사·연구기능은 여건성숙을 통해 점진적 추진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수산자원사업단)>

- ① 정부는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 수산자원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자원사업단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2) 추진경과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10.4.28) 및 공포('10.5.17)
- 수산자원사업단 설립 추진 계획 수립 보고(6월)
- 수산자원사업단 설립위원회 구성·운영(8~11월)
 - 수산계, 학계, 법조계, 관련 단체 등 7인 이내 구성

3) 사업영역, 조직 및 예산

사업단 업무영역

- 바다목장, 바다숲, 인공어초, 건강종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 연안생태환경, 기후변화, 자원조성평가, TAC 등 연안생태계관리
- 자원조성마케팅, 해양레저, 관광, 체험 등 수산자원이용사업
- 어초어장관리, 연안바다목장 등 국가 및 지자체의 위탁·대행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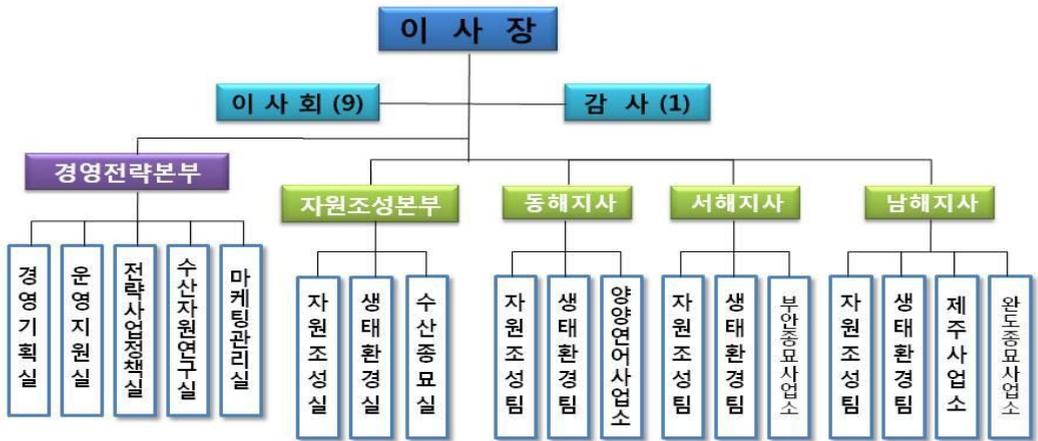
사업단 조직 : 2본부 8실 3지사 4사업소

- 본사 : 경영전략본부, 자원조성본부 등, 2본부 8실
- 지사 : 동해지사, 서해지사, 남해지사, 3지사 6팀
- 사업소 : 양양연어사업소, 부안종묘사업소, 완도종묘사업소, 제주사업소

수산자원사업단 인력 및 예산협약: 5~9월

- 대상인력 : 정원 81명 + 비정규직(TAC옵서버) 70명 = 151명
- 확보 예산 : 민간보조금 53,295백만원
 - 민간경상보조: 12,068백만원(인건비 5,535백만원, 6,533백만원)
 - 민간자본보조: 41,227백만원
 - 시범바다목장 17,417백만원, 연안바다목장 8,500백만원, 바다숲 12,974백만원, 건강종묘방류 1,226백만원, 연구개발비 1,100백만원)

수산자원사업단 조직표



4) 향후 추진 계획

□ 수산자원사업단 임직원 선발

- 이사장, 경영전략본부장, 비상임 이사 및 전환직원 선발(10.10~11월)

○ 수산자원사업단 설립 준비 및 출범

- 국유자산 이관 및 본사 및 지사 개보수(10.11월)
- 법인 설립, 등기(10.11.18) 및 출범식(11. 1월초)

○ 수산자원사업 관련 규정, 지침 및 추진체계 정비

아 자율관리어업 확산 및 내실화

목 표

- 자율관리어업을 어촌사회 선두 변화 중심세력으로 육성하여 어업 관리의 기본 틀로 정착
- 2012년까지 전 어촌계의 60%까지 참여 확대

1) 추진배경

- 면허·허가제도 등 간접적인 수산자원 관리방식은 많은 비용과 노력이 투자되어도 자원회복에 한계

※ 어선 톤당어획량 : ('70년대) 5.1톤 → ('80년대) 3.8톤 → ('90년대) 3.1톤

- 자원이용 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어장 및 자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불법어업을 예방하도록 '01년부터 동 제도 도입

2) 추진경과

- 자율관리어업 시범사업 실시계획 수립('01.2)
- 시·도에 '지역협의회('03.7)를 구성하여 규약, 공동체 선정 등 심의
 - 지도자협의회를 구성('04.9)하여 정부와 공동체간 가교역할 담당
- 한국수산회에 전담팀을 설치('06.1, 2명)하여 교육·홍보 등 담당
 - 수협중앙회는 전국대회 개최('04년 이후) 및 지도자 양성교육 등을 담당
- '03년부터 매년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개최

※ 제1회 목포, 제2회 통영(VIP 참석), 제3회 천안, 제4회 제주, 제5회 보령, 제6회 속초, 제7회 여수(예정)

□ 한국수산회에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04.8)하여 공동체간 어업 분쟁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소

○ '08년까지 25건의 분쟁사례를 발굴하여 18건 해결 완료

□ '06년부터 공동체 평가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매뉴얼 마련('07)

○ 매년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풍요, 모범, 협동, 참여 등 등급화

○ 우수공동체 지도자는 정부포상 및 해외연수 기회제공

※ 해외연수 169명, 정부포상 133점(훈장 1, 대통령표창 14, 총리표창 10, 장관표창 108)

3) 성과와 반성

□ 자율관리어업 참여공동체의 지속적인 확대

○ 참여공동체 : '01) 63개소 → '04) 174 → '10.6) 831개소(13배 증가)

○ 참여어업인 : '01) 5천명 → '04) 15 → '10.6) 60천명(12배 증가)

□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하는 분위기 확산 및 불법 어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어촌사회가 새롭게 변화

○ 법규 준수 등 수동적 자원관리에서 능동적 자원 조성 활동으로 전환

□ 자율관리어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자원이 회복되고 소득이 향상되는 공동체가 속속 가시화

○ 자율관리어업 참여공동체의 최근 2개년('07~'08) 소득이 매년 3~8% 증가된 것으로 조사(어가소득은 1.7~2.2% 증가)

※ 공동체 평균 소득: ('06) 1,010백만원→('07) 1,094(전년비 8.3% 증가)→('08) 1,128백만원(3.1%)

□ 어업인의 자율관리 참여부족으로 변화주도 중심세력 역할 미약

○ 전국 1,978개('08년) 어촌계 중 약 38%만 자율관리어업에 참여

- 공동체 지도자 고령화로 지도력 약화 및 미래에 대한 투자 기피
 - 공동체 지도자 중 60세 이상이 33%(50세 이상은 약 80%)
- 아직도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공동체 존재
 - 출어경비 상승 등에 따른 어업경영 어려움으로 자원관리 등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 자체조성 소홀

4) 향후 추진계획

- 참여공동체를 2012까지 전 어촌계의 60%까지 확대
 - 참여공동체 : ('01) 63개소 → ('05) 308 → ('09) 750 → ('12) 1,200
 - 육성사업비를 확대 지원하여 공동체 참여 및 확산 유도
 - 참여공동체의 약 25% 정도 육성사업비 지원
 - ※ 육성사업비 지원 : ('09) 242개소/230억원 → ('10) 234개소/237억원 (3%증)
 - 공동체 등급에 따라 육성사업비 차등 지원하여 공동체간 경쟁유도
 - 최우수공동체 3억원, 풍요공동체 2억원, 모범공동체 1억원 지원
 - 시·도 사업배정시 어선·복합의 광역공동체에 일정비율 할당 지원
 - ※ '10년도는 전체(234개소)의 45%(106개소)를 어선·복합·광역공동체에 지원
- 어업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자율관리공동체가 어촌사회를 선도하는 중심체로 육성
 - 권역별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도자 리더쉽 함양 교육 실시
 - 성공한 공동체 지도자를 적극 활용하여 성공노하우 등 전파
 - 수산사무소 지자체 이양에 따라 민간컨설턴트를 지역담당제로 지정하여 지역여건 및 공동체 특성에 맞는 컨설팅 실시

□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여 공동체 참여의식 고취 및 확산 “봄” 조성

- ‘10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제7회) 개최(11.4~5, 여수)
 - 자율관리어업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및 공로자 포상 등
- 성공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참여의식 고취 및 확산 “봄” 조성
 - 입상자는 정부포상(부상), 소속공동체는 차년도 육성사업비 특별 추가 지원(2~5천만원)
- 자율관리어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우수 사례집과 영상홍보물(DVD)을 제작, 배포
- 자율관리어업 소식지 발간, 배포하여 공동체간 정보 공유(한국수산회)

□ 자율관리어업 참여에 따른 효과 분석 강화

- 자율관리어업 효과측정을 위해 공동체별 소득변화 추이 조사 실시(‘09.3~12월, 한국수산회 부설 수산정책연구소, 수산사무소)
- 자원수준을 고려한 합리적인 자원관리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공동체 주요 관리대상 어종에 대한 자원조사 실시(‘10 예산 : 106백만원)
- 활동이 부진한 공동체는 수산사무소 현장집합교육 등을 통해 집중 지도하여 활성화 유도(‘10 예산 지원 : 130백만원)
- 일정요건 미달시 공동체 선정을 취소 등 조치
 - 평가결과 활동실적 부진 공동체, 불법어업 과다 공동체 등

참 고

자율관리어업 참여공동체 현황

□ 연도별, 유형별 추이

	'01	'03	'05	'06	'07	'08	'09	'10.08	
								구성비 (%)	
공동체(개소)	63	122	308	445	579	659	758	833	100.0
(전년대비 증가율,%)	-	(54.4%)	(77.0%)	(44.5%)	(30.1%)	(13.8%)	(15.0%)	(9.9%)	
- 마을어업	32	61	159	233	294	341	391	427	51.3
- 양식어업	11	15	46	70	72	78	80	84	10.1
- 어선어업	8	29	52	71	102	115	135	147	17.6
- 복합어업	12	17	43	62	94	102	124	135	16.2
- 내수면어업	-	-	8	9	17	23	28	40	4.8
참여어업인(명)	5,107	10,765	24,805	33,921	44,061	50,728	56,100	59,044	
(전년대비 증가율,%)	-	(63.7%)	(60.4%)	(36.7%)	(29.9%)	(15.1%)	(10.6%)	(5.2%)	
공동체당 평균 구성원수(명)	81.1	88.2	80.5	76.2	76.1	77.0	74.0	70.9	

□ 연도별, 시도별 추이

구 분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1	63	1	6	1	2	7	-	4	5	20	7	8	2
2002	79	2	6	2	2	9	-	5	7	25	8	10	3
2003	122	4	7	3	3	15	-	6	9	28	15	16	6
2004	174	5	8	5	7	16	-	13	10	53	23	19	15
2005	308	5	13	10	12	21	5	27	25	99	37	33	21
2006	445	10	15	13	16	28	5	46	27	147	47	60	31
2007	579	15	25	15	23	39	7	49	38	184	69	76	39
2008	659	15	29	15	24	47	8	50	41	215	73	100	42
2009	758	18	36	16	24	58	12	63	41	236	78	134	42
2010.08 (어업인수)	833 (59,044)	21 (1,765)	40 (3,257)	18 (1,655)	28 (2,293)	71 (5,035)	16 (355)	67 (6,109)	41 (2,945)	259 (18,832)	82 (4,418)	145 (7,721)	45 (4,718)
어촌계수 ('08기준)	1,978	41	55	33	48	77	-	144	62	854	156	408	100

※ 광역공동체 현황('10.8현재) : 44개소(부산1, 인천4, 울산1, 경기2, 강원4, 충남6, 전북1, 전남11, 경북1, 경남6, 제주3)

□ 시도별 참여공동체 및 육성사업비 지원실적 ('10까지)

(개소, 억원)

구 분		합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공동체수('09)		758	18	36	16	24	58	12	63	41	236	78	134	42
육성사업	지원공동체수	1,005	25	39	22	30	105	11	79	72	279	115	160	68
	사업비	1,220.9	27.9	47.7	25.8	40.1	122.3	9.3	105.1	94.8	348.6	153.1	176.1	70.1

* 우수공동체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40%, 자담 10%

□ 연도별, 시도별 육성사업비 지원실적

(단위 : 개소, 억원)

	합계		2002~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계	1,005	1,220.9	238	397	60	96	90	118.0	141	143.0	242	230.0	234	236.9
부산	25	27.9	7	12	1	1	2	2.5	4	2.5	5	4.9	6	5
인천	39	47.7	13	20	3	5	3	5.0	4	4.0	5	4.6	11	9.1
울산	22	25.8	7	10	2	3	2	3.0	3	2.5	4	3.7	4	3.6
경기	30	40.1	8	14	2	4	5	7.5	6	6.0	3	3.2	6	5.4
강원	105	122.3	25	40	4	6	6	9.5	11	11.0	29	25.5	30	30.3
충북	11	9.3					1	2.0	3	1.5	3	3.5	4	2.3
충남	79	105.1	16	32	5	8	10	13.5	15	17.0	18	18.5	15	16.1
전북	72	94.8	16	33	5	7	7	9.0	13	13.5	18	17.9	13	14.4
전남	279	348.6	77	118	20	32	26	32.5	37	44.5	57	56.0	62	65.6
경북	115	153.1	27	56	7	15	9	11.0	13	12.5	29	28.4	30	30.2
경남	160	176.1	26	40	7	10	13	16.5	23	21.0	52	46.3	39	42.3
제주	68	70.1	16	22	4	5	6	6.0	9	7.0	19	17.5	14	12.6

* 예산지원액 : 지방비와 자부담이 포함된 금액임

* '10까지 순 지원개소 : 488개소(1회지원 187개소, 2회 133개소, 3회 112개소, 4회 47개소, 5회 8개소, 6회 1개소)

* 지원금액 : 1억원 미만 92개소, 1~2억원 115개소, 2~3억원 104개소, 3~5억원 118개소, 5~7억원 48개소, 7억이상 11개소

자 기후변화에 따른 해파리 어업피해 대책 마련

목 표

- 기후변화로 인한 해파리 대량발생에 따른 연근해 어업피해 최소화

1) 현황 및 실태

- 최근 수온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해 해파리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조업포기·어구훼손 등 연근해 어업 피해 발생
 - 연안에서 주로 조업하는 업종(권현망, 자망, 정치망 등)에 영향이 큼
 - ※ 출현량(노무라입깃해파리 개체수/만㎡) : ('05)170 → ('07)64 → ('08)1 → ('09.7) 100
- 10월에 접어들면서 수온하강으로 해파리 세력이 급격히 약화
 - 해파리 모니터링결과 전체 출현빈도(40~50%), 출현량(70~80%) 감소 추세

2) 추진경과

- 농식품부 내에 종합대책반을 구성(8.6, 반장 : 제2차관), '해파리 어업피해 긴급대책' 수립 및 피해 최소화 노력
 - 어업피해조사(8.7~), 발생상황 모니터링 및 해파리 피해 저감기술 매뉴얼 제작·배포(8.27)
 - 해파리 소멸시까지 민·관 합동 제거작업(관공선 100척, 민간선 600여척) 지속추진(8.17~) 및 민간어선 소요경비(20억원) 지원(9.7)
 - 트롤어구 해파리 분리배출장치 피해저감기술 개발·보급
 - ※ 안강망·낭장망의 해파리 배출망은 기 개발·보급('03.9월 설치규정 고시)
 - 출현해역·이동경로 연구 등을 위해 한·중·일 공동협력 추진
 - ※ 한·중 환경공동협력회의('09.10.9, 외교부 주관)에서 해파리공동연구 협의

3) 성과와 반성

- (반성) 어업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미흡하고, 발생 원인, 이동경로 등에 대한 한·중·일간 공동협력 미흡
 - 지자체별로 피해 신고 접수 중이나 조업손실에 대한 정확한 피해 산정이 어려워 아직 피해접수 실적이 미진(11월중 완료예정)
- (성과) 해파리 어업피해 긴급대책 마련·시행('09.8)함으로써, 어업피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응이 가능
 - 어업피해 중앙·지방 대책반 구성·운영(8.6), 어업피해 조사 추진(8.7), 민관합동 해파리 제거 캠페인 추진(8.21~) 등
 - 해파리 출현 및 이동경로 등 모니터링을 통한 신속한 정보 전달 체계 구축
 - 적조예찰시스템과 연계하여 감시망, 정보관리, 예찰반 운영 등

4) 향후 추진계획

- 한·중 어업공동위원회(11월)를 통해 해파리 공동연구 제의
 - ※ 한·일 해파리 업무협의회 개최(2차, 11월초), 한·일 어업공동위(12월)
- 어업피해 조사 완료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관련규정 보완(11월)
 - 해파리로 인한 피해 산정이 가능한 부분(어구피해 등)은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대상 포함검토(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등)
- 어가소득 안정을 위해 다양한 어업종류별 피해입증·산정, 지원범위·기준 등에 대한 전문기관 연구용역 추진
- 해파리 콜라겐, 미량성분 등을 활용한 화장품, 의약품 원료 이용방안 연구개발 추진

목 표

- 급속한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환경오염과 장기간 양식어장 경영에 따라 자정능력이 저하된 어장환경을 회복
-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기반 조성으로 안전한 수산물 생산과 어업 소득증대 도모

1) 추진배경

- 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로 인하여 육상에서 기인한 오염물질의 유입량 증가와 양식어업의 발전으로 자가오염원의 증가로 연안어장의 오염이 심화
- 어장오염에 따른 어병 및 유해성 적조 발생 빈발로 안전한 수산물 생산의 곤란과 이에 따른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86년부터 연안어장 정화사업 추진
 - '양식어장정화'를 위해 퇴적물 수거, 바닥갈이, 어장재배치 등 실시
 - 오염이 심화된 남해안에 '특별관리 어장정화사업'을 실시
- 연안 수질은 대체로 양호한 상태이나, 일부 내만과 장기간 연착한 양식장의 퇴적물은 우려할 수준
 - 동해안 연안의 해역 수질은 I ~ II등급, 남·서해안은 II등급으로 대체로 양호한 상태임
 - 해수유동이 느린 남해안 반폐쇄성 일부해역에서는 오염물질 유입 및 배설물 등이 퇴적되어 유기오염 진행상태

2) 추진경과

□ 1986년

- 연안어장의 오염원 제거를 위해 어장에 침적되어 있는 폐기물 등을 직접 수거하는 어장정화사업을 일선 수협 대행체계로 추진

□ 1991년

- 어장정화사업 시행주체를 관할해역에 대한 어장청소 명령권을 가진 시·도지사에게 사업을 이관하여 본격 추진

□ 1996년

- 장기간 양식으로 오염, 질병, 적조피해가 빈발하는 남해안의 9개 만을 특별관리어장으로 지정하여 광역단위 어장정화사업 실시

□ 2005년

- 어장정화사업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균특회계로 전환하여 지자체 주도로 사업 시행

□ 2009년

- 어장정화사업을 통한 연안어장의 환경 개선에는 한계가 있어 오염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고밀도부표보급 및 굴폐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을 추진

3) 성과와 반성

□ 성 과

- '86~'09년까지 양식어장정화 및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으로 총 496천ha에 대하여 퇴적물 수거·처리, 바닥갈이, 객토, 어장재배치 등을 실시

※ 양식어장정화 : 432천ha, 특별관리어장정화 : 64천ha

□ 반 성

- 지자체의 어장환경 보전·개선 조치 등에 대한 어장환경평가 및 어장환경기준 등 근거가 없어 실효성 미비
- 어장정화사업 예산이 균특회계로 전환되고('05), 동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지자체의 상대적 관심 부족으로 적극적인 사업추진 곤란

4) 향후 추진계획

□ 체계적인 어장관리를 통한 생산성 회복을 추진

- 연안 양식어장환경조사('08~'13) 실시후 오염정도, 어장수용력, 생산성을 감안하여 수질 및 퇴적물 등에 대한 어장환경기준 마련

□ 지속적인 어장정화사업 추진

- 어장정화사업은 국민들이 웰빙식품의 관심증대로 안전하고 깨끗한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공급과 국제사회에서 어장환경 개선·보전을 요구하고 있어 지속적인 정화사업 추진
- 전국 연안 시·도(시·군)를 대상으로 어장정화사업 실시
 - 어장정화사업('10) : 6,104ha, 6,160백만원(국고 80%, 지방비 20%)

□ 연안어장 오염원 유입 지속차단

- 양식장 부표(浮標)의 파손 및 연안에 굴폐각 방치 등에 의한 어장의 2차오염 저감을 위하여 고밀도부표 보급지원 사업 및 굴폐각 친환경 처리지원 사업 지속추진
 - 고밀도부표 보급지원('10) : 160만개, 8,325백만원(국고 20%, 지방비 20%, 자담 60%)
 - 굴폐각 친환경처리 지원('10) : 14만톤, 2,800백만원(국고 20%, 지방비 60%, 자담 20%)

□ 어장정화 실시후 수질개선 효과

- 어장정화사업이 집중 실시되는 고성만, 가막만 등의 경우 COD가 낮아져 오염지수 개선 추세

	고성만	고현만	가막만	득량만
1998	1.50	2.01	2.00	1.73
2000	1.27	1.72	1.71	1.66
2002	1.11	1.15	1.23	1.44

- 어장정화 실시후 다음연도의 환경요인 분석결과 COD는 낮아지고 용존산소 증가하는 등 생태계 복원 효과 발생

	용존산소(%)	COD(%)	총질소(T-N/%)	총인(T-P/%)
고 성 만	-3.52	-4.07	-14.43	4.89
고 현 만	4.64	-6.11	24.76	12.49
가 막 만	0.73	-9.26	23.43	7.93
득 량 만	-0.89	-1.50	56.69	33.55

□ 어업생산량 증대 효과 분석

- 어장관리법 시행에 따른 정화전문업체의 1차년도 사업실시 후 주요 품종별 생산량은 7~34%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품종별	단 위	생 산 량		증가율 (%)
			정화 이전	정화 이후	
양 식 어 장	김	ha/속	1,904	2,108	24
	미역	ha/톤	24.6	26.3	7
	툇	ha/톤	2.2	2.5	14
특별관리어장	굴	대/kg	365	489	34

※ 시도 조사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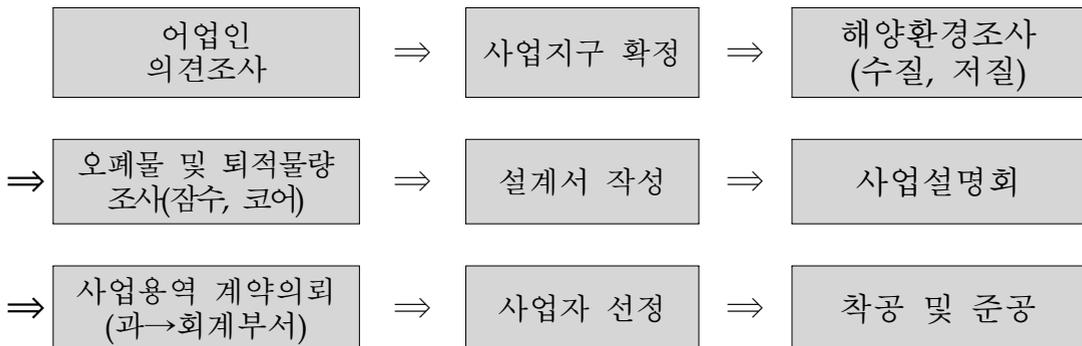
- 전문연구기관(KMI)에서 전남·경남지역에 대한 정화사업의 직·간접 효과 조사를 실시한 결과, **투자비용의 149% 효과 발생**

(단위 : 천원)

정화사업비(A)	직접효과(B)	간접효과	총효과(C)	B/A	C/A
9,615,000	9,680,000	4,633,117	14,314,098	1.01	1.49

- ① 어장정화사업을 통하여 침적물 수거, 바닥갈이, 객토 등을 실시할 경우 COD가 낮아지고 용존산소는 증가하는 등 오염환경 개선
- ② 오염환경 개선에 의한 생태계 복원으로 생산량이 증가하여 투자비용이 1년내 회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 효과가 3년간 지속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화사업 성과는 크다고 판단됨

<어장정화사업 추진절차>



<시·도별 어장정화·정비업 등록현황('09.12말 기준)>

- 등록 : 56개 업체, 133척(정화선 72척, 부선 61척)

구 분	합 계	부산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업체수	56개	3	5	2	8	2	13	2	18	3
(정화선)	72척	3	5	2	8	2	13	2	34	3
(부 선)	61척	4	5	2	9	2	15	2	19	3

카 수산생명자원 관리제도 법제화 추진

목 표

- 수산생명자원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및 이용기반 구축
 - * “농업유전자원법”을 “농수산생명자원법”으로 전면 개정

1) 추진배경

- 수산생명자원에 대한 무분별한 해외유출 방지 및 국내외 수산생명자원의 종합적·체계적 관리 필요
 - 현재 농업*유전자원은 “농업유전자원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나, 수산생명자원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관리되고 있는 실정
 - * 농업유전자원법 상 ‘농업’은 ‘농업, 축산업, 임업’을 포함

2) 추진경과

- 농림수산식품부(‘09.5.)와 국토해양부(‘08.12.)에서 각각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상대부처 반대로 중단
 - 이와 관련, 총리실 조정(‘09.9.~’10.4.)하였으나 부처간 합의 실패로 BH 경제수석실에서 조정 중(‘10.6.~)
 - 한편, 정부입법 추진 지연으로 양 부처에서 의원입법으로 각각 추진
 - * 국회 농식품위에 농수산생명자원법 전부개정안(강석호의원 등 38인, ‘10.2), 국토위에 해양생명자원법 제정안(강창일의원 등 16인, ‘09.12.)이 각각 계류중

3) 성과와 반성

- 양 의원발의안에서 관리대상인 수산생명자원과 해양생명자원은 실질적으로 동일, 법률의 체계와 내용도 유사
 - 중복투자 및 이중규제 문제 방지, 기존 업무와의 연관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부처간 업무 재조정 필요

4) 향후 추진계획

- 국회 심의 및 BH 업무조정에 적극 대응
 - 국회 농식품위 및 국토위 의원 설명 추진
 - 농수산식품비서관실과 실무적으로 접촉 강화, 경제수석 등 사전설명 추진

참 고

국회 계류 중인 의원발의안 주요내용 비교

구분	농수산생명자원법(강석호 의원)	해양생명자원법(강창일 의원)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 · 농수산생명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촌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이용 도모, 해양생명자원 주권 강화, 해양생명공학 경쟁력 확보로 국민경제 기여
기본시책 (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부 장관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 및 농식품부 장관은 각각 5년마다 해양생명자원관리기초계획 수립 · 국토부 장관은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 해양생명자원관리종합계획 수립·시행 · 국토부 또는 농식품부 장관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조사 및 등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부 장관은 농수산생명자원 현황을 조사·수집 및 목록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 또는 농식품부장관은 해양생명자원 현황을 조사·수집 및 목록 작성
분석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부 장관은 농수산생명자원의 유전적 특성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보존가치에 따른 등급을 부여 · 분석·평가결과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 또는 농식품부장관은 해양생명자원의 유전적 특성에 대한 분석·평가 실시하고 보존가치를 고려하여 등급 부여 · 분석·평가결과 공개
자원에 대한 국민의 접근	<관련 조문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목적으로 해양생물자원에 접근하는 경우 국토부 또는 농식품부 장관에게 신고 · 수산업 또는 비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신고 면제
자원에 대한 외국인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및 국제기구 등이 수산생물자원을 연구·상업적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할 경우 농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외국인이 국민 및 국가기관과 공동으로 생명자원에 접근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및 국제조직 등이 해양생물자원에 접근하는 경우 국토부 또는 농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외국인이 국민 및 국가기관과 공동으로 생명자원에 접근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함
외국인 등의 권리 및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등은 조사 자료를 근거하여 탐사 및 개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좌 동>
기탁등록기관 (책임기관) 지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부 장관은 농수산생명자원 보존·관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해 책임 기관을 지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 또는 농식품부 장관은 필요한 시설, 인력을 갖춘 자를 해양생명자원 기탁등록기관으로 지정·운영
분양승인 및 제한·취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생명자원을 분양 받으려는 자는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국익 손해 우려 등의 경우 분양 제한·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생명자원을 분양 받으려는 자는 국토부 또는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국가 손해 우려 등의 경우 분양 제한·취소

구분	농수산생명자원법(강석호 의원)	해양생명자원법(강창일 의원)
국외반출 승인 및 취소 등	· 농식품부 장관이 작성한 국외반출승인대상 목록에 포함된 <u>농수산생명자원</u> 을 국외로 반출할 경우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u>해양생명자원</u> 국외 반출할 경우 국토부 또는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기탁 및 등록	<관련 조문 없음>	· 해양생명자원 관리·이용하는 자는 책임기관 등에 자원을 기탁·등록할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자는 사업 종료시 해양생명자원을 기탁·등록하여야 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농식품부 장관은 농수산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 사업 시행	· 국토부 장관은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하여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하여야 함
단체·인력 양성	· <u>농수산생명자원</u> 기술개발, 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공립 연구기관, 단체 등을 육성·지원할 수 있음 · 농식품부 장관은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 <u>해양생명자원</u> 의 연구, 기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 육성하여야 함 · 국토부 또는 농식품부 장관은 해양생명자원 효율적 확보·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지원	· 농식품부 장관은 <u>농수산생명자원</u> 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증대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함 · 농수산생명자원 기술개발, 이용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단체 등을 육성 및 지원할 수 있음 · 시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정부는 <u>해양생명자원</u>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 시책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기업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국제협력	· 정부는 <u>농수산생명자원</u> 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 정부는 <u>해양생명자원</u>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통계 및 간행물 발간 등	· 농식품부 장관은 <u>농수산생명자원</u> 의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통계청장과 협의 거쳐 통계 및 간행물 발간	· 국토해양부 장관은 <u>해양생명자원</u> 의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통계청장과 협의 거쳐 통계 및 간행물 발간

목 표

-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관리와 안전한 수산식품 육성
- 환경 친화적 어업 및 레저 공간 등의 다각적 활용방안 구축

1) 추진배경

- “4대강 살리기”와 “금수강촌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내수면 생태계보호 및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을 도모

2) 추진실적

친환경 농업과 양식업을 접목한 친환경 논 생태양식

- 논외 수생태계를 이용한 물고기 양식으로 사료 및 농약사용 절감
- ‘11년까지 미꾸라지의 생태양식 기반 구축 후 붕어 등 품종 확대
 - * (‘09) 미꾸라지 시범양식 3개소 13.4ha → (‘10) 5개소, 23ha
- 농지의 이용 절차 간소화 등으로 내수면 양식이 육성 도모
 - * 농지법시행령 개정(농지과, ‘09.11.28부터 시행)

4대강 유역의 토속어류 등 수생생물의 생태계 관리

- 토속어류 중 개체수 감소가 예상되는 어종은 종묘 생산 및 관리 체계를 확충하여 지속적인 방류 추진 (10종→20종)

낙동강 등 4대강 수계에 토속어류 산업화센터 건립

- ‘10년부터 낙동강 수계 토속어류 산업화 센터 건립(경북, 200억원) 추진
 - * 토속어류 종묘생산 시설, 생태체험 및 전시관, 방류시설 등

□ 4대강 유역의 어도 실태 조사

- 4대강 유역의 어도 실태를 조사하여 제기능을 못하는 어도에 대해 회유성 어종이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10년도 10억원)

□ 내수면의 주요 품종별 가공공장 건립 및 기능성제품을 개발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를 촉진

- 생산이 안정적이고 대중화된 품종을 우선 지원하고 품종 확대 및 새로운 기능성 제품 개발을 지원

* 송어('07~'08, 강원 영월, 50억원), 자라('09~'10, 전북 익산, 32억원), 메기 ('10~'11, 충남 논산, 28억원)

3) 향후 추진계획

□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한 내수면어업 진흥을 위한 사업지원 확대 및 정책과제 개발

- 양식장 수질개선사업, 한국형 어도설계기준 마련 등 내수면어업 진흥을 위한 '11년 예산 요구(약 84억원) 및 확보
-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관리, 휴식과 레저공간으로의 내수면 어업 진흥을 위한 내수면어업기본계획 수립(12월까지)

참 고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한 내수면어업 진흥

□ 4대강 현황 및 위치도

○ 현 황

수계	시·도	연장	유역	기타
낙동강	부산,대구,경북,경남	510km	23,384km ²	
영상강	전남	137km	3,468km ²	
한 강	서울,경기,강원,충북	494km	25,954km ²	
금 강	전북,충남,충북	398km	9,912km ²	

자료 : 한국하천연람

○ 위치도



《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한 내수면어업 진흥 》

1. 추진배경

- 「4대강 살리기」와 우리부 「금수강촌 만들기 대책」의 일환으로 내수면 수질개선 및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추진

2. 주요 추진내용

- ① (친환경 논생태양식) 4대강 유역 하천주변에 친환경농업과 양식업을 접목하여 화학비료 및 사료량 저감으로 오염물질 유입량 저감
 - 벼농사와 미꾸라지를 함께 양식하는 친환경농업 시범사업 추진 ('10, 5개소 23ha)
- ② (토속어류 방류) 토속어류 등 수생생물 생태계 회복 지원
 - 토속어류 중 개체수 감소가 예상되는 어종은 종묘 생산·관리 체계를 확충하여 지속적인 방류 추진 (10종→20종)
- ③ (어도의 친환경화) 기존에 설치된 보와 어도 실태를 조사하여 제기능을 못하는 어도에 대해 친환경 어도로 개선
 - '10년도 전국 강과 하천의 물흐름을 가로막는 인공구조물과 수산생물의 이동통로인 어도(魚道)설치·관리 실태 조사 및 D/B 구축
 - '11년부터 지역별, 어종별 특성에 맞는 한국형 어도설계기준 마련

3. 기대효과

- 4대강의 어도(魚道)관리 및 내수면 생태계 회복을 통한 레저 산업 활성화 및 수산자원 증강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
- 하천 생태환경의 복원을 통한 도시민에게는 친수적인 복합 생활환경이 제공되고 어린이에게는 생태교육장으로 활용

① 물고기 입식에 의한 친환경 논생태양식 시범사업

□ 사업목적

- 논외 기본 水생태계를 이용한 양식을 통해 사료 및 농약 사용 절감 및 농업과 양식업을 접목한 친환경 농어업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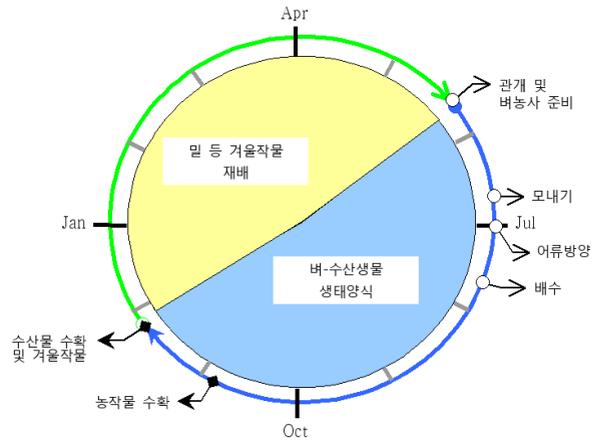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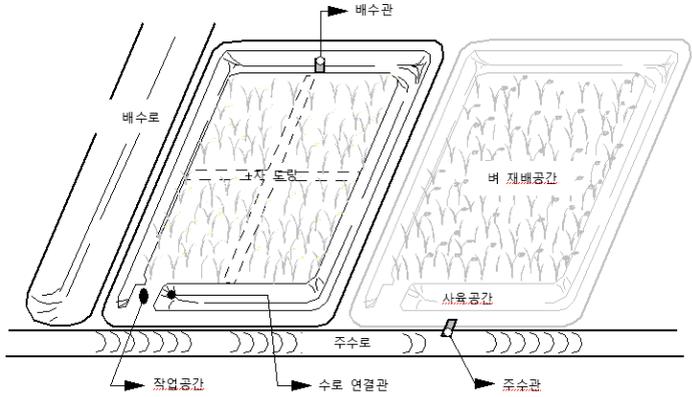
□ 추진현황

- '09년부터 저가의 우량종묘 생산을 위한 토종종묘보급 사업 추진
 - 먹이생물 배양, 종묘생산 시설 등 지원을 통해 토종종묘 대량 생산 시스템 구축
- '09년부터 논 생태 양식 시범 실시
 - '10예산 27억원(농특회계,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량 : 5개소 23ha(충북 진천·옥천, 전북 남원·부안, 경남 산청, 전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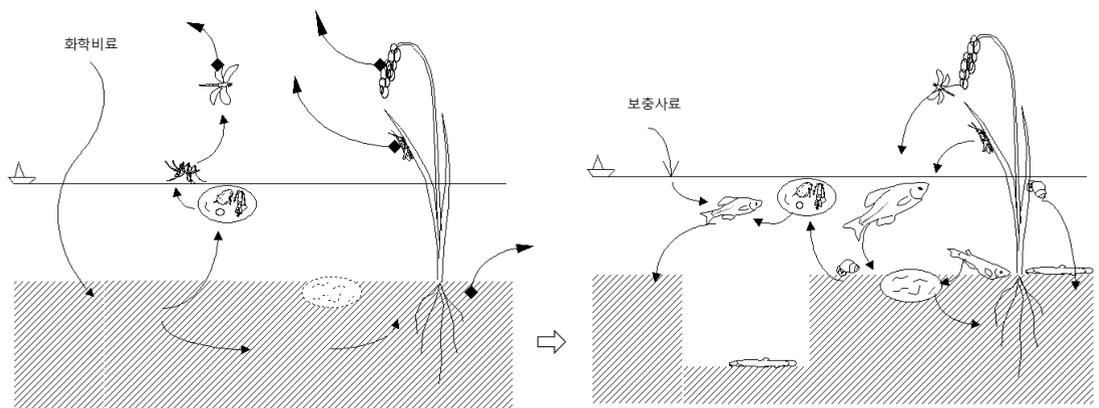
□ 향후계획

- 미꾸라지 외에 붕어 등 대상어종 추가 개발('11년 이후)

논 생태양식의 개념과 실제



논 생태양식지 기본 구조(상)와 벼-수산생물 생산 주기(하)



일반 벼 농지(좌)와 논 생태양식지 에너지 순환(우) 비교

② 4대강 토속어류 복원 및 관리

□ 추진배경

○ 하천 공사 등으로 인해 감소되는 토속어류를 복원하고 하천의 생태계 관리를 위해 토속어류의 지속적인 생산, 방류 필요

* 우리나라에서만 서식하는 토속어류 약 60여종(쉬리, 각시붕어, 어름치 등) 대해 연구 기관 조사를 거쳐 공사로 인해 감소가 예상되는 품종부터 우선 방류 추진(약 20종)

□ 주요내용

○ 방류용 어류 대량생산을 위한 복합 토속어류보급센터 건립

- 복합 토속어류보급센터 내에 생태관을 마련하여 4대강에 서식하는 민물고기 전시 및 정보 제공을 통해 교육의 장으로 활용

<복합 토속어류보급센터 및 부가기능>



<복합토속어류보급센터>



<토속어류 생태관>



<토속어류 체험교육>



<토속어류 정보제공>

- 하천에 방류터를 마련하여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토속어류 방류체험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

<방류체험>



- 지류에 방류된 어종은 전통어로체험 자원이나 수산생물의 생활사와 연계한 교육형 체험프로그램으로 개발
- 4대강에 방류된 토속 어(漁)자원 증강을 위해 인공산란시설 설치

<인공산란장>



□ 향후계획

- '15년까지 거점별 복합 토속어류보급센터 건립
 - 4대강별 생태계 특성에 맞는 토속어류 생산시스템 구축
- 방류터 및 지류의 체험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
- 4대강 토속어류 방류터에 우선으로 인공산란장설치 지원

■ 우리나라에만 분포하는 토종담수어류(고유종)

Petromyzonidae 칠성장어과(1종)			
<i>*Lampetra morii</i>	칠성장어(북)	<i>☆Koreocobitis naktongensis</i>	얼룩새코미꾸리
Cyprinidae 잉어과(32종)		<i>Iksookimia pumila</i>	부안종개
<i>Rhynchocypris semotilus</i>	버들가지	<i>☆★Iksookimia choii</i>	미호종개
<i>Rhynchocypris kumgangensis</i>	금강모치	<i>Iksookimia longicorpa</i>	왕종개
<i>Rhodeus uyekii</i>	각시붕어	<i>Iksookimia hugowolfeldi</i>	남방종개
<i>Rhodeus hondae</i>	서호납줄갱이	<i>Iksookimia yongdokensis</i>	동방종개
<i>Rhodeus pseudosericeus</i>	한강납줄개	<i>Cobitis tetralineata</i>	줄종개
<i>Acheilognathus koreensis</i>	칼납자루	<i>Cobitis hankugensis</i>	기름종개
<i>☆Acheilognathus somjinensis</i>	임실납자루	<i>Cobitis pacifica</i>	북방종개
<i>Acheilognathus signifer</i>	목납자루	Bagridae 동자개과(2종)	
<i>Acheilognathus yamatsutae</i>	줄납자루	<i>Pseudobagrus koreanus</i>	눈동자개
<i>Acheilognathus majusculus</i>	큰줄납자루	<i>☆★Pseudobagrus brevicorpus</i>	꼬치동자개
<i>Acanthorhodeus gracilis</i>	가시납지리	Siluridae 메기과(1종)	
<i>*Mesogobio tumensis</i>	두만강자그사리(북)	<i>Silurus microdorsalis</i>	미유기
<i>Sarcocheilichthys nigripinnis morii</i>	중고기	Amblycipitidae 통가리과(3종)	
<i>Sarcocheilichthys variegatus wakiyae</i>	참중고기	<i>Liobagrus andersoni</i>	통가리
<i>☆Pseudopungtungia nigra</i>	감돌고기	<i>☆Liobagrus obesus</i>	통사리
<i>☆Pseudopungtungia tenuicorpa</i>	가는돌고기	<i>Liobagrus mediadiposalis</i>	자가사리
<i>Coreoleuciscus splendidus</i>	쉬리	Salangidae 뱀어과(1종)	
<i>Squalidus chankaensis tsuchigae</i>	참물개	<i>Neosalanx jordani</i>	젓뱀어
<i>Squalidus japonicus coreanus</i>	물개	Salmonidae 연어과(2종)	
<i>Squalidus gracilis majimae</i>	긴물개	<i>*Hucho ishikawai</i>	자 치(북)
<i>Squalidus multimaculatus</i>	점물개	<i>Thymallus arcticus jaluensis</i>	사루기
<i>★Hemibabus mylodon</i>	어름치	Serranidae 농어과(1종)	
<i>Abbottina springeri</i>	왜매치	<i>Coreoperca herzi</i>	꺼 지
<i>Microphysogobio yaluensis</i>	돌마자	Odontobutidae 동사리과(2종)	
<i>Microphysogobio longidorsalis</i>	배가사리	<i>Odontobutis platycephala</i>	동사리
<i>☆Microphysogobio koreensis</i>	모래주사	<i>Odontobutis interrupta</i>	얼룩동사리
<i>Microphysogobio rapidus</i>	여울마자	Gobiidae 망둑어과(2종)	
<i>Microphysogobio jeoni</i>	땡경모치	<i>Acentrogobius pellidebilis</i>	점줄망둑
<i>☆Gobiobotia macrocephalus</i>	꾸구리	<i>Periophthalmus magnuspinnatus</i>	큰뺨말뚝망둥어
<i>☆Gobiobotia brevibarba</i>	돌상어		
<i>☆Gobiobotia naktongensis</i>	흰수마자		
<i>Zacco koreanus</i>	참갈겨니		
Cobitidae 미꾸리과(11종)			
<i>Niwaella multifasciata</i>	수수미꾸리		
<i>Kichulchoia brevifasciata</i>	좁수수치		

■ 토속어류 사진



<쉬리>



<각시붕어>



<어름치>



<참중고기>

■ 방류어종 및 추가방류 대상어종

방류종(10종)	방류종(20종)
참개, 잉어, 동자개, 붕어, 메기, 쏘가리, 꺾지, 뱀장어, 자라, 은어, 다슬기	참개, 잉어, 동자개, 붕어, 메기, 쏘가리, 꺾지, 뱀장어, 자라, 은어, 다슬기 (금강모치, 각시붕어, 납자루류, 감돌 고기, 어름치, 미호종개, 꼬치동자개, 참갈겨니, 새코미꾸리, 꺾지)*

* 굵은글씨 : 추가방류 대상어종

③ 4대강 환경친화형 어도개선 사업(안)

□ 추진배경

- 하천을 차단하는 구조물이 전국적으로 약 2만개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나, 어도설치 유무 실태조차 파악이 되지 않고 있음
- 뱀장어, 은어 등 경제성 어종은 어도가 제기능을 못할시 자원량 부족으로 어업인 소득 감소 초래

□ 주요내용

- 전국의 강과 하천의 물흐름을 가로막는 인공구조물 및 어도 실태 전수 조사 및 D/B 구축(국립수산과학원, 한국농어촌공사 등)
- 조사결과에 따라 어도가 제기능을 못하거나 어도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에 개·보수 및 설치토록 협의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4대강 유역 어도실태조사 및 친환경 어도개선
- 추진방법 : 어도실태조사(수과원 등), 친환경 어도개선(지자체)
- 사업비 : 20억원(어도실태조사 10, 한국형 어도개발 10)

□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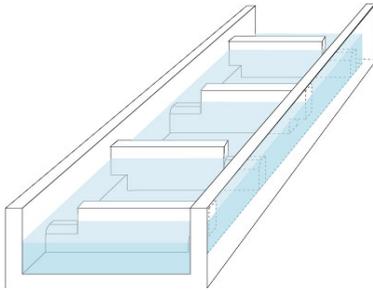
- 환경친화형 어도개선으로 일자리 창출 및 회유성 어종의 서식지 보호로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

□ 향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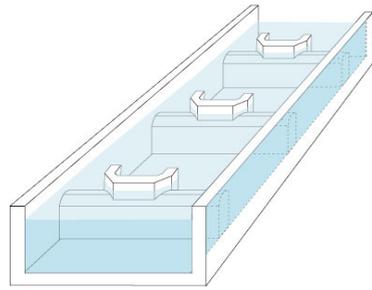
- '10년 12월말까지 전수조사 및 D/B구축 완료 및 개보수 및 신규 설치 등 관할 관청과 협의
- 한국형 어도개발을 위해 현지적용시험 및 표준설계기준 마련

<어도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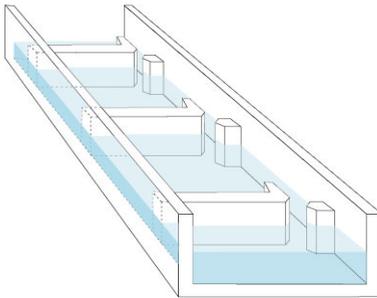
□ 표준 어도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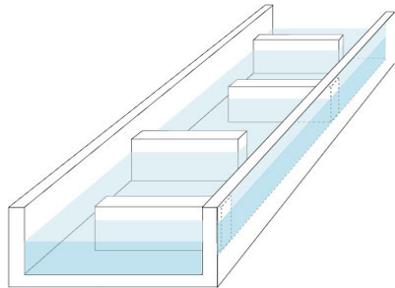
계단식



아이스하버식



버티컬슬롯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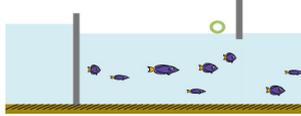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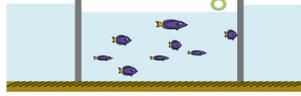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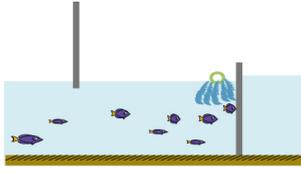


도벽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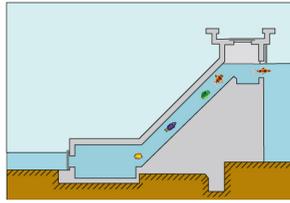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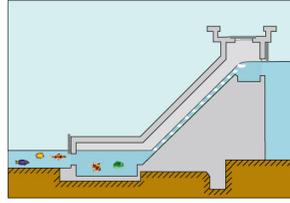
□ 인공하도식 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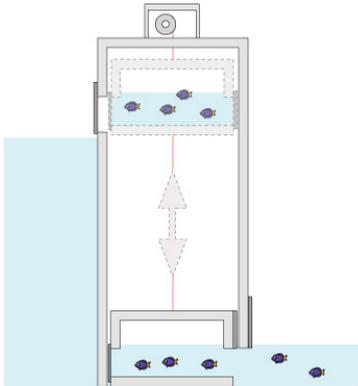
□ 조작형식 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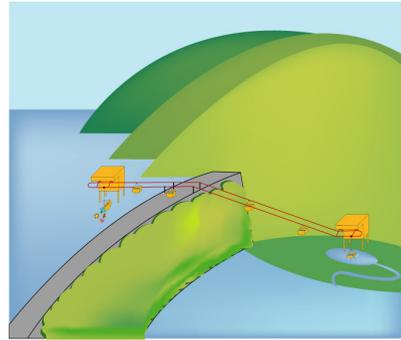
갭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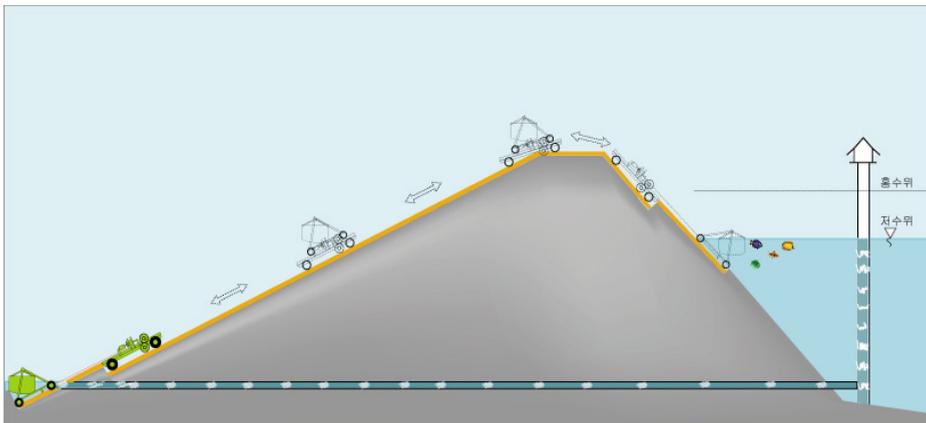
블랜트식



엘리베이터식



리프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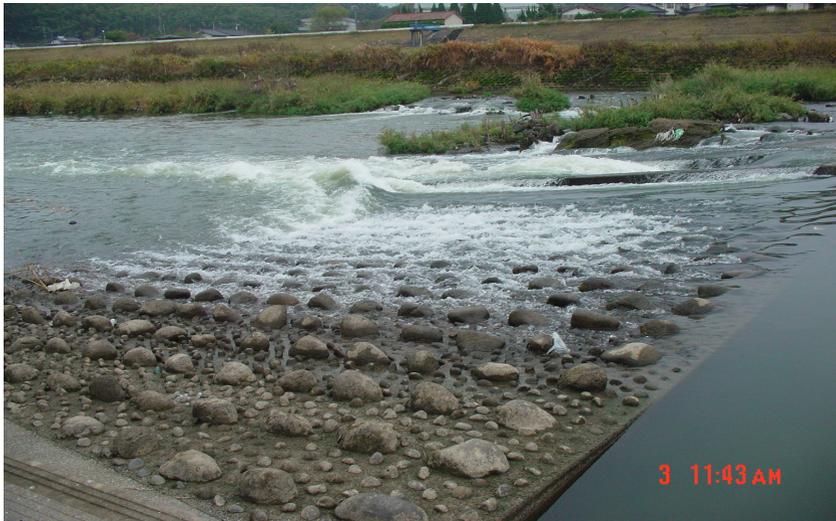


리프트식(자주식)

어도 사진



- 탐진강 심천보에 시설한 아이스하바식 어도 -



- 일본의 온가가와에 시설된 경사진 돌붙임 어도 -

파 낚시산업 육성 및 관리

목 표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을 통해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건전한 낚시문화 홍보 및 교육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낚시환경 조성

1) 추진배경

- 국민소득 향상과 여가생활 수요증가 등에 따라 낚시인구가 573만명('04년 기준)에 이르고 있으며 지속적인 증가 예상
- 낚시행위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수생태계 파괴 및 안전사고 발생 등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마련

※ 낚시로 인한 포획량(추정) : 23만톤 수준(연근해 및 내수면 어획량의 약 18%)

※ 낚시터 주변 쓰레기 발생량(추정) : 연간 9천톤

※ '09년 낚시사고 현황(사고 건수/사망·실종, 명) : 갯바위 61/14, 방파제 20/4

2) 추진경과

- 환경과 레저가 조화된 「낚시종합발전정책」 국무회의 보고('06.01.)
 - 낚시행위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기 위한 “낚시관리제” 도입 추진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안 마련, 관계부처 의견 조회(해수부, '06.12.)
 - 낚시인과의 토론회, 간담회('06.05.~10./ 20여회) 및 공청회 개최 ('06.05.~10./ 10개 시·도)를 통해 낚시관리제 도입 공감대 조성
 - 낚시발전조성금, 낚시협회 설립 및 환경업무 관할에 대한 관계부처 이견으로 지연

- 정부 조직개편 및 새 정부의 농정방향을 반영한 수정안 마련('08.11.)
 - 주요 이견사항을 삭제하고 낚시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육성할 수 있는 사항(미끼기준 설정, 낚시산업 육성 등)을 보완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안 입법절차 추진
 -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협의('08.12.~'09.6), 입법예고('09.7)·규제심사('09.8.~9) 및 법제처 심사('09.10~11), 국회 법률 심사 소위 통과('10.8.25)

3) 성과와 반성

- 관련 부처, 민간 낚시 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 추진
 - 이로 인하여 입법추진 일정이 다소 지연(국회제출 : '09.08. → '10.2.)
- 지속가능한 낚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홍보 활동
 - 낚시터 및 인근 환경 정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10년 200개소, 35억원)
 - 올바른 낚시 문화 홍보물(포스터, 리플릿) 제작 배포

4) 향후 추진계획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안 입법절차 추진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준비 작업 진행
-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의 강화
 - 낚시터 경영인 전문 교육('10.12.)
- '11년 사업예산 확보 및 사업계획 수립

참 고 1

낙시 인구 및 어획량 추정 근거

가 낙시인구 현황

□ 총 낙시인수 추정 : 573만명 (민물 : 380만명, 바다 : 193만명)

<우리나라 기존 낙시인구 추정사례>

- o. 400만명('92) : 배상우 '낙시가 사회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민물 70%, 바다30%)
- o. 325만명('95) : 환경부 '낙시면허제 추진계획안' (한국갤럽표본조사)
- o. 500만명('00) : 조계근 '내수면의 낙시면허제 도입 타당성 분석' (내수면 350만, 해면 150만)

○ '04년 한국갤럽 조사 결과(한국수산회 의뢰)

- 성별 낙시 인구

구 분 (단위 : 천명)	계	1년에 한두번	1년에 서너번	1년에 대여섯번	한달에 한두번	일주일에 한두번	일주일에 서너번이상
계	5,736	2,144	1,082	1,311	787	312	100
남 자	4,393	1,403	833	1,096	700	281	80
여 자	1,343	741	249	215	87	31	20

- 지역별 낙시 인구

구 분 (단위 : 천명)	계	1년에 한두번	1년에 서너번	1년에 대여섯번	한달에 한두번	일주일에 한두번	일주일에 서너번이상
계	5,736	2,144	1,082	1,311	787	312	100
서 울	1,285	616	250	303	68	27	21
인천 / 경기	1,585	713	274	267	264	54	13
강 원	235	60	37	74	50	7	7
대전 / 충청	545	143	115	176	46	57	8
광주 / 전라	677	184	125	193	147	21	7
대구 / 경북	495	137	111	125	60	26	36
부산/울산/경남	882	268	158	159	143	117	7
제 주 도	62	23	12	14	9	3	1

나 낚시 어획량 현황

□ 낚시 어획량 추정 : 23만톤

○ 낚시 인구 출조 빈도

구 분	출조 빈도
잡재 낚시 인구	연간 3 ~ 4회
일반 낚시 인구	연간 5 ~ 50회
전문 낚시 인구	주당 1 ~ 3회

* 자료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낚시면허제 모델개발 및 시행방안 연구 (2005.10 pp42~52, 한국갤럽의 2004년 조사결과 활용)

○ 조획량 추정

- 한국갤럽의 설문조사 결과 낚시인구의 1회 출조 시 평균 조획량은 약 2.2kg으로 추정

구 분	추정 인구수(천명) [A]	평균 출조횟수/년 [B]	총 출조횟수(천회) [C]	1회당 조획량(kg) [D]	조획량(톤) [E]
잡재 낚시인구	3,222	3.5	11,277	2.2	24,809
일반 낚시인구	2,097	25	52,425		115,335
전문 낚시인구	411	100	41,100		90,420
총 낚시인구	5,730	128.5	104,802		230,564

○ 관련 통계 비교

- 낚시를 통한 어획량은 우리 연근해 및 내수면 어획량의 약 18%, 상업적 어업의 총생산량 대비 약 7% 수준

구 분	비 고	어획량
낚시인 어획량	[A]	230,564
내수면 및 연근해 어획량	[B]	1,315,000
어업인 총 어획량	[C]	3,363,000
연근해 어획량 대비 낚시인 어획량	[A]/[B]	17.5%
총 어획량 대비 낚시인 어획량	[A]/[C]	6.85%

* 자료 : [B], [C] 2009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참 고 2

낙시어선업 현황

□ 연도별·시도별 낙시어선 신고 현황

(단위 : 척)

시도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6
계	4,000	4,240	4,401	4,423	5,191	5,115	5,198	5,124	5,027	3,881	3,996
부산	182	187	171	183	196	185	183	199	156	200	221
인천	233	238	217	260	315	339	283	297	258	220	252
울산	29	28	29	66	56	79	89	94	63	71	66
경기	96	125	156	134	185	197	187	198	193	164	123
강원	843	818	773	752	787	693	640	593	624	377	244
충남	1,133	1,186	1,262	1,109	1,289	1,312	1,178	1,160	1,142	692	866
전북	163	181	163	191	185	204	214	209	191	189	209
전남	565	549	616	639	755	766	1,043	904	871	828	673
경북	48	61	84	79	96	84	101	108	135	140	117
경남	527	654	699	802	1,087	993	1,040	1,121	1,178	912	1,028
제주	181	213	231	208	240	263	240	241	216	88	197

□ 연도별·시도별 낙시어선 이용객 현황

(단위 : 명)

시도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6
계	667,340	784,265	1,014,469	1,442,209	1,884,252	2,023,826	2,305,937	1,993,277	2,077,781	2,403,637	910,399
부산	18,460	24,262	37,890	45,888	74,501	79,546	72,599	77,221	92,906	106,588	75,172
인천	59,366	16,103	45,558	76,088	81,379	77,265	51,209	55,678	137,318	146,714	71,715
울산	136	445	9,750	5,891	20,086	11,958	15,747	10,408	14,823	26,930	11,932
경기	13,019	38,895	35,541	57,256	65,731	52,613	66,498	67,782	50,251	88,450	20,796
강원	116,069	106,890	106,696	99,870	102,227	87,630	99,605	96,717	114,987	95,131	65,115
충남	250,402	201,567	271,817	385,212	451,144	388,414	647,737	380,743	329,101	389,674	132,619
전북	7,523	18,348	34,952	55,840	83,765	96,034	83,401	80,238	72,736	119,000	69,760
전남	43,610	111,536	120,748	90,448	346,756	455,504	778,061	657,453	658,602	726,657	173,739
경북	2,239	4,287	19,783	39,409	64,922	52,780	37,263	119,693	97,793	177,271	69,805
경남	82,254	167,902	243,925	499,604	505,281	630,475	369,672	376,838	398,701	391,810	156,642
제주	74,262	94,030	87,809	86,703	88,460	91,607	84,145	70,506	110,563	135,412	63,104

참 고 3

기타 낚시 관련 통계 자료

□ 내수면 낚시터 허가·신고 현황('09년)

(단위 : 건, ha)

구분	계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696건	7	25	2	2	255	53	125	114	23	18	53	19
	(6,449ha)	(6.9)	(594.5)	(1.2)	(1.3)	(2,444.5)	(197.4)	(880.0)	(2,088.9)	(96.6)	(11.0)	(114.5)	(12.2)
허가	494건	7	20	1	1	178	38	98	101	3	4	38	5
	(6,368ha)	(6.9)	(591.5)	(1.0)	(1.2)	(2,417.1)	(191.0)	(870.0)	(2,079.2)	(90.2)	(7.4)	(106.3)	(6.2)
신고	202건	-	5	1	1	77	15	27	13	20	14	15	14
	(81ha)	(-)	(3.0)	(0.2)	(0.1)	(27.4)	(6.4)	(10.0)	(9.7)	(6.4)	(3.6)	(8.2)	(6.0)

※ 무신고 낚시터 : 312개소

□ 시·도별 유어장 지정현황('09년)

(단위 : 개소, ha)

구분	계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48개소 (2,408ha)	1 (18.0)	1 (2.0)	16 (445)	3 (253.0)	21 (108.9)	8 (73.7)	19 (291.6)	2 (4.6)	68 (955.8)	9 (256.0)
- 유료낚시터	82개소 (866ha)	1 (18.0)	1 (2.0)	(-) (-)	(-) (-)	3 (0.3)	4 (21.5)	14 (234.1)	1 (1)	58 (589.2)	(-) (-)
- 체험어장	66개소 (1,542ha)	(-) (-)	(-) (-)	16 (445)	3 (253.0)	18 (108.6)	4 (52.2)	5 (57.5)	1 (3.6)	10 (366.6)	9 (256.0)

□ 시·도별 유어장 관련 소득 및 이용인원 현황('09년)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계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계	7,482백만원 (694천명)	83 3	150 3	592 107		1,788 126	446 61	532 36	3,808 352	83 6
- 유료낚시터	4,520백만원 (337천명)	(-) (-)	150 3	(-) (-)	(-) (-)	1,532 52	147 15	414 27	2,277 240	(-) (-)
- 체험어장	2,962백만원 (357천명)	83 3	(-) (-)	592 107		256 74	299 46	118 9	1,531 112	83 6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

목 표

- 수산 분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관상어 산업 육성·발전 지원

1) 추진배경

- Pet 산업 활성화 및 외연 확대와 더불어 Aqua-pet인 관상어 산업의 중요성 및 시장규모 증대

※ 국내외 관상어 시장 규모(추정) : (세계) 23조원 / (국내) 3천억원

-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상어산업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미래 수산의 신 성장 동력 확보

※ 2010 연두업무 보고 : 수산관상생물산업 육성 등으로 수산종묘 수출기반 확충

※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 : Aqua-pet 산업 육성

2) 추진경과

- 관상어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 작업 진행

○ 관상생물 연구개발 T/F(제주 수산연구소 정민민외 9명) 구성·운영('09.12 ~)

- '10.12월 중 최종 연구결과 보고 예정

○ '10년 KMI 하반기 기본과제 신청 및 선정

- 관상어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10.12월 최종 결과 보고)

- 관상어 수출 지원 사업 지속('08 ~)

※ 지원 실적 : ('08) 총북 1억 원 / ('09) 총북 0.7, 제주 0.35 / ('10) 총북 0.65, 제주 0.35

3) 성과와 반성

- 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으로 충족하는 수출입구조 개선을 위해 수출지원 사업을 수행

※ '09년의 경우 수입액(약 95억 원)이 수출액(약 5억 원)의 20배에 육박

- 지원 예산이 적고, 지원 범위가 관상어 양식에 한정되어 수출입 구조 개선효과가 미약

※ 관상어 산업은 관상어종(30%), 관련 용품 시장(70%)으로 분류 가능

-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 자료 부족

- 국내외 시장규모, 시장 구조, 수출입 현황 등 대부분의 기초 자료가 추정치에 의존

4) 향후 추진계획

- 관상어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산업 육성 기본계획 초안 마련('10.12월)
- 관상어 산업 관련 기초 통계 자료 확보('11년)
- 「관상어산업육성법」(가칭) 제정 필요성 판단 등 법·제도적 기틀 마련과 중장기 추진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 완료('11.12월)

- '11년 사업예산 확보 및 사업계획 수립

※ '11년 주요 사업 : 관상어 산업 기초 통계 자료 조사, 상설 전시장 건립, 관상어 양식장 환경 개선, 전문 인력 육성 등

참 고

관상어 산업 현황

가 세계 시장 규모

□ 관상어 세계 시장 규모(추정) : 약 23조원

○ 다양한 기관에서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대략적인 시장 규모 추정**

구 분		시장 규모	조사년도	비 고
GTA		3,800억 원	2007	▫ 39개국 대상
Fishstat		4,050억 원	2009	▫ '05년 조사(2억 4천만\$) 대비 40% 신장
FAO	Aquaculture newsletter	23조 원	2000	▫ 관련 용품 시장 합산(*) ▫ 학계 및 업계에서 추정하는 근사치에 근거
WTO		18조 3,900억 원	2007	▫ 관련용품 시장만을 측정(관상어 제외)
UNEP	“바다에서 수족관까지 : 관상어류의 세계무역 현황“	2,450억 ~ 4,050억 원	2003	

□ 주요 관상어 수출국가의 수입 비중(자료 : GTA, 2007)

수입국	점유 국가	수입액(US\$)	점유율(%)
일본	싱가포르	4,559,313	16.92
	브라질	4,361,865	16.18
	인도네시아	3,999,326	14.84
	콜롬비아	2,069,896	7.68
	말레이시아	1,593,846	5.91
미국	싱가포르	8,223,406	19.06
	태국	7,888,646	18.29
	인도네시아	4,891,568	11.34
	필리핀	3,475,714	8.06
	일본	2,946,241	6.83
유럽	싱가포르	39,416,840	31.09
	이스라엘	14,960,148	11.80
	일본	14,890,854	11.74
	인도네시아	8,956,157	7.06
	체코	6,933,583	5.47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8,180,335	34.85
	말레이시아	5,859,675	24.96
	태국	2,097,350	8.93
	대만	1,536,691	6.55
	홍콩	972,215	4.14

나 국내 시장 규모

□ 관상어 수입 현황(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

(단위 : \$)

연 도	비단잉어	열대어	기타관상어	합 계
2004	10,065	2,641,454	316,032	2,967,551
2005	37,747	2,820,140	304,736	3,162,623
2006	241,062	3,418,192	554,608	4,213,862
2007	266,708	3,947,879	534,247	4,748,834
2008	177,341	4,173,583	278,690	4,629,614
2009	107,071	7,520,469	247,219	7,874,759

□ 관상어 수출 현황(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

(단위 : \$)

연 도	비단잉어	열대어	기타관상어	합 계
2004	-	-	214,156	214,156
2005	-	-	307,535	307,535
2006	-	9,350	207,397	216,747
2007	-	477	404,125	404,602
2008	-	1,271	384,910	386,181
2009	3,000	66	370,730	373,796

□ 주요 수입국가 현황

구 분	담수산	해수산
수입국	약 30개국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 위주(수입량 80%)	약 10개국 ▫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국가가 대부분(수입량 95%)
	수입품종	수입품종
수입시 폐사율	동남아시아 국가 : 5%미만 남미, 유럽 등 : 10%미만	20 ~ 30%
생산	대부분 양식산	자연산
	공급량 안정적	현지 수급 사정에 따라 반입량 차이 많음
기타	이동시간이 짧은 중국에서의 반입량이 크게 증가 중	산호 등 고급 관상용품 수입증가

목 표

- 어업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신뢰성 있는 어업정책자료 확보 및 합리적인 수산행정체계 구축

1) 추진배경

- 중장기적 자원회복 추진을 위한 어업자원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 체계 확립
- UN해양법 발효에 따른 EEZ선포 및 한·중, 한·일 어업협정 등 국내외 어업여건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
- 어업자원관리 행정업무의 효율성 확보 및 공동활용체계 마련으로 합리적인 수산행정체계 구축

※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도록 법률로 규정(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2) 추진경과

- 수산자원관리 정보화 기본계획(ISP) 수립('99.10~'00.02)
- 수산자원관리 정보화사업 추진('01.07~'04.08, 2,399백만원)
- 『어업자원관리 정보화 시스템』 본격 운영개시('05.01)
- 업무담당자의 활용도 향상을 기능 확대 및 업무처리 변경에 따른 시스템 개선('05.01~)

※ 어업자원관리시스템 단위업무 및 관련 부서

단위업무명	업무 내용	관련 부서
EEZ 조업관리	한·일, 한·중 EEZ 조업 어선 현황 관리 - 허가, 어선출항, 입어 및 조업실적	어업교섭과, 해양경찰청, 어업지도사무소, 수협
고래자원관리	혼획.좌초고래 보고서, 혼획.좌초고래 통계정보	지도안전과, 수산과학원, 자치단체, 해양경찰청
TAC운영관리	TAC기본정보, TAC할당 허가관리, TAC소진량관리	자원환경과, 자치단체, 해양경찰청, 수산과학원
어획실적관리	어선조업상황 및 어획실적 보고자료 관리	자원환경과, 어업정책과, 수산과학원, 자치단체, 수협
자율관리어업	자율관리공동체관리 및 평가	자원환경과, 자치단체, 수산회
월별통계확인	어선 및 어업허가 시·군·구 담당자 월별 통계작업 확인	어업정책과, 지방자치단체

3) 성과와 반성

- EEZ 허가관리·행정처분, TAC 운영 등 업무 프로세스 정보화로 수산 행정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어업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 마련
- 관계기관 간 정보의 공동 활용으로 정보의 수집, 집계를 위한 소요 시간은 단축되었으나 자료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4) 향후 추진계획

- 어선·출입항·어선사고정보 관계기관 간 정보연계 활용서비스로 업무 담당자 정보 접근성 제고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 확보('10.10~'11.4)
- 한일EEZ 신청 및 허가 관리시스템 기능 개선('10.9~'10.12)
- 「어선원부」 무인발급 및 인터넷 발급 서비스('10.11)
- 시스템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개선, 관리, 홍보 및 교육 실시

참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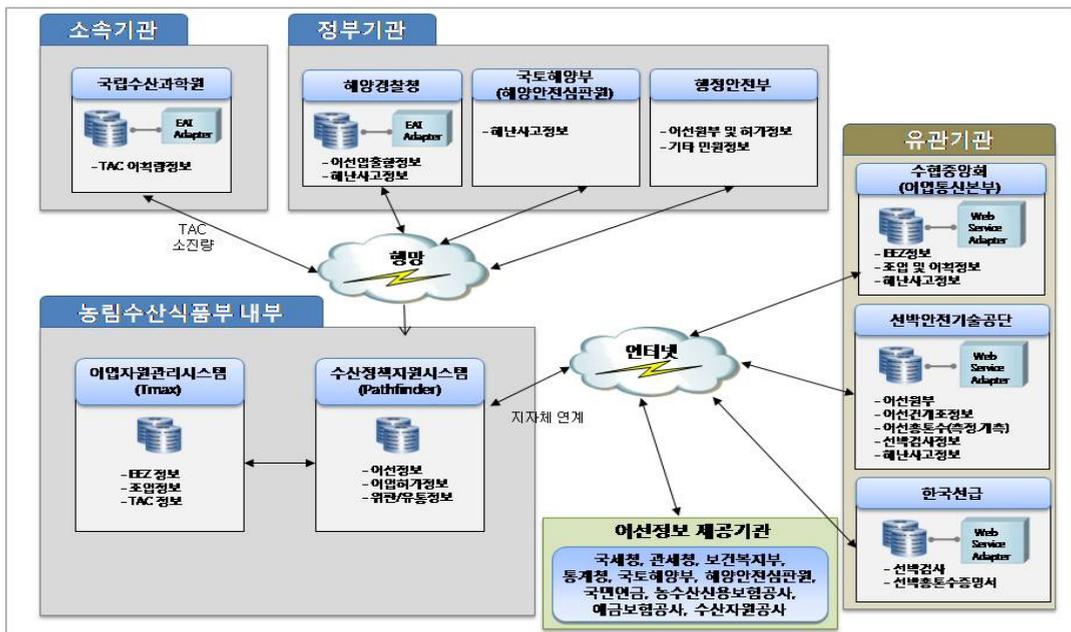
어업자원관리시스템 활용현황 및 연계 구성도

Ⅰ 어업자원관리 시스템 활용 현황

2010년 8월 현재

단위업무	누적년도	DB 건수	이용부서 및 기관	조회건수
EEZ조업정보	'01~현재	1,681,241	자원환경과, 어업정책과, 국립수산과학원	82,349
고래자원정보	'03~현재	8,983	어업교섭과, 어업지도사무소, 해양경찰청	11,091
어선조업정보	'03~현재	46,482,158	자원회복과, 국립수산과학원, 지방자치단체	5,669
TAC운영관리	'00~현재	25,390	지도안전과, 수산과학원,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65,630
자율어업 관리	'05~현재	262,874	어업정책과, 자원환경과	15,895

Ⅰ 시스템 연계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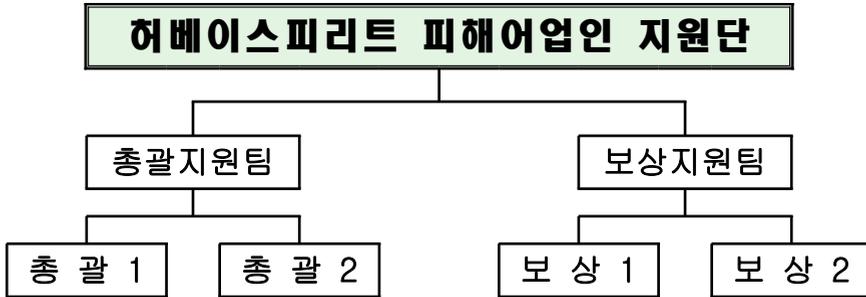
V. H/S(허베이 스피리트) 피해어업인 지원단

1. 일반현황	231
2. 주요 추진정책	232
가. 피해어업인 지원활동	232
나. 유류 피해어장 복원추진	234

1. 일반현황

조직 및 정원

□ 조 직



□ 정 원

(단위 : 명)

구 분	합계	고공단	3·4 ~ 4급	4·5 ~ 5급	6급이하	기능직
정 원	5	-	2	3	-	-
현 원	8	-	2	4	2	-

담당별 업무분장

구 분	주요 업무내용	비 고
총괄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법 및 관련규정 제정·시행에 관한 사항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보상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류피해 어장 환경복원 등에 관한 사항 피해지역 대책위 등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0년도 예산 및 '11년도 예산요구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0년 (A)	'11년(안)		증감	대 비 (%)
		요구	조정(B)		
○ 유류피해지역 지원(일반)	21,600	19,500	19,500	△2,100	△9.7
○ 갯벌어업단지조성(농특)	-	1,750	-	-	-

2. 주요 추진정책

가 피해어업인 지원활동

목 표

- Hebei Spirit호 유류오염사고 피해민에 대한 신속·공정한 배상지원
- 「허베이 특별법」에 따른 클레임 청구자에 대한 정부지원 추진

1) 현황 및 실태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 일시/장소 : '07. 12. 7(금) 07:06/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방 5마일
- 사고원인 : 예인선에서 분리된 부선이 정박해 있던 유조선과 충돌
 - * 예인선 : 삼성 T-5호(292톤) / * 부선 : 삼성 1호(11,800톤/3,000톤급 해상크레인 적재)
 - * 유조선 : HEBEI SPIRIT호(146,848톤/홍콩 선적)
- 사고결과 : 유조선의 원유탱크 파공(3개)으로 원유 12,547kl 유출

□ 피해 입증자료 확보 지연으로 '09년 하반기 이후 집중청구

- '09. 5. 8 종료 대전지법 서산지원의 선주 책임제한채권 신고 결과, 총 126천여 건으로 수산분야가 88%인 110.6천 건 차지하고 있음
- 사고 발생 후 2년 10개월이 경과됨에도 수산분야의 피해사정은 1,154건(187억 원)으로 클레임 접수 및 사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 ※ '10.8.30 현재 HSC에 클레임 접수는 총 25,477건으로 맨손어업 등 단체 청구(241건, 98,969명)을 감안하면 선주 책임제한채권 신고건 정도 접수

2) 추진경과

□ 피해보상 주체인 IOPC Fund와 업무추진

- HS센터와 정례회의('10.8월말까지 총 25회)를 통해 클레임 접수 및 피해사정 작업 촉구
- IOPC Fund 총회 및 집행이사회, 양자협의를 통한 보상업무 지원

□ 특별법에 의한 보상체계 정립

- 피해사정액이 IOPC Fund 보상한도 초과 시, 총사정액과 보상한도 차액을 전액 및 일부 정부가 보상

3) 향후 추진계획

□ IOPC Fund 총회 및 집행위원회 참석('10.10.18~10.22, 런던)

- 총회 및 집행이사회를 통해 신속하고 정당한 배·보상 추진 촉구
- 타분야 비해 수산분야의 피해사정이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을 위해 지속적 협의 추진

※ 국제기금측과의 비공식 회의를 통해 계속 협의 추진

□ 허베이 특별법에 따른 클레임 청구자에 대한 정부지원 추진

- IOPC Fund 보상 전 정부지원
 - 대지급 : IOPC Fund 피해사정이 완료된 경우 국제기금 지급 이전에 정부가 우선지급 후 환수
 - 대부금 : 보상청구 후 6개월 이내 미사정시 대부금 지원(1인당 150~935만원 수준으로 대부 실시 중)
- IOPC Fund 보상한도 초과시 정부지원(한도초과 보상금)
 - 피해사정액이 국제기금 보상한도 초과시, 총사정액과 보상한도 차액 전부 또는 일부 정부가 보상

□ 보상받지 못한 자의 지원방안 등에 관한 연구 용역 추진

-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민이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나 유류 피해어장 복원추진

목 표

- 유류 피해어장 복원을 통한 어업인 생계안정 및 지속적 생산 도모
- 갯벌어장 활용 및 관리제도 마련

1) 추진배경

-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어장오염 및 훼손
 - (해안선) 충남 167km, 전남 113.3km
 - (피해어장) 충남 13,790ha, 전북 3,550ha, 전남 6,049ha
 - (피해지역 확대) 타르 확산('08.1)으로 충남도서, 전라남북도 도서 및 해안선 피해 발생
 - (해수욕장) 만리포 등 15개소
 - ※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국토해양부)에 반영('09. 10)

2) 추진경과

- 방제 현황
 - 충남 및 전남·북 일원 오염지역에 대한 기본적 방제활동 종료
 - ※ 해상방제('08. 1. 8), 해안방제('08. 7. 7), 도서방제('08. 10. 10) 완료
 - 현재, 모니터링 및 수시 방제 체제로 전환

3) 성과와 반성

- 유류오염사고 피해어장 복원 추진
 - '10년 223억 원을 투입 어장복원 프로그램 개발 등 어장환경개선

4) 향후 추진계획

□ 유류 피해어장 환경 복원을 통해 어업인 생계안정 도모

- 자연회복에 의한 피해어장 복원을 기본원칙으로 이를 촉진 또는 가속화 하여 생업과 직결되는 분야 중점 지원('11년 195억원)
- 주요추진 내용
 - 어장복원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어장 운영(25억 원)
 - 패류(굴·바지락 등) 채묘장 조성(25억 원)
 - 객토·경운·침체어망 수거 등 어장환경 개선(151억 원)
 - 피해어업인과 소통을 위한 정책 홍보(1억 원)

□ 갯벌어장 활용 및 관리제도 마련

- 갯벌을 중심으로 대규모 갯벌어업단지 조성
- 시범사업(3년간)을 거쳐 신 갯벌어업 모델의 서남해안 전역 확산
- 주요추진 내용 : 5년 프로젝트 추진('10년~'14)
 - 친환경 갯벌어업 개발 제도 도입·운영(법률 제정)
 - 중장기 수출주도형 갯벌어업단지 조성계획 수립
 - 시범사업 추진 및 단계적 확대
 - 신 갯벌어업 모델 확산(미래 갯벌어업 모델 가능)

□ 중장기 투자계획 예산 확보 추진

(단위 : 억원)

사업명	합계	1단계 (765억원)			2단계 (1,099억원)			3단계 (1,450억원)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총계	3,821	371	433	466	358	373	358	373	358	373	358
(신규분야) 소계	1,577	216	243	243	125	125	125	125	125	125	125
○ 환경조사 및 복원프로그램 개발(신규)	243	18	25	25	25	25	25	25	25	25	25
○ 서식생태계 개선(신규)	1,334	198	218	218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어장생산력 증진(기존)	2,244	155	190	223	233	248	233	248	233	248	233

참 고 1

유류오염피해 배(보)상 청구·접수 현황

(‘10. 8. 30 현재)

○ 선주책임제한채권 신고 현황 (‘09. 5. 8 종료)

구 분		계	%	수 산	%	비수산	%
선주책임 제한채권 신고 (대전지법 서산지원)	건 수	126,313	100	110,558	88	15,755	12
	신고액 (억원)	35,444	100	18,816	53	16,628	47

※ 어업별(건/억원) : 양식 6,509/4,431, 어선 8,974/3,011, 맨손 88,632/8,208, 기타 6,443/3,165
(6%) (8%) (80%) (6%)

- 어업별 신고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계	양 식	어 선	맨손어업	기 타
합 계	건 수	110,558 (100%)	6,509 (5.9)	8,974 (8.1)	88,632 (80.2)	6,443 (5.8)
	신고액	18,816 (100%)	4,431 (23.6)	3,012 (16.0)	8,208 (43.6)	3,165 (16.8)
충 남	건 수	57,687	2,970	5,046	47,019	2,652
	신고액	13,141	3,290	2,338	5,150	2,363
전 남	건 수	29,042	2,867	1,897	21,523	2,758
	신고액	3,371	613	244	1,847	667
전 북	건 수	22,953	410	1,924	19,907	712
	신고액	2,165	491	405	1,187	82
기 타	건 수	1,476	262	110	183	321
	신고액	139	36	25	24	54

○ Hebei Spirit센타 클레임 접수사정(査定) 현황 (‘10. 8. 30 현재)

구 분	HSC claim 접수	IOPC Fund 승인 결과			지 급 액 (건/억원)	한 국 정 부	
	건수 / 억원	계 (건)	피해인정 (건/억원)	반려 (건)		대부액 (건/억원)	대지급액 (건/억원)
계	25,477/21,370	7,534	2,023/1,186	5,511	1,906/1,100		
수 산	9,635/15,681	1,154	199/108	955	187 / 99	모든 업종 19,626 / 485	
	어업	967/9,824	7	3 / 7	4		- / -
	양식	8,668/5,858	1,147	196/101	951	187 / 99	
비수산	15,842/5,689	6,380	1,824/1,078	4,556	1,719/1,001	모든 업종 377/326	

* 클레임 접수 건수는 다수인(맨손어업자 등)으로 구성된 그룹청구(241건, 98,969명) 건수가 포함됨.

참 고 2

주요 대형 유류오염 사고의 피해보상 추이

1. 사고 개요

사고선박	사고일시	오염지역	사고원인	유출량	중점 방제기간
씨프린스	'95. 7	대한민국 남해안	좌초	원유 0.5만 톤	4개월
나호드카	'97. 1	일 본	선체 절단	중유 0.6만 톤	6개월
에 리 카	'99.12	프랑스	"	중유 1.4만 톤	6개월
프레스티지	'02.11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	중유 6.3만 톤	6개월
허베이스퍼리트	'07.12	대한민국 서해안	충돌	원유 1.1만 톤	7개월 ('07.12~'08.6)

2. IOPC Fund의 주요사고 보상금 지급 추이

(단위 : 억 원)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최 종
씨프린스	총 지급액	140	197	339	411	502
	방제 비용	140	197	197	211	207
	피해 보상	-	-	142	200	295
나호드카	총 지급액	412	495	875	1,540	2,312
	방제 비용	407	486	867	1,532	1,855
	피해 보상	5	9	9	8	457
에 리 카	총 지급액	32	408	783	1,397	1,823 (진행중)
	방제 비용	1	25	60	89	449 (진행중)
	피해 보상	31	383	723	1,308	1,374 (진행중)
프레스티지	총 지급액	807	807	807	1,597	1,678 (진행중)
허 베 이 스퍼리트	총 지급액	545	924	1,122		
	방제 비용	544	766	857		
	피해 보상	1	158	265		

* 허베이는 3년차 금액은 '10.10.4 기준 지급. 타 사고는 연말기준임

□ 추진 배경

오염된 수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IOPC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출어제한 조치('07.12.7)

□ 추진 경과

- 수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사항 긴급시달('07.12.7)
 - 오염된 수산물의 채취, 유통통제 및 출어제한 등
- 조업재개 방안 검토 및 관련사항 시달('07.12.27)
 - 기관별 역할 및 기능 분담, 조업재개 결정 절차, 조업재개 후 수산물 안전처리 등
- 조업재개 관련, 민관합동 4차례 실무협의회 개최('08.1.22 태안군청)
 - 출어 및 오염 수산물 등에 대한 포획·채취·유통 통제조치 해제 여부 등 논의(태안군청 '08.2.20)
 - 수산물 안전성 관련 각 기관별 조사사항을 점검하고 어업재개를 위한 조치방안 등에 대해 논의('08.2.21 해양수산부)
 - 모항 등 오염이 심하거나 방제작업 중인 해역 등을 제외하고 어업별로 단계적인 조업재개를 실시키로 함('08.3.8 농림수산식품부)
 - 태안선주연합회 저층 형망조사 결과에 대한 민관합동 검증·조사 필요성에 대한 논의('08.3.28 태안군청)
- 태안군 선주연합회가 저질에 대한 타르조사 실시('08.3.22 형망 12척)
- 태안 유류피해지역 조업재개를 위한 시험조업 실시('08.4.4)
- 태안군 선주연합회 차관 면담으로 정부의 신속한 결정요구('08.4.7)
- 조업현황 관련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08.4.10)
 - 조업현황 파악 및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통한 조업재개 추진방안 마련

□ 조업재개 조치

○ 조치 배경

- '08.2월말 수산물 안전성 확인을 위해 어업인들이 조업재개 정식 요청
- 연구기관의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거쳐 조업재개 여부 검토 추진
- * 연구기관(수산과학원, 수산물품질검사원, 해양연구원 등)은 유류오염 사고지역에 대한 해수, 해양생태계 변화 및 수산물의 인체 위해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 추진

기본방제 완료 : 해상 '08.1.8 해안 '08.7.7 도서 '08.10.10

○ 조업재개 추진 절차

수산물 안전성 검사의뢰(지자체) → 계획수립(우리부 → 지자체, 과학원통보)
→ 안전성 조사결과 보고(과학원 → 우리부) → 조사결과 통보(우리부 →
자자체) → 조업재개 추진(지자체)

※ 안전성 조사를 위한 시료채취(우리부·지자체·과학원·이해관계 어업인 참여)

□ 어업별 조업재개

- '08.4.18 : 어선어업 (소원면 · 원북면 · 이원면 제외)
- '08.5. 9 : 어선어업 (소원면 제외)
- '08.5.19 : 마을어업 (소근진만, 천수만)
- '08.6.10 : 마을어업 (가로림만, 안면도 일원)
- '08.7.24 : 어선어업 (소원면)
- '08.8.13 : 맨손 · 나잠어업 (안면읍 · 남면 · 근흥면 · 이원면)
- '08.8.27 : 형망어업
- '08.9. 3 : 마을 · 맨손 · 나잠 (소원면 · 원북면)

□ 조사 항목

○ 위해성 평가

유류의 발암성 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에 오염된 수산물의 섭취를 통하여 인체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해성 여부 평가

○ 관능 평가

미각·후각 검사를 통해 식품으로서의 적합성 여부 판정

□ 조사 결과

○ 태안 일부지역의 패류(굴 등)를 제외한 나머지 어종은 인체에 위해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

○ 관능 평가에서 퇴적물내 타르 검출 및 일부 패각에서 기름 흔적 확인 (12개 조사지역 중 11개 지점에서 타르 확인 / 4.4 형망 시험조업)

* 키조개 등 패류는 관능검사에서 문제가 있는 데도 위해성 평가에서는 인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

◆ 대부분의 수산물은 인체에 위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안전성은 확인되었으나, 관능 평가에서 패류는 문제점 노출
 ☞ 안전성이 확인된 어류 등은 조업재개, 인체에 유해성이 있는 패류에는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포획금지 권고

※ 수산물의 인체 위해성 평가 및 관능검사 외에 조업 현장에서 육안으로 식별되는 유류가 발견되어, 조업 시 수산물에 흡착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는 정책적 판단 필요

VI. 주요통계 및 참고자료

1. 어업자원관 예산 내역	243
2. 주요통계(요약)	246
3. 주요 세부통계	261
가. 연근해어업 허가처분 현황	261
나. 어선등록 현황	265
다. 양식어업 면허·허가건수 및 면적	270
라. 내수면어업 현황	273
마. 수산물 생산 현황	275
바. 어업자원관리 정보화 시스템 활용 현황	284
사. 기타 통계자료(어가인구·어가소득 및 부채·어촌계·수급 등)	285
4. 법령 현황	297
5. 수산동식물 채포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311
6. 어업의 종류별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	319
7. 법인 현황	321
8. 위원회 현황	325
9. 연근해 어업별 조업 모식도	330
가. 수산업법상 수산업의 분류	330
나. 면허·허가·신고어업의 정의 및 어업종류	331
다. 허가어업의 종류	333
【근해어업】	333
【연안어업】	344
【구획어업】	349

1

'10년도 어업자원관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a)	2010 (b)	2011 (안)		증감율(%)		비고
				요구	조정안(c)	b/a	c/b	
총 계	461,847 (528,485)	269,080 (338,208)	251,549 (323,132)	348,574 (278,487)	223,406 (296,999)	-6.5	-11.2	
일반회계	20,965	23,259	54,342	81,837	79,082	133.6	45.5	
○지속가능한어업생산체계 구축	1,750	1,400	1,400	1,300	1,300	0.0	-7.1	
○총허용어획량제도운영	915	1,019	1,735	1,961	1,735	70.3	0.0	
○바다목장 조성	12,200	13,000	17,917	-	-	37.8	-100.0	
○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운영	1,300	1,840	2,190	2,252	2,252	19.0	2.8	
○유류피해지역지원	-	-	21,600	19,500	19,500	(신규)	90.3	
○해조류바이오매스 에너지화	-	-	1,000	1,000	1,000	(신규)	100.0	
○소규모 바다목장(지자체)	4,800	6,000	8,500	-	-	41.7	(신규)	'11:수산자원사업단 운영
○수산자원사업단 운영	-	-	-	55,824	53,295	-	(신규)	
농특회계	407,082	195,762	158,803	145,692	91,327	-18.9	-42.5	
○친환경어구 보급 지원	3,000	4,870	5,035	5,400	5,035	3.4	0.0	
○연근해어선 감척(지자체)	368,900	129,900	77,500	42,980	41,214	-40.3	-46.8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치 지원	-	5,502	3,912	3,240	3,240	-28.9	-17.2	
○수산물 이력제 도입	1,300	1,800	1,800	1,700	1,700	0.0	-5.6	
○수산물 위생관리	3,373	2,550	2,750	2,475	2,200	7.8	-20.0	
○해역별위생등급 설정관리	1,853	2,052	2,052	2,567	2,567	0.0	25.1	
○환경친화형배합사료지원	6,700	7,000	6,300	5,040	5,040	-10.0	-20.0	
○환경친화형배합사료지원(이차보전)	1,300	7,313	(9,742)	(4,994)	(4,994)	33.2	-48.7	'10부터 수산금융 이차보전으로 통합
○친환경양식기반시설구축	5,400	5,100	15,400	17,820	8,020	202.0	-47.9	
○해양심층수수산자원조성시설 건립	5,000	5,000	1,500	-	-	-70.0	-100.0	
○바다숲조성	-	10,000	15,000	-	-	50.0	-100.0	'11:수산자원사업단 운영
○내수면자원조성	1,800	1,205	3,834	3,360	3,300	218.2	-13.9	
○내수면토종종묘보급	-	1,000	-	-	-	(종료)	-	'10부터 내수면 자원조성으로 통합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8,090	12,470	12,894	13,823	12,844	3.4	-0.4	
○토속어류산업화센터건립	366	-	-	-	-	(종료)	-	

구 분	2008	2009 (a)	2010 (b)	2011 (안)		증감율(%)		비고
				요구	조정안(c)	b/a	c/b	
○적조피해발생직전양식어류방류	-	-	300	300	300	(신규)	0.0	
○수산동물질병관리	-	-	784	1,033	873	(신규)	11.4	'10부터 기금 →농특으로 이관
○(분리)수산업관측	-	-	-	2,440	-			
○(신규)갯벌어업단지조성	-	-	-	1,750	-			
○(신규)관상어산업육성	-	-	-	1,800	-			
○(신규)남시산업육성	-	-	-	2,970	-			
○(신규)연근해노후어선건조(용자)	-	-	-	32,000	-			
광(균)특회계	0 (66,638)	550 (69,678)	1,250 (72,833)	3,000 (73,087)	2,000 (75,593)	127.3 (4.5)	60.0 (3.8)	
○토속어류 산업화센터 건립	-	-	1,000	3,000	2,000	(신규)	100.0	우리부 편성
○웰빙표고넙치브랜드개발지원	-	550	250	-	-	-54.5	-100.0	"
○김육상채묘및냉동망 보관	2,750	1,000	(1,000)	(620)	(620)	0.0	-38.0	'10부터 광특 지역 계정으로 편성
○지하해수조사	-	-	(882)	(800)	(800)	(신규)	-9.3	"
○해조류부산물재활용지원	-	-	(300)	(300)	(300)	(신규)	0.0	"
○해외양식어종생산시설건립	-	-	-	(500)	(500)	-	(신규)	"
○양식어장자동화시설장비지원	-	-	-	(310)	(310)	-	(신규)	"
○복합남시공원조성사업	-	500	(1,750)	(2,848)	(2,848)	250.0	62.7	"
○양식어장관리사업	5,428	5,719	(5,688)	(6,023)	(6,023)	-0.5	5.9	"
○인공어초사업	31,780	31,810	(31,187)	(27,055)	(27,741)	-2.0	-11.0	"
○수산종묘관리사업	14,236	14,152	(13,575)	(16,384)	(16,374)	-4.1	20.6	"
○내수면어업생산시설	2,022	2,878	(3,540)	(2,000)	(2,000)	23.0	-43.5	"
○멸종위기어종 생태계 복원	-	-	(48)	(328)	(328)	(신규)	583.3	"
○유류피해지역 자원조성	-	-	(500)	(500)	(500)	(신규)	0.0	"
○고효율어류사료생산공장건립	-	600	-	-	-	-100.0	-	
○양식어장관리사업(제주)	300	300	(270)	(270)	(270)	-10.0	0.0	'10부터 광특 제주 계정으로 편성
○인공어초사업(제주)	6,700	8,200	(7,780)	(7,680)	(9,730)	-5.1	25.1	"
○수산종묘관리사업(제주)	2,572	2,893	(3,604)	(3,050)	(3,830)	24.6	6.3	"
○친환경양식기반조성(제주)	400	626	(959)	(919)	(919)	53.2	-4.2	"
○환경친화형배합사료지원(제주)	450	450	500	(500)	(500)	11.1	0.0	"

구 분	2008	2009 (a)	2010 (b)	2011 (안)		증감율(%)		비고
				요구	조정안(c)	b/a	c/b	
예특회계	0	0	0	16,400	16,400	-	(신규)	
○양식장 지열 냉·난방시설 보급	-	-	-	16,400	16,400	-	(신규)	농어업이용에너지 효율화(식량곡 내역사업)
수발기금	33,800	49,509	37,154	31,558	34,597	-25.0	-6.9	
○출하조절(수산물 자조금 지원)	3,500	4,200	3,781	2,241	3,781	-10.0	0.0	
○양식어업지원	13,300	8,105	7,699	6,929	7,629	-5.0	-0.9	
○연안어장 및 내수면환경개선	-	22,000	13,000	10,600	12,500	-40.9	-3.8	
○TAC참여어업인경영개선	15,000	12,500	11,875	11,088	10,687	-5.0	-10.0	
○순환여과식양식시설지원	700	700	700	700	-	0.0	-100.0	'11부터 양식어업 지원에 포함
○생계소득및안정	-	99	99	-	-	0.0	-100.0	'11부터 수산동물 질병관리에 통합
○수산동물질병관리	-	705	-	-	-	-100.0	-	'10부터 농특회계 로 이관
○어망생산운영자금	700	600	-	-	-	-100.0	-	'10부터 지원중단
○어선기관 및 장비개량	600	600	-	-	-	-100.0	-	'10부터 지원중단

※ () : '10부터 광특 시도편성(지역개발계정) 사업이며, 총(소)계의 ()는 시도편성사업을 포함한 금액임

※ 상기 금액에는 추경예산이 포함

- '08 추경 : 연근해어선감척(2,350억원), 환경친화형배합사료이차보전(13억원) 포함
- '09 추경 : 연안어장및내수면환경개선(20억원) 포함

2

주요통계(요약)

1. 예산현황

(단위 : 억원)

사업명	'09	'10 (A)	비중(%)	'11 (안)		증감	
				요구안	조정안(B)	(B - A)	(%)
□ 총 지출(예산+기금)	146,363	146,738	100.0	156,975	149,092	2,354	1.6
○ 농업·농촌	123,240	120,808	82.3	129,141	122,596	1,788	1.5
○ 수산업·어촌	14,224	13,571	9.3	13,829	12,861	-710	-5.2
- 예산	8,535	8,432		8,636	7,292	-1,140	-13.5
· 수산물유통및안전관리	772	424		351	303	-121	-28.5
· 수산자원관리및조성	2,337	2,551		2,826	2,218	-333	-13.1
· 어촌·어항개발	1,452	1,494		1,422	1,447	-47	-3.2
· 수산경영지원	2,591	2,742		2,270	2,121	-621	-22.6
· 원양협력	69	102		408	108	6	5.9
· 수산연구	1,024	795		926	778	-17	-2.1
· 수산물품질관리	96	100		110	108	8	8.0
· 어업지도관리	199	224		224	209	-15	-6.7
- 기금	5,689	5,139		5,292	5,569	430	8.4
○ 식품업	4,718	6,716	4.6	7,671	7,121	405	6.0
○ 기타 사업비	212	1,254	0.8	1,583	1,921	667	53.2
○ 기본적경비	4,393	4,388	3.0	4,652	4,593	205	4.7
□ 어업자원관실	2,692	2,516	수산·어촌 의 18.5%	2,817	2,234	-282	-11.2
○ 일반회계	233	543		818	791	248	45.7
○ 농특회계	1,958	1,588		1,489	913	-675	-42.5
○ 광특회계	6	13		194	184	171	1,315.4
○ 수발기금	495	372		316	346	-26	-7.0

2. 어업 부가가치

(단위 : 10억 원)

		'05	'07	'08(a)	'09(b)	비중(%)	대비(b/a)
총부가 가치 (GVA)	계	775,890	859,518	881,437	884,714	100.0	100.4%
	농림어업	25,853	25,209	24,686	24,929	2.9	101.0%
	농업	22,756	21,953	21,206	21,408	2.4	101.0%
	어업	2,097	2,141	2,260	2,315	0.3	102.4%
국민총소득(GNI)	864,427	976,814	1,034,115	1,068,654		103.3%	

* 국내총생산(G) 대비 비중 : 농림어업 2.6%, 농업 2.2%, 어업 0.2%

3. 인구 및 가구, 어가경제

○ 인구

(단위 : 천명)

		'00	'05	'08(a)	'09(b)	비중(%)	대비(b/a)
총 인구		47,008	48,138	48,607	48,747	100.0	100.3%
어 가	소계	251	221	192	184	0.4	95.5%
	어로	176	157	133	124		93.2%
	양식	75	64	59	60		100.6%
농가		4,031	3,434	3,187	3,117	6.4	97.8%

* 65세이상 어가인구(천명) : ('03) 33.8(어가인구의 14%) → ('05) 41.6 → ('08) 43.6 → ('09) 45.6(25%)

* 65세이상 농가인구 : 1,067천명(전체 농가인구의 34.2%)

○ 가구

(단위 : 천호)

		'00	'05	'08(a)	'09(b)	비중(%)	대비(b/a)
총 가구		14,312	15,887	16,673	16,917	100.0	101.5%
어 가 수	소계	82	80	71	69	0.4	97.7%
	어로	57	56	49	47		95.7%
	양식	25	24	22	22		102.3%
농가수		1,383	1,273	1,212	1,195	7.1	98.6%

* 가구당 : 어가 2.65명, 농가 2.61명, 전체 2.88명

○ 어가경제

(단위 : 만원)

		'05	'07	'08(a)	'09(b)	비중(%)	대비(b/a)
소 득	도시	3,841	4,382	4,687	4,666	100.0	99.6%
	어가	2,803	2,803	3,118	3,395	72.7	108.9%
	농가	3,050	3,050	3,052	3,081	66.0	101.0%
부 채	어가	3,453	3,453	3,359	3,586		106.8%
	농가	2,721	2,721	2,579	2,627		100.6%

* 주) '08년 표본교체에 유의

4. 수산물 생산

○ 생산량

(단위 : 천톤)

	총생산량	어업별				비 고
		연근해	양식	원양	내수면	
'90	3,198	1,472	773	919	34	세계 수산물 생산량(1억5,637만톤) 21%(12위, '07기준) * 중국 562만톤(1위), 페루 726(4위), 일본 560(5위), 미국 530(6위),
'95	3,348	1,425	996	897	29	
'00	2,514	1,189	653	651	21	
'05	2,714	1,097	1,041	552	24	
'08	3,361	1,285	1,381	666	29	
'09	3,182	1,227	1,313	612	30	
대비	94.7%	95.5%	95.1%	91.9%	103.4%	* '90수준 회복, '00대비 27% 증

* 수산물 총생산량(천톤) : ('90) 3,198 → ('95) 3,348 → ('00) 2,514 → ('05) 2,714 → ('06) 3,032 → ('07) 3,275

○ 생산액

(단위 : 억원)

	총생산액	어업별				비 고
		연근해	양식	원양	내수면	
'90	24,182	14,162	4,199	4,913	908	농림어업 생산액(49조9,106억)의 13.8% GDP 중 0.2% 차지 * 생산단가: ('08) 1,888 → ('09) 2,176원/kg (연근해) (2,508) (2,967)
'95	37,963	24,794	6,481	5,260	1,429	
'00	40,664	23,295	6,839	9,297	1,234	
'05	50,493	27,060	13,484	8,192	1,757	
'08	63,451	32,223	15,201	13,274	2,753	
'09	69,242	36,404	18,463	11,638	2,737	
대비	109.1%	129.8%	121.5%	87.7%	99.4%	

* 수산물 총생산액(억원) : ('90) 24,182 → ('95) 37,963 → ('00) 40,664 → ('05) 50,493 → ('06) 52,859 → ('07) 57,519

○ 주요 어종별 생산량

(단위 : 천톤)

	연 근 해							양 식				원 양		
	고등어	멸치류	갈치	참조기	참어	오징어류	꽃게	미역	김	다시마	굴	전복	명태	오징어
'90	96	130	104	28	6	74	23	269	98	8	219	-	322	229
'00	146	201	81	20	13	226	13	212	130	14	177	-	86	178
'05	136	249	60	15	8	189	4	282	198	108	252	2	26	81
'08	190	262	72	33	45	186	18	381	224	285	250	5	28	182
'09	175	204	85	34	38	189	31	309	211	306	241	6	39	85
대비	92.1%	77.9%	118.1%	103.0%	84.4%	101.6%	172.2%	81.1%	94.2%	107.4%	96.4%	120.0%	133.3%	45.7%

5. 어업권 현황(단위 : 건)

	허가			면허			신고 어업	내수면		
	근해	연안	구획	정치망	마을	양식		허가	면허	신고
'00	5,874	86,129	8,406	555	2,291	8,462	58,663	4,155	228	2,751
'05	4,359	80,518	7,876	553	2,726	9,110	61,897	4,820	155	3,542
'08	3,957	66,660	7,138	540	2,897	9,555	100,984	4,962	92	3,417
'09	3,404	61,388	6,899	536	3,020	9,709	121,453	4,847	82	3,454

* 근해어업 허가

	계	대형기저		서남해구			트 롤		선 망		채낚기
		외끌이	쌍끌이	외끌이	쌍끌이	동해구	대형	동해구	대형	소형	
정수(A)	2,732	34	38	29	7	20	37	23	29	35	618
허가(B)	3,404	46	36	43	9	38	52	37	27	47	720
증감(B-A)	672	12	△2	14	2	18	15	14	△2	12	102

	권현망	자망	안강망	봉수망	자리돔 들망	잠수기	통 발			형망	연승
							장어	기타	문어단지		
정수(A)	68	569	199	55	6	175	40	159	40	72	479
허가(B)	78	736	247	40	5	236	65	225	41	101	575
증감(B-A)	10	167	48	△15	△1	61	25	66	1	29	96

* 연안어업 허가

	계	자망	개량안강망			선망	통발	들망	조망	선인망	복합	분기 초망	기타
			개량	냉장망	안강망								
정수(A)	52,613	17,351	631	-	-	331	4,680	781	1,143	14	27,682	-	-
허가(B)	61,388	19,254	535	40	16	257	7,946	836	921	6	31,468	101	8
증감(B-A)	8,775	1,903	△96	40	16	△74	3,266	55	△222	△8	3,786	101	8

* 구획어업 허가 및 신고어업

	구획어업					신고어업			
	계	정치성	형망	새우조망	실뱀장어 안강망	계	맨손	나잠	투망
정수	2,347	-	556	850	941	-	-	-	-
허가 (신고)	6,899	4,860	430	826	783	121,453	114,557	6,825	71

* 양식어업 면허

2008년	2009년도						비 고
	계	해조류	패류	어류	복합	협동	
9,555	9,709 (100%)	1,954 (20.1%)	5,087 (52.4%)	1,161 (12%)	1,196 (12.3%)	311 (3.2%)	'08대비 1.6% 증

6. 어선척수

(단위 : 척)

	'00	'05	'08(a)	'09(b)	대비(b/a)
척수	95,890	90,735	80,766	77,713	96.2%
톤수	923,099	700,810	621,338	594,772	95.7%

* 톤급별 : 2톤미만 50,730(65%), 2~5톤미만 17,496(23%), 50톤이상 1,565(2%)

* 어업별 : 근해 3,047(4%), 연안 50,752(65%), 양식 17,786(23%), 내수면 3,824(5%), 원양 370(1%)

* 선질별 : FRP선 63,107(81%), 강선 1,916(3%), 목선 12,647(16%), 기타 43(0.1%)

7. 연근해어선 감척

(단위 : 척, 억원)

	누계				'08			'09		
	계	근해	연안	국제	계	근해	연안	계	근해	연안
척수	15,399	1,195	12,896	1,308	5,219	351	4,868	1,724	124	1,600
금액	14,711	3,562	4,706	6,443	2,745	1,204	1,541	1,295	495	800

* 누계척수에는 국제감척 포함

* '10년 계획 : 1,165척/ 775억원 (근해 70척/228억원, 연안 1,095척/547억원)

* 적정 어선세력 : 40,337척(연안 37,995척, 근해 2,342척)

8. 적조발생 현황

연도별	최초발생	소멸일	지속기간	최초발생지역	발생범위	최고밀도 (개체/㎡)	폐사량 (천미)	피해액 (억원)
2001	8.14	9.24	41일	나로도·돌산	완도~강릉	32,000	7,557	84
2003	8.13	10.13	62	보물바다·두미도	진도~강릉	48,000	13,088	215
2005	7.19	9.14	58	나로도인근	완도~거제	25,000	1,638	10.6
2007	7.31	9.18	50	나로도인근	완도~울진	32,500	9,570	115
2008	7.30	9.29	62일	나로도인근	완도~울산	7,300	-	-
2009	10.28	11.15	19일	돌산 백포	여수~통영	1,660	-	-

9. 수산물이력제 참여업체 현황(누계)

	계	생산단계	가공단계	유통단계	판매단계
'09.12	600	125	51	13	411
'10. 8	700	138	61	17	484

* 적용품목(13개) : 넙치, 참돔, 굴비, 멸치, 갈치, 옥돔, 김, 건미역, 염장미역, 다시마, 전복, 굴, 바지락

10. 양식장 HACCP 추진현황('09.12월 누계)

구 분	계	대상품종			
		넙치	뱀장어	송어	자라
컨설팅	147	77	30	37	3
시설개선	81	43	10	28	-

* '10.8.31 현재 : 컨설팅(30개소), 시설개선(9개소) 지원추진

11.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국 현황(4개국 5개약정)

국가별	약정명	체결부처 및 체결권자	체결	시행
베트남	한·베트남 수출·입 수산물 품질 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약정	품질검사원 원장 국립수산물품질보증및검역국 국장	2000. 7.5	2003. 4.1
중국	한·중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	해양수산부 차관 국가출입경검험검역국 부국장	2001. 4.5	2001. 7.1
	한·중 수출·입 활수생동물의 검사·검역에 관한 약정	해양수산부 장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주한중국대사)	2004. 12.16	2005. 10.15
인도네시아	한·인니 수출·입 수산물·수산 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약정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2005. 9.15	2005. 12.14
태국	한·태국 수출·입 수산물·수산 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약정	해양수산부 차관 농업협력부 차관	2006. 6.27	2006. 7.27

※ '08.8.25 한중수산물 위생약정 개정서명, 발효('09.8.1)

12. 수산자원조성

○ 인공어초 시설('71부터 적지 307천ha중 '09까지 207천ha 시설)

총사업비	시설적지	2008 *(): 누계		2009 *(): 누계		비고
		사업비	시설면적	사업비	시설면적	
2조 299억원	307천ha	403억원 (8,526)	4.6ha (202ha/66%)	411억원 (9,025)	4.7ha (207ha/67%)	

○ 수산종묘 방류실적('86부터 '09까지 11억5천만미/878억원 방류)

총사업비	2008 *(): 누계		2009 *(): 누계		비고
	사업비	방류미수	사업비	방류미수	
2,986억원	172억원 (669)	90백만미 (1,046)	209억원 (878)	107백만미 (1,152)	

* 연어방류 및 채포 실적

(단위 : 천미)

구분	합계	'67~'05	'06	'07	'08	'09	'09/'08
방류량	303,570	279,088	7,350	13,790	16,550	5,935	△64.1
채포량	1,848	1,711	45	92	83	21	△74.6

* '09년 3월 냉수성어류연구센터 연어치어 80% 폐사(사육수에 해수유입에 따른 폐사)

○ 바다숲 조성('09부터 35천ha를 대상으로 시설)

(단위 : 억원/천ha)

총사업비	조성대상	2009		2010계획		비 고
		사업비	시설면적	사업비	시설면적	
3,110	35천ha	100억원	120ha	150억원 (250)	250ha (370ha)	

○ 바다목장 조성

< 연안(소규모) 바다목장 >

구분	합계	'06	'07	'08	'09	'10	'11	
물량	계	20개소	4	7	9	12	17(완공:4)	20(완공:3)
	신규		4	3	2	3	5	3
	계속			4	7	9	12	13
시설지역		강릉,군산, 거제,제주	보령,직도, 사천	연평, 속초,	기장,신안, 강정	태안,서천, 진도,영덕, 울산	-	
사업비	계	660억	40억	80억	90억	120억	170억	160억
	국비	330억	20억	40억	45억	60억	85억	80억
	지방비	330억	20억	40억	45억	60억	85억	80억

< 시범 바다목장 >

연도별	해역별	합 계	통 영	여 수	울 진	태 안	제 주
총사업비		1,589	240	307	355	337	350
사업기간		'98~'12	'98~'06	'01~'10	'02~'12	'02~'12	'02~'12
'09까지 투자(억원)		845	240	275	124	90	116
'10 예산(억원)		180	완료	33	55	47	45
목장유형(면적)		248km ²	어업형 (20km ²)	다도해형 (110km ²)	관광형 (20km ²)	갯벌형 (75km ²)	체험·관광형 (23km ²)

13. 수산자원회복 및 TAC 실시어종

수산자원 회복어종		TAC 실시어종	
12개 어종	낙지·오분자기·도루묵·꽃게('06) 대구·참조기·참홍어('07) 가자미류·쥐치류·개조개('08) 갯장어·갈치('09)	11개 어종	고등어·전갱이류·붉은대게('99) 키조개·소라고동·개조개('01) 대게·꽃게('02) 오징어류('07) 도루묵·참홍어('09)

* 회복어종+TAC실시어종 : 4개(도루묵, 꽃게, 참홍어, 개조개)

14. 자율관리어업 참여

	참여 공동체수(개소) * 연도별 : 누계기준						참여 어업인수(명)	
	계	마을	양식	어선	복합	내수면	전체	공동체평균
'01	63	32	11	8	12	-	5,107	81.1
'05	308	159	46	52	43	8	24,805	80.5
'08	659	341	78	115	102	23	50,728	77.0
'09	758	391	80	135	124	28	56,100	74.0
'10.8	833 (100%)	427 (51%)	84 (10%)	147 (18%)	135 (16%)	40 (5%)	59,044	70.9

* 어촌계수('08) : 1,978개, * 광역공동체수('10.8) : 44개소

15. 어장환경개선 관련

○ 연안어장 및 내수면 환경개선(연근해침적폐기물 수거)

2009년도			2010년도(7월말)			비 고
예 산	침적폐기물 수거실적	고용인원	예 산	침적폐기물 수거실적	고용인원	
200억원 (뉘시터40)	19,834톤 (뉘시터3,000)	3,507명 (뉘시터200)	105억원 (뉘시터35)	2,313톤 (뉘시터136)	650명 (뉘시터50)	2009년 신규사업

* '09년 계획/실적 : 15만ha/15만ha(100%), '10년 계획/실적 : 10만ha/10만ha(100%)

○ 시·도별 어장정화·정비업 등록현황('09.12말 기준)

합 계	부산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6개	3	5	2	8	2	13	2	18	3

* ('04) 173개 업체 → ('06) 157 → ('08) 47

16. 전국 굴폐각 발생량 및 처리현황

(단위 : 톤)

구분	굴폐각 발생량	굴폐각 처리현황				
		재활용(채묘)	각(殼)굴*	자원화(비료 등)	야적·방치	기타(매립 등)
2007년	304,545 (100%)	47,795 (15.7%)	16,558 (5.4%)	179,896 (59.1%)	26,500 (8.7%)	33,796 (11.1%)
2008년	301,073 (100%)	39,013 (13%)	21,072 (7%)	182,060 (60.5%)	21,430 (7.1%)	37,498 (12.4%)
2009년	304,796 (100%)	29,672 (9.7%)	16,083 (5.3%)	231,552 (76%)	11,741 (3.8%)	15,748 (5.2%)

* 각굴(통굴) : 채취한 굴에서 폐각을 제거하지 않은 온전한 형태의 굴

* 동 자료는 내부참고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도로부터 취합한 자료임

17. 낚시 관련

○ 낚시 인구 현황

(단위 : 천명)

구 분	계	빈도수					
		1년에 한두번	1년에 서너번	1년에 대여섯번	한달에 한두번	일주일에 한두번	일주일에 서너번이상
계	5,736	2,144	1,082	1,311	787	312	100
남 자	4,393	1,403	833	1,096	700	281	80
여 자	1,343	741	249	215	87	31	20

* 자료 : '04년 한국갤럽 설문조사(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4,559명 대상)

○ 낚시인 안전사고 현황

(단위 : 명)

구 분	갯바위		방파제	
	사고건수	실종·사망	사고건수	실종·사망
'09년	61	14	20	4
'08년	53	13	31	11

○ 낚시어선 신고척수

(단위 : 척)

2008년도	2009년도			비 고
	계	선내기	선외기	
5,027	3,881 (100%)	2,752 (71)	1,129 (29)	2008년 대비 22.8%감소

○ 낚시어선 이용객 수 및 수입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비 고
이용객 수	2,077,781	2,403,637	2008년 대비 15.7% 증가
낚시어선 수입	83,775	103,764	2008년 대비 23.9% 증가

○ 내수면 낚시터 허가·신고 현황('09년)

(단위 : 건, ha)

구분	계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1021	8	31	2	2	382	77	155	122	31	100	57	54
허가	498	7	21	2	1	178	52	105	103	3	4	20	2
신고	211	-	7	-	1	77	10	24	10	18	13	33	18
무신고	312	1	3	-	-	127	15	26	9	10	83	4	34

18. 관상어 관련

○ 세계 시장(추정치)

구 분		시장 규모	조사년도	비 고
GTA		3,800억 원	2007	◦ 39개국 대상
Fishstat		4,050억 원	2009	◦ '05년 조사(2억 4천만\$) 대비 40% 신장
FAO	Aquaculture newsletter	23조 원	2000	◦ 관련 용품 시장 합산(*)
WTO		18조 3,900억 원	2007	◦ 관련용품 시장만을 측정(관상어 제외)
UNEP	“바다에서 수족관까지 : 관상어류의 세계무역 현황“	2,450억 ~ 4,050억 원	2003	

* “관상어 : 관련용품 시장 = 3:7” 규모로 추정 중

○ 세계 관상어 교역액

(단위 : 천 달러)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총교역액	422,550	424,505	420,617	533,050	574,769	556,365	588,039
수입액	247,914	248,958	235,860	279,571	303,310	292,496	310,808
수출액	174,636	175,547	184,757	253,479	271,459	263,869	277,231

* 자료 : FAO 수산물 교역통계, 2008

○ 국내 시장 규모

(단위 : 억 원, %)

담수 관상어						해수 관상어		
2,400억 원(80.0%)						600억 원(20.0%)		
어류			수초	기타 동물	용품	어류	무척추 동물	용품
금붕어	비단잉어	열대어						
72	72	240	48	48	1,920	36	24	540
3.0%	3.0%	10.0%	2.0%	2.0%	80.0%	6.0%	4.0%	90.0%

○ 국내 교역 규모(용품 등 제외)

(단위 : \$)

구 분	2008	2009	비 고
수 입	4,629,614	7,874,759	2008년 대비 70% 증가
수 출	386,181	373,796	2008년 대비 3.2% 감소

○ 국내 관상어 양식 신고현황

구 분	계	경기	전북	충남	충북	기타사·도
개소(개)	85	39	23	3	3	17
면적(m ²)	143,991	40,075	64,538	16,385	92	22,901

19. HS호 유류오염피해의 청구·사정 및 배·보상('10.8.30) (단위 : 건)

구 분	보상금 청구		피해사정				보상금 지급		
	건수	억원	계	반려	인정	억원	건수	억원	
계	25,477	21,370	7,534	5,511	2,023	1,186	1,906	1,100	
수 산	소계	9,635	15,681	1,154	955	199	108	187	99
	어업	967	9,824	7	4	3	7	-	-
	양식	8,668	5,858	1,147	951	196	101	187	99
비수산	15,842	5,689	6,380	4,556	1,824	1,078	1,719	1,001	

* 수산분야는 맨손어업 등의 그룹 청구 241건(98,969명) 9,075억 원이 포함

20. 세계 5대 갯벌

세계의 5대 갯벌



전 국토면적의 2.5%인 2,489.4km²

(단위: km², %)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합계	2,489.4	100	<p>서해 : 2,080 km² (전체갯벌의 83.6%) 남해 : 409.4 km² (전체갯벌의 16.4%)</p>
경인(인천)해역	872.7	35.1	
충청남도 해역	358.8	14.4	
전라북도 해역	117.7	4.7	
전라남도 해역	1,036.9	41.7	
경상남도(부산,제주)해역	103.3	4.1	

※ 851종의 생물 서식, 전세계 멸종위기 물생 중 47%가 주요 서식지로 이용

21. 기타 참고

21-1. 수출입실적

(단위 : 백만\$, %)

		'05	'06	'07	'08	'09	증감 (09/08)
수 출	□ 국가전체	284,419	325,465	371,489	422,007	363,534	△13.9
	○ 농림축수산물	3,416	3,395	3,759	4,497	4,809	7.0
	○ 농축산물	2,072	2,180	2,404	2,930	3,130	6.8
	- 농산물	1,899	2,008	2,223	2,715	2,991	10.2
	- 축산물	173	172	181	215	139	△35.4
	○ 임산물	150	124	128	119	168	41.5
	○ 수산물	1,194	1,090	1,227	1,448	1,511	4.3
수 입	□ 국가전체	261,238	309,383	356,846	435,275	323,085	△25.8
	○ 농림축수산물	11,889	13,327	19,242	23,199	21,241	△8.4
	○ 농축산물	9,758	10,866	13,324	17,257	14,239	△17.4
	- 농산물	7,397	8,117	10,089	13,905	11,754	△15.5
	- 축산물	2,361	2,749	3,235	3,352	2,485	△25.9
	○ 임산물	2,131	2,462	2,858	2,864	4,108	43.4
	○ 수산물	2,387	2,774	3,060	3,078	2,894	△6.0
수 지	□ 국가전체	23,181	16,082	14,643	△13,268	40,449	△404.9
	○ 농림축수산물	△8,473	△9,932	△15,483	△18,702	△16,432	△12.6
	- 수산물	△1,193	△1,684	△1,833	△1,630	△1,383	△15.2

21-2. 1인당 소비량

(단위 : kg)

	'95	'00	'05(a)	'08(b)	'08/'05
수산물	39.3	37.2	32.4	57.0	175.9%
쌀	67.8	64.6	61.0	65.1	106.7%
채소	105.8	101.5	94.8	108.7	114.7%
과실	42.2	41.5	39.4	54.3	137.8%
육류	28.5	28.8	28.0	43.3	154.6%
달걀	17.2	17.0	16.6	19.8	119.2%
유제품	91.2	94.2	92.2	86.3	93.63%

* 주요 어종별 : 명태 7.2kg, 오징어 5.6, 고등어 3.6

* 주요 품종별 : 어류 24.0kg, 패류 15.1, 해조류 15.8, 기타 2.1

21-3. 일본 주요통계

구 분	기준 연도	수치	비고
○ 배타적경제수역 면적		447만km²	
○ 어업생산액(총생산액)	'08	1조6,275억엔	
○ 수산물 생산량	'09	543만톤	근해 242, 연안 129, 해면 양식 120, 내수면 8, 원양 44
○ 어개류 자금율	'08	62%	
○ 연안어업 경영체수	'09	10.8만 경영체	
○ 어업인구	'09	21.2만명	65세이상 : 6.3만명
○ 연해지역 어협수	'09	1,028어협	
○ 어협 조합원수	'08	37만명	
○ 어선수	'08	185,465척	
○ 어항수	'10.4	2,914개	
○ 연안농가소득	'05	584만엔	어업소득('08) 263만엔
○ 수산물 1인당 소비량	'08	57.0kg	쌀 65.1, 채소 108.7, 과일 54.3
○ 수산물 수출액	'09	1,724억엔	농림수산물 4,454억엔
○ 수산물 수입액	'09	12,967억엔	농림수산물 66,661억엔

* 자료 : '04년 한국개발 설문조사(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4,559명 대상)

21-4. 국립수산과학원 현황

- 주요연혁 : 수산시험장 창설('21), 중앙수산시험장('49), 국립수산진흥원('63), 국립수산과학원('02), 책임운영기관('06.1)
- 기구 : 2부 2단 10과 2센터(본원), 8연구소 7연구센터(소속)
- 기능 : 수산자원 관리·조성, 수산공학 기술개발, 양식 및 생명공학 기술개발, 해양환경 변동조사, 수산물 위생·안전관리, 수산동물 전염병 방역업무 등
- 정원('10.9.30기준)

구 분	계	계약직	연구직	일반직	선박직	기능직
계	610	1	314	95	106	94
본 원	250	1	106	57	52	34
소속기관	360	-	208	38	54	60

- * 연구직(308명) 학위 : 박사 261명(85%), 석사 46명(15%), 학사등 1명
- * 연구직 전공 : 수산자원 53명, 수산공학 20명, 수산양식 139명, 해양환경 72명, 수산가공 24명, 수산경제 1명, 환경 5명

○ 시험조사선 : 12척(본원 4, 연구소 8)

- * 톤급별 : 885톤급 1척, 100~300톤 2척, 100톤이하 9척

○ 예 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0예산 (A)	'11예산(안)		증 감	
		요구	조정(B)	B-A	%
합 계	90,349	102,473	99,623	9,274	10.3
○ 인건비	37,970	40,628	40,411	2,441	6.4
○ 기본경비	3,807	3,922	3,915	108	2.8
- 기본경비(총액)	2,978	3,046	3,029	51	1.7
- 공익요원경비(총액)	59	61	61	2	3.4
- 기본경비(비총액)	770	815	825	55	7.1
○ 수산연구지원	13,774	19,041	18,509	4,735	34.4
- 수산연구시설 및 선박관리	13,774	18,854	18,322	4,548	33.0
- 수산과학원 수입대체 경비	-	187	187	187	순증
○ 수산시험연구	31,288	35,714	33,620	2,332	7.4
- 수산시험연구	23,826	25,732	23,638	△188	△0.8
- 수산생물 방역 및 검역체계 구축	7,462	9,982	9,982	2,520	33.8
○ 수산과학원 정보화	3,510	3,168	3,168	△342	△9.7

21-5.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현황

- 주요연혁 : 수산제품검사소('37), 중앙수산물검사소('61), 국립수산물검사소('96),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01)
- 기구 : 3과 13개 지원
- 기능 : 수·출입수산물 검사 및 검역, 국내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수산물원산지 표시·관리, 품질인증 및 친환경인증·관리, 지리적 표시제 및 이력제 등록·관리 등
- 정원('10.9 기준)

구 분	계	고공단	일반직	기능직
계	266	1	239	26
본 원	55	1	48	6
소속기관	211	-	191	20

○ 예 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0예산(A)	'11예산(안)		증 감	
		요구	조정(B)	B-A	%
합 계	28,243	31,970	31,162	2,919	10.3
○ 인 건 비	12,231	13,087	12,945	714	5.8
○ 기 본 경 비	1,913	2,047	1,990	77	4.0
○ 청사시설지원	1,886	1,375	964	△922	△48.9
○ 수산물검역·검사	7,604	8,727	8,526	922	12.1
- 수산물 검사	4,467	5,226	5,064	597	13.4
- 수산물 검역	3,137	3,301	3,312	175	5.6
- 수산물 소비안전	-	200	150	150	순증
○ 수산물원산지관리	1,216	1,124	1,127	△89	△7.3
- 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	797	866	869	72	9.0
- 과학적원산지 판별·조사	419	258	258	△161	△38.4
○ 수산물품질검사정보화	1,172	1,160	1,160	△12	△1.1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청사이전	2,220	4,450	4,450	2,230	100

3

주요 세부통계

가 연근해어업 허가처분 현황

(1) 연도별 연근해어업 허가건수

(단위 : 건/2009년)

구 분	계	근해어선	연안어선
1994	61,552	-	61,552
1995	62,072	-	62,072
1996	68,255	7,573	60,682
1997	73,299	7,374	65,925
1998	90,750	7,158	83,592
1999	90,494	6,914	83,580
2000	92,605	5,874	86,731
2001	91,248	5,591	85,657
2002	89,853	4,904	84,949
2003	88,948	4,637	84,311
2004	85,956	4,467	81,489
2005	84,878	4,360	80,518
2006	79,969	4,246	75,723
2007	75,812	4,056	71,756
2008	70,617	3,957	66,660
2009	64,792	3,404	61,388

(2) 시·도별 허가처분현황

□ 근해어업

(단위 : 건/2009년)

어업의 종류 근해어업	허가 정수	시도별 허가 처분현황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 계	2,732	3,404	254	199	105	23	354	326	140	448	577	588	390
외끌이대형저인망	34	46	20	-	-	-	-	-	-	18	-	8	-
쌍끌이대형저인망	38	36	17	7	-	-	-	-	-	3	-	9	-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20	38	-	-	-	-	14	-	-	-	24	-	-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29	43	11	-	9	-	-	-	-	11	-	11	1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7	9	-	-	-	-	-	-	-	1	-	8	-
대형트롤	37	52	44	-	-	-	-	-	-	-	-	8	-
동해구중형트롤	23	37	-	-	-	-	4	-	-	-	33	-	-
대형선망	29	27	25	-	-	-	-	1	-	-	-	1	-
소형선망	35	47	-	1	-	-	2	5	12	6	4	17	-
근해채낚기	618	720	64	18	36	2	160	23	12	33	229	72	71
기선권현망	68	78	1	-	1	-	-	-	-	16	-	60	-
근해자망	569	736	30	66	38	3	83	47	14	145	155	70	85
근해안강망	199	247	-	24	1	4	-	116	26	76	-	-	-
근해봉수망	55	40	2	-	3	-	3	-	2	5	13	4	8
근해자리돔들망	6	5	-	-	-	-	-	-	-	-	-	-	5
잠수기	175	236	1	11	-	4	7	14	8	52	11	128	-
근해장어통발	40	65	5	-	-	-	-	4	-	1	-	55	-
근해통발	159	225	3	18	6	4	32	27	2	12	73	45	3
근해문어단지	40	41	1	3	-	1	1	1	3	16	1	1	13
근해형망	72	101	-	20	-	4	-	44	33	-	-	-	-
근해연승	479	575	30	31	11	1	48	44	28	53	34	91	204

□ 연안어업

(단위 : 권/2009년)

어업의 종류		시도별 허가정수와 처분현황																							
		합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연안어업		정수	허가	정수	허가	정수	허가	정수	허가	정수	허가	정수	허가	정수	허가	정수	허가	정수	허가	정수	허가	정수	허가	정수	허가
합계		52,613	61,388	1,893	2,709	1,117	2,148	965	1,313	1,205	1,251	3,563	3,674	6,511	8,309	2,419	2,165	13,303	15,015	4,055	5,265	14,143	16,636	3,439	2,903
연안자망		17,351	19,254	558	723	386	793	372	441	628	588	1,592	1,783	2,602	3,157	922	801	3,227	3,441	2,138	2,459	4,393	4,629	533	439
소계		631	591	-	-	99	110	-	-	59	51	-	-	254	230	155	118	58	75	-	-	6	7	-	-
연안개량망		631	535	-	-	99	88	-	-	59	47	-	-	254	200	155	118	58	75	-	-	6	7	-	-
연안남장망		-	40	-	-	-	20	-	-	-	4	-	-	-	16	-	-	-	-	-	-	-	-	-	-
연안인강망		-	16	-	-	-	2	-	-	-	-	-	-	-	14	-	-	-	-	-	-	-	-	-	-
소계		331	258	7	6	-	-	-	-	-	-	31	17	36	41	16	20	85	70	30	22	104	71	22	11
연안선망		331	257	7	6	-	-	-	-	-	-	31	17	36	41	16	20	85	70	30	21	104	71	22	11
석조망		-	-	-	-	-	-	-	-	-	-	-	-	-	-	-	-	-	-	-	-	-	-	-	-
무동력		-	1	-	-	-	-	-	-	-	-	-	-	-	-	-	-	-	-	-	1	-	-	-	-
연안통합		4,680	7,946	368	668	52	120	205	345	32	56	122	211	203	373	38	60	822	1,448	694	1,305	2,131	3,335	13	25
연안들망		781	836	42	2	-	-	-	6	-	-	3	3	-	-	-	-	32	34	-	19	34	27	670	745
연안조망		1,143	921	-	-	-	-	-	-	-	-	-	-	827	714	316	207	-	-	-	-	-	-	-	-
연안선인망		14	6	-	-	-	-	-	-	-	-	14	6	-	-	-	-	-	-	-	-	-	-	-	-
연안복합		27,682	31,468	918	1,259	580	1,125	388	469	486	556	1,801	1,654	2,589	3,793	972	959	9,079	9,947	1,193	1,457	7,475	8,566	2,201	1,683
분기초망		-	101	-	49	-	-	-	51	-	-	-	-	-	-	-	-	-	-	-	-	-	1	-	-
연안행망(무동력)		-	3	-	-	-	-	-	-	-	-	-	-	-	-	-	-	-	-	-	3	-	-	-	-
해조채취		-	4	-	2	-	-	-	1	-	-	-	-	-	1	-	-	-	-	-	-	-	-	-	-

(3) 어업별 허가처분현황

□ 연안어업

(단위 : 건/2009년말)

구분	허가정수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연안어업 총계	52,613	61,388	2,709	2,148	1,313	1,251	3,674	8,309	2,165	15,015	5,265	16,636	2,903
연안자망어업	17,351	19,254	723	793	441	588	1,783	3,157	801	3,441	2,459	4,629	439
연안개량 안장망	소 계	631	591	-	110	-	51	-	230	118	75	-	7
	연안개량안장망	631	535	-	88	-	47	-	200	118	75	-	7
	연안안장망	-	40	-	20	-	4	-	16	-	-	-	-
	연안안장망	-	16	-	2	-	-	-	14	-	-	-	-
연안선망	소 계	331	258	6	-	-	17	41	20	70	22	71	11
	연안선망	331	257	6	-	-	17	41	20	70	21	71	11
	석조망	-	-	-	-	-	-	-	-	-	-	-	-
무동력	-	1	-	-	-	-	-	-	-	1	-	-	
연안통발어업	4,680	7,946	668	120	345	56	211	373	60	1,448	1,305	3,335	25
연안틀망어업	781	836	2	-	6	-	3	-	-	34	19	27	745
연안조망	1,143	921	-	-	-	-	-	714	207	-	-	-	-
연안선인망	14	6	-	-	-	-	6	-	-	-	-	-	-
연안복합어업	27,682	31,468	1,259	1,125	469	556	1,654	3,793	959	9,947	1,457	8,566	1,683
분기초망	-	101	49	-	51	-	-	-	-	-	-	1	-
연안형망(무동력)	-	3	-	-	-	-	-	-	-	-	3	-	-
해조채취어업	-	4	2	-	1	-	-	1	-	-	-	-	-

* 연안복합어업 : 낚시어업, 문어단지어업, 패류껍질어업, 패류미끼망어업, 손꽂치어업

□ 구획어업

(단위 : 건/2009년말)

구분	허가정수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구획어업 총계	2,347	6,901	43	240	59	89	335	1,067	204	3,686	185	993	-
정치성	소 계	-	4,862	43	99	59	24	87	84	2,717	166	743	-
	지인망	-	17	3	-	3	-	-	-	-	10	1	-
	선인망	-	3	-	-	-	-	-	-	2	-	1	-
	호 망	-	345	10	-	-	-	53	7	98	5	172	-
	건 망	-	305	13	-	49	-	24	-	-	62	157	-
	건간망	-	380	-	87	-	21	-	2	-	225	-	45
	주목망	-	574	-	-	-	-	-	500	49	25	-	-
	승 망	-	85	-	-	-	-	-	-	-	75	-	10
	각 망	-	1,432	15	-	7	-	10	109	20	926	89	256
	부 망	-	36	-	-	-	-	-	-	-	-	-	36
	장 망	-	15	2	-	-	-	-	-	-	-	-	13
	낭장망	-	1,656	-	-	-	1	-	222	15	1,366	-	52
	해선망	-	2	-	-	-	2	-	-	-	-	-	-
안장망	-	12	-	12	-	-	-	-	-	-	-	-	
이동성	소 계	2,347	2,039	-	141	-	65	248	227	120	969	19	250
	문어단지어업	-	-	-	-	-	-	-	-	-	-	-	-
	형망어업	556	430	-	-	-	-	248	-	-	163	19	-
	새우조망어업	850	826	-	-	-	-	-	-	-	576	-	250
실뱀장어안장망	941	783	-	141	-	65	-	227	120	230	-	-	

□ 신고어업

(단위 : 건/2009년말)

구분	허가정수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고어업 총계	-	121,453	588	4,857	1,499	572	774	61,995	14,788	33,408	2,274	698	-
맨손어업	-	114,557	5	4,710	-	572	151	60,805	14,769	33,077	435	33	-
나잠어업	-	6,825	583	147	1,499	-	573	1,190	19	311	1,839	664	-
투망어업	-	71	-	-	-	-	50	-	-	20	-	1	-

나

어선등록 현황

(1) 연도별 연근해 어선 척수 및 톤수

구 분	계		근해어선		연안어선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1994	50,061	444,110	6,541	329,211	43,520	114,899
1995	51,357	445,196	6,567	323,407	44,790	121,789
1996	50,927	439,261	6,293	319,370	44,634	119,891
1997	56,418	439,315	6,345	315,229	50,073	124,086
1998	59,722	438,205	6,165	302,324	53,557	135,881
1999	66,776	434,142	5,937	291,607	60,839	142,535
2000	68,629	397,869	5,287	247,275	63,342	150,594
2001	67,990	386,180	5,014	231,909	62,976	154,271
2002	67,411	362,162	4,541	204,200	62,870	157,962
2003	66,698	345,126	4,166	185,773	62,532	159,353
2004	66,063	330,202	3,773	169,724	62,290	160,478
2005	64,579	322,809	3,687	164,036	60,892	158,773
2006	63,518	312,580	3,629	162,831	59,889	149,749
2007	63,110	308,511	3,573	162,264	59,537	146,247
2008	57,177	280,707	3,385	148,032	53,792	132,675
2009	53,799	257,292	3,047	132,436	50,752	124,856

(2) 어선등록현황(2009년말 현재)

선종별

(단위 : 척,톤/2009년말)

구분	동력	무동력	계	강선	목선	FRP선	기타
척수	75,247 (97%)	2,466 (3%)	77,713	1,916 (2.5%)	12,647 (16.3%)	63,107 (81.2%)	43 (-)
톤수	592,445 (99.6%)	2,327 (0.4%)	594,772	382,006 (64.2%)	21,112 (3.6%)	191,688 (32.2%)	394 (-)

* 일반선박 : 8,600척(국토부 등록)

톤급별

(단위 : 척,톤/2009년말)

구분	계	2톤미만	2~5톤	5~10톤	10~50톤	50~100톤	100~200톤	200톤이상
척수	77,713	50,730 (65.3%)	17,496 (22.5%)	5,811 (7.5%)	2,111 (2.7%)	800 (1%)	273 (0.4%)	492 (0.6%)
톤수	594,772	52,375 (8.8%)	62,447 (10.5%)	45,184 (7.6%)	50,476 (8.5%)	58,301 (9.8%)	40,072 (6.8%)	285,917 (48%)

* 5톤 미만 : 68,226척(87.8%), 연안 5톤 미만 : 43,614척, 25톤 미만 : 75,215척(96.8%),
3톤 미만 : 37,234척(전체대비 47.9%, 연근해 53,799척 대비 69.2%)

선령별

(단위 : 척,톤/2009년말)

구분	계	5년이하	6~10년	11~15년	16~20년	21~25년	26년이상
척수	77,713	16,048 (20.7%)	19,693 (25.3%)	21,538 (27.7%)	10,813 (13.9%)	3,904 (5%)	5,717 (7.4%)
톤수	594,772	66,607 (11.2%)	75,335 (12.7%)	85,347 (14.3%)	91,156 (15.3%)	71,713 (12.1%)	204,614 (34.4%)

어업별·선령별

(단위 : 척/2009년말)

구분	계	5년이하	6~10년	11~15년	16~20년	21년이상
대형기저	120	6	3	30	35	46
중형기저	103	25	2	6	17	53
대형트롤 (동해구 포함)	92	8	13	34	17	20
대형선망	154	-	1	8	40	105
근해채낚기	522	86	121	193	66	56
기선권현망	418	22	25	42	94	235
근해안강망	236	57	48	76	18	37
연안자망	16,278	3,308	4,813	5,100	1,960	1,097
연안안강망	449	72	156	158	39	24
연안선망	251	79	75	67	18	12
연안통발	5,619	1,288	1,736	1,526	640	429
연안복합	25,459	5,039	7,210	8,141	3,242	1,827

□ 어업별

(단위 : 척,톤/2009년말)

구분	계	원양	근해	연안	양식	내수면	기타
척수	77,713	370 (0.5%)	3,047 (4%)	50,752 (65.3%)	17,786 (22.9%)	3,824 (4.9%)	1,934 (2.4%)
톤수	594,772	188,174 (31.6%)	132,436 (22.3%)	124,856 (21%)	31,077 (5.2%)	2,974 (0.5%)	115,255 (19.4%)

* 20톤 이상 근해어선 : 2,041척(67%),

□ 시도별

(단위 : 척,톤/2009년말)

구분	계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척수	77,713	4,480 (5.8%)	14 (-)	1,990 (2.6%)	1,268 (1.6%)	2,101 (2.7%)	3,126 (4%)	473 (0.6%)	6,023 (7.8%)	3,724 (4.8%)	32,696 (42%)	3,859 (5%)	15,750 (20.3%)	2,209 (2.8%)
톤수	594,772	311,583 (52.4%)	6 (-)	19,681 (3.3%)	4,756 (0.8%)	4,136 (0.7%)	19,047 (3.2%)	198 (-)	21,943 (3.7%)	13,071 (2.2%)	90,313 (15.2%)	27,619 (4.6%)	64,389 (10.8%)	18,030 (3%)

* NLL주변(총 351척) : 동해(거진, 고성) : 222척, 서해 129척(백령86, 대청24, 연평19)

(3) 연도별 어선 세력

(단위 : 척,톤)

	계		동 력 선		무동력선	
	척 수	톤 수	척 수	톤 수	척 수	톤 수
60	34,438	107,017	4,349	57,979	30,089	49,038
70	68,355	358,366	14,085	268,182	54,270	90,184
80	77,574	770,688	51,113	740,266	26,461	30,422
90	99,658	976,731	79,365	954,977	20,293	21,754
95	76,801	958,599	71,041	951,213	5,760	7,386
00	95,890	923,099	89,294	917,963	6,596	5,136
01	94,935	884,853	89,347	880,467	5,588	4,386
02	94,388	816,563	89,327	812,629	5,061	3,934
03	93,257	744,335	88,523	750,663	4,734	3,672
04	91,608	724,980	87,203	721,398	4,405	3,582
05	90,735	700,810	87,554	697,956	3,181	2,854
06	86,113	673,719	83,358	671,299	2,755	2,420
07	85,627	663,869	82,796	661,519	2,831	2,350
08	80,766	621,338	78,280	619,098	2,486	2,239
09	77,713	594,772	75,247	592,445	2,466	2,327

(4) 연도별·톤급별 어선 척수 현황

(단위 : 척)

	계	1톤미만	1~5톤	5~10톤	10~50톤	50~100톤	100~200톤	200톤이상
80	77,574	23,314	42,839	3,507	5,077	1,805	450	582
90	99,658	34,428	52,797	4,530	4,552	1,937	630	784
95	76,801	26,403	36,809	6,220	4,075	1,904	676	714
98	90,997	36,712	40,361	6,879	3,788	1,950	613	694
99	94,852	38,067	42,884	7,019	3,717	1,872	595	698
00	95,890	37,542	44,794	7,332	3,465	1,584	518	655
01	94,935	35,013	46,424	7,662	3,249	1,463	490	634
02	94,388	33,967	47,156	7,963	3,010	1,271	422	599
03	93,257	33,123	47,040	8,091	2,851	1,168	407	577
04	91,608	31,974	46,920	8,057	2,644	1,084	369	560
05	90,735	30,962	47,253	8,048	2,559	1,024	346	543
06	86,113	29,753	44,892	7,085	2,501	1,012	341	529
07	85,627	28,839	45,790	6,672	2,469	991	341	525
08	80,766	27,118	43,484	6,163	2,298	900	311	492
09	77,713	25,855	42,371	5,811	2,111	800	273	492

(5) 연도별·선질별 어선 척수 현황

(단위 : 톤)

	계		FRP 선		강 선		목 선	
	척 수	톤 수	척 수	톤 수	척 수	톤 수	척 수	톤 수
70	68,355	358,366	106	148	798	123,215	67,451	235,003
80	77,574	770,688	228	621	3,031	523,514	74,315	246,553
90	99,658	976,731	6,647	19,156	4,084	716,211	88,927	241,364
95	76,801	958,599	20,868	71,286	4,094	714,645	51,839	172,668
98	90,997	978,334	39,090	118,296	3,961	716,542	47,946	143,496
99	94,852	991,956	46,413	136,715	3,869	723,355	44,570	131,886
00	95,890	923,099	52,378	154,425	3,455	656,261	40,057	112,413
01	94,935	884,853	56,947	170,833	3,286	618,962	34,702	95,058
02	94,388	816,563	60,160	183,299	2,985	554,175	31,243	79,089
03	93,257	754,335	62,415	191,913	2,920	494,674	27,922	67,748
04	91,608	724,980	64,113	198,420	2,678	469,570	24,817	56,990
05	90,735	700,810	65,831	205,754	2,623	445,359	22,281	49,697
06	86,113	673,719	64,614	200,111	2,344	432,664	18,954	40,313
07	85,627	663,869	65,254	201,015	2,392	426,248	17,981	36,606
08	80,766	621,338	64,072	196,743	2,097	394,359	14,563	29,865
09	77,713	594,772	63,107	191,688	1,916	382,006	12,647	21,112

(6) 연도별·어업별 어선등록현황

(단위 : 톤)

		계	원 양	연근해	양 식	내수면	기 타
75	척수	67,655	825	44,517	20,767	1,000	546
	톤수	647,700	353,055	253,063	25,939	941	14,702
80	척수	77,574	654	41,874	31,631	2,874	541
	톤수	770,688	317,639	379,295	35,629	2,674	35,451
90	척수	99,658	783	57,648	37,831	3,057	339
	톤수	976,731	405,550	451,272	46,601	2,559	70,749
95	척수	76,801	625	51,357	19,906	2,399	2,514
	톤수	958,599	352,002	445,196	27,140	1,653	132,608
99	척수	94,852	620	66,776	21,742	2,742	2,972
	톤수	991,956	365,146	434,143	29,733	1,589	161,345
00	척수	95,890	597	68,629	20,359	3,664	2,641
	톤수	923,099	349,420	397,868	28,516	2,874	144,421
01	척수	94,935	568	67,990	19,856	4,330	2,191
	톤수	884,853	335,552	386,181	28,945	3,490	130,685
02	척수	94,388	543	67,411	19,751	4,683	2,000
	톤수	816,563	318,855	362,163	29,137	4,112	102,296
03	척수	93,257	517	66,698	19,228	4,510	2,304
	톤수	754,335	273,086	344,992	28,009	3,941	104,307
04	척수	91,608	491	66,063	18,792	3,991	2,271
	톤수	724,980	261,237	330,203	27,296	3,102	103,142
05	척수	90,735	493	64,579	18,244	4,164	3,255
	톤수	700,810	257,614	322,811	27,131	3,518	89,736
06	척수	86,113	483	63,518	16,337	4,150	1,625
	톤수	673,719	258,422	312,580	23,955	3,557	75,204
07	척수	85,627	470	63,100	16,352	4,000	1,705
	톤수	663,869	249,952	308,512	25,226	3,354	76,825
08	척수	80,776	448	57,183	17,104	4,040	1,988
	톤수	621,338	242,666	281,038	28,270	3,728	65,441
09	척수	77,713	370	53,799	17,786	3,824	1,934
	톤수	594,772	188,174	257,292	31,077	2,974	115,255

다

양식어업 면허 · 허가 건수 및 면적

(1) 양식어업 면허

(단위 : 건, ha)

구 분	2008		2009		전년도대비(%)		비 고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총 계	9,555	136,083	9,709	139,867	101.6	102.8		
해조류	2,603	79,504	2,569	81,060	98.7	102.0		
김	960	56,562	936	57,174	97.5	101.2		
다시마	625	8,231	643	8,564	102.9	104.0		
미역	451	5,367	353	4,869	78.3	90.7		
기타	567	9,344	637	10,454	112.3	111.9	투스, 파래 등	
패 류	5,586	49,169	5,586	48,426	100.0	98.5		
굴	1,211	7,979	1,218	7,643	100.6	95.8		
전복	1,147	7,070	1,125	6,590	98.1	93.2		
피조개	848	7,957	832	7,865	98.1	98.8		
바지락	606	6,106	598	6,227	98.7	102.0		
새고막	862	9,921	875	10,010	101.5	100.9		
홍합	176	799	175	779	99.4	97.5		
가리비	107	1,021	98	889	91.6	87.1		
기타	629	8,316	665	8,423	105.7	101.3	진주조개 동족 등	
어 류 등	1,366	7,410	1,554	10,381	113.8	140.1		
어 류	소 계	553	1,988	542	1,848	98.0	93.0	
	가두리	434	1,174	434	1,169	100.0	99.6	
	축제식	119	813	108	679	90.8	83.5	
우렁챙이	506	1,886	395	1,546	78.1	82.0		
새우	65	655	72	672	110.8	102.6		
미더덕	154	603	153	598	99.4	99.2		
기타	88	2,278	392	5,717	445.5	251.0	해삼 등	

(2) 양식어업 허가

(단위 : 건, ha)

구 분	2008		2009		전년도대비(%)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총 계	3,764	4,647	3,527	4,380	93.7	94.3
해상종묘	867	2,870	880	2,836	101.5	98.8
굴	239	619	243	602	101.7	97.3
피조개	218	1,025	203	973	93.1	94.9
미역	198	552	205	554	103.5	100.4
새고막	120	426	136	456	113.3	107.0
우렁쉥이	54	115	56	118	103.7	102.6
기 타	38	133	37	132	97.4	99.2
육상종묘	1,273	136	1,264	164	99.3	120.6
전 복	493	36	509	43	103.2	119.4
어 류	392	72	399	96	101.8	133.3
우렁쉥이	139	2	129	3	92.8	150.0
김·미역	108	10	97	7	89.8	70.0
굴	19	1	16	1	84.2	100.0
기 타	122	15	114	14	93.4	93.3
육상양식	1,624	1,641	1,383	1,380	85.2	84.1
수조식	1,276	271	1,065	260	83.5	95.9
어 류	864	239	831	242	96.2	101.3
전 복	372	27	221	15	59.4	55.6
기 타	40	5	13	3	32.5	60.0
축제식	348	1,370	318	1,120	91.4	81.8
새 우	232	937	228	794	98.3	84.7
어 류	100	353	75	269	75.0	76.2
기 타	16	80	15	57	93.8	71.3

(3) 불법 무기산 사용 단속실적(수정)

(단위 : 드럼(200ℓ), 명)

연도별	구분	합계	부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
'00	적발량	135.2	-	-	-	-	135.2
	적발인원	6	-	-	-	-	6
	조치사항		-	-	-	-	행+사(5),사(1)
'01	적발량	361.5	-	-	-	-	361.5
	적발인원	16	-	-	-	-	16
	조치사항		-	-	-	-	행+사(16)
'02	적발량	449.7	0.8	14.9	-	-	434
	적발인원	16	8	5	-	-	3
	조치사항		행(8)	사(5)	-	-	기(3)
'03	적발량	39.5	0.1	-	-	-	39.4
	적발인원	4	1	-	-	-	3
	조치사항		행(1)	-	-	-	행+사(1), 기(2)
'04	적발량	269.5	0.1	3	15	84.5	166.9
	적발인원	27	1	2	2	1	21
	조치사항		행(1)	사(2)	사(2)	행+사(1)	행+사(7),사(5),기(9)
'05	적발량	250.8	0.2	2.5	-	63	185.1
	적발인원	28	2	2	-	13	11
	조치사항		행(2)	행(2)	-	행+사(13)	행+사(5), 기(6)
'06	적발량	290.6	-	60	-	8.8	221.8
	적발인원	9	-	1	-	-	8
	조치사항		-	사(1)	-	기(무주물)	행+사(5), 기(3)
'07	적발량	723.6	2	10.5	70.8	225.2	485.9
	적발인원	40	1	4	5	3	27
	조치사항		행+사(1)		행(5)	사(3)	행+사(21), 기(6)
'08	적발량	374.4	-	-	-	100	234.4
	적발인원	27	-	-	-	1	26
	조치사항		-	-	-	행+사(1)	행+사(17),사(4),기(5)
'09	적발량	405.3	-	4.9	-	260	140.4
	적발인원	39	-	12	-	5	22
	조치사항		-	행+사(7), 사(5)	-	행+사(5)	행(5),사(12),기(5)

* 주 : 행(행정처분), 사(사법처분), 행+사(행정처분과 사법처분 병과), 기(무주물, 폐기처분 등)

라 내수면어업 현황

(1) 내수면어업권 현황

○ 내수면어업 추이(2001~2009)

(단위 : 건)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7,910	8,198	8,856	8,558	8,517	8,559	8,363	8,471	8,383
면허	219	211	199	166	155	146	115	92	82
허가	4,889	4,712	4,991	4,973	4,820	4,934	4,882	4,962	4,847
신고	2,802	3,275	3,666	3,419	3,542	3,479	3,366	3,417	3,454

○ 2009년 시·도별 내수면어업 현황

(단위 : 건)

구분	합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면허	82	0	0	1	0	0	0	0	10	0	0	26	19	14	1	11	0
허가	4,847	0	198	22	17	0	2	1	1,341	777	523	408	124	424	299	698	13
신고	3,454	1	44	43	11	3	2	8	572	183	300	354	731	513	336	345	8

○ 내수면 양식어업 경영체(사유수면) 추이(2003~2009)

(단위 : 개소)

양식어종	'03	'04	'05	'06	'07	'08	'09
합 계	3,124	2,923	2,786	2,649	2,471	2,396	2,378
잉 어	335	317	320	343	229	277	267
향 어	155	140	105	86	74	66	75
뱀장어	389	417	457	480	468	512	508
송 어	321	296	268	250	246	224	221
기 타	1,924	1,753	1,636	1,490	1,454	1,317	1,307

(2) 내수면양식장 현황

○ 내수면양식장(사유수면) 현황(2009)

(단위 : 개소, m²)

구분	합 계		뱀장어		송어류		메기류		기 타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2,378	8,065,961	508	2,320,728	221	479,630	315	1,403,360	1,334	3,859,847
서울	1	24	0	0	0	0	0	0	1	24
부산	44	117,984	1	4,950	0	0	2	5,720	41	107,314
대구	36	219,497	8	10,883	0	0	8	21,467	20	187,147
인천	5	11,890	0	0	0	0	2	6,918	3	4,972
광주	3	2,371	0	0	0	0	0	0	3	2,371
대전	2	2,279	0	0	1	682	0	0	1	1,597
울산	7	25,964	0	0	0	0	0	0	7	25,964
경기	265	633,098	23	61,522	11	52,065	53	135,183	178	384,328
강원	137	330,639	4	4,337	89	261,188	3	6,899	41	58,215
충북	179	426,684	4	5,766	40	66,282	36	149,852	99	204,784
충남	248	1,015,291	22	154,181	9	15,275	62	201,144	155	644,691
전북	701	2,477,833	147	610,528	15	16,272	95	627,772	444	1,223,261
전남	461	1,955,887	282	1,384,449	0	0	29	105,575	150	465,863
경북	139	361,133	1	4,689	51	63,769	17	101,325	70	191,350
경남	143	439,089	13	35,521	5	4,097	8	41,505	117	357,966
제주	7	46,298	3	43,902	0	0	0	0	4	

마

수산물 생산 현황

(1) 연도별 어업생산량(총괄)

어업별

(단위 : 천M/T, 억원)

	합 계		일반해면어업		천해양식어업		원양어업		내수면어업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90	3,198	24,182	1,472	14,162	773	4,199	919	4,913	34	908
95	3,348	37,963	1,425	24,794	996	6,481	897	5,260	29	1,429
00	2,514	40,664	1,189	23,295	653	6,839	651	9,297	21	1,234
03	2,487	47,708	1,097	24,058	826	11,657	545	10,726	20	1,267
04	2,519	47,313	1,077	26,097	918	12,171	499	7,373	25	1,672
05	2,714	50,493	1,097	27,060	1,041	13,484	552	8,192	24	1,757
06	3,032	52,859	1,109	27,513	1,259	14,432	639	8,910	25	2,004
07	3,275	57,519	1,152	29,391	1,386	15,995	710	9,901	27	2,231
08	3,363	63,550	1,286	32,297	1,382	15,225	666	13,274	29	2,753
09	3,182	69,242	1,227	36,404	1,313	18,463	612	11,638	30	2,738
10.7	1,645	33,406	406	15,362	936	9,747	289	6,891	14	1,404

품종별

(단위 : 천M/T)

	계	어류	패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산동물	해조류
90	3,198	1,822	435	112	346	42	442
95	3,348	1,695	405	120	421	35	671
00	2,514	1,280	300	83	428	36	387
03	2,487	1,144	403	89	379	15	457
04	2,519	1,157	410	85	306	15	546
05	2,714	1,265	409	92	295	16	636
06	3,032	1,261	474	110	392	17	778
07	3,275	1,330	555	124	432	23	811
08	3,363	1,448	429	126	402	23	935
09	3,182	1,425	421	133	312	24	870
10.7	1,644	532	243	68	95	13	693

(2) 일반해면어업 생산량

□ 해조류

(단위 : M/T)

	계	톳	우무가시리	미역	청각	김	다시마류	파래	도박류	기타
90	30,324	7,222	8,339	5,075	565	3,533	7	1,425	756	3,402
95	22,368	6,179	7,798	3,868	530	62	979	497	-	2,455
00	13,023	6,062	2,872	1,717	220	1	350	64	15	1,722
03	5,154	2,744	467	942	27	122	37	182	7	626
04	9,060	5,284	1,791	719	616	3	-	71	48	528
05	15,212	3,520	3,079	4,740	3,083	13	9	246	128	394
06	13,754	2,933	3,012	3,569	2,875	2	12	164	473	714
07	18,189	2,672	2,859	6,384	3,950	24	28	167	446	1,659
08	13,866	2,721	1,093	3,114	1,400	1	2	295	1,170	4,070
09	10,843	2,590	822	3,882	553	23	354	297	670	1,652
10.7	7,993	1,159	1,041	4,640	65	8	6	286	0	788

□ 패류

(단위 : M/T)

	계	굴류	바지락	동죽	소라고등	개랑조개	키조개	굴뱅이	맛류	백합류	기타
90	106,458	16,079	12,868	27,234	2,673	3,353	15,299	6,382	2,480	935	19,155
95	92,267	18,262	15,041	9,225	8,834	9,038	3,634	5,224	4,905	2,715	15,389
00	77,103	15,939	20,982	2,468	7,281	4,149	5,795	818	1,572	1,430	16,669
03	109,878	20,201	13,148	21,240	14,065	5,694	2,443	2,600	6,311	6,918	17,258
04	100,180	25,690	12,902	13,433	9,507	3,363	2,471	2,101	5,456	6,860	18,397
05	81,012	27,320	14,447	5,201	8,498	128	3,453	1,696	2,240	3,135	14,894
06	80,434	31,016	7,559	7,597	7,496	612	5,409	1,434	854	4,490	13,967
07	73,714	29,316	8,640	2,601	6,909	606	7,897	1,639	1,457	2,662	11,987
08	81,399	29,185	20,761	1,444	3,055	146	5,489	1,133	1,344	1,415	17,427
09	90,192	24,254	22,488	698	331	324	7,368	1,288	807	1,396	31,893
10.7	43,296	13,695	6,217	265	4,602	134	8,024		418	454	

□ 어류

(단위 : M/T)

	계	멸치류	고등어류	갈치	강달이류	전갱이류	참조기	삼치류	붕장어	가자미류	병어류	청어	아귀	전어	꽂치	승어류	가오리류	도루묵	조피볼락	넙치류	기타
90	1,111,328	130,192	96,297	103,736	53,212	16,586	27,890	16,700	21,848	12,594	10,304	6,219	8,759	8,525	5,301	2,522	7,600	3,137	5,072	2,380	572,454
95	957,692	230,679	200,481	94,596	70,394	12,269	25,173	17,429	19,667	13,674	10,896	8,622	8,173	7,931	6,544	4,282	3,990	2,065	1,695	1,914	217,218
00	769,628	201,192	145,908	81,050	31,345	19,510	19,630	25,641	8,303	15,423	7,838	13,473	4,930	6,366	19,883	8,730	2,309	1,571	2,682	1,607	152,237
03	666,528	250,106	122,044	62,861	18,880	20,454	7,098	22,608	17,451	13,107	7,496	3,571	10,486	6,518	1,424	7,877	2,566	1,928	3,811	1,801	74,441
04	672,227	196,646	184,274	66,291	18,727	25,513	17,570	26,622	16,506	12,038	9,286	5,113	11,885	4,313	2,960	8,023	2,320	2,472	3,774	1,737	56,157
05	721,947	249,001	135,596	60,086	15,495	42,608	15,272	33,794	14,739	15,319	11,448	7,592	11,448	6,264	4,319	9,774	2,446	2,401	3,000	2,112	79,233
06	715,048	265,346	101,427	63,739	19,375	23,227	21,428	36,484	15,242	19,879	13,873	12,496	12,226	7,315	697	8,835	3,126	2,647	3,713	2,298	81,675
07	761,970	221,110	143,776	66,029	13,817	19,089	34,221	42,199	19,399	24,340	9,489	28,280	14,417	9,873	4,740	11,312	3,996	3,769	4,037	3,074	85,003
08	878,348	261,531	190,456	72,313	11,046	22,752	33,200	40,809	18,441	20,264	8,121	45,472	17,944	7,191	4,909	8,248	2,236	2,720	4,484	4,263	101,948
09	795,502	203,728	175,329	85,450	12,074	22,087	34,033	36,793	13,507	19,687	5,929	37,514	14,961	5,826	3,550	6,178	2,593	3,939	3,178	5,439	103,707
10.7	271,921	81,536	14,190	23,670	2,444	6,407	8,391	13,294	5,575	11,636	3,064	9,760	8,131	4,885	2,175	5,022	1,482	733	1,241	4,336	63,947

□ 갑각류

(단위 : M/T)

	계	붉은대게	젓새우	꽃게	꽃새우	중하	보리새우	대하	대게	닭새우	기타
90	104,856	-	22,579	23,004	-	3,358	2,336	912	3	698	51,966
95	117,161	33,155	16,495	17,651	5,414	2,168	2,399	1,406	79	1,242	37,152
00	74,994	16,281	13,985	12,842	5,263	2,621	578	1,211	756	461	20,996
03	66,002	19,262	12,885	9,478	3,988	325	240	148	1,889	393	17,394
04	57,110	23,113	7,889	2,683	2,575	414	132	848	2,605	595	16,256
05	62,075	21,926	7,352	3,714	3,364	834	282	989	3,240	742	19,632
06	73,715	23,890	7,810	6,894	4,272	980	215	1,261	4,062	772	23,559
07	85,297	25,388	12,553	13,606	3,885	1,010	315	704	4,817	734	22,285
08	88,052	28,293	14,934	17,846	2,497	1,646	254	275	3,019	554	18,734
09	100,126	29,993	13,722	31,302	3,452	1,048	297	219	2,372	1,111	16,610
10.7	41,108	17,157	4,564	7,537	1,392	247	16	26	2,097	574	7,498

□ 연체동물

(단위 : M/T)

	계	오징어류	낙지	문어	주꾸미	갑오징어류	꽃뚜기	기타
90	109,236	74,172	9,264	5,962	4,422	12,395	2,391	630
95	227,019	200,897	10,803	7,027	3,870	2,567	1,222	633
00	248,047	226,309	5,861	8,718	4,569	1,267	885	438
03	252,624	233,254	7,248	5,121	5,200	872	758	171
04	232,588	212,760	7,023	5,953	5,048	905	793	106
05	211,517	189,126	7,658	7,637	4,390	1,325	1,304	77
06	219,792	197,084	7,397	7,894	4,032	1,988	1,354	43
07	205,611	174,479	8,625	12,033	6,828	1,938	1,657	51
08	216,303	186,160	7,881	11,838	4,075	3,038	2,379	932
09	223,212	189,160	7,013	15,386	4,285	3,396	2,260	1,712
10.7	37,263	22,130	4,259	4,803	2,331	2,873	613	254

□ 기타 수산동물

(단위 : M/T)

	계	성게	해삼	우렁쟁이	미더덕	기타
90	9,608	4,325	2,491	222	1,961	609
95	8,706	3,707	1,891	2,067	25	1,016
00	6,205	1,461	1,419	1,440	3	1,882
03	6,340	1,607	1,281	836	994	1,622
04	5,522	1,301	1,154	1,115	211	1,741
05	5,278	2,035	1,135	1,485	62	561
06	6,072	2,596	1,614	1,105	8	749
07	7,518	2,651	2,936	1,127	1	803
08	7,737	3,555	2,260	1,482	-	440
09	7,091	2,846	2,789	1,107	5	344
10.7	3,971	1,138	2,272	455	1	105

(3) 천해양식어업 생산량

□ 해조류

(단위 : M/T)

	계	미역	김	다시마류	톳	파래	청각	말	우무카사리	기타
90	411,869	269,333	97,637	8,084	23,920	12,463	427	-	-	5
95	649,099	386,819	192,960	27,295	37,679	4,344	2	-	-	-
00	374,456	212,429	130,488	14,160	11,654	5,288	164	-	-	273
03	452,054	198,172	193,553	25,259	33,661	1,355	53	-	-	1
04	536,748	261,574	228,554	22,510	22,814	1,154	142	-	-	-
05	621,156	281,871	197,610	108,327	30,058	814	1,597	877	-	2
06	764,914	322,371	217,559	201,919	21,125	682	165	919	-	174
07	792,593	309,097	210,956	250,049	20,909	684	158	490	-	610
08	921,024	381,076	224,242	285,221	17,701	8,003	1,186	1,059	-	2,536
09	858,659	309,155	211,444	306,183	19,533	5,930	1,796	-	-	4,618
10.7	684,891	367,753	154,600	152,517	4,209	2,671	1	-	-	3,140

□ 패류

(단위 : M/T)

	계	굴류	홍합류	바지락	피조개	꼬막류	맛류	키조개	동죽	전복류	기타
90	325,592	219,124	9,759	61,713	17,758	11,113	31	11	5,607	2	474
95	312,252	191,156	75,353	15,260	9,357	13,027	7,169	51	478	61	340
00	222,608	177,079	11,713	17,927	10,618	820	-	1,998	-	20	2,433
03	291,063	238,326	15,785	27,494	4,696	2,440	2	783	-	1,065	472
04	304,889	239,270	20,409	27,570	3,134	10,849	-	1,997	-	1,260	400
05	326,255	251,706	43,953	17,401	2,548	3,226	-	4,950	-	2,062	409
06	391,060	283,296	81,617	14,327	2,064	5,063	-	872	-	3,050	771
07	478,646	321,276	98,121	18,819	3,015	28,372	-	3,870	3	4,350	820
08	344,799	249,976	67,442	16,633	1,903	1,637	-	1,318	213	5,146	531
09	326,544	240,911	55,035	17,905	1,714	2,966	-	1,320	-	6,207	468
10.7	198,670	159,920	26,251	7,479	687	1,150	-	406	-	2,631	146

□ 어류

(단위 : M/T)

	계	넙치류	조피볼락	송어류	참돔	농어	감성돔	기타돔류	기타볼락	방어	기타
90	2,656	1,037	-	-	228	391	-	56	386	462	96
95	8,360	6,733	985	34	25	193	9	16	174	159	32
00	25,986	14,127	8,473	968	412	605	221	386	225	494	75
03	72,393	34,533	23,771	4,093	4,417	2,778	1,084	1,287	167	114	149
04	64,476	32,141	19,576	3,596	3,988	1,850	1,379	1,430	132	45	339
05	81,437	40,075	21,297	5,500	5,816	2,600	2,671	2,048	339	57	1,034
06	91,123	43,852	27,517	5,651	4,386	1,571	2,705	1,689	496	66	3,190
07	97,663	41,171	35,564	4,921	7,213	2,361	2,841	1,109	415	5	2,063
08	99,006	46,432	32,992	6,149	7,424	2,007	1,588	19	263	208	1,924
09	109,516	54,674	33,020	5,581	9,226	2,395	1,694	4	270	304	2,348
10.7	43,245	20,798	12,011	3,181	3,664	939	1,230	9	167	70	1,176

□ 갑각류

(단위 : M/T)

	계	대하	보리새우	기타새우	흰다리새우
90	312	257	55	-	-
95	438	404	34	-	-
00	1,158	1,158	-	-	-
03	2,324	2,324	-	-	-
04	2,426	2,426	-	-	-
05	1,399	1,399	-	-	-
06	1,683	1,022	-	-	661
07	1,321	463	-	-	858
08	1,924	130	-	-	1,794
09	1,893	81	-	-	1,812
10.7	6	-	-	-	6

□ 기타수산동물

(단위 : M/T)

	계	우렁쉥이	미더덕	기타(오만둥이)
90	32,291	20,768	11,523	-
95	26,302	22,626	3,675	1
00	29,165	2,336	13,889	12,940
03	8,411	3,116	2,047	3,248
04	9,176	6,349	2,590	237
05	10,827	9,334	1,412	81
06	10,495	7,127	1,519	1,849
07	15,221	9,318	2,309	3,594
08	10,446	7,826	2,620	-
09	16,743	7,208	3,845	5,690
10.7	3,971	455	1	3,515

(4) 원양어업 생산량

□ 어류

(단위 : M/T)

	계	명태	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꽂치	민어류	기타돔	갈치	가오리류	기타
90	676,445	322,176	138,493	56,705	34,339	-	5,846	12,248	8,430	3,788	94,420
95	700,735	336,810	137,848	51,951	26,821	31,321	21,254	7,168	7,423	9,734	70,405
00	465,200	86,066	137,015	49,461	30,079	25,029	23,169	6,449	12,135	10,946	84,851
03	397,196	21,890	153,328	52,192	21,839	31,219	23,401	6,604	3,264	7,441	76,018
04	400,134	20,009	162,200	40,216	26,324	22,625	19,578	7,316	2,802	7,631	91,433
05	439,711	26,004	171,641	52,474	24,178	40,509	18,712	7,627	2,065	5,058	91,443
06	433,122	26,269	205,221	55,831	24,333	12,009	15,522	6,240	2,049	5,154	80,494
07	446,641	20,109	213,729	53,752	22,763	16,976	16,567	5,689	2,480	4,778	89,798
08	445,367	27,980	187,277	70,778	20,092	29,591	15,404	6,905	2,779	3,450	81,111
09	493,857	38,996	257,481	36,823	21,912	22,001	15,990	6,812	2,383	4,459	87,000
10.7	204,246	5,079	101,291	30,739	12,660	1,926	9,178	4,461	383	2,111	36,418

□ 갑각류

(단위 : M/T)

	계	남빙양새우	기타새우	게류	새우류	기타
90	6,352	4,491	1,861	-	-	-
95	2,194	-	737	746	-	711
00	6,534	4,499	1,835	192	-	8
03	20,927	20,411	162	101	6	247
04	25,648	25,212	104	176	-	156
05	28,842	28,678	26	82	-	56
06	33,807	33,677	43	32	-	55
07	37,247	37,074	53	92	-	28
08	35,522	35,441	8	6	14	53
09	29,588	29,396	5	4	3	180
10.7	27,276	27,173	-	2	3	98

□ 연체동물

(단위 : M/T)

	계	오징어류	갑오징어	문어류	한치류	기타
90	236,515	229,148	4,316	1,120	-	1,931
95	194,395	193,124	906	346	-	19
00	179,533	177,843	824	457	-	409
03	126,468	121,945	3,633	217	-	673
04	73,618	69,999	2,882	557	-	180
05	83,543	81,172	1,908	80	362	21
06	172,255	170,211	945	550	449	100
07	226,072	222,164	1,314	381	2,165	48
08	185,293	181,780	1,310	19	1,649	535
09	88,505	84,652	1,993	721	1,080	59
10.7	57,356	55,995	726	11	564	60

(5) 내수면어업 생산량

□ 패류

(단위 : M/T)

	계	재첩	개량조개	우렁이	다슬기	기타
90	2,601	1,450	508	-	-	643
95	933	664	3	5	-	261
00	675	370	36	31	-	238
03	2,016	1,283	-	64	-	669
04	4,670	4,149	-	53	-	468
05	1,883	1,034	18	72	-	759
06	2,879	816	37	1,254	531	241
07	3,027	523	-	1,813	445	246
08	2,993	628	-	1,581	612	172
09	3,742	591	-	2,114	930	107
10.7	1,501	551	-	484	408	58

□ 어류

(단위 : M/T)

	계	향어	뱀장어	송어류	붕어	메기	잉어	미꾸라지	피라미	기타어류
90	31,612	9,926	1,271	1,542	6,146	606	2,875	1,092	2,228	5,926
95	28,057	10,918	2,471	2,799	2,790	2,150	1,687	493	982	3,767
00	19,614	1,838	2,739	2,808	2,432	2,966	1,716	644	386	4,085
03	17,399	920	4,332	3,521	1,107	1,708	1,137	974	120	3,580
04	20,415	702	5,205	3,502	1,503	1,916	1,661	1,837	51	4,038
05	21,760	975	5,810	3,320	1,321	2,575	1,640	1,953	21	4,145
06	24,843	706	8,012	1,878	1,223	2,985	1,281	1,138	46	7,574
07	23,424	800	10,597	2,882	1,495	2,266	1,094	798	47	3,445
08	25,343	1,028	6,576	2,811	2,543	3,905	1,871	432	113	6,064
09	25,718	930	6,766	2,737	2,636	3,869	2,001	506	156	6,117
10.7	12,809	624	3,723	1,294	1,327	2,071	1,160	250	109	2,251

□ 갑각류 및 기타

(단위 : M/T)

	계	갑각류		계	기타 자라
		계류	새우류		
90	97	20	77	1	1
95	218	4	214	13	13
00	114	55	59	168	168
03	127	78	49	138	138
04	78	35	43	136	136
05	101	50	51	95	95
06	479	115	364	90	90
07	177	107	70	132	132
08	726	207	519	118	118
09	511	134	349	100	100
10.7	66	5	61	110	110

(6) 어업별 생산량(연근해어업)

(단위 : 천M/T)

	계	대형 기저	근해 트롤	중형 기저	대형 선망	기선 권현망	근해 채낚기	안강망	연승	통발	정치망	잠수기	기타
70	724	114	4	45	37	21	70	99	30	-	14	28	262
80	1,370	153	95	59	222	107	40	244	20	11	80	23	316
90	1,472	121	173	61	359	86	51	244	33	40	16	22	266
95	1,425	128	104	26	228	140	94	174	33	77	65	17	339
99	1,334	118	141	16	230	94	92	130	33	51	69	18	342
00	1,189	106	132	15	180	75	81	102	38	44	69	14	333
01	1,252	97	160	11	232	98	75	95	32	41	72	13	326
02	1,096	89	142	16	182	90	73	85	30	51	39	11	288
03	1,097	69	144	22	159	134	74	70	15	54	49	11	296
04	1,077	78	124	18	231	105	67	64	11	54	37	11	277
05	1,097	86	102	22	192	132	63	43	15	61	49	12	320
06	1,109	96	108	24	168	143	66	48	16	64	45	11	320
07	1,152	76	99	29	236	108	63	73	17	75	40	12	324
08	1,286	65	106	35	272	150	61	76	25	69	56	11	360
09	1,227	64	120	37	287	116	60	74	17	71	67	21	293

(7) 시도별 생산량

□ 연근해 어업

(단위 : 천M/T)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90	1,472	426	64	-	37	80	39	84	297	86	323	36
95	1,425	449	58	-	14	83	43	63	235	142	283	55
99	1,336	446	44	20	18	64	55	51	206	155	234	43
00	1,189	381	40	20	18	56	62	42	180	137	211	42
01	1,252	437	35	19	16	56	46	39	183	127	250	44
02	1,096	368	38	18	14	40	45	39	162	117	212	43
03	1,097	343	24	22	5	42	69	61	135	122	229	45
04	1,077	352	17	17	3	46	70	48	145	131	203	45
05	1,097	300	21	20	9	57	57	30	158	117	262	66
06	1,109	294	28	22	5	54	69	29	173	119	257	59
07	1,152	322	33	18	7	63	68	35	169	142	232	63
08	1,286	369	28	15	10	58	59	34	206	168	254	85
09	1,227	366	37	17	7	63	81	35	173	166	220	64

□ 양식어업

(단위 : 천M/T)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0	119,211	437.8	-	-	4,443.4	2,435.5	8,829.2	3,440.6	60,808.7	1,254	36,951.9	609.9
80	540,564	22,470	-	-	9,966	87	34,682	4,011	211,946	9,402	246,608	1,392
90	772,731	52,849	87	-	14,245	133	19,044	61,026	386,542	20,779	217,920	106
95	996,451	56,535	4,251	-	1,192	577	29,945	16,759	654,466	12,895	217,207	2,624
97	1,015,134	46,183	1,159	-	769	1,560	23,974	10,107	682,484	8,409	234,715	5,774
98	777,230	58,064	1,191	5,151	1,157	1,264	28,937	21,103	439,414	4,464	208,757	7,728
99	765,252	53,912	1,302	6,529	1,624	1,178	25,808	23,433	431,196	4,273	206,048	9,949
00	653,373	50,244	1,439	11,389	801	3,163	24,394	20,704	330,399	4,413	201,034	5,393
01	655,827	41,775	868	15,556	881	698	29,409	21,719	328,963	4,719	205,172	6,067
02	781,519	48,529	1,666	16,936	1,021	324	25,227	25,833	439,985	5,333	205,499	11,166
03	826,245	37,058	1,588	14,820	3,920	265	38,331	26,183	474,680	6,789	206,354	16,257
04	917,715	45,458	1,512	13,508	3,874	786	43,715	26,305	531,242	6,890	226,366	18,059
05	1,041,074	75,405	1,714	12,923	5,145	1,076	42,800	25,880	578,427	8,610	268,374	20,720
06	1,259,274	39,884	1,537	10,551	5,509	937	52,576	32,121	756,097	8,536	329,113	22,413
07	1,385,804	40,272	2,244	11,840	8,462	1,612	37,445	40,676	793,058	9,763	419,147	21,285
08	1,382,098	53,916	3,492	11,488	9,383	2,068	27,154	44,101	848,285	8,289	348,512	25,410
09	1,313,355	34,575	1,318	7,027	13,321	963	33,865	46,746	805,761	8,137	330,127	31,515

바 어업자원관리 정보화 시스템 활용 현황

단위프로그램	서비스내용	누적년도	DB 건수	이용부서 및 기관	조회 건수(%)
총 계			48,460,646		180,634
EEZ조업정보	한·일/한·중 입어허가 및 실적, 협정수역도, 어선별 소진량 등	'01~현재	1,681,241	자원환경과, 어업정책과, 국립수산물과학원	82,349 (46%)
고래자원정보	한반도 고래류, 고래홍보동영상, 고래흔적·좌초현황	'03~현재	8,983	어업교섭과, 어업지도사무소, 해양경찰청	11,091 (6%)
어선조업정보	입출항신고현황, 출어선현황 등	'03~현재	46,482,158	자원회복과, 국립수산물과학원, 지방자치단체	5,669 (3%)
TAC운영관리	TAC 어종허가현황, 할당 및 소진량, TAC 소개	'00~현재	25,390	지도안전과, 수산물과학원,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65,630 (36%)
자율어업 관리	자율관리 설명자료, 교육자료, 자율관리공동체관리, 자율관리공동체평가	'05~현재	262,874	어업정책과, 자원환경과	15,895 (9%)

* 정보조회건수는 2010년 9월 단위프로그램의 정보조회 건수 임.

사

기타 통계자료(어가인구, 어가소득, 부채, 어촌계, 수급 등)

(1) 어가 및 어가인구

(단위 : 가구, 명, %)

연 도	어 가	증감률	어가인구	증감률
'90	121,525	-9.4	496,089	-31.6
'95	104,480	-14.0	347,210	-30.0
'01	77,717	-4.7	234,464	-6.7
'02	73,124	-5.9	215,174	-8.2
'03	72,760	-0.5	212,104	-1.4
'04	72,513	-0.3	209,855	-1.1
'05	79,942	10.3	221,132	5.4
'06	77,001	-3.7	211,610	-4.3
'07	73,934	-4	201,512	-4.8
'08	71,046	-3.9	192,341	-4.8
'09	69,379	-2.3	183,710	-4.5

※ 전수조사년도 : 끝자리가 0, 5로 시작되는 년도임
출처 : 어업조사(통계청)

(2) 연도별 어가 현황(전·겸업별)

(단위 : 가구, %)

연 도	총어가	구성비	전업어가	구성비	겸업어가	구성비
'70	149,107	100.0	22,739	15.3	126,368	84.7
'80	134,109	100.0	20,813	15.5	113,296	84.5
'90	121,525	100.0	28,051	23.1	93,474	76.9
'95	104,480	100.0	26,016	24.9	78,464	75.1
'00	81,571	100.0	29,699	36.4	51,872	63.6
'06	77,001	100.0	23,932	31.1	53,068	68.9
'07	73,934	100.0	22,407	30.3	51,527	69.7
'08	71,046	100.0	20,983	29.5	50,062	70.5
'09	69,379	100.0	20,923	30.0	48,455	69.8

출처 : 어업조사(통계청)

(3) 어업형태별 어가 현황

(단위 : 가구, %)

연 도	총어가	양식어업	어 로 어 업		
			소 계	어선사용	어선비사용
'70	149,107 (100.0)	45,037 (30.2)	104,070 (69.8)	33,784 (22.7)	70,286 ¹⁾ (47.1)
'80	134,109 (100.0)	55,902 (41.7)	78,207 (58.3)	31,844 (23.7)	46,363 ¹⁾ (34.6)
'90	121,525 (100.0)	49,727 (40.9)	71,798 (59.1)	39,170 (32.3)	32,628 ¹⁾ (26.8)
'95	104,480 (100.0)	34,009 (32.6)	70,471 (67.4)	37,109 (35.5)	33,362 ¹⁾ (31.9)
'00	81,571 (100.0)	24,810 (30.4)	56,761 (69.6)	38,968 (47.8)	17,793 (21.8)
'06	77,001 (100.0)	23,989 (31.2)	53,012 (68.8)	36,088 (46.9)	16,924 (22.0)
'07	73,934 (100.0)	23,356 (31.6)	50,577 (68.4)	34,691 (40.9)	15,886 (21.5)
'08	71,046 (100.0)	22,101 (31.1)	48,945 (68.9)	32,481 (45.7)	16,464 (23.2)
'09	69,379 (100.0)	22,592 (32.5)	46,787 (67.4)	30,569 (44.0)	16,218 (23.3)

1) 남의 어선 승선가구가 '95년까지는 어선 비사용 가구에 포함되었으나, '00년부터는 어선 사용가구에 포함되었음
출처 : 어업조사(통계청)

(4) 보유 어선 톤수별 어가 현황

(단위 : 가구, %)

연도	총어가	어선 없는 어가	보 유 어 선 톤 수 별						
			소계	2톤 미만	2~ 5톤	5~ 10톤	10~ 20톤	20~ 50톤	50톤 이상
'95	104,480 (100.0)	47,864 (45.8)	56,616 (54.2)	33,465 (32.0)	15,448 (14.8)	4,672 (4.5)	1,062 (1.0)	1,008 (1.0)	961 (0.9)
'00	81,571 (100.0)	34,387 (42.2)	47,184 (57.8)	25,032 (30.7)	14,916 (18.3)	4,845 (5.9)	1,045 (1.3)	746 (0.9)	600 (0.7)
'06	77,001 (100.0)	31,465 (40.9)	45,536 (59.1)	25,770 (33.5)	12,687 (16.5)	4,792 (6.2)	773 (1.0)	919 (1.2)	595 (0.8)
'07	73,934 (100.0)	30,345 (41.0)	43,589 (59.0)	25,180 (34.1)	11,720 (15.9)	4,575 (6.2)	699 (0.9)	817 (1.1)	598 (0.8)
'08	71,046 (100.0)	28,955 (40.8)	42,091 (59.2)	24,572 (34.6)	10,866 (15.3)	4,568 (6.4)	736 (1.0)	720 (1.0)	629 (0.9)
'09	69,379 (100.0)	29,225 (42.1)	40,154 (57.8)	23,340 (33.6)	10,529 (15.1)	4,177 (6.0)	828 (1.1)	709 (1.0)	572 (0.8)

자료 : 어업총조사 및 어업기본통계조사(통계청)

(5) 연도별 · 지역별 어업인구

(단위 : 명)

연도	합계	시·도 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0	912,612	8,751	-	-	52,842	106,189	66,562	26,713	413,514	50,063	109,500	78,478
'75	751,353	5,996	-	-	39,144	89,714	60,267	19,656	310,259	65,612	111,656	49,049
'80	725,314	11,459	11,326	-	29,781	61,974	73,754	20,596	304,575	56,942	112,529	42,378
'85	602,237	10,839	9,119	-	31,649	52,659	55,567	21,770	253,344	34,849	96,094	36,347
'90	496,089	21,527	10,099	-	21,889	28,918	54,158	23,478	186,198	29,363	87,031	33,428
'95	347,210	19,694	13,868	-	7,841	21,302	39,519	16,855	116,904	22,326	62,467	26,434
'96	330,464	18,803	12,546	-	7,508	20,197	38,736	15,153	109,953	20,630	60,966	25,972
'97	323,383	18,524	12,539	5,511	6,938	19,804	37,647	14,759	105,420	20,969	54,519	26,752
'98	322,229	19,361	13,132	5,374	7,619	19,460	37,918	14,955	102,962	20,906	55,857	24,685
'99	315,198	18,854	13,227	5,494	7,688	19,872	37,373	14,667	100,432	20,175	53,252	24,163
'01	234,434	11,546	8,111	3,732	5,800	14,499	25,927	12,853	74,952	16,373	41,154	19,487
'02	215,174	9,398	6,877	3,387	4,544	14,096	25,869	11,152	66,111	14,873	38,476	20,390
'03	212,104	8,902	7,371	3,449	4,533	13,641	26,814	10,937	65,866	14,865	36,345	19,381
'04	209,855	9,471	6,525	3,312	4,551	12,895	26,267	10,902	65,391	14,551	36,253	19,737
'05	221,132 ¹⁾	10,800	8,803	3,462	3,868	12,605	27,309	10,182	68,603	14,998	41,811	18,617
'06	211,610	9,794	8,478	3,424	4,740	13,021	26,898	11,494	64,610	14,369	35,393	19,388
'07	201,512	9,061	7,861	3,331	4,529	12,201	26,943	10,346	61,843	13,886	32,307	19,186
'08	192,341	8,196	7,767	3,083	4,328	10,619	26,182	9,501	61,631	12,386	30,184	18,464
'09	183,710	6,530	7,275	2,862	4,208	9,202	28,537	9,336	58,843	11,105	27,018	18,793

1) 합계수치에 서울 18명, 대구 12명, 광주 40명이 포함됨

1980년대 이후 어업여건의 악화로 어촌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어업인구가 계속해서 감소되어 왔으며, 2008년도 어업인구는 2000년 대비 23.5% 감소한 것으로 외환 금융위기 이후 어촌경제침체의 누증에 따라 많은 어업인들이 어업을 포기하고 도시 취업 및 도시전출 등에 기인함.

출처 : 어업조사(통계청)

(6) 성별 어업인구 및 어업종사 가구원

(단위 : 명)

연도	성별 어업인구			어업종사자 가구원		
	계	남 자	여 자	계	남 자	여 자
'70	912,612	465,529	447,083	307,627	174,257	33,370
'75	751,353	394,543	356,810	282,923	168,163	114,760
'80	725,314	371,287	354,027	294,928	168,303	126,625
'85	602,237	301,701	300,536	236,237	135,826	100,811
'90	496,089	248,839	247,250	211,753	118,648	93,105
'95	347,210	171,793	175,417	176,123	94,136	81,987
'96	330,464	160,901	169,563	171,822	87,309	84,513
'97	323,383	158,016	165,367	173,743	89,603	84,140
'98	322,229	158,091	164,138	172,701	89,112	83,589
'99	315,198	155,636	159,562	170,590	89,026	81,564
'00	251,349	126,775	124,574	139,837	76,188	63,649
'02	215,174	107,688	107,486	127,694	69,666	58,027
'03	212,104	106,384	105,720	125,023	67,870	57,153
'04	209,855	105,362	104,493	122,384	66,380	56,004
'05	221,132	110,658	110,474	130,589	70,307	60,282
'06	211,610	106,340	105,270	128,047	68,244	59,803
'07	201,512	100,985	100,527	122,916	65,520	57,396
'08	192,341	95,856	96,485	118,879	63,037	55,843
'09	183,710	91,573	92,136	115,532	60,790	54,742

1970년도에 어업인구의 남·여의 구성비율이 각각 51%, 49%였으나, 어촌경제의 침체로 남성 어업인들의 어촌 이탈, 남성 어업인들의 어업활동 중 사고로 인한 사망, 인구고령화로 평균수명이 짧은 남성 어업인들의 자연사 등의 사유로 1991년 이후부터는 남성보다 여성이 많아지기 시작하여 어촌사회가 여성화 현상을 보이다가, 2001년 이후 남·여의 구성 비율이 50%로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남.

'08년 현재 남·녀 어업인구의 비율은 49.8 vs 50.2%로 균형을 이루고 있음

출처 : 어업조사(통계청)

(7) 어업가구

(단위 : 가구)

연도	계	시 · 도 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90	121,525	4,901	2,530	-	6,286	12,934	5,623	45,566	7,451	20,843	7,208	8,183
'95	104,480	5,097	4,678	-	2,398	12,357	5,056	36,647	6,723	17,728	5,997	7,799
'96	101,677	4,982	4,249	-	2,307	12,251	4,654	35,546	6,458	17,713	5,790	7,727
'97	99,912	5,012	4,207	1,595	2,224	12,188	4,686	34,208	6,551	16,323	5,512	7,406
'98	98,972	5,119	4,262	1,527	2,410	12,148	4,686	33,411	6,561	16,533	5,546	6,769
'99	97,754	5,082	4,309	1,518	2,438	11,972	4,665	32,731	6,375	16,197	5,723	6,744
'00	81,571	3,591	3,035	1,165	1,807	9,450	4,275	26,932	5,778	14,009	4,814	6,715
'02	73,124	2,856	2,438	1,058	1,524	9,178	3,943	23,281	4,874	12,721	4,638	6,613
'03	72,760	2,756	2,449	1,082	1,520	9,311	3,999	23,235	4,988	12,240	4,481	6,699
'04	72,513	2,834	2,315	1,014	1,543	9,322	3,979	23,286	5,006	12,124	4,352	6,738
'05	79,942 ¹⁾	3,216	3,320	1,137	1,295	10,505	3,695	25,489	5,517	14,827	4,221	6,698
'06	77,001	3,014	3,135	1,136	1,558	4,358	9,992	3,984	23,935	5,316	13,631	6,942
'07	73,934	2,818	2,885	1,123	1,484	10,094	3,568	22,939	5,173	12,567	4,237	7,046
'08	71,046	2,689	2,777	1,083	1,466	9,871	3,504	22,827	4,633	11,688	3,866	6,642
'09	69,379	2,291	2,630	1,013	1,420	11,132	3,463	22,181	4,207	10,523	3,470	7,049

1) 집계수치는 서울 6가구, 대구 3가구, 광주 13가구가 포함된 수

* 전수조사 시기 : '0', '5'로 시작되는 년도

* 표본조사 시기 : 전수조사 년도 외

1980년대 이후 어업여건의 악화로 어촌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어업가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으며, 2008년도 어업가구는 2000년 대비 12.9% 감소하였고 전년보다 3.9% 감소함. 외환금융위기이후 어촌경제침체의 누증에 따라 많은 어업가구들이 어업을 포기하고 도시취업 및 도시전출 등에 기인함.

출처 : 어업조사(통계청)

(8) 어가소득

(단위 : 천원)

연 도	어 가 소 득					
	전 체	어업소득	농업소득	기타겸업소득	사업외소득	이전수입
'80	2,596	1,752	314	79	451	-
'90	10,023	5,218	1,897	302	992	1,614
'95	18,780	9,437	3,184	791	2,100	3,268
'96	19,039	10,526	2,394	1,000	2,016	3,103
'97	20,331	11,768	2,761	1,061	1,998	2,743
'98	16,794	9,524	2,307	918	1,706	2,339
'99	18,428	10,322	2,557	697	1,629	3,223
'00	18,875	10,078	2,583	798	1,932	3,484
'01	22,252	11,087	2,757	1,083	2,664	4,661
'02	21,816	10,165	2,286	1,260	2,920	5,185

* 농업소득, 기타겸업소득, 사업외소득은 2003년부터 "어업외소득"으로 발표(통계청)

연 도	어가소득(천원)			
	전체	어업소득	어업외소득	이전소득
'04	26,159	11,959	9,168	5,032
'05	28,028	11,950	9,399	6,679
'06	30,006	11,603	10,361	8,043
'07	30,668	11,975	10,981	2,913
'08	31,176	13,801	10,120	2,423
'09	33,945	16,220	11,136	2,857

2008년도 어가의 가구당 소득은 연간 31,176천원으로 전년(30,668천원)에 비해 1.7% (508천원) 증가

어가소득중 어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어업의존도)은 44.3%임

어업소득은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Δ 2.9%)한 반면, 어업외소득, 이전소득(비경상 소득 포함)이 각각 10.2%, 20.4% 증가

출처 : 어가경제조사(통계청)

(9) 어가부채

(단위 : 천원)

연도	부채액	차 입 처 별						
		금 용 기 관				사 채		
		계	수협	농(축)협	기타	계	농어가	기 타
'80	564	-	-	-	-	-	-	-
'90	5,926	4,515	2,059	2,147	309	1,411	801	609
'94	9,293	7,892	3,426	4,010	456	1,401	713	688
'95	11,035	9,110	4,275	4,353	481	1,925	875	1,049
'96	12,342	10,378	5,097	4,744	536	1,964	786	1,178
'97	11,906	10,282	4,872	4,773	637	1,624	809	815
'98	11,319	9,588	4,636	4,513	438	1,731	703	1,028
'99	11,555	9,451	4,269	4,751	431	2,104	695	1,410
'00	13,635	11,094	5,112	5,477	504	2,541	744	1,798
'01	15,466	12,755	5,862	6,039	854	2,711	817	1,894
'02	17,495	14,031	6,785	6,658	588	3,464	925	2,539

* '03년도부터 어업용부채와 어업용이의 부채로 발표(통계청 자료)

연 도	부 채 액	어업용 부채	어업용이의 부채
'03	29,836	16,696	13,140
'04	32,545	17,665	14,880
'05	34,531	18,560	15,971
'06	34,422	17,275	17,147
'07	34,407	16,690	17,716
'08	33,587	18,207	15,380
'09	35,864	19,038	16,826

2009년도 어가부채는 35,854천원으로 전년(33,587천원)에 비해 6.8%(2,277천원) 증가 하였으며 어업용부채는 4.5%, 어업용이의 부채는 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1980년 이후 어가부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차입처별로 비율을 보면 금융기관 차입액과 사채의 비율은 각각 1990년도 76%, 24%, 1995년도 83%, 17%, 2005년도에 83%, 17%로 나타나 대부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 있고, 금융기관 중 농·수협으로부터 차입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출처 : 어가경제조사(통계청)

(10) 지구별·조합별 어촌계 및 어촌계원 현황

(단위 : 개, 명)

조합명	어촌계	계원	조합명	어촌계	계원	조합명	어촌계	계원
조합계 (7 2)	1,993	151,185						
경인계(5)	106	10,252	부안	19	4,279	경남계(14)	444	29,468
경인북부	19	1,077	고창군	13	758	거제	68	3,652
용진	35	3,665	전남계(16)	852	57,512	고성군	25	2,064
경기남부	28	2,542	강진군	29	1,963	마산	21	1,338
인천	18	2,119	목포	50	2,877	삼천포	23	1,672
영흥	6	849	신안군	50	3,193	울산	33	3,282
강원계(9)	77	5,311	영광군	13	1,767	의창	13	1,819
고성군	10	1,439	완도군	167	11,487	진해시	14	1,167
동해시	6	665	완도금일	19	1,450	통영	80	5,212
삼척시	14	650	완도소안	15	1,281	하동군	25	1,941
원덕	8	352	진도군	48	1,895	남해군	93	4,719
속초시	5	511	해남군	70	2,930	옥지	18	526
양양군	13	375	흑산도	22	538	사천	9	675
강릉시	13	771	거문도	11	619	사량	14	938
대포	3	235	고흥군	161	11,408	진동	8	463
죽왕	5	313	나로도	20	1,347	부산계(2)	41	3,451
충청계(8)	154	14,004	여수	106	9,466	부산시	23	2,005
당진군	8	1,075	장흥군	42	3,223	부산동부	18	1,446
보령	26	3,231	전남동부	29	2,068	제주계(6)	100	13,619
서산	46	4,448	경북계(8)	155	8,149	서귀포	19	2,080
서천군	8	1,261	경주시	17	877	모슬포	12	1,710
서천서부	10	567	강구	17	923	성산포	13	2,075
태안남면	11	812	구룡포	32	1,916	제주시	33	4,951
안면도	43	2,390	울릉군	11	579	추자도	5	346
신흥	2	220	죽변	18	716	한림	18	2,457
전북계(4)	64	9,419	축산	13	1,186			
군산시	20	3,446	포항	32	1,218			
김제	12	936	후포	15	734			

2009년말 현재 어촌계수는 전국 72개 지구별 조합에 1,993개이며 소속된 조합원은 151,185명으로 어업인구(251,519명)의 60%가 어촌계원으로 가입하여 어업활동을 하고 있음.

출처 : 내부행정자료

(11) 어업용면세유 공급 실적

(단위 : 드럼, 억원)

유종별	'06			'07			'08			'09		
	공급량	공급액	면세액									
합계	6,318	6,146	7,092	6,266	6,355	7,542	4,970	7,898	6,021	5,610	6,723	7,522
경유	5,184	5,011	5,901	5,206	5,229	6,398	3,965	6,327	4,853	4,540	5,350	6,309
고경유 황유	3,851	3,625	4,396	4,003	3,926	4,918	2,935	4,923	3,723	3,477	4,039	4,649
저경유 황유	1,333	1,386	1,505	1,203	1,303	1,480	1,030	1,680	1,252	1,025	1,252	1,607
중질유	421	374	55	365	334	50	315	376	53	377	415	57
B - A 유	252	241	35	203	205	29	561	873	29	207	245	33
B - B 유	33	27	4	27	24	4	147	218	5	30	33	5
B - C 유	136	106	16	135	105	17	28	40	5	140	137	19
MF - 30	49	41	27	55	48	31	116	131	18	11	11	7
휘발유	634	622	1,100	605	632	1,053	655	1,030	1,092	645	798	1,139
윤활유	30	98	9	35	112	10	35	124	12	37	152	15

연근해 어업용 면세유의 유종별 점유율을 보면, 경유가 대부분(82%이상)이며, 휘발유, 중유, 윤활유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1972년부터 공급되기 시작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01년을 기점으로 사용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

다만, '01년부터 시행된 에너지가격 합리화 정책에 의거 경유, 휘발유의 세금부과액 (교통세, 주행세, 특소세 등)이 증가함에 따라 면세액의 규모도 증가추세에 있음.

출처 : 수협중앙회 공급내역

(12) 연도별 수산물 생산량 및 계통판매 현황

(단위 : 톤, 백만원)

연 도	물 량			금 액		
	어업생산량	위판량	비율	어업생산액	위판금액	비율
'90	2,314,744	1,711,438	73.9	1,915,812	1,318,196	68.8
'94	2,558,483	1,622,668	63.4	3,241,172	2,171,918	67.0
'95	2,421,664	1,564,960	64.6	3,127,524	2,187,373	69.9
'96	2,498,632	1,711,074	68.5	3,378,401	2,404,050	71.2
'97	2,382,540	1,485,364	62.3	3,405,168	2,119,423	62.2
'98	2,085,566	1,372,644	65.8	3,243,952	2,029,591	62.6
'99	2,101,314	1,489,351	70.9	3,111,922	2,110,737	67.8
'00	1,842,373	1,337,756	72.6	3,013,339	2,131,779	70.7
'01	1,907,926	1,446,237	75.8	3,185,471	2,286,678	71.8
'02	1,877,331	1,338,966	71.3	3,281,523	2,233,559	68.1
'03	1,922,771	1,244,003	64.7	3,571,486	2,101,975	58.9
'04	1,994,402	1,204,486	60.4	3,826,822	2,287,488	59.8
'05	2,138,115	1,181,533	55.3	4,054,362	2,251,119	55.5
'06	2,368,089	1,239,395	52.3	4,194,420	2,207,640	52.6
'07	2,538,103	1,273,907	50.2	4,538,651	2,277,467	50.2
'08	2,665,893	1,380,374	51.8	4,742,378	2,658,551	56.1
'09	2,540,321	1,324,673	52.2	5,486,748	3,049,032	55.6

※ 어업생산량 : 일반해면 및 천해양식 생산량(원양어업, 내수면어업제외)

※ 어업생산액 : 일반해면 및 천해양식 생산량(원양어업, 내수면어업제외)

산지위판장 거래제도가 강제상장제에서 임의상장제로 전환된 1995년도부터 물량 기준으로 위판율이 감소하였으나, '06년부터 증가 추세에 있음.

2009년의 경우 위판물량은 어업생산량 대비 52.2%, 위판대금은 어업생산액 대비 55.6%를 차지하고 있음.

출처 : 어업생산통계

(13) 연도별 수산물 소비량

□ 우리나라 1인 1년당 수산물 소비량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수산물 소비량 (kg/인/Yr)	43.6	34.7	38.3	36.8	42.2	44.7	44.9	49.0	49.5	56.5	55.0

※ 해산물 소비량 : 어패류(Fishes and Shellfishes) + 해조류(Seaweeds)

※ 농림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자료

□ 우리나라 수산물 자급율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자급율(%)	98.3	112.5	102.2	87.7	81.7	72.1	69.4	61.6	65.1	66.4	70.8

※ 자급율 : 어패류(Fishes and Shellfishes)이며, 해조류(Seaweeds) 제외

※ 농림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자료

□ 국가별 연간 수산물 자급량

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영 국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어패류 소비량 (kg/인/Yr)	64.3	47.9	77.0	37.8	90.0	290.0	40.4

※ 기준(한국2005년, 타 국가 2003년)

※ 농림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자료

출처 : 내부행정자료

(14) 수산물 수급 현황

□ 총 괄

(단위 : 천톤)

연도	수요			합계	공급			자급율
	국내소비	수출	이월		생산	수입	재고	
'01	3,260	1,080	641	4,981	2,665	1,806	510	81.7%
'02	3,434	1,140	769	5,343	2,476	2,226	641	72.1%
'03	3,578	1,202	743	5,523	2,486	2,268	769	69.4%
'04	3,922	1,116	531	5,569	2,519	2,477	573	61.6%
'05	4,169	1,121	512	5,802	2,714	2,557	531	65.1%
'06	4,568	1,047	575	6,190	3,032	2,646	512	66.4%
'07	4,625	1,211	618	6,454	3,275	2,604	575	70.8%
'08	4,280	1,266	567	6,113	3,360	2,135	618	7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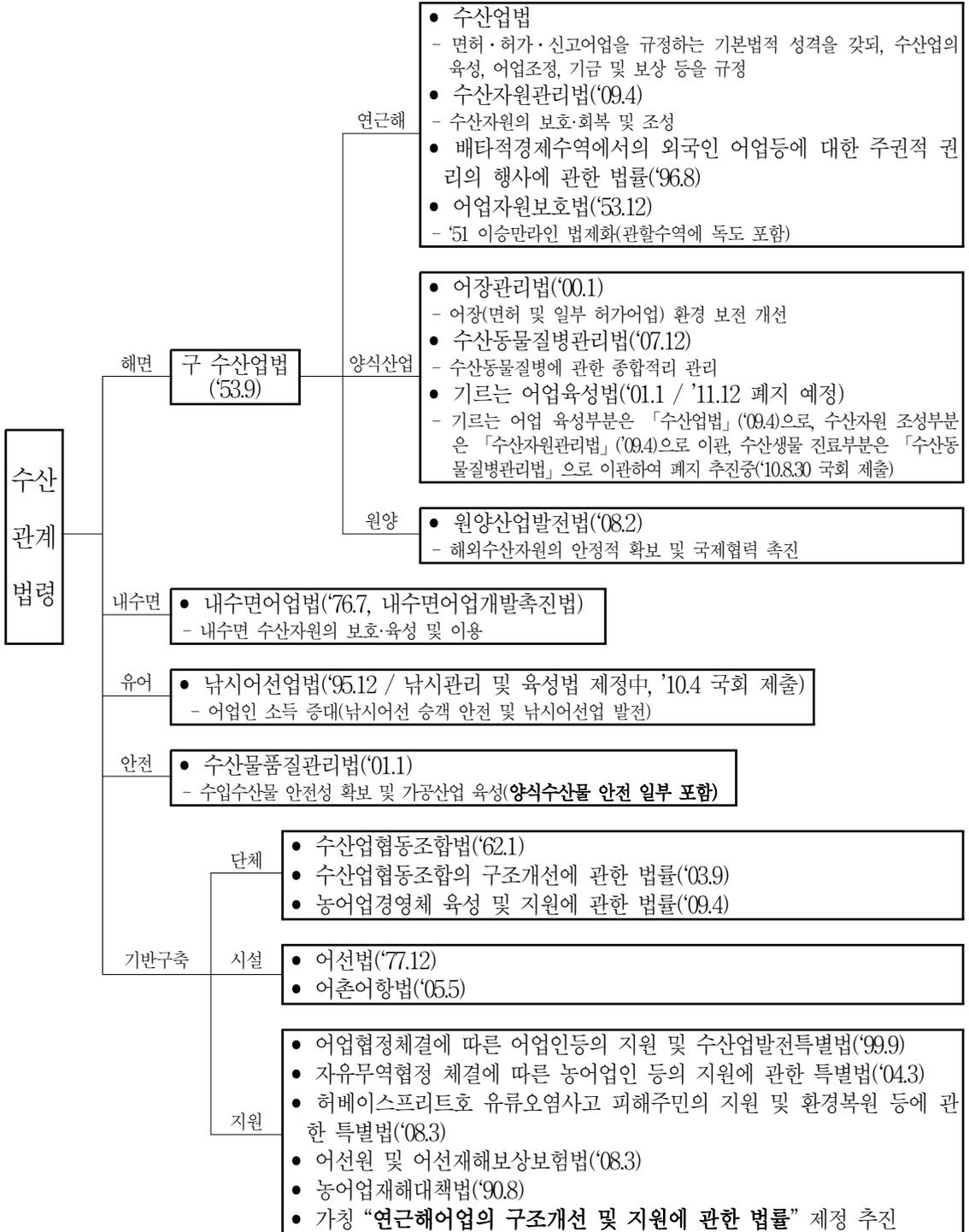
□ 주요품목별

(단위 : 톤)

구분		수요			합계	공급		
		국내소비	수출	차년이월		생산	수입	전년재고
명태	'05	382,937	8,137	55,151	446,225	26,029	341,236	78,960
	'06	364,731	6,319	49,161	402,211	26,269	320,791	55,151
	'07	384,281	12,473	76,059	472,813	20,144	403,508	49,161
	'08	348,207	18,790	40,122	407,119	24,639	306,421	76,059
오징어	'05	265,981	66,813	50,991	383,785	270,298	50,161	63,326
	'06	313,102	37,996	132,431	483,529	367,295	65,243	50,991
	'07	303,610	157,113	130,461	591,184	399,888	58,865	132,431
	'08	275,576	152,263	121,600	549,439	367,940	51,038	130,461
고등어	'05	180,077	8,134	49,805	238,016	135,806	19,811	82,399
	'06	156,501	4,457	30,596	191,554	101,712	40,037	49,805
	'07	153,250	15,330	57,312	225,892	145,016	50,280	30,596
	'08	168,891	42,212	65,002	276,105	188,321	30,472	57,312
갈치	'05	105,346	1,896	21,138	128,380	62,151	45,114	21,115
	'06	109,622	1,305	22,207	133,134	65,788	46,208	21,138
	'07	116,249	1,047	14,729	132,025	68,509	41,309	22,207
	'08	112,892	977	10,061	123,930	75,091	34,110	14,729
조기	'05	83,049	501	18,314	101,864	24,691	59,328	17,845
	'06	77,459	161	26,376	103,996	33,199	52,483	18,314
	'07	54,480	8,211	43,639	106,330	21,716	42,849	41,765
	'08	57,592	6,059	56,514	120,165	34,502	42,024	43,639

출처 : 내부행정자료

(1) 수산관계법령 체계도(21+1)



(2) 법령 개요

<수 산 업 법>

연 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 법률 제295호(1953. 9.9) ○ 개정 : 1990. 8. 1.전문개정, 1995.12.30, 1999. 4.15, 2000. 1.28, 2001. 1.29, 2002. 2. 4, 2004.12.31, 2007. 4.11, 2007. 8. 3, 2008. 2.29, 2009. 4.22, 2010.1.25, 2010.5.17
제정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업에 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 및 수면을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
구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장 102조의 본문(제1장 : 총칙, 제2장 : 면허어업, 제3장 : 허가 및 신고어업, 제4장 : 기르는 어업육성, 제5장 : 어획물운반업, 제6장 : 어업조정, 제7장 수산업의 육성, 제8장 : 수산발전기금, 제9장 : 보상·보조 및 재결, 제10장 : 수산조정위원회, 제11장 : 보칙, 제12장 : 벌칙)과 부칙으로 구성
주요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업은 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함 ○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마을어업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면허를, 외해양식어업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 근해어업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연안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의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구획어업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한시어업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허가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을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에게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함
하위법령 및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업법 시행령, 어업등록령, 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 부 령(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선박안전 조업규칙, ,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소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자원관 어업정책과(제도담당 : ☎ 구내 2358)

<어선법>

연 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 법률 제3829호(1977.12.31) ○ 개정 : 1993. 6. 11. 전문개정, 1996. 8.8, 1997. 12.13, 1999. 4.15. 2008. 3.28. 전문개정, 2009. 5.27. 전문개정
제정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의 건조·등록·설비·검사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향상과 어업생산성 증진으로 수산업 발전을 도모
구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장 53조의 본문(제1장 : 총칙, 제2장 : 어선의 건조, 제3장 : 어선의 등록, 제4장 : 어선의 검사, 제5장 : 삭제, 제6장 : 어선의 연구 개발, 제7장 : 삭제, 제8장 보칙, 제9장 : 별칙)과 부칙으로 구성
주요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이란 어업,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 및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섭에 종사하는 선박을 말함 ○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어선의 소유자는 주로 입항·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함 ○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설비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 ○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을 수 있음 ○ 어선 또는 설비를 건조·제조하는 사업장 중 시설기준에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수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선의 안전조업과 성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음
하위법령 및 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 : 어선법 시행령 ○ 부 령 : 어선법 시행규칙, 어선의건조허가등에관한수수료규칙 ○ 행정규칙 : 어선건조·개조허가오차허용범위, 어선명칭의크기 및표시방법등에관한고시, 어선톤수측정업무의집행요령, 어선검사업무등에관한대행업무범위, 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소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자원관 어업정책과(어선담당 : ☎ 구내 2363)

<어업자원보호법>

연 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 법률 제298호(1953. 12.12) ○ 개정 : 1966. 4.23 일부개정, 1996. 8. 8 일부개정 2008. 2.29 일부개정
제정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주권선의 법적규정을 보완하여 관할수역내의 어업자원을 보호육성하려는 것임
구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
주요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수역을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과 좌의 제선을 연결함으로서 조성되는 경계선간의 해양을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관할수역으로 한다 ○ 관할수역내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허가를 받아야 함 ○ 관할수역에서 허가없이 어업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소유 또는 소지하고 있는 어선·어구·채포물, 양식물 및 그 제품을 몰수함 ○ 이 법을 위반한 범죄의 수사에 있어서는 해군함정의 승무장교, 사병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함
하위법령 및 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 :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 부 령 : 없음
소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자원관 어업정책과(제도담당 : ☎ 구내 2358)

<기 르 는 어 업 육 성 법>

연 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 법률 제6611호(2002. 1.14) ○ 개정 : 2010, 2, 4(법률 제10024호)
제정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생물의 양식을 활성화하고 수산물의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수산생물에 대한 질병의 진료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다양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에 이바지함
구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장 36조의 본문(제1장 : 총칙, 제2장 : 기르는어업의 육성, 제3장 : 수산생물진료, 제4장 : 보칙, 제5장 : 별칙)과 부칙으로 구성
주요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르는어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기르는어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동 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기르는어업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기르는어업발전기본계획 및 기르는어업발전시행계획 ○ 수산생물 진료를 담당하는 수산질병관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함 - 수산질병관리사 및 수산질병관리원 제도
하위법령 및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 :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령(2003.7.15.제정, 타법개정 2010. 4.20. 대통령령 제22128호) ○ 부 령 :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규칙(2003.7.15. 제정, 타법개정 2010. 8. 5.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37호)
소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자원관 양식산업과(기획담당 : ☎ 구내 2366)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연 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 법률 제8789호(2007. 12.21) ○ 개정 : 2008.2.29(법률 8852호)
제정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동물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수입되는 수산동물에 관한 검역을 강화하는 등 수산동물질병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동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과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구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장 61조의 본문(제1장 : 총칙, 제2장 :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 제3장 : 수출입 수산동물의 검역, 제4장 : 보칙, 제5장 : 벌칙, 제6장 법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과 부칙으로 구성
주요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동물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신고체계 등이 포함된 수산동물전염병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 또는 수출·입 수산동물의 검역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안정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수산동물방역관 및 수산동물검역관제도 도입 ○ 수산동물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산동물전염병의 발생에 따른 신고, 수산동물전염병의 진단 및 확인, 수산동물거래의 제한 등 수산동물전염병의 예방 등을 위한 방역관리체계 구축 ○ 수산동물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산동물에 대하여는 살처분이나 양식시설의 격리,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방류수산동물이 수산동물전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독·격리 또는 살처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수출입 수산동물의 철저한 검역을 통하여 외국으로부터의 수산동물전염병 유입에 따른 대량폐사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함
하위법령 및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 :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령(2008.12.22. 제정, 대통령령 제21174호) ○ 부 령 :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2008.12.22. 제정, 일부개정 2010. 5.3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5호)
소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자원관 양식산업과(질병관리 : 2374)

<수산물품질관리법>

연 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 법률 제6399호(2001. 1.29) ○ 개정 : 2010.2.4(법률 제10023호)
제정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에 대한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수산물의 상품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
구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장 56조의 본문(제1장 : 총칙, 제2장 : 수산물의 품질관리, 제3장 : 수산물가공산업의 육성 및 관리, 제4장 :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가공시설의 등록·관리, 제5장 :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제6장 이식용수산물의 검역, 제7장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과 부칙으로 구성
주요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생산자 단체 등을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하여는 지리적 표시 및 원산지 표시 등을 하도록 하여 수산물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수산전통식품산업의 육성, 수산전통식품명인제도의 실시, 자금지원 등 각종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여 수산물가공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함 ○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생산단계·가공단계 등 각 단계별 위해요소와 중점관리사항을 정한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제고함 ○ 정부에서 구매·비축하거나 협약 등의 이행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품질 및 규격의 적합여부, 위해물의 혼입여부 등에 대하여 검사를 받도록 함 ○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하여 중금속 및 항생물질 등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출하연기·용도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하위법령 및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 :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2001.9.1. 제정, 타법개정 2010.8.11 대통령령 제22332호) ○ 부 령 :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2001.9.14. 제정, 타법개정 2010.8.1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1호)
소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자원관 양식산업과(질병관리 : ☎ 구내 2375)

<수산자원관리법>

연 혁	○ 제정 : 법률 제9627호(2009. 4. 22)
제정목적	○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
구 성	○ 제7장 제70조의 본문(제1장, 총칙, 제2장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등,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 제4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 제5장 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과 부칙
주요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자원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함 ○ 수산자원 조사·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한 수산자원 현황파악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위하여 수산자원조사·평가를 실시함 ○ 수산자원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수산자원보호령(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어업인 등에 대한 수산자원보호 의무와 벌칙, 권리 제한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 자율적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어업자 협약제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적 협약체결을 통한 조업분쟁 해결 및 효율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수산자원회복 및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소된 수산자원의 회복과 체계적·효율적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등 ○ 수산자원관리수면 등의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자원의 산란, 종묘발생, 치어의 성장, 정착성 수산자원의 대량 발생·서식 수면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
하위법령 및 규정	○ 대통령령, 부령 : 제정 중(공청회 : '09.8~9)
소 관	○ 어업자원관 자원환경과(자원회복담당 : ☎ 구내 2384)

<어 장 관 리 법>

연 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 법률 제6257호(2000. 1. 28.) ○ 개정 : 법률 제9627호(2009. 4. 22.)
제정목적	○ 어장의 환경을 보전·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여 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려는 것임
구 성	○ 5장 33조의 본문(제1장: 총칙, 제2장: 어장의 적정한 이용, 제3장: 어장의 정화와 정비,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과 부칙으로 구성
주요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 여건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어장의 생산성 회복을 위한 면허·허가동시갱신 등 적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어장을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어장관리해역별로 어장환경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한 결과 어장환경의 보전·개선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어장관리해역을 어장관리특별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은 어장이 있는 어장관리특별해역에 대하여 어장휴식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어장환경을 보전·개선하기 위하여 수산종묘를 살포하거나 어장의 퇴적물을 수거·처리하여야 함. ○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와 그 종사자는 어구와 양식 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를 금지하고, 부표 사용 시 규격에 맞는 물품을 사용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에 따라 관할 어장에 대하여 퇴적물 수거 등 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하여야 함. ○ 어장정화·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과 기술인력, 자본금 및 시설·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
하위법령 및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 : 어장관리법 시행령(2001. 1. 29. 제정, 타법개정 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7호) ○ 부 령 : 어장관리법 시행규칙(2001. 2. 7. 제정, 타법개정 2010. 4. 2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0호)
소 관	○ 어업자원관 자원환경과(어장환경담당 : ☎ 구내 2386)

<내수면어업법>

연 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 법률 제2835호(1975. 12.31) ○ 개정 : 1999. 2.8 일부개정, 2001. 1.28 전문개정 2005. 3.31. 일부개정, 2009.5.27 일부개정 2010.5.17. 일부개정
제정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면어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구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7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
주요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장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그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시·군·구에 설치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내수면의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어도(魚道)를 설치하여 회유성 어류의 이동 통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유어(游漁)질서 제한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 행정관청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면허 또는 허가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내수면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하위법령 및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 : 내수면어업법시행령 ○ 부 령 :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
소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자원관실 자원환경과(내수면담당 : ☎ 구내 2391)

<낚시어선업법>

연 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 법률 제5078호(1995.12.29) ○ 개정 : 1999.2.5 일부개정, 2002.5.13 일부개정 2005.7.29 일부개정
제정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낚시어선의 이용 및 안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낚시어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어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
구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
주요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해당 어선의 선적항이 속하여 있는 시·도지사의 관할수역으로 함 ○ 낚시어선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명의 안전에 관한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함 ○ 약물중독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낚시어선 조정 금지 ○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을 승선하게 하여 항·포구 등에 출입항 하려는 때에는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함 ○ 낚시어선의 사고 시 승객 및 선원의 피해보전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함
하위법령 및 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 : 낚시어선업법시행령 ○ 부 령 : 낚시어선업법시행규칙
소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자원관 자원환경과(유어담당 : ☎ 구내 2393)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연 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 법률 제8898호(2008. 3. 14) ○ 개정 : 2009. 5. 27. 일부개정 법률 제9739호
제정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 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 및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 및 복구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피해지역 주민들의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
구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
주요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 15명 이내로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함 ○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심의,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특별해양환경 복원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을 함 ○ 손해보전의 지원차원에서 대위행사를 전제로 일정 범위의 금액을 대지급 또는 대부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여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총사정액 범위내에서 지급받지 못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할 수 있음 ○ 유류오염사고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고시 할 수 있음
하위법령 및 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2008. 6. 13.제정, 일부개정 2010. 1. 11. 대통령령 제21989호) ○ 국무총리훈령 :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 운영규정(2008. 7. 10. 제정, 국무총리훈령 제515호) ○ 부 령 : 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 운영규정(2008. 8. 7. 제정, 농림수산식품부령 제40호)
소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자원관 총괄지원팀(총괄1담당 : ☎ 구내 2241)

(3) 훈령(고시) 현황

□ 총 49건 : 고시 36 훈령 11건, 예규 2건

	구분	공포번호	공포일	명칭	소관부서
1	고시	제2010-50호	'10. 5.17	어업의손실액조사기관지정	어업정책과
2	고시	제2010-56호	'10. 5.26	연구·교습어업의승인대상기관지정	어업정책과
3	고시	제2010-94호	'10. 9.28	중앙수산조정위원회운영규정	어업정책과
4	고시	제2009-311호	'09. 9.10	고래포획금지에 관한 고시	어업정책과
5	고시	제2010-55호	'10. 5.26	어업자의 어획물운반업 등록기준	어업정책과
6	고시	제2009-315호	'09. 9.10	어선건조·개조허가오차허용범위	어업정책과
7	고시	제2009-316호	'09. 9.10	어선톤수측정업무의집행요령	어업정책과
8	고시	제2009-317호	'09. 9.10	어선명칭의크기및표시방법등에관한고시	어업정책과
9	고시	제2008-31호	'08. 6.25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	양식산업과
10	고시	제2008-129호	'08.12.22	검역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고시	양식산업과
11	고시	제2009-69호	'09.8.1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 수출·입 수산물위생관리에 관한고시	양식산업과
12	고시	제2009-274호	'09. 8.25	양식수산동식물의활동구역지정등에관한고시	양식산업과
13	고시	제2009-283호	'09.8.25	수산질병관리사국가시험과목별출제 비율및시험관리에관한 고시	양식산업과
14	고시	제2009-284호	'09.8.25	양식수산동물치료용 일부 화학물질의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	양식산업과
15	고시	제2009-285호	'09.8.25	역학조사대상 수산동물전염병의 추가지정에 관한 고시	양식산업과
16	고시	제2009-286호	'09.8.25	수산동물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에 관한 고시	양식산업과
17	고시	제2009-287호	'09.8.25	양식제한조치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양식산업과
18	고시	제2009-288호	'09.8.25	수산동물 운송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에 관한 고시	양식산업과
19	고시	제2009-289호	'09.8.25	수입금지된 물건 등의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양식산업과
20	고시	제2009-290호	'09.8.25	수산동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	양식산업과
21	고시	제2009-291호	'09.8.25	살처분수산동물등에 대한 보상금지급 요령	양식산업과
22	고시	제2009-292호	'09.8.25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한 고시	양식산업과
23	고시	제2009-294호	'09.8.25	생식용생굴 대일수출요령	양식산업과
24	고시	제2009-295호	'09.8.25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	양식산업과
25	고시	제2009-296호	'09.8.25	수출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 대상 품목지정	양식산업과

	구분	공포번호	공포일	명칭	소관부서
26	고시	제2009-297호	'09.8.25	수출을 목적으로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양식산업과
27	고시	제2009-298호	'09.8.25	지정해역의 지정고시	양식산업과
28	고시	제2009-299호	'09.8.25	대한민국과 태국간 수출·입 수산물·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고시	양식산업과
29	고시	제2009-300호	'09.8.25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간 수출·입 수산물·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고시	양식산업과
30	고시	제2009-301호	'09.8.25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 수출·입 활수생동물의 검사·검역에관한고시	양식산업과
31	고시	제2009-303호	'09. 8.26	적조구제물질·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고시	양식산업과
32	고시	제2010-42호	'10.4.15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양식산업과
33	고시	제2008-152호	'09.12.26	총허용어획량(TAC)적용대상어업의종류등의지정에관한고시	자원환경과
34	고시	제2009-107호	'09.8.25	남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자원환경과
35	고시	제2009-308호	'09.9.1	어도설계기준	자원환경과
36	고시	제2009-367호	'09.9.16	패류채취어업 중 잠수기 사용지역 및 패류의 종류	자원환경과
37	훈령	제133호	'09. 9.10	어업등록령에관한사무취급요령	어업정책과
38	훈령	제211호	'10.6.4	동·서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어업정책과
39	훈령	제119호	'09.8.25	소독실시요령	양식산업과
40	훈령	제120호	'09.8.25	명예감시원 운영요령	양식산업과
41	훈령	제121호	'09.8.25	수산동물방역관 직무규정	양식산업과
42	훈령	제123호	'09. 8.26	적조예찰·예보및피해방지에 관한요령	양식산업과
43	훈령	제129호	'09.9.1	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지침	자원환경과
44	훈령	제130호	'09.9.1	국·도립 수산자원조성연구기관 운영관리요령	자원환경과
45	훈령	제131호	'09.9.1	국·도립내수면 연구기관 운영관리	자원환경과
46	훈령	제132호	'09.9.1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자원환경과
47	훈령	제149호	'09.9.14	수산자원보호구역관리요령	자원환경과
48	예규	제32호	'10.9. 8	어선법사무취급요령	어업정책과
49	예규	제20호	'09. 8.25	어업재해피해조사보고및복구지원요령	양식산업과

(1) 채포금지구역 및 기간

○ 수산자원관리법 제6조 제1항

수산자원	학명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
1. 모든 수산동식물		주1) 및 주2)의 해역에서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어류	가. 개서대	<i>Cynoglossus robustus</i>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나. 대구	<i>Gadus macrocephalus</i>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한정하여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다. 문치가자미	<i>Pleuronectes yokohamae</i> 1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다만, 경상북도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한다.
	2. 라. 연어	<i>Oncorhynchus keta</i>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마. 전어	<i>Konosirus punctatus</i>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다만, 강원도와 경상북도는 제외한다.
	바. 쥐노래미	<i>Hexagramms otakii</i>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만, 주3)의 해역에서는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로 한다.
	사. 참홍어	<i>Raja pulchra</i>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아. 참조기	<i>Larimichthys polyactis Bleeker</i> 근해자망어업 중 유자망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4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갑각류	3. 가. 꽃게	<i>Portunus trituberculatus</i> 6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다만, 주3) 및 주4)의 해역에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며, 해당 기간 중에 꽃게를 5퍼센트 이상 포획·채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및 근해안강망어업은 제외한다.
	나. 대게류(붉은 대게는 제외)	<i>Chionoecetes spp.</i> 1)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다만, 동경131도30분 이동수역은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하고, 북위38도34분09.68초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지경리 해안선의 교점, 북위38도34분09.69초와 동경128도30분06.89초의 교점, 북위38도33분09.69초와 동경128도30분06.89초의 교점, 북위38도33분09.69초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지경리 해안선의 교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에서는 4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2) 주5) 및 주6)의 해역에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산자원		학명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
	다. 붉은대게	<i>Chionoecetes japonicus</i>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다만, 강원도 연안자망어업은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로 한다.
	라. 털게	<i>Erimacrus isenbecki</i>	강원도에 한정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마. 닭새우	<i>Panulirus japonicus</i>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바. 대하	<i>Penaeus orientalis</i>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 펼닭새우	<i>Linuparus trigonus</i>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 패류	가. 백합	<i>Meretrix lusoria</i>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나. 새조개	<i>Fulvia mutica</i>	6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무안군과 영광군은 제외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다. 소라	<i>Batillus cornutus</i>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과 제주특별자치도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도와 독도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라. 전복류	<i>Haliotis spp.</i>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마. 코끼리조개	<i>Panopea japonica</i>	강원도와 경상북도에 한정하여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바. 키조개	<i>Atrina pectinata</i>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 가리비	<i>Patinopecten yessoensis</i>	주7)의 해역에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 해조류	가. 개다시마	<i>Kjellmaniella crassifolia</i>
나. 감태 검둥감태		<i>Ecklonia cava</i> <i>Ecklonia kurome</i>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 곶피		<i>Ecklonia stolonifera</i>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라. 넓미역		<i>Undariopsis peterseniana</i>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하여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마. 대황		<i>Eisenia bicyclis</i>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바. 도박류 (진도박,떡도박)		<i>Grateloupia spp.</i>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사. 뜰부기		<i>Silvetia siliquosa</i>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아. 우뭇가사리		<i>Gelidium amansii</i>	11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자. 툇		<i>Hizikia fusiformis</i>	10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수산자원		학명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
6.기타	가. 북쪽말뚝성게	<i>Strongylocentrotus intermedius</i>	강원도에 한정하여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나. 해삼	<i>Stichopus japonicus</i>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1)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북서쪽 끝, 같은 시 옥도면 개야도 서쪽 끝과 북위36도02분10.69초, 동경126도39분52.59초의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주2)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개섬 고정, 같은 도 고창군 심원면 미여도 고정과 같은 군 해리면 동호리 고정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주3)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부도 1 참조)

가. 북위37도59분39.84초, 동경124도35분53.20초

나. 북위37도59분39.84초, 동경124도39분53.18초

다. 북위37도59분09.84초, 동경124도39분53.18초

라. 북위37도59분09.84초, 동경124도39분53.18초에서 백령도 동쪽 끝 정동해상 800미터의 점에 이르는 백령도 북동쪽 해안선으로부터 800미터의 선

마. 소청도의 동쪽 끝 정동해상 1마일의 점

바. 북위37도43분09.96초, 동경124도47분17.15초

사. 북위37도35분10.01초, 동경124도47분17.15초

아. 북위37도35분10.00초, 동경124도19분53.30초

자. 북위37도40분09.97초, 동경124도19분53.30초

차. 북위37도40분09.97초, 동경124도09분53.36초

카. 북위37도55분09.86초, 동경124도09분53.35초

타. 북위37도55분09.87초, 동경124도24분53.27초

파. 북위37도58분29.84초, 동경124도24분53.27초

하. 북위37도58분29.85초, 동경124도35분53.20초

거. 북위37도59분39.84초, 동경124도35분53.20초

주4)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부도 2 참조)

가. 북위37도40분29.45초, 동경125도43분02.91초(대연평도 동쪽 끝)

나. 북위37도36분46.02초, 동경125도45분04.83초

다. 북위37도36분46.02초, 동경125도46분28.83초

라. 북위37도30분10.07초, 동경125도51분04.80초

마. 북위37도30분10.07초, 동경125도59분52.76초

바. 북위37도00분10.28초, 동경125도59분52.77초

사. 북위37도00분10.26초, 동경124도44분38.18초

아. 북위37도25분10.08초, 동경124도41분11.19초

자. 북위37도25분10.09초, 동경125도22분52.96초

차. 북위37도28분50.07초, 동경125도22분52.96초

카. 북위37도30분10.06초, 동경125도24분52.95초

- 타. 북위37도32분35.04초, 동경125도29분52.92초
- 파. 북위37도38분00.01초, 동경125도39분57.86초
- 하. 북위37도40분46.27초, 동경125도40분34.93초(대연평도 서쪽 끝)

주5)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부도 3 참조)

- 가. 북위36도44분, 동경129도48분
- 나. 북위36도44분, 동경129도51분
- 다. 북위36도41분, 동경129도48분
- 라. 북위36도41분, 동경129도51분

주6)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부도 3 참조)

- 가. 북위36도29분, 동경129도48분
- 나. 북위36도29분, 동경129도51분
- 다. 북위36도26분, 동경129도48분
- 라. 북위36도26분, 동경129도51분

주7)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가. 북위36도04분10.74초, 동경129도24분51.72초
- 나. 북위36도04분10.75초, 동경129도34분51.66초
- 다. 북위36도09분10.71초, 동경129도24분51.71초
- 라. 북위36도09분10.71초, 동경129도34분51.66초

○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7조

품명	학명	금지구역	금지기간
가. 은어	<i>Plecoglossus altivelis altivelis</i>	강원도, 경상북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8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강원도 및 경상북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다만, 인공적으로 조성한 댐 지역에서 자원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자원을 평가한 후 한시적으로 포획허가를 할 수 있다.
나. 연어	<i>Oncorhynchus keta</i>	전국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다. 빙어	<i>Hypomesus nipponensis</i>	전국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라. 쏘가리	<i>Siniperca scherzeri</i>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마. 열목어	<i>Brachymystax lenoktsinlingensis</i>	전국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바. 참게 동남참게	<i>Eriocheirsinensis</i> <i>Eriocheirjaponicus</i>	강원도. 다만, 댐은 제외한다.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 다슬기	<i>Semisulcospira spp.</i>	전국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

(2) 채포금지체장 또는 체중

○ 수산자원관리법 제6조 제2항

수산동식물	학명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	
1. 어류	가. 개서대	<i>Cynoglossus robustus</i>	26센티미터 이하
	나. 문치가자미	<i>Pleuronectes yokohamae</i>	15센티미터 이하
	다. 참가자미	<i>Pleuronectes herzensteini</i>	12센티미터 이하
	라. 감성돔	<i>Acanthopagrus schlegelii</i>	20센티미터 이하
	마. 돌돔	<i>Oplegnathus fasciatus</i>	24센티미터 이하
	바. 참돔	<i>Pagrus major</i>	24센티미터 이하
	사. 황돔	<i>Dentex tumifrons</i>	15센티미터 이하
	아. 넙치	<i>Paralichthys olivaceus</i>	21센티미터 이하
	자. 농어	<i>Lateolabrax japonicus</i>	30센티미터 이하
	차. 대구	<i>Gadus macrocephalus</i>	30센티미터 이하
	카. 도루묵	<i>Arctoscopus japonicus</i>	11센티미터 이하
	타. 명태	<i>Theragra chalcogramma</i>	27센티미터 이하
	파. 민어	<i>Miichthys miiuy</i>	33센티미터 이하
	하. 방어	<i>Seriola quinqueradiata</i>	30센티미터 이하
	거. 볼락	<i>Sebastes inermis</i>	15센티미터 이하
	너. 봉장어	<i>Conger myriaster</i>	35센티미터 이하
	더. 조피볼락	<i>Sebastes schlegelii</i>	23센티미터 이하
	러. 쥐노래미	<i>Hexagrammos otakii</i>	20센티미터 이하
	머. 황복	<i>Takifugu obscurus</i>	20센티미터 이하
	버. 참홍어	<i>Raja pulchra</i>	체반폭 42센티미터 이하
2. 갑각류	가. 꽃게	<i>Portunus trituberculatus</i>	6.4센티미터 이하
	나. 대게	<i>Chionoecetes opilio</i>	9센티미터 이하
	다. 털게	<i>Erimacrus isenbecki</i>	강원도산에 한정하여 7센티미터 이하
	라. 닭새우	<i>Panulirus japonicus</i>	5센티미터 이하
	마. 펼닭새우	<i>Limparus trigonus</i>	10센티미터 이하
3. 패류	가. 백합	<i>Meretrix lusoria</i>	각장 5센티미터 이하
	나. 소라	<i>Batillus cornutus</i>	각고 5센티미터 이하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 울릉도·독도산은 각고 7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다. 마대오분자기 오분자기	<i>Sulculus diversicolor diversicolor</i> <i>Sulculus diversicolor aquatilis</i>	제주특별자치도산에 한정하여 각장 4센티미터 이하
	라. 전복류	<i>Haliotis spp.</i>	각장 7센티미터 이하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산은 각장 1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마. 기수재첩	<i>Corbicula japonica</i>	각장 1.5센티미터 이하
4. 기타	가. 대문어	<i>Octopus dofleini</i>	300그램 이하
	나. 북쪽말뚝성게	<i>Strongylocentrotus intermedius</i>	4센티미터 이하

※ 비고: 수산동물의 체장(전장, 체반폭, 각장, 각고를 포함한다)은 부도와 같이 가와 나 사이의 직선 거리를 측정한 값을 말한다.

○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7조

품명	학명	포획·채취 금지 체장
가. 산천어	<i>Oncorhynchus masou masou</i>	20센티미터 이하
나. 송어	<i>Oncorhynchus masou masou</i>	12센티미터 이하
다. 쏘가리	<i>Siniperca scherzeri</i>	18센티미터 이하
라. 황복	<i>Takifugu obscurus</i>	20센티미터 이하
마. 참게 동남참게	<i>Eriocheir sinensis</i> <i>Eriocheir japonicus</i>	5센티미터 이하
바. 기수재첩	<i>Corbicula japonica</i>	각장 1.5센티미터 이하
사. 참다슬기 꽃채다슬기 다슬기 주름다슬기 좁주름다슬기	<i>Semisulcospira coreana</i> <i>Semisulcospira gottschei</i> <i>Semisulcospira libertina</i> <i>Semisulcospira forticosta</i> <i>Semisulcospira tegulata</i>	각고 1.5센티미터 이하
아. 말조개	<i>Unio douglasiae</i>	각장 9센티미터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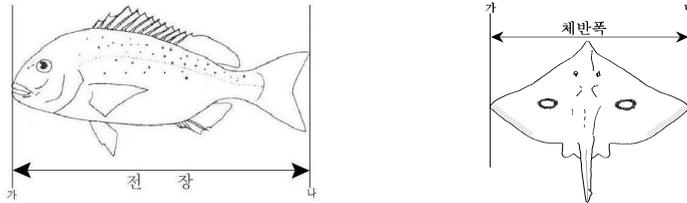
※ 비고

1.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각장, 각고를 포함한다)은 부도와 같이 “가”와 “나” 사이의 직선거리를 썬 값으로 한다.
2. 낚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 그물코의 규격(그물코를 잡아 당겨서 썬 안쪽 지름의 길이를 말한다)이 24밀리미터 이하인 것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빙어를 포획할 목적인 경우에는 그물코의 규격이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사용할 수 없다.
3. 빙어, 뱀장어를 포획할 목적으로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물코의 규격 제한을 받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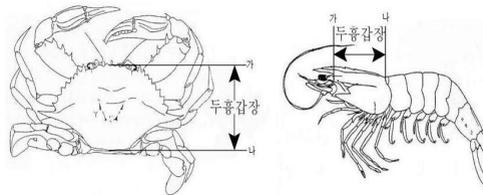
[부도]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 측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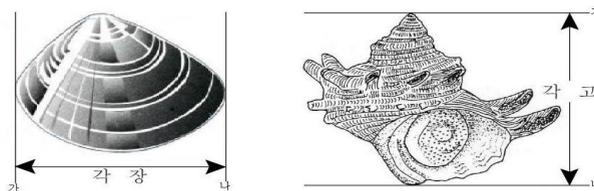
[어 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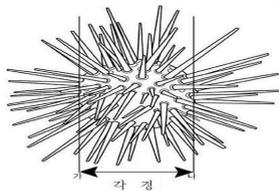
[갑 각 류]



[패 류]



[성 계]



6

어업의 종류별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

어업의 종류		주로 포획 어종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	비고
1. 기선어업	가.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33밀리미터 이하	낭망부분에는 2중 이상 어망 사용금지
	나.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54밀리미터 이하	낭망부분에는 2중 이상 어망 사용금지
	다.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 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33밀리미터 이하	낭망부분에는 2중 이상 어망 사용금지
	라. 대형트롤어업		54밀리미터 이하	낭망부분에는 2중 이상 어망 사용금지
	마. 동해구중형트롤어업		43밀리미터 이하	낭망부분에는 2중 이상 어망 사용금지
	바. 대형선망어업, 소형선망어업		30밀리미터 이하	멸치, 빙어, 보리멸, 문절망둑, 싱어, 반지, 밴댕이, 황강달어, 뱀장어, 갯장어, 붕장어, 첫새우 및 곤쟁이를 포획할 목적으로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은 적용하지 않음
	사. 근해자망어업	삼치	100밀리미터 이하	1. 2중 이상의 자망 중 내망의 그물코의 규격이 40밀리미터 이하인 것은 사용금지 2. 멸치, 빙어, 보리멸, 문절망둑, 싱어, 반지, 밴댕이, 황강달어, 뱀장어, 갯장어, 붕장어, 첫새우 및 곤쟁이를 포획할 목적으로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은 적용하지 않음
		조기류	50밀리미터 이하	
		대게	240밀리미터 이하	
	아. 근해안강망어업		35밀리미터 이하	1. 낭망부분에는 2중 이상 어망 사용금지 2. 멸치, 빙어, 보리멸, 문절망둑, 싱어, 반지, 밴댕이, 황강달어, 뱀장어, 갯장어, 붕장어, 첫새우 및 곤쟁이를 포획할 목적으로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은 적용하지 않음
	자. 근해장어통발어업		35밀리미터 이하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한 그물코가 없는 통발은 제외함
	차. 근해통발어업	대게	150밀리미터 이하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 안쪽에 붙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않음
		붉은대게	120밀리미터 이하. 2012년 4월 23일부터는 125밀리미터 이하	1.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차점에서 방위각 107도선 이북의 동해로 한정함 2.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 안쪽에 붙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않음
		꽃게	65밀리미터 이하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 안쪽에 붙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않음
그 밖의 어종		35밀리미터 이하	1.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 안쪽에 붙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않음 2.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하여 그물 형태로 제작한 통발을 포함함	
카. 기선권현망어업		5밀리미터 이하	멸치, 빙어, 보리멸, 문절망둑, 싱어, 반지, 밴댕이, 황강달어, 뱀장어, 갯장어, 붕장어, 첫새우 및 곤쟁이를 포획할 목적으로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은 적용하지 않음	

어업의 종류		주로 포획 어종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	비고
2. 연안어업	가. 연안개량안강망어업		25밀리미터 이하	1. 연안안강망 및 연안낭장망은 제외함 2. 낭망부분에는 2중 이상 어망 사용금지
	나. 연안선망어업		15밀리미터 이하	멸치, 빙어, 보리멸, 문절망둑, 싱어, 반지, 뱀뱀이, 황강달어, 뱀장어, 갯장어, 붕장어, 첫새우 및 곤쟁이를 포획할 목적으로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은 적용하지 않음
	다. 연안통발어업	붕 장 어, 낙지, 새우류, 민꽃게류	22밀리미터 이하	1. 통발 입구에 부착된 깔때기 모양의 그물의 입구 중 가장 작은 것의 둘레 길이가 140밀리미터 이상인 것은 사용금지 2.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 안쪽에 붙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않음 3.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하여 그물 형태로 제작한 통발을 포함함
		대게	150밀리미터 이하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안쪽에 붙이는 깔때기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붉은대게	125밀리미터 이하	1.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차점에서 방위각 107도선 이북의 동해로 한정함 2.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 안쪽에 붙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않음
		그 밖의 어종	35밀리미터 이하	1.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 안쪽에 붙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않음 2.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하여 그물 형태로 제작한 통발을 포함함
	라. 연안조망어업		25밀리미터 이하	낭망부분에는 2중 이상 어망 사용금지
	마. 연안선인망어업		15밀리미터 이하	멸치, 빙어, 보리멸, 문절망둑, 싱어, 반지, 뱀뱀이, 황강달어, 뱀장어, 갯장어, 붕장어, 첫새우 및 곤쟁이를 포획할 목적으로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은 적용하지 않음
바. 연안자망어업	삼치	100밀리미터 이하	1. 2중 이상의 자망 중 내망의 그물코의 규격이 40밀리미터 이하인 것은 사용금지 2. 멸치, 빙어, 보리멸, 문절망둑, 싱어, 반지, 뱀뱀이, 황강달어, 뱀장어, 갯장어, 붕장어, 첫새우 및 곤쟁이를 포획할 목적으로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은 적용하지 않음	
	조기류	50밀리미터 이하		
	대게	240밀리미터 이하		
3. 구획어업	가. 장망류어업(영광군에서 주목망을 사용하는 어업)		25밀리미터 이하	
	나. 장망류어업(영광군에서 주목망을 사용하는 어업), 패류형망어업 외의 구획어업		15밀리미터 이하	멸치, 빙어, 보리멸, 문절망둑, 싱어, 반지, 뱀뱀이, 황강달어, 뱀장어, 갯장어, 붕장어, 첫새우 및 곤쟁이를 포획할 목적으로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은 적용하지 않음

비고

1. “그물코의 규격”이란 그물코를 잡아당겨서 겐 안쪽 지름의 길이를 말한다.
2. 어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파리 배출망을 부착(설치)할 필요가 있는 어업에 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해파리 배출망의 그물코의 규격과 사용시기를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은 적용하지 않는다.

번호	단체명 (대표자)	설립근거 (설립일)	주요업무	직원수 (회원수)	주소 (전화번호)	감독 부서
1	(사)인천자망협회 (송준호)	민법제32조 '09. 3. 4	회원 상호간 친목협동으로 해양환경정화와 친환경적 어업 도모	3	인천 중구 북성동 1가 104-14 032-888-4080(FAX 032-887-4462)	어업 정책
2	(사)기선전인망협회 (심재현)	민법제32조 1991.6.12	선인망 어구어법 및 멸치가공기술개발과 회원상호 친목도모	2	전남 여수시 봉산동 100-5 061-642-4565(FAX 검용)	어업 정책
3	(사)남해군근해장 어통발연합회 (이말순)	민법제32조 '06.1.25	남해군 근해 장어통발 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을 도모	5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170-32 055-867-7585(fax 055-867-6209)	어업 정책
4	(사)부산광역시 기장군나잠회 (전숙자)	민법제32조 '03.10.27	나잠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정보교환, 연안바다 보호 및 해녀의 복지향상, 상호 등	5	부산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 298-3 051-721-4199(fax 051-721-4177)	어업 정책
5	(재)수산연구재단	민법제32조 '88.08.20	국립수산진흥원의 수산기술업무 지원, 장학사업 등	-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408-1 051-720-2882(fax 051-720-2889)	어업 정책
6	(사)수진회 (박병하)	민법제32조 '02.10.15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및 상부상조	113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408-1 051-720-2676	어업 정책
7	(사)울산광역시 나잠회(박영자)	민법제32조 '02.06.12	울산시 나잠회원들간 친목 및 수산자원보호와 관리 도모	-	울산 북구 당사동 052-298-9993	어업 정책
8	(사)전국근해오징어 채낚기연합회 (임학진)	민법제32조 '05.06.02	전국근해오징어채낚기 어업인의 권익보호, 오징어 TAC 시행에 따른 선구적 역할 수행 등	2	경북 포항시 북구 동빈1가 60-4 054-867-7585(fax 054-248-1891)	어업 정책
9	(사)전북형망어업 협회 (마상석)	민법제32조 '06.12.08	해양환경 정화활동, 친환경 정보자료수집 및 제공, 어구 및 어자재 활용 기술정보 수집 및 정보교환 등		전북 군산시 해망동 1011-17 군산수협 해망동어판장 2층 063-442-0713(fax063-446-4601)	어업 정책
10	(사)제주도 연안 어업인협회 (강순복)	민법제32조 '05.9.28	제주 연안어장 환경정화 활동으로 연안 어족자원 보호와 연안 어업인들의 권익보호	1	제주 제주시 연동 292-34 fax : 064-724-2344	어업 정책
11	(사)제주도근해연 승어업인협회 (강철진)	민법제32조 '06.08.07	제주 근해연승어업인 권익보호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어장환경 정화활동 및 상호 정보교환	1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667-6 064-732-3502	어업 정책
12	(사)충남보령근해 안강망협회 (박영선)	민법제32조 '02.04.09	어선어업기술개발 및 지식정보교환, 보령풍어제 사업, 대천항 주변 정소 및 정미	1	충남 보령시 신흥동 2240 041-934-7409(fax 041-932-7049)	어업 정책
13	(사)화성어선주협 회 (박래운)	민법제32조 '04. 5. 12	어선어업 자율적 질서확립 및 어족보호 활동, 인명구조 및 해난사고 예방 등	-	경기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689 (어업 정책
14	(사)한국생분해어 망협회 (문창영)	민법제32조 '10. 3.02	생분해어망의 사용범위 및 용도 확대를 통한 산업의 활성화, 홍보, 정책제안, 품질관리 등	6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552 051-265-0831	어업 정책
15	(사)한국어업기술 협회 (이주희)	민법제32조 '07.10.15	학술연구발표회, 토론회, 강습회 등의 개최, 발행 및 조사와 연구, 관련기관과의 상호협력 또는 제휴	-	부산시 남구 대연3동 599-1 051-720-2573	어업 정책
16	(사)한국수산과학 총연합회 (허성범)	민법제32조 '08. 6. 13	수산과학기술 분야의 학술단체를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이 분야의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며 범국민적 수산과학문화의 창달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	2,500	부산 남구 대연3동 599-1	어업 정책

	단체명 (대표자)	설립근거 (설립일)	주요업무	직원수 (회원수)	주소 (전화번호)	감독 부서
17	(사)한국어업포럼 (윤명길)	민법제32조 '09. 10. 6	정책 및 법 제도의 제안, 정보의 수집 및 보급, 전국 어업인 단체·회원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어업을 둘러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해결함으로써 어업인의 지위향상 도모	3 (42)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6	어업 정책
18	(사)한국어류학회 (허성희)	민법제32조 '10. 7. 29	어류에 관심 있는 모든 국내외 사람들 간의 만남을 통해 원활한 정보교환, 공동연구 및 협동체제를 증진시켜 어류와 관련한 교육, 연구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 권익 증진	1 (300)	부산 남구 대연3동 559-1	어업 정책
19	(사)한국축제식 양식협회 (김지연)	민법제32조 '07.2.16	축제식 양식 정보교환, 수급조절, 축제식양식 발전 방안 모색	72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동 155-4 - 전화 : 041-675-5843 - fax : 041)675-5844	양식 산업
20	(사)한국유해조류 연구회 (나기환)	민법제32조 '06.1.27	회원 상호간 연락 및 제휴를 통해 유해조류 연구 발전	83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408-1 051-720-2520(fax 051-720-2266)	양식 산업
21	(사)한국해삼협회 (현대식)	민법제32조 '06.6.13	회원상호간 친목도모 해삼양식 산업과 관련된 현안문제 해결	18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56-313 - 전화 : 02)3474-8730 - fax : 02)3747-8731	양식 산업
22	(사)한국광어 양식연합회 (신태범)	민법제32조 '08.12.19	회원간 상호협력, 납치양식 정보 교환으로 판매촉진 및 판로 확대	517	제주 제주시 일도2동 359-11 064-753-0365(fax 064-722-0365)	양식 산업
23	(사)한국김생산어 민연합회 (박성진)	민법제32조 '99.5.26	수산물(김) 생산 및 판매에 있어 어민의 권익과 정당성을 발휘	4,777	전남 해남군 송지면 산정리 712-3 061-533-7072(fax 061-534-7072)	양식 산업
24	(사)전국새우양식 협회 (윤명길)	민법제32조 '09.1.8	회원상호간 친목과 권익 도모, 안정적인 양식체계 확립 및 양식기술발전 모색	201	인천시 남동구 간석3동 117-18 - 전화 : 032)429-0061 - fax : 032)429-0063	양식 산업
25	(사)한국해산종묘 협회 (박완규)	민법제32조 '03.3.25	회원상호간 친목과 권익 도모, 수산종묘 및 양식업과 수산업 전체에 기여	300	경남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144 - 전화 : 055)863-2178 - fax : 055)863-2171	양식 산업
26	(사)한국전복협회 (배중환)	민법제32조 '07.3.21	새로운 기술보급사업, 전복 유통에 관한 정보와 상담 및 대어업인 봉사	2,000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 115-7 061-537-0089(fax 061-537-0096)	양식 산업
27	(사)한국아쿠아포 럼 (배평암)	민법제32조 '06.7.28	해양, 수산 등 수계산업의 발전, 연안 수산자원 관리, 증양식 산업연구 및 진흥에 기여	150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7-1 041-530-1286(fax 041-530-1493)	양식 산업
28	전국마른김협회 (이경춘)	민법제32조 '08.1.28	회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 및 김산업 발전 도모	370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177 061-554-4430(fax 061-554-4431)	양식 산업
29	(사)한국수조양 식기자재연합회 (성광용)	민법 제32 조 '02.8.12	수조양식기자재산업의 신소재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위탁사업, 연구조사 및 정보 수집 등	40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30-6 02-925-3877(fax 02-927-7012)	양식 산업

	단체명 (대표자)	설립근거 (설립일)	주요임무	직원수 (회원)	주소 (전화번호)	감독 부서
44	(사)한국내수면양식 단체연합회 (배상기)	민법제32조 '06.8.16	내수면 양식산업의 발전 도모 및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	1 (470)	경북 칠곡군 동명면 봉암리 814-78 054-976-1411(fax 054-976-1412)	자원 환경
45	(사)한국민물장어 생산자협회 (나진호)	민법제32조 '08.12.22	내수면 민물장어 양식산업의 발 전 도모 및 회원의 공동이익 증 진	1 (180)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835-5 061-353-1148(fax 061-353-1179)	자원 환경
46	(사)한국다슬기양식 유통생산자협회 (김성락)	민법제32조 '10.5.3	다슬기양식유통생산자들의 양식 산업의 발전 도모 및 회원의 공동 이익 증진	1 (145)	충남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508-1 041-338-1214(fax 0303-3442-2669)	자원 환경
47	(사)강원홍계통발 선주협회 (최순화)	민법제32조 '84.03.16	붉은대게 자원관리, 홍계자원의 지속가능한 재생산기반구축	3 (21)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1341-8 033-631-8938(fax 033-631-8931)	자원 환경
48	(사)경북홍계통발 선주협회 (이재길)	민법제32조 '01.03.16	붉은대게 자원관리, 홍계자원의 지속가능한 재생산기반구축	3 (18)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623-81 054-787-2608(fax 054-787-1608)	자원 환경
49	(사)전남여수낙시 어선업협회 (손철석)	민법제32조 '05.5.27	낙시어선업의 기술개발 및 지식 · 정보 교환, 낙시어선업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수질오염 방지 및 수산자원보호, 낙시어선 어업인의 복지 향상	8 (-)	전남 여수시 국동 37-308 061-643-7942(fax 061-644-5161)	자원 환경
50	(사)한국낙시어선 협회 (김홍제)	민법제32조 '02.10.29	낙시어선업의 기술개발, 지식 및 정보교환, 낙시대회 개최, 낙시어 선업의 안전사고 예방 및 계도	25 (-)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755-3 041-934-6044(fax 041-932-5333)	자원 환경
51	(사)한국낙시업 중앙회 (권순국)	민법제32조 '93.11.01	낙시터 경영자 간의 상호협력 및 우호증진, 건전한 낙시 육성 · 발전 등	10 (-)	경기 화성시 봉담읍 덕리 70-3 031-227-0744~5 (fax 031-227-0742)	자원 환경
52	(사)한국낙시연합 (김동현)	민법제32조 '81.2.5	낙시질서 확립 및 낙시풍토 조 성, 어족보호 및 자연보호, 낙시 인의 정보교환과 권익보호 등	12 (-)	서울 중구 신당동 357-5 국일빌딩 401호 02-2235-2704~5 (fax 02-2235-2706)	자원 환경
53	(사)한국기조연맹	민법제32조 '10.6.17	낙시동호인의 기술향상 및 권익 보호, 건전한 낙시문화 정착 및 환경보호	1 (350)	전남 광주시 서구 쌍촌동 976-5 062-371-1782,3 (fax 062-371-1783)	자원 환경

(1) 중앙수산조정위원회

① 명칭	중앙수산조정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위원회()단순자문(√)심의(√)의결()	
③ 설치근거 및 일자	수산업법 제86조(1963.4.11) 정부입법(√)			
④ 설치목적	어업에 관한 분쟁등의 조정·보상 또는 재결 등에 관한사항 심의			
⑤ 기 능	어업별 허가정수 설정·조정 및 구획어업 신규허가 승인 심의 어업별 또는 시·도 사이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총허용어획량(TAC) 등 기본계획의 심의 외해양식어업면허 신청자에 대한 우선순위 심의 및 외해양식어업에 관한 손실보상 또는 분쟁의 심의·조정 수산업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 건의 그 밖에 수산업법 또는 어장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 심의			
⑥ 예산(집행내역)	'09년	예산 총 900천원	'10년	예산 총 900천원
		- 경상경비 900천원 - 사업경비 - 천원		- 경상경비 900천원 - 사업경비 - 천원
		집행 총 900천원		
⑦ 위원장(임명권자)	농림수산식품부 차관(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당연직(√)			
⑧위원 (총 19명)	당연직 (3명)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자원관, 수협중앙회 상임이사		
	위촉직 (16명)	여성 2명(13%), 지방인사 13명(81%), 장애인 0명(%) 학계 2명, 연구계 2명, 지역어업인 11명, 기타 1명		
⑨ 회의개최 실적 (본회의)	2007년	출석 -회	서면 3회	
	2008년	출석 1회	서면 1회	
	2009년	출석 1회	서면 2회	
⑩ 분과위원회 등	분과위원회명 : 없음			
	2007년	출석 0회	서면 0회	
	2008년	출석 0회	서면 0회	
	2009년	출석 0회	서면 0회	
⑪ 소관부서담당자	어업정책과 기술서기관 이영직			

(2) 총허용어획량(TAC)심의위원회

① 명칭	총허용어획량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속(주관)		성격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위원회()단순자문()심의(√)의결()
③ 설치근거 및 일자	수산자원보호령 제30조제5항(1996.12.31)		
④ 설치목적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⑤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선정과 총허용어획량 설정 등에 관한 사항 - 총허용어획량의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예산(집행내역)	'09년	예산 : 없음	'10년
		- 없음	
		집행 : 없음	
⑦ 위원장(임명권자)	임광수(수산정책실장) * 당연직(√), 위촉직()		
	⑧위원 (총○명)	당연직 (4명)	어업자원관, 국립수산물과학원 자원환경부장, 해양수산개발원 수산어촌연구본부장, 수협중앙회 회원경영지원부장
		위촉직 (12명)	여성 1명(6%), 지방인사11명(94%) 학계 1명, 기업계 4명, 연구계 2명, 기타 3명
⑨ 회의개최 실적 (본회의)	2007년	출석 ○회	서면 2회
	2008년	출석 ○회	서면 2회
	2009년	출석 1회	서면 3회
⑩ 분과위원회 등	분과위원회명 : 없음		
	2007년	출석 ○회	서면 ○회
	2008년	출석 ○회	서면 ○회
	2009년	출석 ○회	서면 ○회
⑪ 소관부서담당자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사무관 이병용		

(3) 기르는어업심의회

① 명칭	기르는어업심의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농림수산식품부		자문위원회(√) 단순자문()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 형식)	- 기르는어업육성법 제3조제1항(2003.7.15)/ 정부입법(√)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 2003, 10, 14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존속기한 미설정 사유 본 위원회의 목적은 기르는 어업의 육성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서 기르는 어업정책이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이와 연계된 본 위원회의 존속기한 설정 곤란				
⑥ 설치목적	- 기르는어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				
⑦ 기능	- 기르는어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 기르는어업 개발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심의 - 기르는어업의 육성 및 기르는어업 발전과 관련된 사항 심의				
⑧ 예산	연 도				
	2007 2008 2009				
	총 액(천원)	0	0	0	
	경상 경비	0	0	0	
사업 경비	0	0	0		
⑨ 위원 (총 15명) ※ 위원장포함	위원장 (임명권자)	* 당연직(√), 위촉직()			
	당연직 (총 3명)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자원관, 수협중앙회 상임이사			
	위촉직 (총 12명)	학계1명, 연구계2명, 협회5명, 기업계0명, 법조계0명, 언론계0명, 기타4명 (별도 구분) 여성 2명(13%), 지방인사 10명(66%), 장애인 0명(0%)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2007년	출석 1회, 서면 0회	2008년	서면 1회
		2009년		2010년	
	분과회의	해당없음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⑪ 소관부서·담당자	어업자원관실 양식산업과 기획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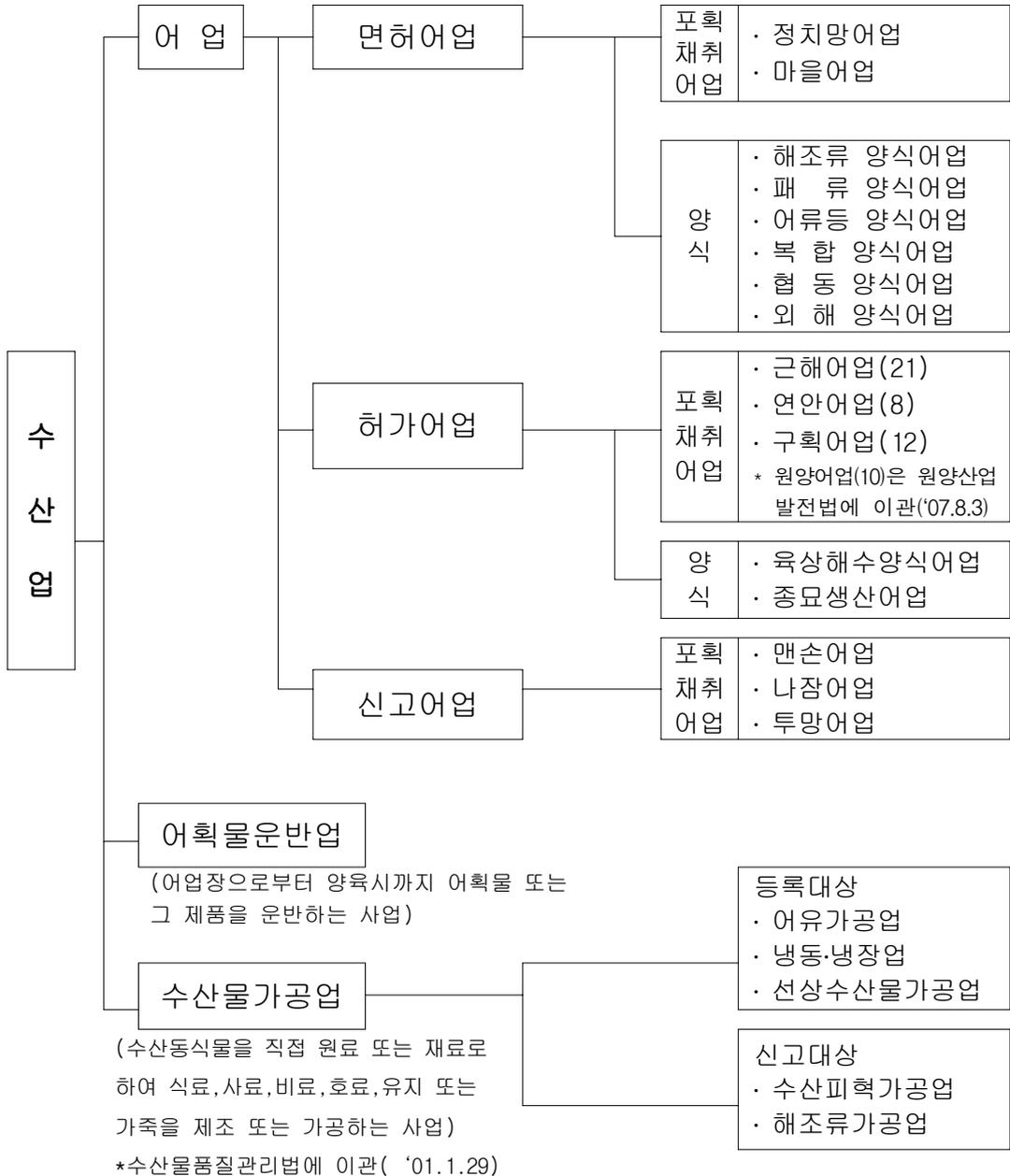
(4) 수산동물전염병방역협의회

① 명칭	수산동물전염병방역협의회		
② 소속 및 성격	소속(주관)		성격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행정위원회()단순자문(√)심의()의결()
③ 설치근거 및 일자	-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4조 / 시행 2008.12.22 (위원회 미구성)		
④ 설치목적	- 수산동물 전염병 방역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자문		
⑤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동물 전염병의 방역대책 및 방역제도 개선 - 수·출입 수산동물의 검역대책 및 검역제도 개선 - 그 밖에 수산동물 전염병의 방역 및 검역에 관한 사항 		
⑥ 예산(집행내역)	'09년	-	'10년
		-	
		-	
⑦ 위원장(임명권자)	- 위원회 미구성		
⑧위원 (총 ○명)	당연직 (○명)	- 위원회 미구성	
	위촉직 (○명)	- 위원회 미구성	
		- 위원회 미구성	
⑨ 회의개최 실적 (본회의)	2007년	-	-
	2008년	-	-
	2009년	-	-
⑩ 분과위원회 등	2007년	-	-
	2008년	-	-
	2009년	-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위원회 미구성		
⑪ 소관부서담당자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질병관리담당		

(5) 중앙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

① 명칭		중앙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속(주 관)		성 격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자원관 어업정책과)		행정위원회()단순자문()심의(√)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 형식)		-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7조(1997.9.7) 정부입법(√)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 1999, 12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 - 어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필요시 개최					
⑥ 설치목적		- 협정으로 인하여 어업활동 등에 제한을 받는 어업인 등의 지원 대상과 금액 등의 심의·의결					
⑦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 - 어업인 등의 지원을 위한 재원대책에 관한 사항 - 지원대상자 선정·지원방법 결정 등 - 어선·어구의 개선비용 및 출어 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 - 관련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원금 지급등의 재심의 -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⑧ 예산		연 도					
		2007		2008		2009	
		총 액(천원)		0		0	
		경상 경비		0		0	
사업 경비		0		0			
⑨ 위원 (총○명) ※ 위원장까지 포함하여 작성	위원장 (임명권자)	위원회 미구성					
	당연직 (총○명)	위원회 미구성					
	위촉직 (총○명)	위원회 미구성					
		위원회 미구성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2006년	출석 - 회, 서면 - 회	2007년	출석 - 회, 서면 - 회		
		2008년	출석 - 회, 서면 - 회	2009년	출석 - 회, 서면 - 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총 -개)					
		2006년	출석 - 회, 서면 - 회	2007년	출석 - 회, 서면 - 회		
		2008년	출석 - 회, 서면 - 회	2009년	출석 - 회, 서면 - 회		
⑪ 소관부서·담당자		어업자원관실 어업정책과 어선담당					

가. 수산업법상 수산업의 분류



나. 면허·허가·신고어업의 정의 및 어업종류

◇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말함.

◇ 어업의 구분

○ 면허어업 : 일정한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일정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관청의 처분이며, 행정법학상의 특허에 해당함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외해양식어업은 장관이 면허)

- 면허어업 종류(8개) :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 마을어업

○ 허가어업 : 수산자원의 번식보호 또는 어업조정 기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일반인에게 과해진 어업의 금지를 일정한 경우에 특정인에게 해제하여 자연의 어업행위의 자유를 회복하게 하는 행정행위

- 근해어업허가 : 총톤수 8톤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

· 대형기선저인망·중형기선저인망·트롤·선망·채낚기 등 21개 어업

- 연안어업허가 :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이나 어선의 안전조업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톤수 8톤이상 10톤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

· 자망·안강망·통발·들망·조망·선인망·복합어업 등 8개 어업

- **구획어업허가** : 일정한 수면을 정하여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

· 정치성구획어업 : 일정한 수역에서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지인망, 선인망어업 등 9개어업)

· 이동성구획어업 : 일정한 수역의 범위를 정하여 그 수역범위안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어업(형망, 새우조망어업 등 3개어업)

-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허가**

· 육상해수양식어업 :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 종묘생산어업

- 육상종묘생산어업 :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육상 또는 해상에서 생산된 종묘를 일정기간 동안 중간 육성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어업

- 해상종묘생산어업 :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바닷가의 바닥 또는 수중에 대·지주·뗏목·뜸·밭줄·채룽·그물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해상 또는 육상에서 생산된 종묘를 일정기간 동안 중간 육성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어업

○ **신고어업** : 신고어업은 면허어업·허가어업 이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함.

- 신고어업 종류 : 맨손·나잠·투망어업 3개 어업

다. 허가어업의 종류

【 근해어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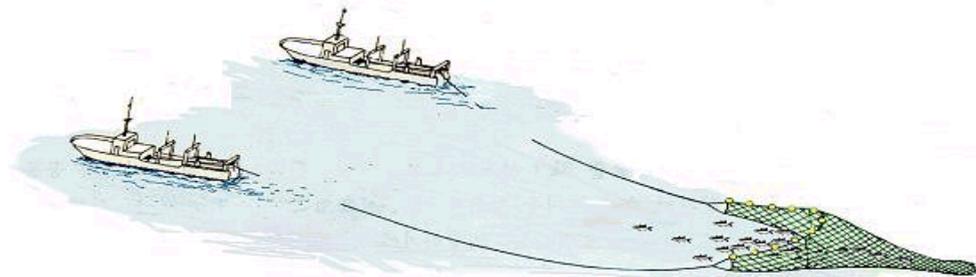
(1)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 어업의 종류 /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60톤이상 140톤미만 / 1통
- 선원수 : 약 12~14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년중(9월~6월)
- 대상어종 : 가자미류, 강달이류, 보구치, 붕장어, 참조기, 오징어, 고등어, 아귀, 눈볼대, 갈치, 가오리류, 서대류, 도루묵, 말쥐치
- 조업모식도



(2)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 어업의 종류 /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60톤이상 140톤미만 / 1통
- 선원수 : 적당 약 12~14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년중(9월~6월)
- 대상어종 : 강달이류, 갈치, 삼치, 고등어, 참조기, 병어류, 오징어, 전갱이, 가자미류, 말쥐치, 붕장어, 갯오징어
- 조업모식도



(3)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 어업의 종류 /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20톤 이상 60톤 미만 / 1통
- 기관마력 / 선원수 : 회전수가 1,200미만은 450마력 이하, 1,200이상은 550마력 이하(평균 440마력/1척당) / 12~13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년중(10월~5월)
- 대상어종 : 가자미류, 도루묵, 청어, 문어, 대구, 명태, 임연수어
- 조업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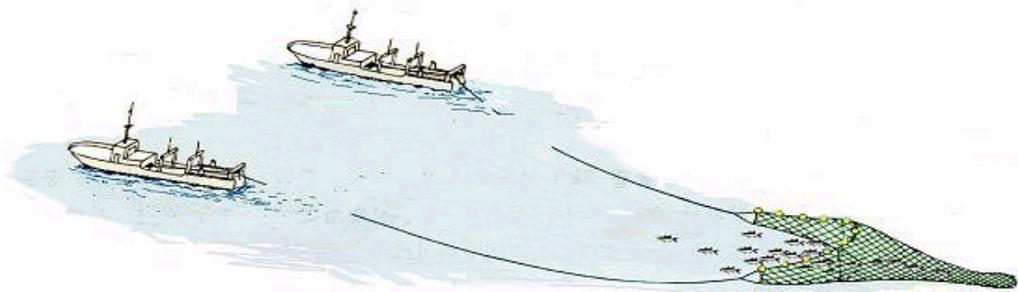
(4)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 어업의 종류 /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20톤이상 60톤미만 / 1통
- 기관마력 : 회전수가 1,200미만은 450마력이하, 1,200이상은 550마력이하(평균 420마력/1척당)
- 선원수 : 약 12~13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연중(10월~5월)
- 대상어종 : 가자미류, 봉장어, 강달이류, 멸치, 아귀, 보구치, 오징어, 도루묵, 가오리류, 서대류, 넙치류
- 조업모식도 :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 조업모식도(3번)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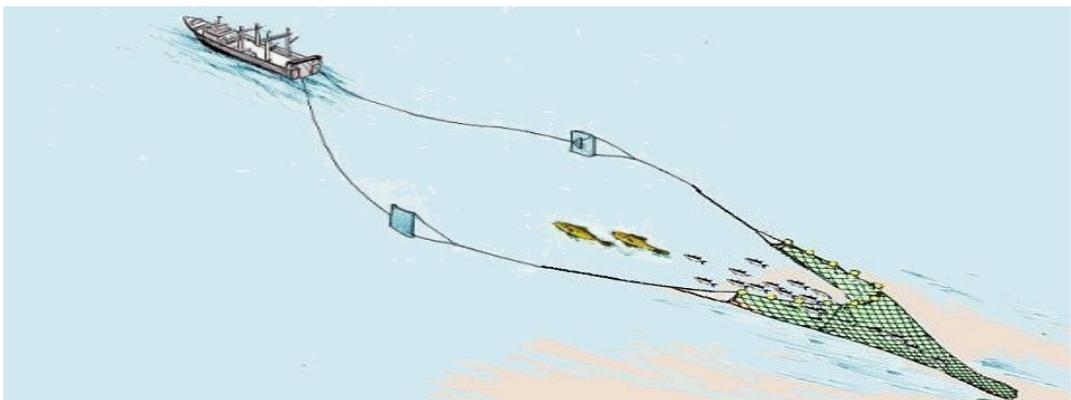
(5)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 어업의 종류 /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 어선규모 : 20톤이상 60톤미만 / 사용어구수 : 1통
- 기관마력 : 회전수가 1,200미만은 450마력 이하, 1,200이상은 550마력 이하(평균 420마력/1척당)
- 선원수 : 척당 약 12~13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연중(10월~5월)
- 대상어종 : 강달이류, 붕장어, 오징어, 아귀, 민어, 보구치, 닭새우류, 고등어, 양태, 서대류, 갈치, 가오리류, 가자미류, 넙치, 꽃게, 참조기
- 조업모식도 : 쌍끌이기선저인망 조업모식도(2번)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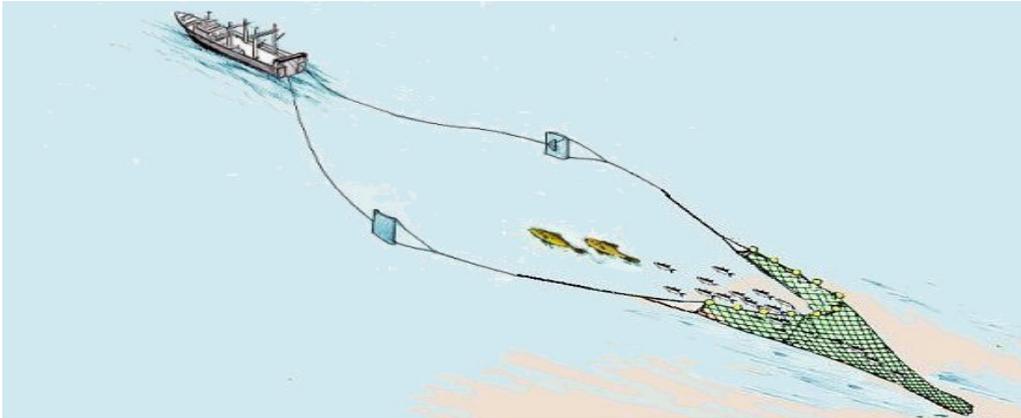
(6) 대형트롤어업

- 어업의 종류 / 대형트롤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60톤이상 140톤미만 / 1통
- 선원수 : 약 14~16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연중(7월~4월)
- 대상어종 : 오징어, 갈치, 병어류, 고등어, 삼치류, 말귀치, 참조기
- 조업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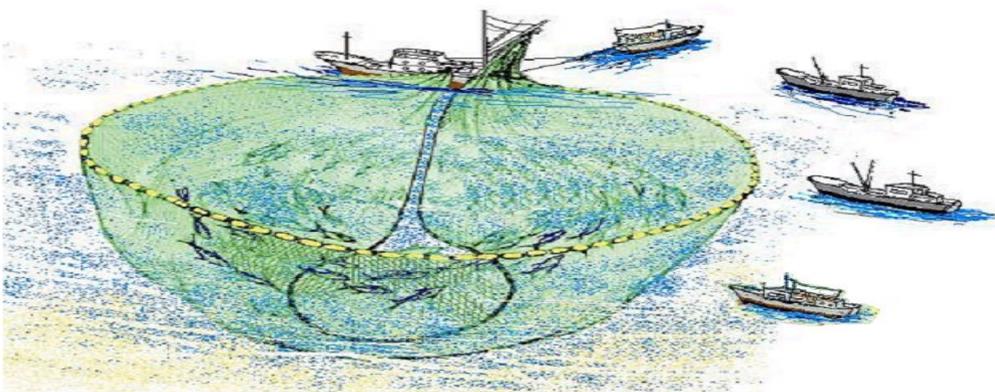
(7) 동해구중형트롤어업

- 어업의 종류 / 동해구중형트롤어업
- 어선규모 : 20톤이상 60톤미만 / 1통
- 선원수 : 약 10~12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연중(12월~4월)
- 대상어종 : 청어, 가자미류, 도루묵, 골뱅이, 명태, 대구
- 조업모식도 : 대형트롤어업 조업모식도(6번)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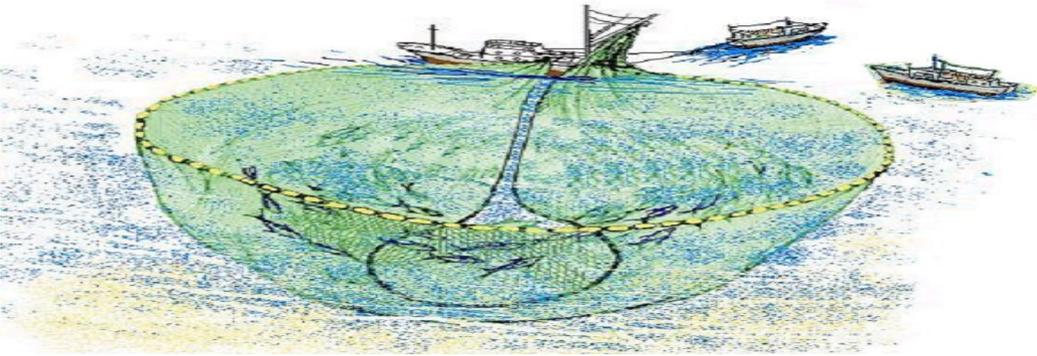
(8) 대형선망어업

- 어업의 종류 / 대형선망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50톤이상 140톤미만 / 1통
- 선원수 : 그물배, 어탐선, 운반선에 총 80~90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연중
- 대상어종 : 고등어, 정어리, 전갱이, 오징어, 갈치, 삼치, 청어
- 조업모식도



(9) 소형선망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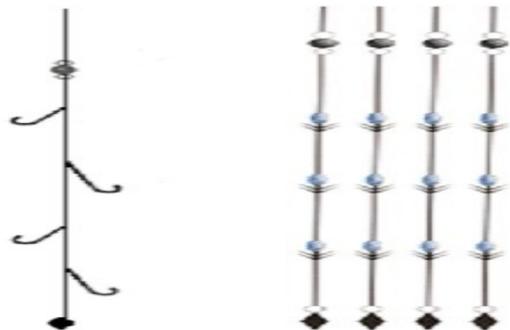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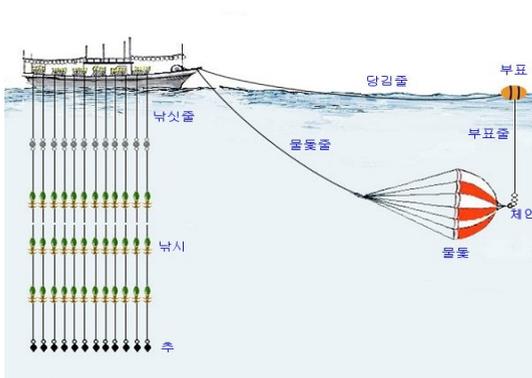
- 어업의 종류 / 소형선망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8톤 이상 30톤 미만 / 1통
- 선원수 : 등선, 운반선 / 그물배 7~10명 내외, 보조선 5~8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정어리(6~11월), 멸치(6~11월), 전어(4~10월), 학공치(2~4월, 9~12월)
- 대상어종 : 정어리, 멸치, 전어, 학공치, 배도라치, 삼치
- 조업모식도



(10) 근해채낚기어업

〈채낚기〉

- 어업의 종류 / 근해채낚기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8톤이상 90톤미만 / 자동조획기 20~25대(100톤급)
- 선원수 : 20~30톤급 10~15명 내외, 80~120톤급 15~20명 내외, 150~200톤급 20~25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2~6월 대마도 주변해역, 7~9월 울릉도~대화퇴 해역, 덕적도~소흑산도해역, 10~12월 동해안
- 대상어종 : 오징어, 갈치, 복어류, 고등어, 꽁치
- 조업모식도



(채낚시)

〈외줄낚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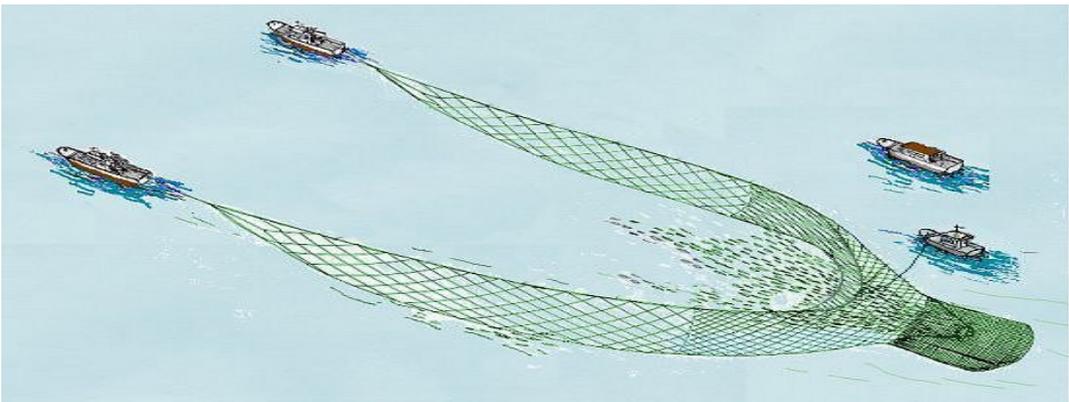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8톤이상 90톤미만 / 자세 약 12개
- 선원수 : 약 12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12~3월
- 대상어종 : 은밀복
- 조업모식도



(외줄낚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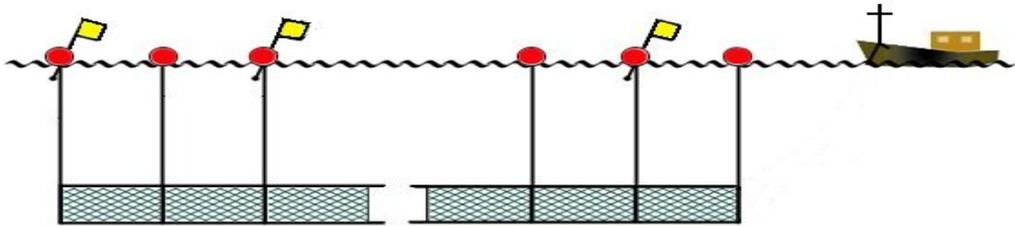
(11) 기선권현망어업

- 어업의 종류 / 기선권현망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40톤미만 / 1통
- 기관마력 / 선원수 : 회전수가 1,200미만은 220마력이하, 1,200이상은 350마력이하 (평균 319 마력/1척당) / 1통당 5~6척 약 70명내외
- 주 조업시기 : 7~1월(8~11월)
- 대상어종 : 멸치, 전어
- 조업모식도



(12) 근해자망어업

- 어업의 종류 / 근해자망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8톤이상 90톤미만
- 선원수 : 20톤급기준 약7~10명내외
- 주 조업시기 : 쾡치(5~7월, 11~1월), 참조기(2~6월), 명태(8~2월)
- 대상어종 : 쾡치, 참조기, 오징어, 고등어, 방어, 상어, 명태, 도루묵, 임연수어
- 조업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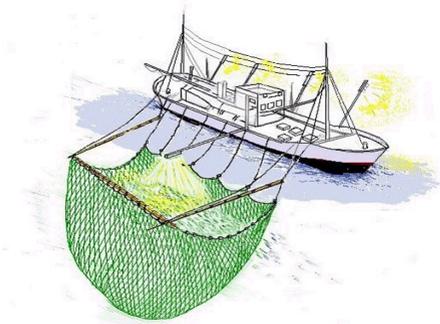
(13) 근해안강망어업

- 어업의 종류 / 근해안강망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8톤이상 90톤미만 / 5~10통
- 선원수 : 8~10명내외
- 주 조업시기 : 연중(6~3월)
- 대상어종 : 강달이류, 갈치, 참조기, 병어류, 고등어, 젓새우, 오징어, 밴댕이, 아귀, 꽃게, 갑오징어, 말쥐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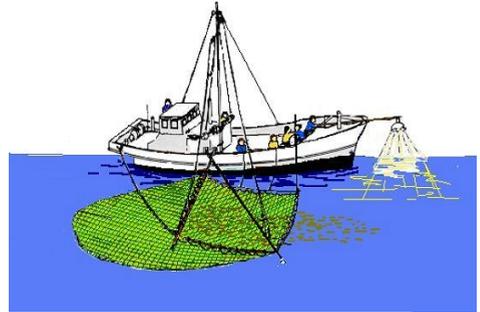


(14) 근해봉수망어업

- 어업의 종류 / 근해봉수망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8톤이상 90톤미만 / 1통
- 선원수 : 30~35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8~12월
- 대상어종 : 꽂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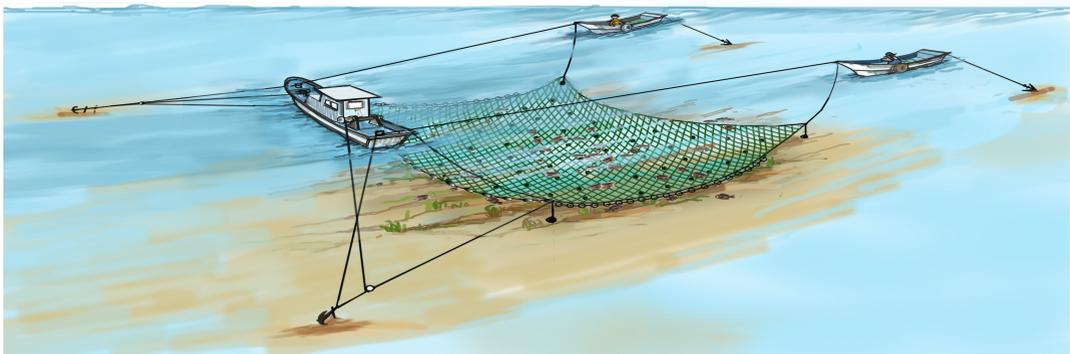
봉수망 초망



들망

(15) 근해자리돔들망어업

- 어업의 종류 / 근해자리돔들망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8톤이상 90톤미만 / 1통
- 선원수 : 총 10~15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대상어종 : 4~7월 / 자리돔



(16) 잠수기어업

- 어업의 종류 / 잠수기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8톤미만
- 선원수 : 4~5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미역(4~11월), 성게(7~4월), 해삼(11~6월), 전복(11~7월)
- 대상어종 : 미역, 성게, 해삼, 전복, 우렁챙이, 소라
- 1항차 조업수 : 2~3회 잠수/일 · 1인



(17) 근해장어통발어업

- 어업의 종류 / 근해장어통발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8톤이상 90톤미만 / 3,200~2,000개 내외
- 선원수 : 7~8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3~10월
- 대상어종 : 붕장어, 갯장어, 떡장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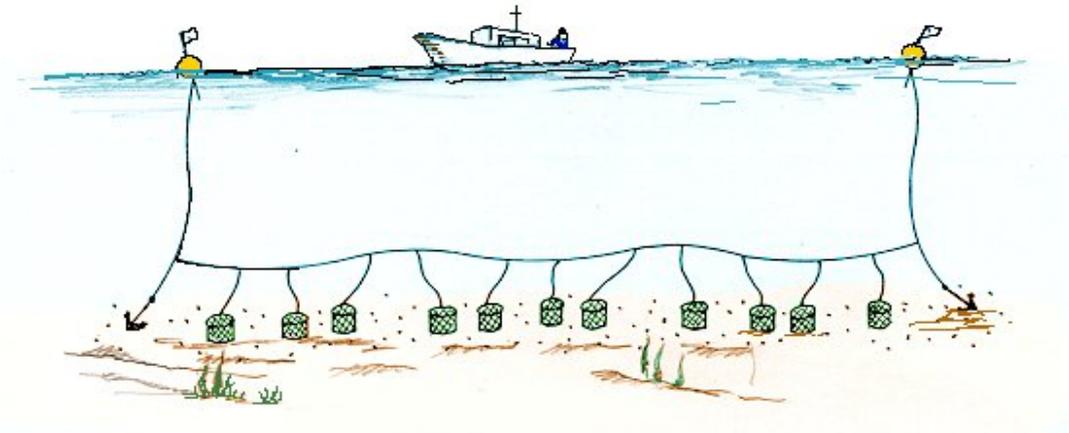
(18) 근해문어단지어업

- 어업의 종류 / 근해문어단지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8톤이상 90톤미만 / 2,400개
- 선원수 : 4~5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대상어종 : 6~8월 / 대상어종 : 참문어, 왜문어, 주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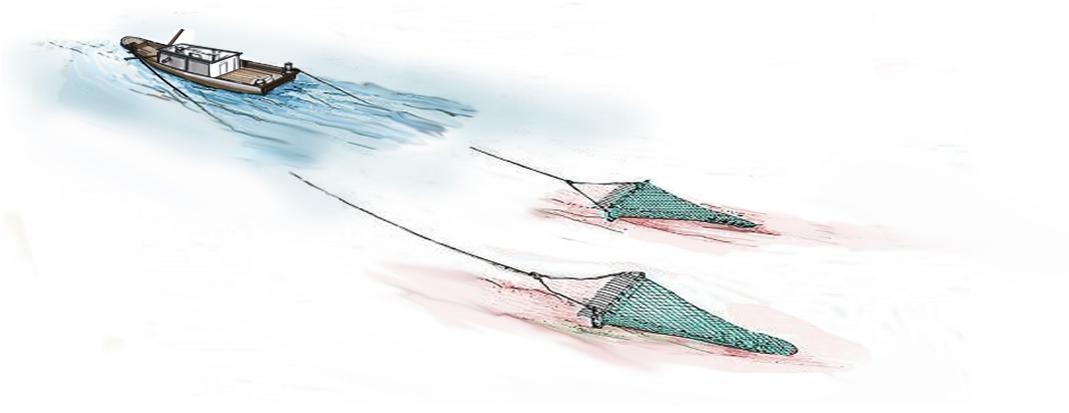
(19) 근해통발어업

- 어업의 종류 / 근해통발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8톤이상 90톤미만 / 2,500~5,000개
- 기관마력 / 선원수 : 평균 446마력(1척당) / 60톤급 약 11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연중
- 대상어종 : 붉은대게, 붕장어, 꽃게, 골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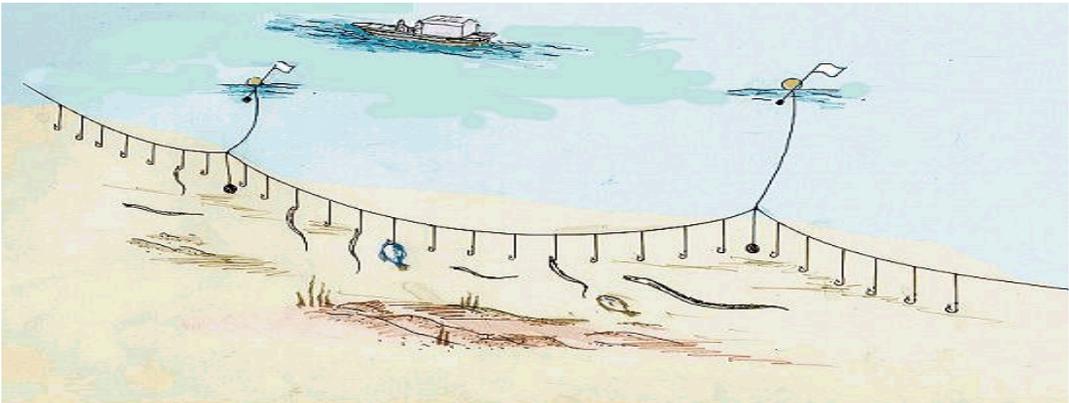
(20) 근해형망어업

- 어업의 종류 / 근해형망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20톤미만 / 1~4개
- 선원수 : 10톤급 4~5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연중
- 대상어종 : 피조개, 바지락, 백합, 가리비



(21) 근해연승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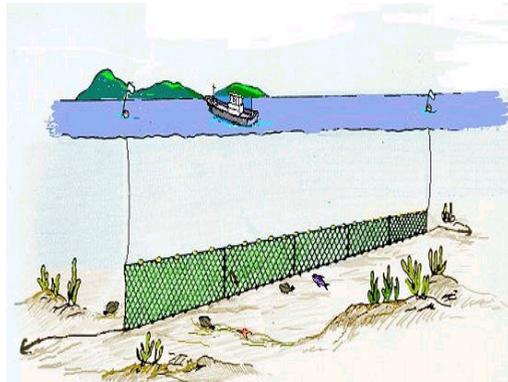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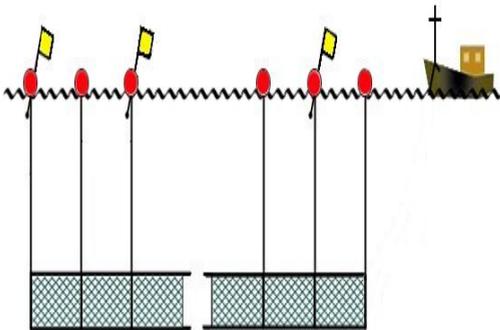
- 어업의 종류 / 근해연승어업
- 어선규모 : 8톤이상 90톤미만
- 선원수 : 10~20톤급 약 5~6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명태(10~3월)
- 대상어종 : 명태, 갈치, 참돔, 옥돔, 복어류



【 연안어업 】

(1) 연안자망어업

- 어업의 종류 / 연안자망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무동력선, 10톤미만의 동력선 / 12,000~35,000미터
- 선원수 : 2~6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풍치(5~7월), 청어 및 임연수어(5~6월), 명태(12~6월), 쥐치(6~7월)
- 대상어종 : 풍치, 청어, 임연수어, 명태, 쥐치
- 조업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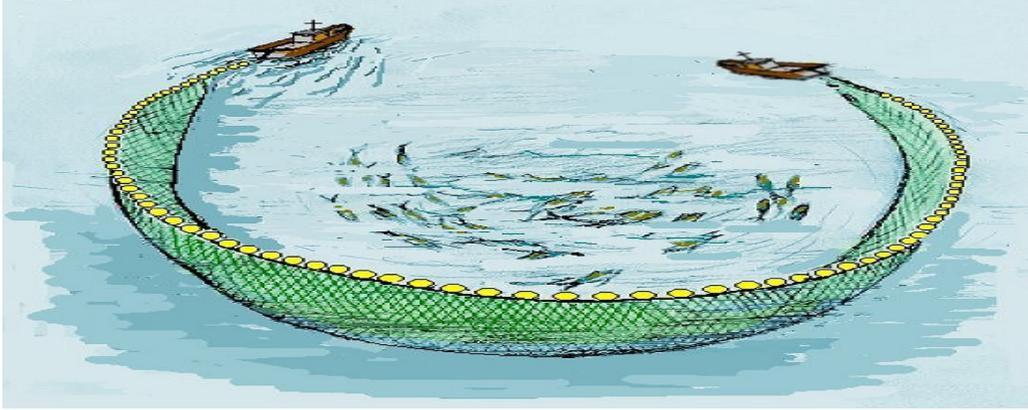
(2) 연안개량안강망어업

- 어업의 종류 / 연안개량안강망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8톤미만의 동력선 / 5통이내
- 선원수 : 2~3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꽃새우(5~10월), 중하(3~6월, 9~11월)
- 대상어종 : 꽃새우, 중하, 꽃게
- 조업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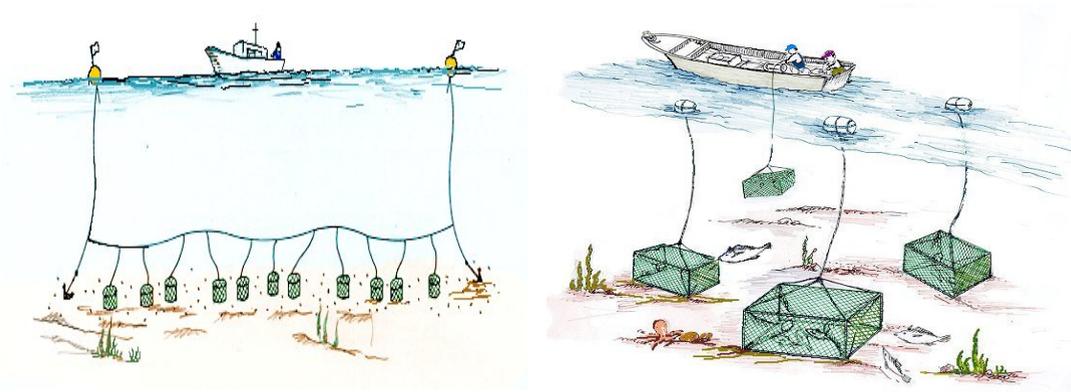
(3) 연안선망어업

- 어업의 종류 / 연안선망어업
- 어선규모 / 선원수 : 8톤미만의 동력선 / 1통
- 선원수 : 6~7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전어(5~11월), 멸치(5~12월), 학공치(1~6월)
- 대상어종 : 멸치, 전어, 학공치, 까나리
- 조업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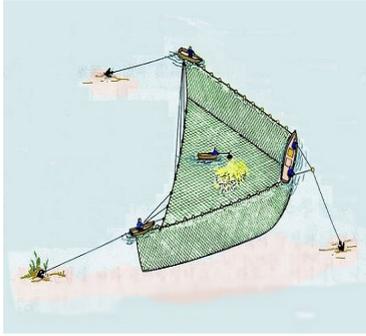
(4) 연안통발어업

- 어업의 종류 / 연안통발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무동력선, 8톤미만의 동력선 / 2,500~4,000개
- 선원수 : 2~6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문어(10~6월), 골뱅이(3~11월), 민꽃게(4~11월), 우럭(3~8월)
- 대상어종 : 문어, 골뱅이, 민꽃게, 우럭, 노래미, 붕장어
- 조업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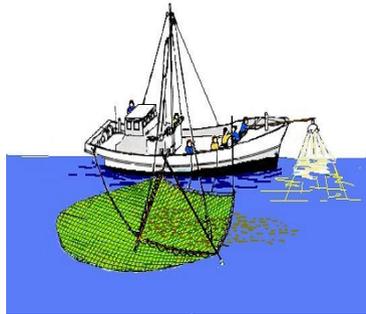


(5) 연안들망어업

- 어업의 종류 / 연안들망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무동력선, 10톤미만의 동력선 / 1~2통
- 선원수 : 2~8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말쥐치(4~6, 9~12월), 멸치(6~12월), 화살꼴뚜기(2~4월), 자리돔(4~7월)
- 대상어종 : 말쥐치, 멸치, 화살꼴뚜기, 자리돔
- 조업모식도



삼척들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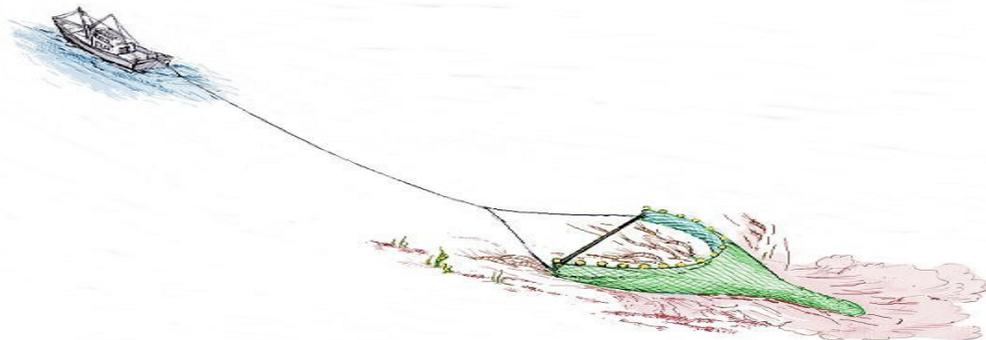
조망



들망

(6) 연안조망어업

- 어업의 종류 / 연안조망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8톤미만의 동력선 / 1통
- 선원수 : 2~3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중하(연중), 자주새우(4~10월), 꽃새우(4~11월)
- 대상어종 : 중하, 자주새우, 꽃새우
- 조업모식도



(7) 연안선인망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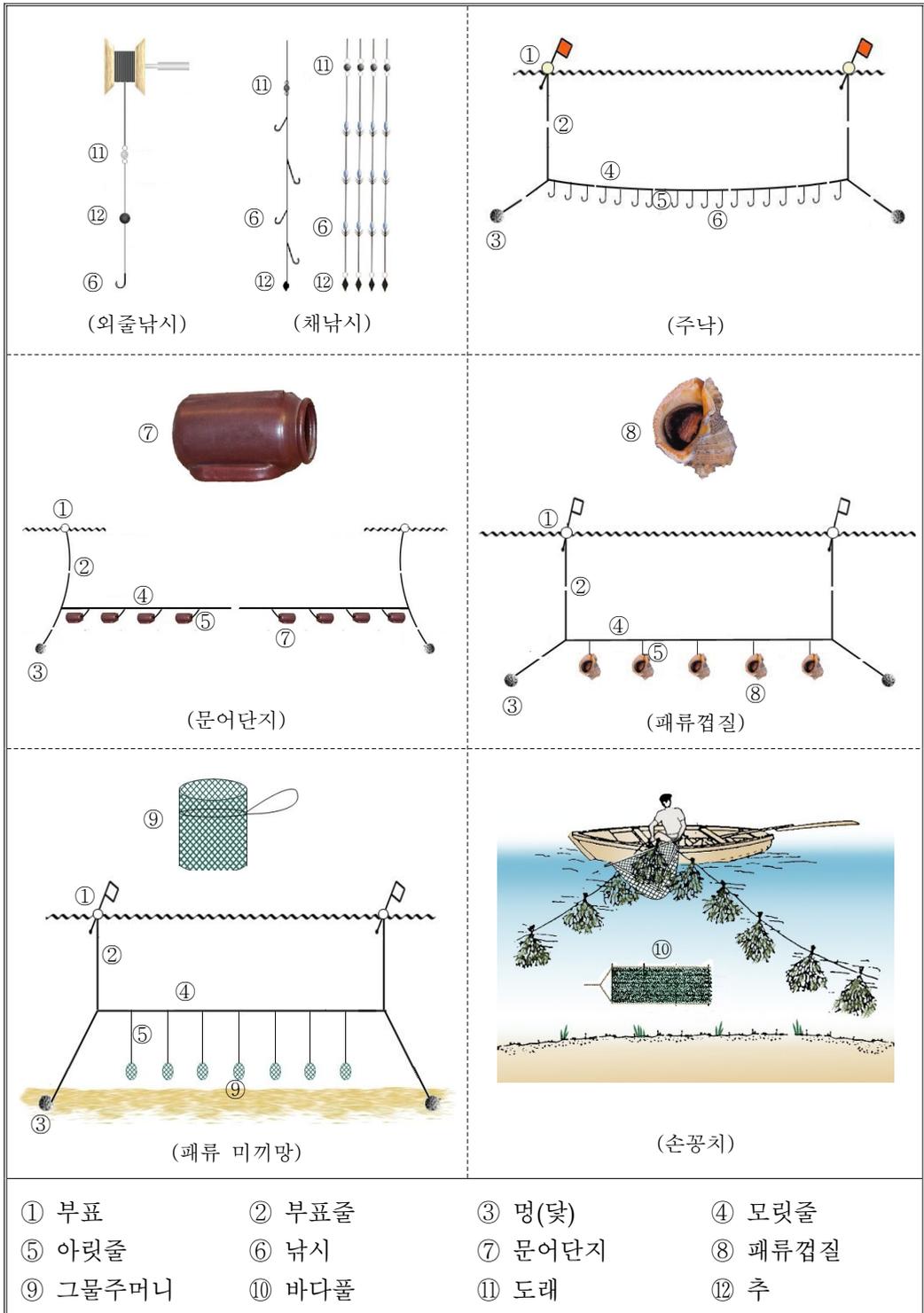
- 어업의 종류 / 연안선인망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8톤미만의 동력선 / 1통
- 선원수 : 5~10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멸치(10~12월), 학공치(3~6월, 11월~1월)
- 대상어종 : 멸치, 학공치
- 조업모식도



(8) 연안복합어업

- 어업의 종류 / 연안복합어업
- 어선규모 : 무동력선, 10톤미만의 동력선
- 사용어구수
 - 외출낚시 : 1인당 사용낚시수(조) - 1~50조
 - 연승 : 3~500광주리
 - 패류껍질어업 : 소라껍질 3,000여개를 1조로 하여 10~15조 사용
 - 패류미끼망어업 : 미끼주머니 1,000여개 사용
- 선원수 : 1~8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3~5월(패류껍질어업), 4~7월(패류미끼망어업), 5~7월, 11월(손꽁치어업)
- 대상어종
 - 외출낚시 : 문어, 복어, 농어, 불락, 넙치, 숭어, 우럭, 노래미, 감성돔, 도미, 방어
 - 채낚기 : 오징어, 갈치
 - 연승 : 명태,가자미,붕장어,갈치,망둑어,농어,도미,가오리,우럭,낙지,갯장어,노래미,복어,육돔,상어
 - 문어단지어업 : 참문어, 왜문어, 주꾸미
 - 패류껍질어업 : 주꾸미
 - 패류미끼망어업 : 피빨고둥, 갈색띠매물고둥
 - 손꽁치어업 : 꽁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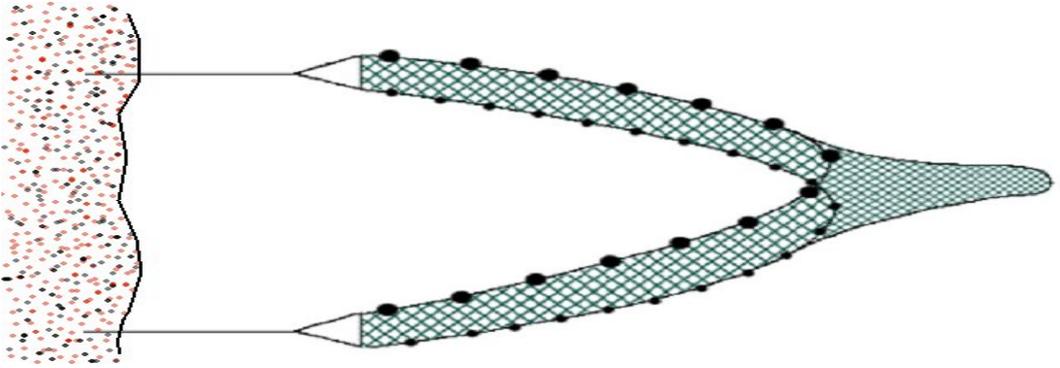
■ 연안복합어업의 조업모식도



【 구획어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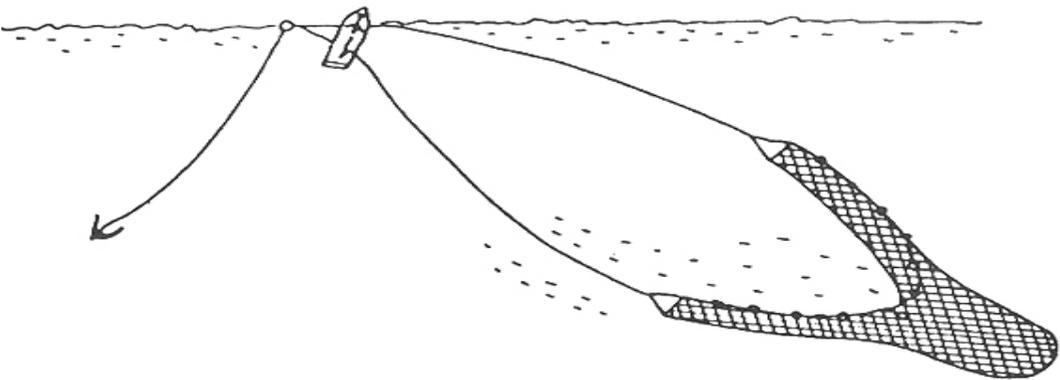
(1) 지인망어업

- 어업의 종류 / 지인망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무동력선, 5톤 미만의 동력선
- 선원수 : 약 6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멸치(4~10월)
- 대상어종 : 멸치
- 조업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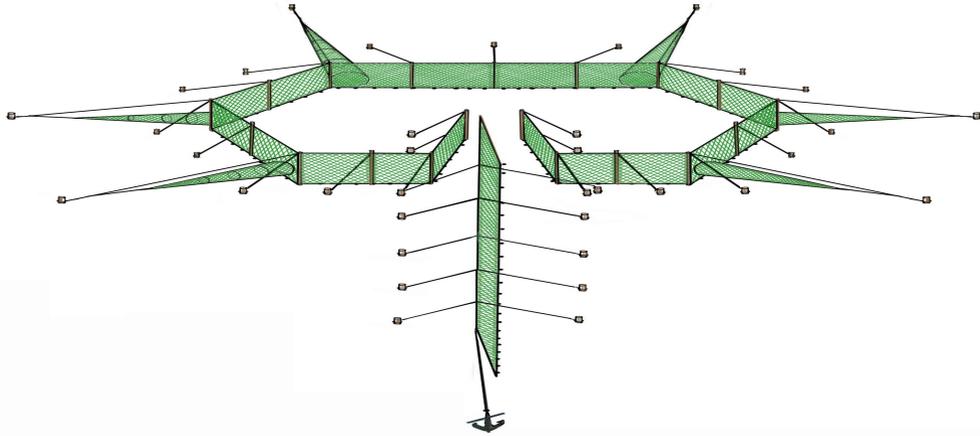
(2) 선인망어업

- 어업의 종류 / 선인망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무동력선, 5톤미만의 동력선 / 1통
- 선원수 : 2~4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대상어종 : 연중 / 가자미, 새우, 게
- 조업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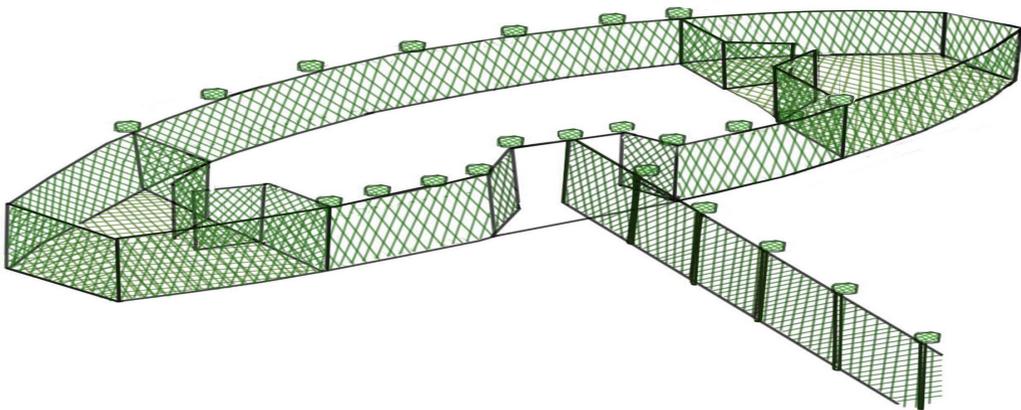
(3) 호망어업

- 어업의 종류 / 호망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무동력선, 5톤미만의 동력선 / 1통
- 기관마력 / 선원수 : 50마력 내외 / 3~4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2~4월(숭어), 3~4월(말쥐치, 넙치, 숭어), 5~6월(임연수어), 8~9월(방어, 갑오징어)
- 대상어종 : 숭어, 말쥐치, 넙치, 숭어, 임연수어, 방어, 갑오징어
- 조업모식도



(4) 건망어업

- 어업의 종류 / 건망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무동력선, 5톤미만의 동력선 / 1통
- 선원수 : 2~3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대상어종 : 4~7월 / 멸치, 갈치
- 조업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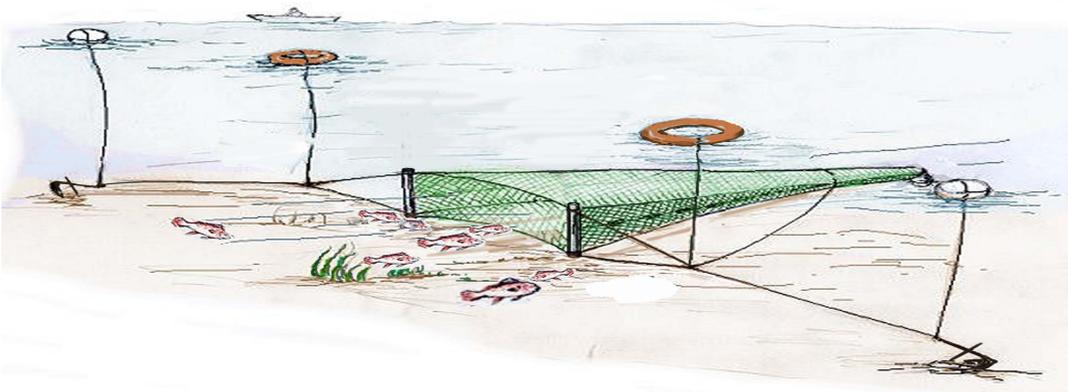
(5) 건강망어업

- 어업의 종류 / 건강망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무동력선, 5톤미만의 동력선 / 1통
- 선원수 : 2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2~11월
- 대상어종 : 젓새우류, 중하, 갑오징어, 삼치, 송어, 대하, 민어, 꽃게, 망둑어
- 조업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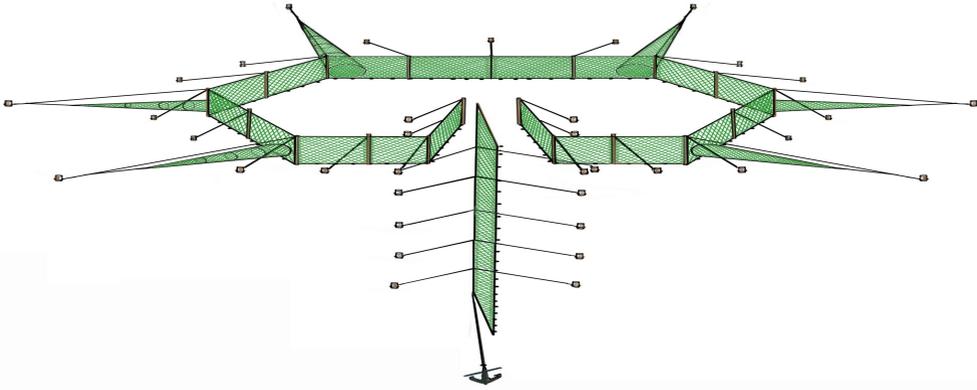
(6) 주목망어업

- 어업의 종류 / 주목망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무동력선, 5톤미만의 동력선 / 1통
- 선원수 : 2~4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3~12월
- 대상어종 : 젓새우, 해파리, 멸치, 베도라치, 복어
- 조업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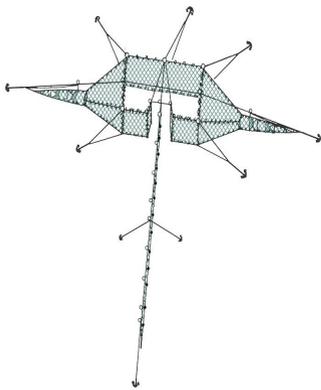
(7) 승망어업

- 어업의 종류 / 승망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무동력선, 5톤미만의 동력선 / 1통
- 선원수 : 2~3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10~5월(숭어), 3~6월 9~12월(감성돔), 12~5월(농어), 11~3월(대구), 5~9월(방어), 5~9월(전어)
- 대상어종 : 숭어, 감성돔, 농어, 전어, 대구, 방어, 메기, 보구치
- 조업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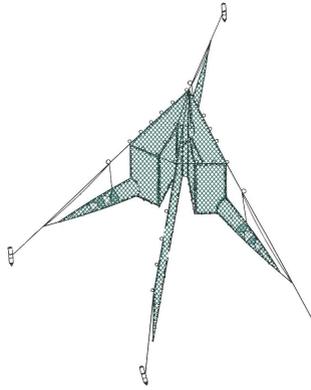


(8) 각망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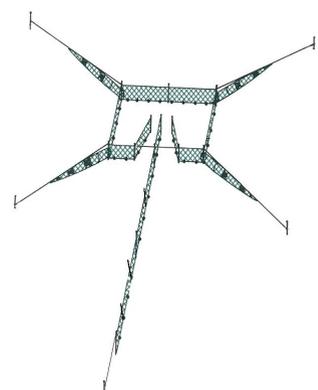
- 어업의 종류 / 각망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무동력선, 5톤미만의 동력선 / 1통
- 선원수 : 5~8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대상어종 : 5~7월 / 부시리, 갈치, 오징어, 전갱이, 멸치
- 조업모식도



이각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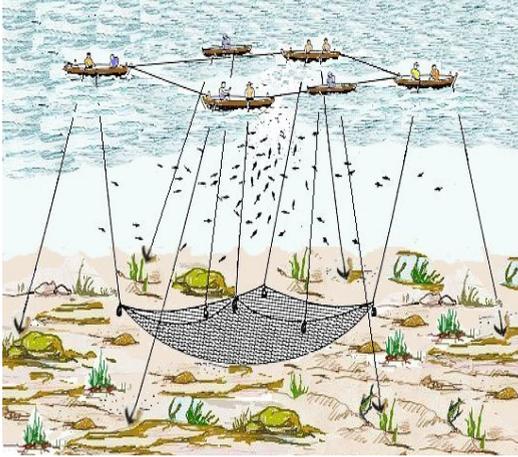
삼각망



사각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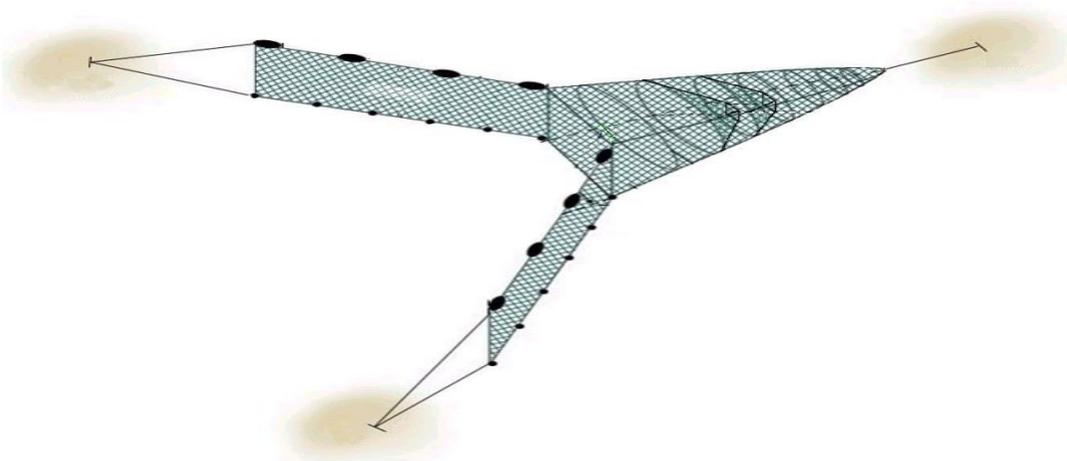
(9) 부망어업

- 어업의 종류 / 부망어업
- 어선규모 : 무동력선, 5톤 미만의 동력선
- 대상어종 : 멸치, 전어, 까나리, 전갱이
- 조업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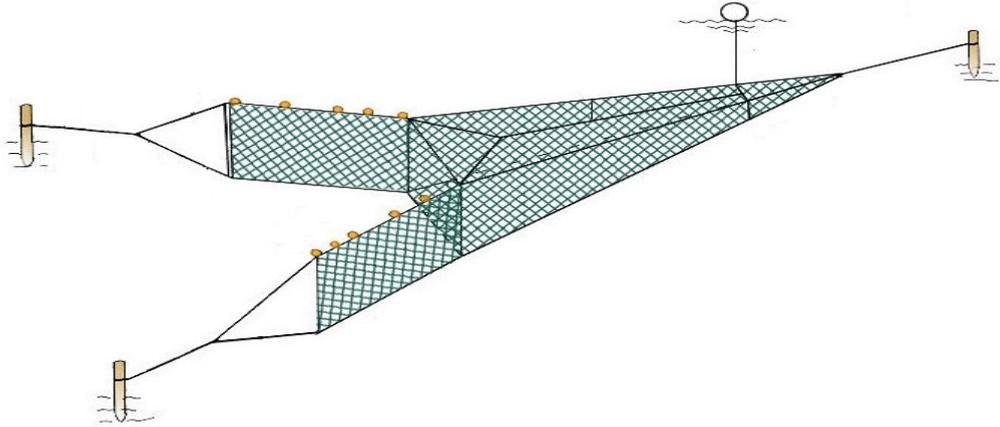
(10) 장망어업

- 어업의 종류 / 장망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무동력선, 5톤미만의 동력선 / 1통
- 선원수 : 1~2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11~5월
- 대상어종 : 빙어, 붕어, 잉어, 멸치, 전어, 까나리, 숭어, 전갱이, 농어
- 조업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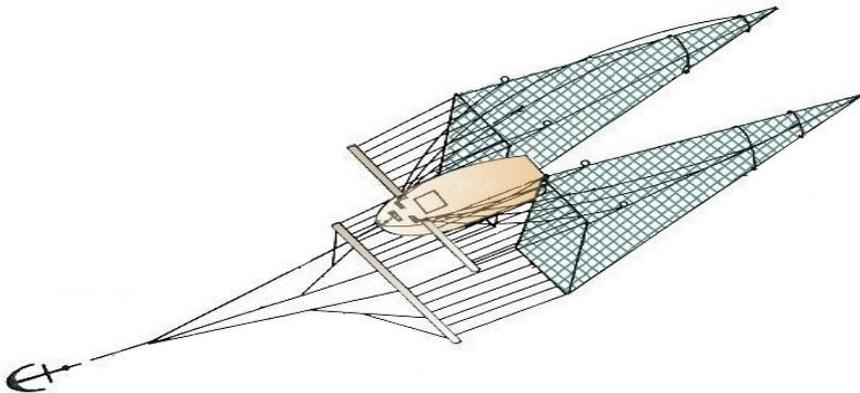
(11) 낭장망어업

- 어업의 종류 / 낭장망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무동력선, 5톤미만의 동력선 / 1통
- 선원수 : 2~6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3~11월
- 대상어종 : 멸치, 베도라치, 까나리, 삼치, 실뱀장어, 멸치, 방어, 새우류, 꽃게, 오징어, 갈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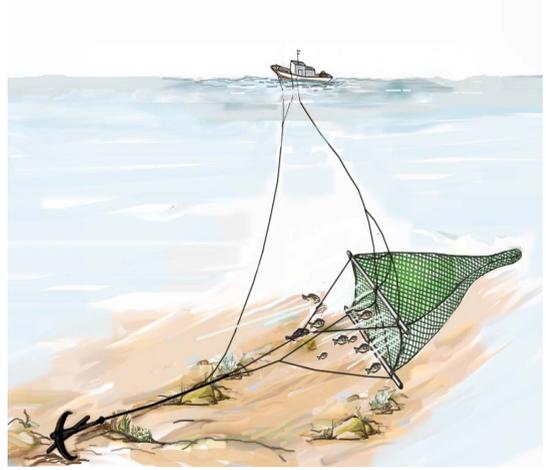
(12) 해선망어업

- 어업의 종류 / 해선망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무동력선 / 1통
- 선원수 / 주 조업시기 : 2~3명 내외 / 3~7월, 9~11월
- 대상어종 : 베도라치(실치), 까나리, 뱀뱀이, 멸치, 중하, 해파리, 젓새우, 꽃게



(13) 안강망어업

- 어업의 종류 / 안강망어업
- 어선규모 : 무동력선, 8톤미만의 동력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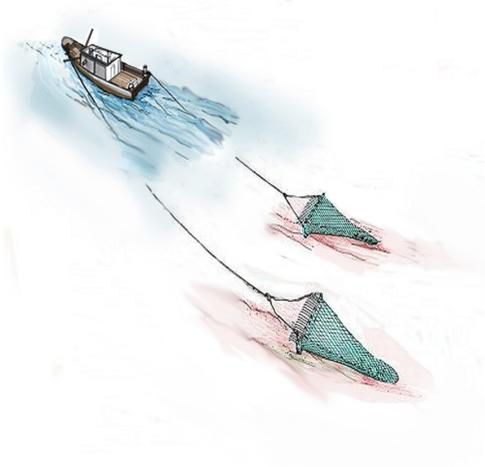
(14) 문어단지어업

- 어업의 종류 / 문어단지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무동력선 / 1,500~3,000개
- 선원수 : 2~3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6~8월
- 대상어종 : 참문어, 왜문어, 주꾸미
- 조업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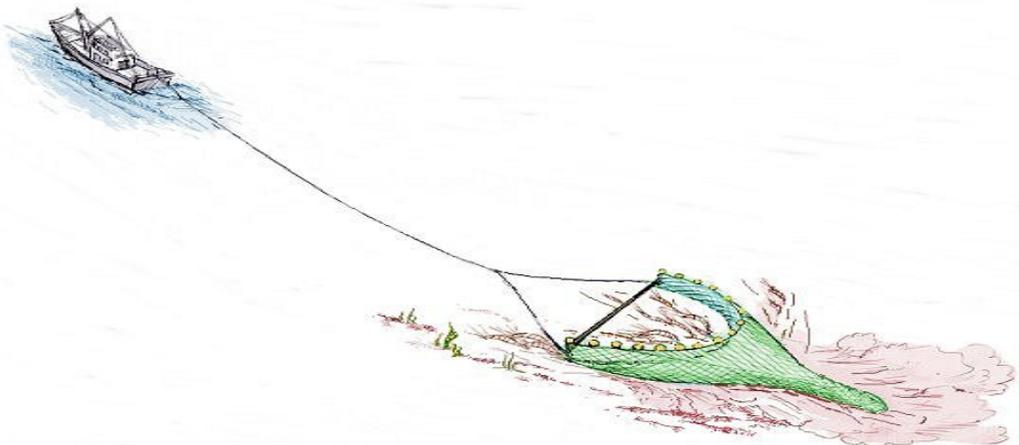
(15) 패류형망어업

- 어업의 종류 / 패류형망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무동력선, 5톤미만의 동력선 / 2통이내
- 선원수 : 2~8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연중
- 대상어종 : 피조개,바지락,민들조개,북방대합,개랑조개,백합,접시조개,가리비,소라,대황,재첩



(16) 새우조망어업

- 어업의 종류 / 새우조망어업
- 어선규모 : 무동력선, 5톤미만의 동력선
- 대상어종 : 새우류, 중하, 가오리류, 꽃게류



(17) 실뱀장어안강망어업

- 어업의 종류 / 실뱀장어안강망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무동력선, 5톤미만의 동력선 / 2통이내
- 선원수 : 2~3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대상어종 : 3~6월, 12~4월 / 실뱀장어

